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1940-01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23 주요국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모음집

2023.11.

특허청

목 차

CONTENTS

1.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 1

2. 미국 연방 경제스파이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 71

3.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 115

4. 중국 부정경쟁방지법 ····· 165

5. EU 영업비밀보호법 ····· 179

1.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원 본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회 도서관
번역본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국회 도서관

독일부정경쟁방지법(UWG)

국 가	독일
원법률명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UWG)
제 정	2004년 7월 3일
개 정	2022년 6월 24일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UWG)	독일부정경쟁방지법(UWG) 2022년 6월 24일
Kapitel 1 Allgemeine Bestimmungen	제1장 일반 규칙
§ 1 Zweck des Gesetzes; Anwendungsbereich	제1조 법의 목적; 적용범위
(1) Dieses Gesetz dient dem Schutz der Mitbewerber, der Verbraucher sowie der sonstigen Marktteilnehmer vor unlauteren geschäftlichen Handlungen. Es schützt zugleich das Interesse der Allgemeinheit an einem unverfälschten Wettbewerb.	(1) 이 법은 경쟁자, 소비자 및 다른 시장참여자를 불공정한 거래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이 법은 왜곡되지 아니한 경쟁을 통하여 공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Vorschriften zur Regelung besonderer Aspekte unlauterer geschäftlicher Handlungen gehen bei der Beurteilung, ob eine unlautere geschäftliche Handlung vorliegt, den Regelungen dieses Gesetzes vor.	(2) 불공정한 거래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 측면에서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이 이 법의 규정보다 우선한다.
§ 2 Begriffsbestimmungen	제2조 (정의)
(1) Im Sinne dieses Gesetzes ist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geschäftliche Entscheidung“ jede Entscheidung eines Verbrauchers oder sonstigen Marktteilnehmers darüber, ob, wie und unter welchen Bedingungen er ein Geschäft abschließen, eine Zahlung leisten, eine Ware oder Dienstleistung behalten oder abgeben oder ein vertragliches Recht im Zusammenhang mit einer Ware oder Dienstleistung ausüben will, unabhängig davon, ob der Verbraucher oder sonstige Marktteilnehmer sich entschließt, tätig zu werden;	1. “거래 결정”이란 실제로 하기로 결정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비자 또는 기타 시장참여자가 거래의 체결, 지불,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지 또는 양도, 계약상 권리 행사의 방식 및 조건에 관하여 내린 결정을 말한다.
2. “geschäftliche Handlung” jedes Verhalten einer Person zugunsten des eigenen oder	2. “거래행위”란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또는 구매를 촉진하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에

eines fremden Unternehmens vor, bei oder nach einem Geschäftsabschluss, das mit der Förderung des Absatzes oder des Bezugs von Waren oder Dienstleistungen oder mit dem Abschluss oder der Durchführung eines Vertrags über Waren oder Dienstleistungen unmittelbar und objektiv zusammenhängt; als Waren gelten auch Grundstücke und digitale Inhalte, Dienstleistungen sind auch digitale Dienstleistungen, als Dienstleistungen gelten auch Rechte und Verpflichtungen;	대한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직접적이고 객관적으로 관련된 것으로서 자사 또는 타사를 위하여 거래완료 이전, 도중 또는 이후에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부동산과 디지털콘텐츠는 상품에 해당하고, 디지털서비스는 서비스에 해당하며, 권리 및 의무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 "Marktteilnehmer" neben Mitbewerber und Verbraucher auch jede weitere Person, die als Anbieter oder Nachfrager von Waren oder Dienstleistungen tätig ist;	3. "시장참여자"란 경쟁자와 소비자 이외에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 또는 수요자로서 활동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4. "Mitbewerber" jeder Unternehmer, der mit einem oder mehreren Unternehmern als Anbieter oder Nachfrager von Waren oder Dienstleistungen in einem konkreten Wettbewerbsverhältnis steht;	4. "경쟁자"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 또는 수요자로서 한 명 이상의 사업자와 구체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각 사업자를 말한다.
5. "Nachricht" jede Information, die zwischen einer endlichen Zahl von Beteiligten über einen öffentlich zugänglichen elektronischen Kommunikationsdienst ausgetauscht oder weitergeleitet wird; nicht umfasst sind Informationen, die als Teil eines Rundfunkdienstes über ein elektronisches Kommunikationsnetz an die Öffentlichkeit weitergeleitet werden, soweit diese Informationen nicht mit dem identifizierbaren Teilnehmer oder Nutzer, der sie erhält, in Verbindung gebracht werden können;	5. "통지"란 공개 전자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제한된 수의 당사자 간에 교환 또는 전달되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다만, 해당 정보를 수신하는 불특정의 참여자 또는 이용자에 관한 정보인 경우, 전자 통신네트워크를 통해 방송 서비스의 일부로 대중에게 전달되는 정보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Online-Marktplatz" ein Dienst, der es Verbrauchern ermöglicht, durch die Verwendung von Software, die von einem Unternehmer oder in dessen Namen betrieben wird, einschließlich einer Website, eines Teils einer Website oder einer Anwendung,	6. "온라인 시장"이란 웹사이트, 웹사이트의 일부 또는 응용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사업자에 의하여 또는 사업자의 명의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소비자가 통신판매계약(「민법」제312c조)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Fernabsatzverträge (§ 312c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mit anderen Unternehmern oder Verbrauchern abzuschließen;	
7. “Ranking” die von einem Unternehmer veranlasste relative Hervorhebung von Waren oder Dienstleistungen, unabhängig von den hierfür verwendeten technischen Mitteln;	7. “순위”란 사용되는 기술적 수단이 무엇인지와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가가 유도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상대적 우수성을 의미한다.
8. “Unternehmer” jede natürliche oder juristische Person, die geschäftliche Handlungen im Rahmen ihrer gewerblichen, handwerklichen oder beruflichen Tätigkeit vornimmt, und jede Person, die im Namen oder Auftrag einer solchen Person handelt;	8. “사업자”란 상업, 기술 또는 직업 활동의 범위 내에서 거래행위를 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과 그가 위임한 또는 그의 이름으로 행위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9. “unternehmerische Sorgfalt” der Standard an Fachkenntnissen und Sorgfalt, von dem billigerweise angenommen werden kann, dass ein Unternehmer ihn in seinem Tätigkeitsbereich gegenüber Verbrauchern nach Treu und Glauben unter Berücksichtigung der anständigen Marktgepflogenheiten einhält;	9. “사업자의 주의의무”란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활동함에 있어 공정한 시장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전문지식 및 주의의무 기준을 말한다.
10. “Verhaltenskodex” jede Vereinbarung oder Vorschrift über das Verhalten von Unternehmern, zu welchem diese sich in Bezug auf Wirtschaftszweige oder einzelne geschäftliche Handlungen verpflichtet haben, ohne dass sich solche Verpflichtungen aus Gesetzes- oder Verwaltungsvorschriften ergeben;	10. “행위지침”이란 경제활동 또는 개별 거래행위 시 사업자의 행위에 관한 합의 또는 규칙이며, 법령이나 행정규칙에 따른 의무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11. “wesentliche Beeinflussung des wirtschaftlichen Verhaltens des Verbrauchers“ die Vornahme einer geschäftlichen Handlung, um die Fähigkeit des Verbrauchers, eine informierte Entscheidung zu treffen, spürbar zu beeinträchtigen und damit den Verbraucher zu einer geschäftlichen Entscheidung zu veranlassen, die er andernfalls nicht getroffen hätte.	11. “소비자의 경제 행위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이란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소비자의 결정 능력을 현저하게 손상시켜서 통상의 경우라면 하도록 유도하는 상업적 행위를 말한다.

(2) Für den Verbraucherbegriff ist § 13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entsprechend anwendbar.	(2) "소비자"의 정의에 관하여는 독일 민법 제13조를 준용한다.
§ 3 Verbot unlauterer geschäftlicher Handlungen	**제3조 (금지되는 부정한 거래행위)**
(1) Unlautere geschäftliche Handlungen sind unzulässig.	(1) 부정한 거래행위는 금지된다.
(2) Geschäftliche Handlungen, die sich an Verbraucher richten oder diese erreichen, sind unlauter, wenn sie nicht der unternehmerischen Sorgfalt entsprechen und dazu geeignet sind, das wirtschaftliche Verhalten des Verbrauchers wesentlich zu beeinflussen.	(2) 소비자를 향하거나 소비자와 관련된 거래행위는, 거래행위가 영업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소비자의 경제적 행위에 현저한 침해를 가져오는 경우 금지된다.
(3) Die im Anhang dieses Gesetzes aufgeführten geschäftlichen Handlungen gegenüber Verbrauchern sind stets unzulässig.	(3) 동법 부칙에 도입된 부정경쟁 행위는 당연히 금지된다.
(4) Bei der Beurteilung von geschäftlichen Handlungen gegenüber Verbrauchern ist auf den durchschnittlichen Verbraucher oder, wenn sich die geschäftliche Handlung an eine bestimmte Gruppe von Verbrauchern wendet, auf ein durchschnittliches Mitglied dieser Gruppe abzustellen. Geschäftliche Handlungen, die für den Unternehmer vorhersehbar das wirtschaftliche Verhalten nur einer eindeutig identifizierbaren Gruppe von Verbrauchern wesentlich beeinflussen, die auf Grund von geistigen oder körperlichen Beeinträchtigungen, Alter oder Leichtgläubigkeit im Hinblick auf diese geschäftlichen Handlungen oder die diesen zugrunde liegenden Waren oder Dienstleistungen besonders schutzbedürftig	(4) 소비자에 대한 거래행위를 판단하는 경우, 평균적 소비자, 또는 거래행위가 특정한 소비자 계층에 사용된 경우 그 계층의 평균적 소비자에 근거해야 한다. 영업자의 예측가능성에 대해서 거래행위 관점에서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함, 나이 또는 경솔함 또는 이러한 것에 근거한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소비자들에 해당되는 소비자 계층의 경제적 행위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거래행위는 해당 계층의 평균적 구성원의 관점에 근거해서 판단되어야 한다.

sind, sind aus der Sicht eines durchschnittlichen Mitglieds dieser Gruppe zu beurteilen.	
§ 3a Rechtsbruch	제3a조 (법규위반을 통한 부정경쟁행위)
Unlauter handelt, wer einer gesetzlichen Vorschrift zuwiderhandelt, die auch dazu bestimmt ist, im Interesse der Marktteilnehmer das Marktverhalten zu regeln, und der Verstoß geeignet ist, die Interessen von Verbrauchern, sonstigen Marktteilnehmern oder Mitbewerbern spürbar zu beeinträchtigen.	누구든지 시장참여자의 이익에서 시장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을 위반하고 그 법규위반이 소비자, 기타 시장참여자 또는 경쟁자의 이익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침해하는 경우 부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 4 Mitbewerberschutz	제4조 (경쟁자보호)
Unlauter handelt, wer	누구든지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1. die Kennzeichen, Waren, Dienstleistungen, Tätigkeiten oder persönlichen oder geschäftlichen Verhältnisse eines Mitbewerbers herabsetzt oder verunglimpft;	1. 다른 경쟁자의 표지, 상품, 서비스, 활동, 인적 또는 거래적 관계를 폄하 또는 비방하는 행위
2. über die Waren, Dienstleistungen oder das Unternehmen eines Mitbewerbers oder über den Unternehmer oder ein Mitglied der Unternehmensleitung Tatsachen behauptet oder verbreitet, die geeignet sind, den Betrieb des Unternehmens oder den Kredit des Unternehmers zu schädigen, sofern die Tatsachen nicht erweislich wahr sind; handelt es sich um vertrauliche Mitteilungen und hat der Mitteilende oder der Empfänger der Mitteilung an ihr ein berechtigtes Interesse, so ist die Handlung nur dann unlauter, wenn die Tatsachen der Wahrheit zuwider behauptet oder verbreitet wurden;	2. 경쟁자의 영업 또는 상품, 서비스 또는 경영자나 임직원에 관한 사실을 그 사실이 진실하다고 증명할 수 없음에도 주장하거나 유포하여 기업의 영업 또는 영업신용에 손해를 가한 경우; 비밀유지를 통해 전달되거나 그 전달의 수신인이 전달된 사실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갖는 경우 그 사실이 진실에 반하여 주장되거나 유포된 경우에 한해 부정한 행위가 된다.
3. Waren oder Dienstleistungen anbietet, die eine Nachahmung der Waren oder Dienstleistungen eines Mitbewerbers sind, wenn er	3. 경쟁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모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a) eine vermeidbare Täuschung der Abnehmer über die betriebliche Herkunft herbeiführt, b) die Wertschätzung der nachgeahmten Ware oder Dienstleistung unangemessen ausnutzt oder beeinträchtigt oder c) die für die Nachahmung erforderlichen Kenntnisse oder Unterlagen unredlich erlangt hat; 4. Mitbewerber gezielt behindert.	a) 수요자에게 영업적 출처에 관한 회피 가능한 혼동을 야기한 경우 b) 모방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평가를 악용 또는 훼손한 경우 c) 모방에 대한 필요한 지식 또는 서류를 부정하게 취득한 경우 4. 경쟁자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 4a Aggressive geschäftliche Handlungen	**제4a조 (공격적 거래행위)**
(1) Unlauter handelt, wer eine aggressive geschäftliche Handlung vornimmt, die geeignet ist, den Verbraucher oder sonstigen Marktteilnehmer zu einer geschäftlichen Entscheidung zu veranlassen, die dieser andernfalls nicht getroffen hätte. Eine geschäftliche Handlung ist aggressiv, wenn sie im konkreten Fall unter Berücksichtigung aller Umstände geeignet ist, die Entscheidungsfreiheit des Verbrauchers oder sonstigen Marktteilnehmers erheblich zu beeinträchtigen durch	(1) 소비자 및 기타 시장참가자에게 공격적 거래행위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공격적 거래행위를 실행한 자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거래행위가 구체적 사례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소비자 또는 시장참여자의 결정의 자유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 공격적인 거래행위로 본다.
1. Belästigung, 2. Nötigung einschließlich der Anwendung körperlicher Gewalt oder 3. unzulässige Beeinflussung. Eine unzulässige Beeinflussung liegt vor, wenn der Unternehmer eine Machtposition gegenüber dem Verbraucher oder sonstigen Marktteilnehmer zur Ausübung von Druck, auch ohne Anwendung oder Androhung von körperlicher Gewalt, in einer Weise ausnutzt, die die Fähigkeit des Verbrauchers oder sonstigen Marktteilnehmers zu einer informierten Entscheidung wesentlich einschränkt.	1. 괴롭힘 2. 신체적 유형력을 포함한 강요 3. 부당한 영향력 부당한 영향력이란 신체적 유형력 또는 협박의 행사 없이, 압력을 행사하고자 소비자 또는 기타 시장참여자들의 합리적 결정 능력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방법으로 우월적 지위(Machtposition)를 이용하는 것이다.

(2) Bei der Feststellung, ob eine geschäftliche Handlung aggressiv im Sinne des Absatzes 1 Satz 2 ist, ist abzustellen auf	(2) 제1항 제2문에서 거래행위가 공격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Zeitpunkt, Ort, Art oder Dauer der Handlung;	1. 행동의 시기, 장소, 기간
2. die Verwendung drohender oder beleidigender Formulierungen oder Verhaltensweisen;	2. 협박 또는 모욕적 행위방법과 행위표현의 이용
3. die bewusste Ausnutzung von konkreten Unglückssituationen oder Umständen von solcher Schwere, dass sie das Urteilsvermögen des Verbrauchers oder sonstigen Marktteilnehmers beeinträchtigen, um dessen Entscheidung zu beeinflussen;	3.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소비자 또는 기타 시장참여자의 판단력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불행한 상황 또는 그러한 어려운 사정의 고의적 악용
4. belastende oder unverhältnismäßige Hindernisse nichtvertraglicher Art, mit denen der Unternehmer den Verbraucher oder sonstigen Marktteilnehmer an der Ausübung seiner vertraglichen Rechte zu hindern versucht, wozu auch das Recht gehört, den Vertrag zu kündigen oder zu einer anderen Ware oder Dienstleistung oder einem anderen Unternehmer zu wechseln;	4. 계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다른 영업자로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귀속되어 있는 소비자 또는 기타 시장참여자들의 계약적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시도로서 비계약적 유형으로 부담을 주는 행위 또는 과도한 방해행위
5. Drohungen mit rechtlich unzulässigen Handlungen. Zu den Umständen, die nach Nummer 3 zu berücksichtigen sind, zählen insbesondere geistige und körperliche Beeinträchtigungen, das Alter, die geschäftliche Unerfahrenheit, die Leichtgläubigkeit, die Angst und die Zwangslage von Verbrauchern.	5.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동으로 인한 협박 제3호의 판단기준을 고려할 때, 특히나 소비자의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피해, 나이, 거래적 무경험, 경솔함, 두려움, 그리고 강요상태가 고려되어야만 한다.
§ 5 Irreführende geschäftliche Handlungen	**제5조 착오를 유발하는 거래행위**
(1) Unlauter handelt, wer eine irreführende geschäftliche Handlung vornimmt, die geeignet ist, den Verbraucher oder sonstigen Marktteilnehmer zu einer geschäftlichen Entscheidung zu veranlassen, die er andernfalls nicht getroffen hätte.	(1) 소비자 또는 다른 시장참여자가 통상의 경우라면 내리지 아니하였을 거래결정을 하도록 착오를 유도하는 거래행위를 하는 자는 부당하게 행위한 것으로 본다.

(2) Eine geschäftliche Handlung ist irreführend, wenn sie unwahre Angaben enthält oder sonstige zur Täuschung geeignete Angaben über folgende Umstände enthält:	(2) 거래행위가 허위정보를 포함하고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착각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착오를 유발하는 거래행위로 본다.
1. die wesentlichen Merkmale der Ware oder Dienstleistung wie Verfügbarkeit, Art, Ausführung, Vorteile, Zubehör, Verfahren oder Zeitpunkt der Herstellung, Lieferung oder Erbringung, Zwecktauglichkeit, Verwendungsmöglichkeit, Menge, Beschaffenheit, Kundendienst und Beschwerdeverfahren, geographische oder betriebliche Herkunft, von der Verwendung zu erwartende Ergebnisse oder die Ergebnisse oder wesentlichen Bestandteile von Tests der Waren oder Dienstleistungen;	1. 가용성, 유형, 실행, 장점, 위험성, 구성, 부속품, 제조 과정 또는 시간, 배송, 제공, 목적적합성, 사용가능성, 수량, 품질, 고객서비스, 불만 절차, 생산지, 제조지, 사용시 예상되는 결과, 상품 또는 서비스 테스트의 결과 또는 주요 구성요소 등과 같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주요 특성
2. den Anlass des Verkaufs wie das Vorhandensein eines besonderen Preisvorteils, den Preis oder die Art und Weise, in der er berechnet wird, oder die Bedingungen, unter denen die Ware geliefert oder die Dienstleistung erbracht wird;	2. 특별 할인 혜택과 같은 판매 동기, 가격, 유형, 산정 방식, 상품 인도조건 및 서비스 제공조건
3. die Person, Eigenschaften oder Rechte des Unternehmers wie Identität, Vermögen einschließlich der Rechte des geistigen Eigentums, den Umfang von Verpflichtungen, Befähigung, Status, Zulassung, Mitgliedschaften oder Beziehungen, Auszeichnungen oder die geschäftliche Handlung oder die Art des Vertriebs;	3. 신원,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자산, 의무 범위, 자격, 지위, 인증, 회원자격 또는 관계, 수상 또는 평판, 거래행위 동기 또는 판매 유형과 같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성격 또는 권리
4. Aussagen oder Symbole, die im Zusammenhang mit direktem oder indirektem Sponsoring stehen oder sich auf eine Zulassung des Unternehmers oder der Waren oder Dienstleistungen beziehen;	4. 직접 또는 간접 후원 또는 사업자, 상품, 서비스의 승인과 관련된 진술 또는 기호
5. die Notwendigkeit einer Leistung, eines Ersatzteils, eines Austauschs oder einer Reparatur;	5. 서비스, 예비부품, 교체 또는 수리의 필요성

6. die Einhaltung eines Verhaltenskodexes, auf den sich der Unternehmer verbindlich verpflichtet hat, wenn er auf diese Bindung hinweist, oder	6. 이행의무 있는 계약자의 행위지침 준수여부
7. Rechte des Verbrauchers, insbesondere solche auf Grund von Garantieversprechen oder Gewährleistungsrechte bei Leistungsstörungen.	7. 소비자의 권리, 특히 성능저하에 대한 보증 약속 및 보증권리를 근거로 한 소비자의 권리.
(3) Eine geschäftliche Handlung ist auch irreführend, wenn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래행위는 착오를 유발하는 것으로 본다.
1. sie im Zusammenhang mit der Vermarktung von Waren oder Dienstleistungen einschließlich vergleichender Werbung eine Verwechslungsgefahr mit einer anderen Ware oder Dienstleistung oder mit der Marke oder einem anderen Kennzeichen eines Mitbewerbers hervorruft oder	1. 비교광고를 포함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마케팅과 관련하여 다른 상품, 서비스, 경쟁 브랜드 또는 다른 식별 기호와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mit ihr eine Ware in einem Mitgliedstaat der Europäischen Union als identisch mit einer in anderen Mitgliedstaaten der Europäischen Union auf dem Markt bereitgestellten Ware vermarktet wird, obwohl sich diese Waren in ihrer Zusammensetzung oder in ihren Merkmalen wesentlich voneinander unterscheiden, sofern dies nicht durch legitime und objektive Faktoren gerechtfertigt ist.	2. 상품의 구성 또는 특성이 상당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의 시장에서 출시된 상품과 해당 상품이 동일한 것처럼 유럽연합의 회원국에서 출시하는 경우. 다만, 합법적이고 객관적인 요인에 의하여 그 출시가 정당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Angaben im Sinne von Absatz 1 Satz 2 sind auch Angaben im Rahmen vergleichender Werbung sowie bildliche Darstellungen und sonstige Veranstaltungen, die darauf zielen und geeignet sind, solche Angaben zu ersetzen.	(4) 제1항제2문에 따른 정보에는 비교광고에 포함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보를 대체하기에 적합한 시각적 표현 및 기타 전시도 포함된다.
(5) Es wird vermutet, dass es irreführend ist, mit der Herabsetzung eines Preises zu werben, sofern der Preis nur für eine	(5) 인하된 가격이 부적절하게 짧은 기간 동안만 유지되는 경우, 가격인하 광고를 하는 것은 착오를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가격유지

unangemessen kurze Zeit gefordert worden ist. Ist streitig, ob und in welchem Zeitraum der Preis gefordert worden ist, so trifft die Beweislast denjenigen, der mit der Preisherabsetzung geworben hat.	여부 및 기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가격인하 광고를 한 자에게 있다.
§ 5a Irreführung durch Unterlassen	제5a조 부작위에 의한 기망
(1) Unlauter handelt auch, wer einen Verbraucher oder sonstigen Marktteilnehmer irreführt, indem er ihm eine wesentliche Information vorenthält, 1. die der Verbraucher oder der sonstige Marktteilnehmer nach den jeweiligen Umständen benötigt, um eine informierte geschäftliche Entscheidung zu treffen, und 2. deren Vorenthalten dazu geeignet ist, den Verbraucher oder den sonstigen Marktteilnehmer zu einer geschäftlichen Entscheidung zu veranlassen, die er andernfalls nicht getroffen hätte.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요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비자 또는 다른 시장참여자를 기망한 자는 불공정하게 행위한 것으로 본다. 1. 소비자 또는 다른 시장참여자가 정보에 입각하여 각 상황에 따른 거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 2.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비자 또는 다른 시장참여자가 통상의 경우라면 내리지 아니하였을 거래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정보
(2) Als Vorenthalten gilt auch 1. das Verheimlichen wesentlicher Informationen, 2. die Bereitstellung wesentlicher Informationen in unklarer, unverständlicher oder zweideutiger Weise sowie 3. die nicht rechtzeitige Bereitstellung wesentlicher Informationen.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주요정보를 은폐하는 경우 2. 주요정보를 불명확하거나 이해할 수 없거나 모호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3. 주요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3) Bei der Beurteilung, ob wesentliche Informationen vorenthalten wurden, sind zu berücksichtigen: 1. räumliche oder zeitliche Beschränkungen durch das für die geschäftliche Handlung gewählte Kommunikationsmittel sowie 2. alle Maßnahmen des Unternehmers, um	(3) 주요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래행위를 위하여 선택한 통신수단에 따른 공간적 또는 시간적 제약 2. 거래행위를 위하여 선택한 통신수단 이외

dem Verbraucher oder sonstigen Marktteilnehmer die Informationen auf andere Weise als durch das für die geschäftliche Handlung gewählte Kommunikationsmittel zur Verfügung zu stellen.	의 방식으로 소비자 또는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취한 모든 조치
(4) Unlauter handelt auch, wer den kommerziellen Zweck einer geschäftlichen Handlung nicht kenntlich macht, sofern sich dieser nicht unmittelbar aus den Umständen ergibt, und das Nichtkenntlichmachen geeignet ist, den Verbraucher oder sonstigen Marktteilnehmer zu einer geschäftlichen Entscheidung zu veranlassen, die er andernfalls nicht getroffen hätte. Ein kommerzieller Zweck liegt bei einer Handlung zugunsten eines fremden Unternehmens nicht vor, wenn der Handelnde kein Entgelt oder keine ähnliche Gegenleistung für die Handlung von dem fremden Unternehmen erhält oder sich versprechen lässt. Der Erhalt oder das Versprechen einer Gegenleistung wird vermutet, es sei denn der Handelnde macht glaubhaft, dass er eine solche nicht erhalten hat.	(4) 해당 상황으로부터 직접 인지할 수 없는 거래행위의 상업적 목적을 알리지 아니한 자는 이것이 소비자 또는 다른 시장참여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통상의 경우라면 내리지 아니하였을 거래결정을 하도록 유도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불공정하게 행위한 것으로 본다. 타기업을 위한 행위 시, 행위자가 타기업으로부터 보수 또는 그와 유사한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것이 아니라면 상업적 목적은 없는 것으로 본다. 행위자가 보수 또는 그와 유사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입증하지 않는 한, 이를 수령 또는 약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 5b Wesentliche Informationen	제5b조 주요 정보
(1) Werden Waren oder Dienstleistungen unter Hinweis auf deren Merkmale und Preis in einer dem verwendeten Kommunikationsmittel angemessenen Weise so angeboten, dass ein durchschnittlicher Verbraucher das Geschäft abschließen kann, so gelten die folgenden Informationen als wesentlich im Sinne des § 5a Absatz 1, sofern sie sich nicht unmittelbar aus den Umständen ergeben:	(1) 상품 또는 서비스가 그 사용된 통신수단에 따른 적절한 방식에 의하여 그 특성 및 가격을 표시하여 제공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는 해당 상황으로부터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제5a조제1항에서 의미하는 주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alle wesentlichen Merkmale der Ware	1. 상품 또는 서비스와 사용된 통신수단에 따

oder Dienstleistung in dem der Ware oder Dienstleistung und dem verwendeten Kommunikationsmittel angemessenen Umfang,	른 적절한 범위 내에서 제공된 상품 또는 천연물 의약 개발 기술 동향 / 편집본 및 견적서외 서류 보내드립니다서비스에 대한 모든 주요 특징
2. die Identität und Anschrift des Unternehmers, gegebenenfalls die Identität und Anschrift desjenigen Unternehmers, für den er handelt,	2. 사업자와 대리사업자의 신원 및 주소(대리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3. der Gesamtpreis oder in Fällen, in denen ein solcher Preis auf Grund der Beschaffenheit der Ware oder Dienstleistung nicht im Voraus berechnet werden kann, die Art der Preisberechnung sowie gegebenenfalls alle zusätzlichen Fracht-, Liefer- und Zustellkosten oder in Fällen, in denen diese Kosten nicht im Voraus berechnet werden können, die Tatsache, dass solche zusätzlichen Kosten anfallen können,	3. 총금액, 가격 산정방식(상품이나 서비스 특성상 그 가격을 사전에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경우에 따라 추가될 수 있는 운송, 공급 및 배송에 대한 비용 또는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그러한 비용을 사전에 산정할 수 없는 경우)
4. Zahlungs-, Liefer- und Leistungsbedingungen, soweit diese von den Erfordernissen unternehmerischer Sorgfalt abweichen,	4. 사업자의 주의의무 요건을 벗어나는 경우, 결제, 배송 및 서비스의 조건
5. das Bestehen des Rechts auf Rücktritt oder Widerruf und	5. 철회 또는 취소 권리의 존재
6. bei Waren oder Dienstleistungen, die über einen Online-Marktplatz angeboten werden, die Information, ob es sich bei dem Anbieter der Waren oder Dienstleistungen nach dessen eigener Erklärung gegenüber dem Betreiber des Online-Marktplatzes um einen Unternehmer handelt.	6. 온라인 시장을 통하여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경우,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자가 온라인 시장 운영자에 대하여 행위 당사자인 사업자인지 여부
(2) Bietet ein Unternehmer Verbrauchern die Möglichkeit, nach Waren oder Dienstleistungen zu suchen, die von verschiedenen Unternehmern oder von Verbrauchern angeboten werden, so gelten unabhängig davon, wo das Rechtsgeschäft abgeschlossen werden kann,	(2) 사업자가 여러 사업자 또는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가 검색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법률행위를 어디에서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다음 각 호의 일반정보는 주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folgende allgemeine Informationen als wesentlich: 1. die Hauptparameter zur Festlegung des Rankings der dem Verbraucher als Ergebnis seiner Suchanfrage präsentierten Waren oder Dienstleistungen sowie 2. die relative Gewichtung der Hauptparameter zur Festlegung des Rankings im Vergleich zu anderen Parametern. Die Informationen nach Satz 1 müssen von der Anzeige der Suchergebnisse aus unmittelbar und leicht zugänglich sein. Die Sätze 1 und 2 gelten nicht für Betreiber von Online-Suchmaschinen im Sinne des Artikels 2 Nummer 6 der Verordnung (EU) 2019/1150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0. Juni 2019 zur Förderung von Fairness und Transparenz für gewerbliche Nutzer von Online-Vermittlungsdiensten (ABl. L 186 vom 11.7.2019, S. 57).	1. 검색한 결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매개변수 2. 다른 매개변수와 비교하여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매개변수의 상대적 가중치. 제1문에 해당하는 정보는 검색 결과 표시에서 직접 용이하게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제1문 및 제2문은 「온라인 중개서비스의 상용 이용자를 위한 공정성 및 투명성 증진에 대한 2019년 6월 20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9/1150 (2019년 7월 11일자 관보 제L186호, 57면)」제2조제6호에 따른 온라인 검색엔진 운영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Macht ein Unternehmer Bewertungen zugänglich, die Verbraucher im Hinblick auf Waren oder Dienstleistungen vorgenommen haben, so gelten als wesentlich Informationen darüber, ob und wie der Unternehmer sicherstellt, dass die veröffentlichten Bewertungen von solchen Verbrauchern stammen, die die Waren oder Dienstleistungen tatsächlich genutzt oder erworben haben.	(3) 사업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소비자의 평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공개된 소비자 평가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소비자가 평가한 것인지를 사업자가 보증할 수 있는지 여부와 보증방식에 관한 정보는 주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Als wesentlich im Sinne des § 5a Absatz 1 gelten auch solche Informationen, die dem Verbraucher auf Grund unionsrechtlicher Verordnungen oder nach Rechtsvorschriften zur Umsetzung unionsrechtlicher Richtlinien für kommerzielle Kommunikation einschließlich	(4) 광고 및 마케팅을 포함한 상업용 통신에 대한 유럽연합 규정 또는 유럽연합지침의 국내 적용을 위한 전환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는 정보는 제5a조제1항에서 의미하는 주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Werbung und Marketing nicht vorenthalten werden dürfen.	
§ 5c Verbotene Verletzung von Verbraucherinteressen durch unlautere geschäftliche Handlungen	**제5c조 불공정한 사업 관행에 의한 소비자 이익의 침해 금지**
(1) Die Verletzung von Verbraucherinteressen durch unlautere geschäftliche Handlungen ist verboten, wenn es sich um einen weitverbreiteten Verstoß gemäß Artikel 3 Nummer 3 der Verordnung (EU) 2017/2394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2. Dezember 2017 über die Zusammenarbeit zwischen den für die Durchsetzung der Verbraucherschutzgesetze zuständigen nationalen Behörden und zur Aufhebung der Verordnung (EG) Nr. 2006/2004 (ABl. L 345 vom 27.12.2017, S. 1), die zuletzt durch die Richtlinie (EU) 2019/771 (ABl. L 136 vom 22.5.2019, S. 28; L 305 vom 26.11.2019, S. 66) geändert worden ist, oder einen weitverbreiteten Verstoß mit UnionsDimension gemäß Artikel 3 Nummer 4 der Verordnung (EU) 2017/2394 handelt.	(1) 「유럽연합 지침(EU) 2019/771(2019년 5월 22일자 관보 제L136호, 28면; 2019년 11월 26일자 관보 제L 305호, 66면)」에 의하여 최종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의 이행을 관할하는 각 국가 기관의 협력과 유럽연합 규정(EC) 2006/2004의 폐지에 대한 2017년 12월 12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7/2394(2017년 12월 27일자 관보 제L345호, 1면)」의 제3조제3호에 반하는 광범위한 침해 또는 「유럽연합 규정(EU) 2017/2394」 제3조제4호에 따른 연합차원의 광범위한 침해의 경우,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의한 소비자이익의 침해가 금지된다.
(2) Eine Verletzung von Verbraucherinteressen durch unlautere geschäftliche Handlungen im Sinne des Absatzes 1 liegt vor, wenn 1. eine unlautere geschäftliche Handlung nach § 3 Absatz 3 in Verbindung mit den Nummern 1 bis 31 des Anhangs vorgenommen wird, 2. eine aggressive geschäftliche Handlung nach § 4a Absatz 1 Satz 1 vorgenommen wird, 3. eine irreführende geschäftliche Handlung nach § 5 Absatz 1 oder § 5a Absatz 1 vorgenommen wird oder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의한 소비자 이익의 침해가 존재한다. 1. 이 법의 부록 제1호 내지 제31호와 결합된 제3조제3항에 따른 불공정 거래행위 2. 제4a조제1항제1문에 따른 공격적 거래행위 3. 제5조제1항 또는 제5a조제1항에 따른 착오를 유발하는 거래행위

4. eine unlautere geschäftliche Handlung nach § 3 Absatz 1 fortgesetzt vorgenommen wird, die durch eine vollziehbare Anordnung der zuständigen Behörde im Sinne des Artikels 3 Nummer 6 der Verordnung (EU) 2017/2394 oder durch eine vollstreckbare Entscheidung eines Gerichts untersagt worden ist, sofern die Handlung nicht bereits von den Nummern 1 bis 3 erfasst ist.	4. 「유럽연합 규정(EU) 2017/2394」 제3조제6호에 따른 관할 기관의 집행력 있는 명령 또는 법원의 집행력 있는 결정에 의하여 금지된 제3조제1항에 따른 거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행위여야 한다.
(3) Eine Verletzung von Verbraucherinteressen durch unlautere geschäftliche Handlungen im Sinne des Absatzes 1 liegt auch vor, wenn 1. eine geschäftliche Handlung die tatsächlichen Voraussetzungen eines der in Absatz 2 geregelten Fälle erfüllt und 2. auf die geschäftliche Handlung das nationale Recht eines anderen Mitgliedstaates der Europäischen Union anwendbar ist, welches eine Vorschrift enthält, die der jeweiligen in Absatz 2 genannten Vorschrift entspricht.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의한 소비자 이익의 침해가 존재한다. 1. 거래행위가 제2항에 규정된 경우 중 하나의 사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 제2항에 명시된 규정에 해당하는 규정이 포함된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내법이 거래행위에 적용되는 경우
§ 6 Vergleichende Werbung	제6조 (비교 광고)
(1) Vergleichende Werbung ist jede Werbung, die unmittelbar oder mittelbar einen Mitbewerber oder die von einem Mitbewerber angebotenen Waren oder Dienstleistungen erkennbar macht.	(1) 비교 광고란 경쟁자 또는 경쟁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만드는 모든 광고이다.
(2) Unlauter handelt, wer vergleichend wirbt, wenn der Vergleich 1. sich nicht auf Waren oder Dienstleistungen für den gleichen Bedarf oder dieselbe Zweckbestimmung bezieht, 2. nicht objektiv auf eine oder mehrere wesentliche, relevante, nachprüfbare und	(2)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비교하면 부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동일한 필요성 또는 사용목적을 위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관련성을 비교하는 것이 아닌 경우 2.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다수의 본질적이고 중요하고 증명 가능한 전형적인 특성 또

typische Eigenschaften oder den Preis dieser Waren oder Dienstleistungen bezogen ist,	는 가격의 객관적 비교가 아닌 경우
3. im geschäftlichen Verkehr zu einer Gefahr von Verwechslungen zwischen dem Werbenden und einem Mitbewerber oder zwischen den von diesen angebotenen Waren oder Dienstleistungen oder den von ihnen verwendeten Kennzeichen führt,	3. 거래과정에서 광고자와 경쟁자 사이 또는 제공된 상품 또는 서비스 사이, 광고자에 의해 이용된 표지 사이에 혼동 위험의 원인이 되는 광고
4. den Ruf des von einem Mitbewerber verwendeten Kennzeichens in unlauterer Weise ausnutzt oder beeinträchtigt,	4.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자가 이용하는 표지의 명성을 이용하거나 훼손하는 광고
5. die Waren, Dienstleistungen, Tätigkeiten oder persönlichen oder geschäftlichen Verhältnisse eines Mitbewerbers herabsetzt oder verunglimpft oder	5. 경쟁자의 상품, 서비스 활동 또는 사적 또는 영업적 관계를 비방하거나 폄하하는 광고 또는
6. eine Ware oder Dienstleistung als Imitation oder Nachahmung einer unter einem geschützten Kennzeichen vertriebenen Ware oder Dienstleistung darstellt.	6. 상품 또는 서비스가 보호되는 표지를 부착하고 판매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복제품 또는 유사품이라고 설명하는 광고
§ 7 Unzumutbare Belästigungen	**제7조 부당하게 부담을 주는 행위**
(1) Eine geschäftliche Handlung, durch die ein Marktteilnehmer in unzumutbarer Weise belästigt wird, ist unzulässig. Dies gilt insbesondere für Werbung, obwohl erkennbar ist, dass der angesprochene Marktteilnehmer diese Werbung nicht wünscht.	(1) 시장참여자가 수인할 수 없을 정도의 부담을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시장참여자가 원하지 아니함을 알고도 행하는 광고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 Eine unzumutbare Belästigung ist stets anzunehmen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상 수인할 수 없을 정도의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bei Werbung mit einem Telefonanruf gegenüber einem Verbraucher ohne dessen vorherige ausdrückliche Einwilligung oder gegenüber einem sonstigen Marktteilnehmer ohne dessen zumindest mutmaßliche Einwilligung,	1. 사전에 소비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또는 다른 시장참여자의 최소한의 추정적 동의 없이 전화로 광고하는 경우
2. bei Werbung unter Verwendung einer automatischen Anrufmaschine, eines Faxgerätes	2.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자동응답기, 팩스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광고

oder elektronischer Post, ohne dass eine vorherige ausdrückliche Einwilligung des Adressaten vorliegt, oder	하는 경우
3. bei Werbung mit einer Nachricht,	3. 소식지를 이용한 광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bei der die Identität des Absenders, in dessen Auftrag die Nachricht übermittelt wird, verschleiert oder verheimlicht wird oder	a) 전송한 사람의 신분을 은폐하거나 숨기는 경우
b) bei der gegen § 6 Absatz 1 des Telemediengesetzes verstoßen wird oder in der der Empfänger aufgefordert wird, eine Website aufzurufen, die gegen diese Vorschrift verstößt, oder	b) 「텔레미디어법」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수신자가 이 조항을 위반하는 웹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c) bei der keine gültige Adresse vorhanden ist, an die der Empfänger eine Aufforderung zur Einstellung solcher Nachrichten richten kann, ohne dass hierfür andere als die Übermittlungskosten nach den Basistarifen entstehen.	c) 수신자가 기본계약에 따른 요금 이외의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소식지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유효 주소가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3) Abweichend von Absatz 2 Nummer 2 ist eine unzumutbare Belästigung bei einer Werbung unter Verwendung elektronischer Post nicht anzunehmen, wenn	(3) 제2항제3호의 규정과 달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이용한 광고로서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부담을 주는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ein Unternehmer im Zusammenhang mit dem Verkauf einer Ware oder Dienstleistung von dem Kunden dessen elektronische Postadresse erhalten hat,	1. 사업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전자우편주소를 취득하는 경우
2. der Unternehmer die Adresse zur Direktwerbung für eigene ähnliche Waren oder Dienstleistungen verwendet,	2. 사업자가 이 주소를 자신의 유사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직접광고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3. der Kunde der Verwendung nicht widersprochen hat und	3. 고객이 그 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4. der Kunde bei Erhebung der Adresse und bei jeder Verwendung klar und deutlich darauf hingewiesen wird, dass er der Verwendung jederzeit widersprechen kann, ohne dass hierfür andere als die Übermittlungskosten nach den Basistarifen entstehen.	4. 주소를 수집하여 이용할 때마다 기본계약에 따른 전송비용 외에 다른 비용이 추가되지 아니하며 언제든지 이용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객에게 명확하게 알린 경우

§ 7a Einwilligung in Telefonwerbung	제7a조 전화광고에 대한 동의
(1) Wer mit einem Telefonanruf gegeniiber einem Verbraucher wirbt, hat dessen vorherige ausdruckliche Einwilligung in die Telefonwerbung zum Zeitpunkt der Erteilung in angemessener Form zu dokumentieren und gemaB Absatz 2 Satz 1 aufzubewahren.	(1) 소비자에게 전화로 광고하는 자는 전화광고에 대한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동의시점에 적절한 형식으로 기록한 후 제2항 제1문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 Die werbenden Unternehmen mtissen den Nachweis nach Absatz 1 ab Erteilung der Einwilligung sowie nach jeder Verwendung der Einwilligung fiinf Jahre aufbewahren. Die werbenden Unternehmen haben der nach § 20 Absatz 3 zustandigen Verwaltungsbehorde den Nachweis nach Absatz 1 auf Verlangen unverzuglich vorzulegen.	(2) 광고하는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증거자료를 동의 받은 날 및 그 동의를 활용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 야 한다. 제20조 제3항에 따른 관할 행정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광고하는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Kapitel 2 Rechtsfolgen	제2장 법률효과
§ 8 Beseitigung und Unterlassung	제8조 (제거청구권과 금지청구권)
(1) Wer eine nach § 3 oder § 7 unzulässige geschäftliche Handlung vornimmt, kann auf Beseitigung und bei Wiederholungsgefahr auf Unterlassung in Anspruch genommen werden. Der Anspruch auf Unterlassung besteht bereits dann, wenn eine derartige Zuwiderhandlung gegen § 3 oder § 7 droht.	(1) 제3조 또는 제7조에 따라 금지된 거래행위를 한 자는 제거청구와 반복의 위험이 있는 경우 금지청구를 받을 수 있다. 제3조 또는 제7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사전에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Werden die Zuwiderhandlungen in einem Unternehmen von einem Mitarbeiter oder Beauftragten begangen, so sind der Unterlassungsanspruch und der Beseitigungsanspruch auch gegen den Inhaber des Unternehmens begründet.	(2) 위반행위가 영업의 종업원 또는 대리인에 의해 행해진 경우 금지청구권과 제거청구권은 영업의 소유자에게도 청구될 수 있다.

(3) Die Ansprüche aus Absatz 1 stehen zu:	(3) 제1항에 의한 청구권은 각호의 자에게 발생한다.
1. jedem Mitbewerber;	1. 모든 경쟁자
2. rechtsfähigen Verbänden zur Förderung gewerblicher oder selbständiger beruflicher Interessen, soweit ihnen eine erhebliche Zahl von Unternehmern angehört, die Waren oder Dienstleistungen gleicher oder verwandter Art auf demselben Markt vertreiben, wenn sie insbesondere nach ihrer personellen, sachlichen und finanziellen Ausstattung imstande sind, ihre satzungsmäßigen Aufgaben der Verfolgung gewerblicheroder selbständiger beruflicher Interessen tatsächlich wahrzunehmen und soweit die Zuwiderhandlung die Interessen ihrer Mitglieder berührt;	2. 산업적 또는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촉진하기 위한 법인격 있는 단체로서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하거나 관련된 유형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영업자들의 대다수가 속해 있을 것, 그리고 만약 단체가 특히 단체의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단체 정관에 따라 산업적 또는 자영업자들의 이익 추구를 사실적으로 보장하고 위반행위가 구성원의 이익에 관계되어 있어야 한다.
3. qualifizierten Einrichtungen, die nachweisen, dass sie in der Liste der qualifizierten Einrichtungen nach § 4 des Unterlassungsklagengesetzes oder in dem Verzeichnis der Europäischen Kommission nach Artikel 4 Absatz 3 der Richtlinie 2009/22/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3. April 2009 über Unterlassungsklagen zum Schutz der Verbraucherinteressen (ABl. L 110 vom 1.5.2009, S. 30) eingetragen sind;	3. 부작위소송법(Unterlassungsklagengesetzes) 제4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기관 목록에 해당되는 자격 있는 기관 또는 소비자이익 보호를 위한 부작위소송 지침(Richtlinie 2009/22/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3. April 2009 über Unterlassungsklagen zum Schutz der Verbraucherinteressen) 제4조 제3항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명부에 등록된 기관
4. den Industrie- und Handelskammern oder den Handwerkskammern.	4. 상공회의소 또는 수공회의소(Industrie- und Handelskammern oder Handwerkskammern)
(4) Stellen nach Absatz 3 Nummer 2 und 3 können die Ansprüche nicht geltend machen, solange ihre Eintragung ruht.	(4)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단체는 등록되어 있지 않는 한 청구를 주장할 수 없다.
(5) § 13 des Unterlassungsklagengesetzes ist entsprechend anzuwenden; in § 13 Absatz 1 und 3 Satz 2 des Unterlassungsklagengesetzes treten an die Stelle der dort aufgeführten	(5) 부작위소송법 제13조가 준용된다. 부작위소송법 제13조 제1항과 제3항 제2호에서 부작위소송법에 따른 청구권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청구권으로 인정된다. 통상의 경우 부작

Ansprüche nach dem Unterlassungsklagengesetz die Ansprüche nach dieser Vorschrift. Im Übrigen findet das Unterlassungsklagengesetz keine Anwendung, es sei denn, es liegt ein Fall des § 4e des Unterlassungsklagengesetzes vor.	위소송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다만, 부작위소송법 제4e조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된다.
§ 8a Anspruchsberechtigte bei einem Verstoß gegen die Verordnung (EU) 2019/1150	**제8a조 「유럽연합규정(EU) 2019/1150」 위반 시 청구권자**
Anspruchsberechtigt nach § 8 Absatz 1 sind bei einem Verstoß gegen die Verordnung (EU) 2019/1150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0. Juni 2019 zur Förderung von Fairness und Transparenz für gewerbliche Nutzer von Online-Vermittlungsdiensten (ABl. L 186 vom 11.7.2019, S. 57) abweichend von § 8 Absatz 3 die Verbände, Organisationen und öffentlichen Stellen, die die Voraussetzungen des Artikels 14 Absatz 3 und 4 der Verordnung (EU) 2019/1150 erfüllen.	「온라인 중개서비스 사용자의 공정성과 투명성 촉진에 관한 2019년 6월 20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9/1150」 위반 시, 제8조 제3항의 규정과 달리 「유럽연합규정(EU) 2019/1150」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협회, 조직 및 공공 기관이다.
§ 8b Liste der qualifizierten Wirtschaftsverbände	**제8b조 (적격한 경제연합회 목록)**
(1) Das Bundesamt für Justiz führt eine Liste der qualifizierten Wirtschaftsverbände und veröffentlicht sie in der jeweils aktuellen Fassung auf seiner Internetseite.	(1) 연방 법무부(Federal Office of Justice)는 자격을 갖춘 경제 단체들의 목록을 관리하고 웹사이트에 최신 버전을 게시하도록 한다.
(2) Ein rechtsfähiger Verband, zu dessen satzungsmäßigen Aufgaben es gehört, gewerbliche oder selbstständige berufliche Interessen zu verfolgen und zu fördern sowie zu Fragen des lauteren Wettbewerbs zu beraten und zu informieren, wird auf seinen Antrag in die Liste eingetragen, wenn	(2) 정관에 따라 영업적 또는 자영업적 이익을 추구하고 공정경쟁 사안에 대한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에 의하여 목록에 등록된다.
1. er mindestens 75 Unternehmer als Mitglieder hat,	1. 최소한 75개 이상의 기업을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er zum Zeitpunkt der Antragstellung seit mindestens einem Jahr seine satzungsmäßigen Aufgaben wahrgenommen hat, 3. auf Grund seiner bisherigen Tätigkeit sowie seiner personellen, sachlichen und finanziellen Ausstattung gesichert erscheint, dass er a) seine satzungsmäßigen Aufgaben auch künftig dauerhaft wirksam und sachgerecht erfüllen wird und b) seine Ansprüche nicht vorwiegend geltend machen wird, um für sich Einnahmen aus Abmahnungen oder Vertragsstrafen zu erzielen, 4. seinen Mitgliedern keine Zuwendungen aus dem Verbandsvermögen gewährt werden und Personen, die für den Verband tätig sind, nicht durch unangemessen hohe Vergütungen oder andere Zuwendungen begünstigt werden.	2. 신청 시, 정관에 따른 의무를 최소 1년 이상 수행한 경우 3. 기존의 활동과 인적, 물질적, 재정적 자원을 근거로 볼 때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a) 향후에도 꾸준히 정관에 따른 의무를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수행할 것 b) 경고 또는 위약금에 따른 수입을 주로 목표로 하는 청구권을 주장하지 않을 것 4. 단체의 자산으로 단체 구성원에게 수당을 보장하지 아니하고, 단체에서 활동하는 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보수 또는 기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 4 Absatz 3 und 4 sowie die §§ 4a bis 4d des Unterlassungsklagengesetzes sind entsprechend anzuwenden.	(3) 이에 「부작위소송법」 제4조 제3항 및 제4항과 제4a조 내지 제4d조가 준용된다.
§ 8c Verbot der missbräuchlichen Geltendmachung von Ansprüchen; Haftung	**제8c조 (청구의 남용 금지)**
(1) Die Geltendmachung der Ansprüche aus § 8 Absatz 1 ist unzulässig, wenn sie unter Berücksichtigung der gesamten Umstände missbräuchlich ist.	(1)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의 주장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Eine missbräuchliche Geltendmachung ist im Zweifel anzunehmen, wenn 1. die Geltendmachung der Ansprüche vorwiegend dazu dient, gegen den Zuwiderhandelnden einen Anspruch auf Ersatz von Aufwendungen oder von Kosten der Rechtsverfolgung oder	(2) 남용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장의 남용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주로 위반행위자에게 비용 또는 소송비용의 상환 또는 위약금 지불을 청구하기 위해 청구권을 주장하는 경우

die Zahlung einer Vertragsstrafe entstehen zu lassen,	
2. ein Mitbewerber eine erhebliche Anzahl von Verstößen gegen die gleiche Rechtsvorschrift durch Abmahnungen geltend macht, wenn die Anzahl der geltend gemachten Verstöße außer Verhältnis zum Umfang der eigenen Geschäftstätigkeit steht oder wenn anzunehmen ist, dass der Mitbewerber das wirtschaftliche Risiko seines außergerichtlichen oder gerichtlichen Vorgehens nicht selbst trägt,	2. 주장하는 위반 횟수가 자기 영업활동 범위에 비례하지 않거나 재판 외 또는 재판상 조치에 따른 경제적 위험을 경쟁자 스스로 부담하지 않음에도 경고를 통해 경쟁자가 동일 법률조항에 대한 상당한 수의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3. ein Mitbewerber den Gegenstandswert für eine Abmahnung unangemessen hoch ansetzt,	3. 경쟁자가 경고에 대한 목적가액을 부적절하게 높게 설정한 경우
4. offensichtlich überhöhte Vertragsstrafen vereinbart oder gefordert werden,	4. 명백히 과도한 위약금을 합의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5. eine vorgeschlagene Unterlassungsverpflichtung offensichtlich über die abgemahnte Rechtsverletzung hinausgeht,	5. 경고대상인 법률의 위반을 명백히 초월하여 중지의무를 제안하는 경우
6. mehrere Zuwiderhandlungen, die zusammen hätten abgemahnt werden können, einzeln abgemahnt werden oder	6. 함께 경고할 수 있었던 여러 위반행위들을 각 개별로 경고하는 경우
7. wegen einer Zuwiderhandlung, für die mehrere Zuwiderhandelnde verantwortlich sind, die Ansprüche gegen die Zuwiderhandelnden ohne sachlichen Grund nicht zusammen geltend gemacht werden.	7. 다수의 위반행위자에게 책임이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위반행위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하는 경우
(3) Im Fall der missbräuchlichen Geltendmachung von Ansprüchen kann der Anspruchsgegner vom Anspruchsteller Ersatz der für seine Rechtsverteidigung erforderlichen Aufwendungen fordern. Weitergehende Ersatzansprüche bleiben unberührt.	(3) 청구권 남용의 경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권리방어에 필요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추가 보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9 Schadensersatz	**제9조 손해배상**
(1) Wer vorsätzlich oder fahrlässig eine nach	(1)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조 또는 제7조에 따

§ 3 oder § 7 unzulässige geschäftliche Handlung vornimmt, ist den Mitbewerbern zum Ersatz des daraus entstehenden Schadens verpflichtet.	른 금지된 거래행위를 한 자는 경쟁자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Wer vorsätzlich oder fahrlässig eine nach § 3 unzulässige geschäftliche Handlung vornimmt und hierdurch Verbraucher zu einer geschäftlichen Entscheidung veranlasst, die sie andernfalls nicht getroffen hätten, ist ihnen zum Ersatz des daraus entstehenden Schadens verpflichtet. Dies gilt nicht für unlautere geschäftliche Handlungen nach den §§ 3a, 4 und 6 sowie nach Nummer 32 des Anhangs.	(2) 제3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거래행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행하여 소비자가 통상의 경우라면 하지 아니하였을 거래를 결정하도록 한 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제3a조, 제4조, 제6조 및 부록 제32호에 따른 불공정한 거래행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Gegen verantwortliche Personen von periodischen Druckschriften kann der Anspruch auf Schadensersatz nach den Absätzen 1 und 2 nur bei einer vorsätzlichen Zuwiderhandlung geltend gemacht werden.	(3) 정기간행물의 책임자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고의적인 위반일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10 Gewinnabschöpfung	**제10조 (이익환수청구권)**
(1) Wer vorsätzlich eine nach § 3 oder § 7 unzulässige geschäftliche Handlung vornimmt und hierdurch zu Lasten einer Vielzahl von Abnehmern einen Gewinn erzielt, kann von den gemäß § 8 Absatz 3 Nummer 2 bis 4 zur Geltendmachung eines Unterlassungsanspruchs Berechtigten auf Herausgabe dieses Gewinns an den Bundeshaushalt in Anspruch genommen werden.	(1) 고의로 제3조 또는 제7조에 따라 금지된 거래 행위를 행하고 그것에 의해 다수의 구매자의 부담으로 이익을 얻은 자는 제8조 제3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금지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서 그가 얻은 이익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2) Auf den Gewinn sind die Leistungen anzurechnen, die der Schuldner auf Grund der Zuwiderhandlung an Dritte oder an den Staat erbracht hat. Soweit der Schuldner solche Leistungen erst nach Erfüllung des Anspruchs nach Absatz 1 erbracht hat, erstattet die	(2) 채무자가 위반행위에 근거해 제3자 또는 국가에게 이행한 급부는 이익에 산입되어야 한다. 채무자가 그러한 급부를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의 실행이후 처음 이행했을 경우에 한하여 연방 관할 기관은 채무자가 납부한 금액에서 증명된 금액만큼 채무자에게 반환한다.

zuständige Stelle des Bundes dem Schuldner den abgeführten Gewinn in Höhe der nachgewiesenen Zahlungen zurück.	
(3) Beanspruchen mehrere Gläubiger den Gewinn, so gelten die §§ 428 bis 430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entsprechend.	(3) 복수의 채권자에 의해 이익의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민법 제428조에서 제430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된다.
(4) Die Gläubiger haben der zuständigen Stelle des Bundes über die Geltendmachung von Ansprüchen nach Absatz 1 Auskunft zu erteilen. Sie können von der zuständigen Stelle des Bundes Erstattung der für die Geltendmachung des Anspruchs erforderlichen Aufwendungen verlangen, soweit sie vom Schuldner keinen Ausgleich erlangen können. Der Erstattungsanspruch ist auf die Höhe des an den Bundeshaushalt abgeführten Gewinns beschränkt.	(4) 채권자는 연방 관할기관에 위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의 주장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이익환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연방 관할기관에 그 청구권의 주장을 위해 사용한 필수적 비용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반환청구권은 국고에 납부할 수 있었던 이익액을 한도로 한다.
(5) Zuständige Stelle im Sinn der Absätze 2 und 4 ist das Bundesamt für Justiz.	(5) 제2항 및 제4항의 관할기관이란 연방법무부이다.
§ 11 Verjährung	**제11조 소멸시효**
(1) Die Ansprüche aus den §§ 8, 9 Absatz 1 und § 13 Absatz 3 verjähren in sechs Monaten und der Anspruch aus § 9 Absatz 2 Satz 1 verjährt in einem Jahr.	(1) 제8조, 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청구권은 6개월, 제9조제2항제1문에 따른 청구권은 1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Die Verjährungsfrist beginnt, wenn 1. der Anspruch entstanden ist und 2. der Gläubiger von den den Anspruch begründenden Umständen und der Person des Schuldners Kenntnis erlangt oder ohne grobe Fahrlässigkeit erlangen müsste.	(2)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산점으로부터 진행된다. 1. 청구권 발생시 2. 채권자가 청구권의 성립상황 및 채무자의 존재에 관하여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알았어야 하는 경우
(3) Schadensersatzansprüche verjähren ohne	(3) 손해배상청구권은 그에 대한 인식 또는

Rücksicht auf die Kenntnis oder grob fahrlässige Unkenntnis in zehn Jahren von ihrer Entstehung, spätestens in 30 Jahren von der den Schaden auslösenden Handlung an.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권의 성립일로부터 10년, 늦어도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4) Andere Ansprüche verjähren ohne Rücksicht auf die Kenntnis oder grob fahrlässige Unkenntnis in drei Jahren von der Entstehung an.	(4) 기타 청구권은 그에 대한 인식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Kapitel 3 **Verfahrensvorschriften**	**제3장 절차 규정**
§ 12 Einstweiliger Rechtsschutz; Veröffentlichungsbefugnis; Streitwertminderung	**제12조 (청구집행, 공표권, 소송 대상물 가치의 감액)**
(1) Zur Sicherung der in diesem Gesetz bezeichneten Ansprüche auf Unterlassung können einstweilige Verfügungen auch ohne die Darlegung und Glaubhaftmachung der in den §§ 935 und 940 der Zivilprozessordnung bezeichneten Voraussetzungen erlassen werden.	(1) 본법에 명시 된 금지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제 935조 및 제940조에 규정되고 있는 명시된 것처럼 소명이 없는 경우에서도 가처분을 명할 수 있다.
(2) Ist auf Grund dieses Gesetzes Klage auf Unterlassung erhoben worden, so kann das Gericht der obsiegenden Partei die Befugnis zusprechen, das Urteil auf Kosten der unterliegenden Partei öffentlich bekannt zu machen, wenn sie ein berechtigtes Interesse dartut. Art und Umfang der Bekanntmachung werden im Urteil bestimmt. Die Befugnis erlischt, wenn von ihr nicht innerhalb von drei Monaten nach Eintritt der Rechtskraft Gebrauch gemacht worden ist. Der Ausspruch nach Satz 1 ist nicht vorläufig vollstreckbar.	(2) 본법에 근거하여 금지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승소자가 증명했을 경우에는 법정은 승소한 측에 패소자의 비용부담으로 판결을 공표 할 권리를 줄 수 있다. 공표의 방식 및 범위는 판결에서 결정된다. 법적 권한이 생긴 후 3개월 이내에 행사되지 않았을 때는 이 권리는 소멸한다. 본 항 제1문에 근거할 권리는 임시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

(3) Macht eine Partei in Rechtsstreitigkeiten, in denen durch Klage ein Anspruch aus einem der in diesem Gesetz geregelten Rechtsverhältnisse geltend gemacht wird, glaubhaft, dass die Belastung mit den Prozesskosten nach dem vollen Streitwert ihre wirtschaftliche Lage erheblich gefährden würde, so kann das Gericht auf ihren Antrag anordnen, dass die Verpflichtung dieser Partei zur Zahlung von Gerichtskosten sich nach einem ihrer Wirtschaftslage angepassten Teil des Streitwerts bemisst. Die Anordnung hat zur Folge, dass	(3) 소송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소송 전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당사자의 재정 상태를 위태롭게 할 때 이를 법원에 증명하면, 법원은 요청에 의해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법원 비용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측정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1. die begünstigte Partei die Gebühren ihres Rechtsanwalts ebenfalls nur nach diesem Teil des Streitwerts zu entrichten hat,	1. 수혜자는 자신의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 감액된 소송물 가액에 따라서 결정되는 금액만을 납부하면 충분하고
2. die begünstigte Partei, soweit ihr Kosten des Rechtsstreits auferlegt werden oder soweit sie diese übernimmt, die von dem Gegner entrichteten Gerichtsgebühren und die Gebühren seines Rechtsanwalts nur nach dem Teil des Streitwerts zu erstatten hat und	2. 수혜자에게 상대방의 법원비용이 부과되거나 또는 상대방의 변호사 수임료가 부과된 경우 이 사람은, 감액된 소송물 가액에 따라서만 변상할 의무를 가지며
3. der Rechtsanwalt der begünstigten Partei, soweit die außergerichtlichen Kosten dem Gegner auferlegt oder von ihm übernommen werden, seine Gebühren von dem Gegner nach dem für diesen geltenden Streitwert beitreiben kann.	3. 재판 외의 비용이 상대방에게 부과되거나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의 감액을 받은 당사자의 변호사는 자기의 수수료를 상대방으로부터 이 상대방에게 적용되는 소송물 가액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4) Der Antrag nach Absatz 3 kann vor der Geschäftsstelle des Gerichts zur Niederschrift erklärt werden. Er ist vor der Verhandlung zur Hauptsache anzubringen. Danach ist er nur zulässig, wenn der angenommene oder festgesetzte Streitwert später durch das Gericht heraufgesetzt wird. Vor der Entscheidung über den Antrag ist der Gegner zu hören.	(4) 제3항에 따른 신청은 법원에 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는 당해 사건의 본안 심리 개시 전에 행하여야 한다. 심리 개시 후에는, 추정 또는 확정 된 소송물 가액이 후에 법원에 의하여 증액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기 전에 상대방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3 Abmahnung; Unterlassungsverpflichtung; Haftung	제13조 (경고; 중지 의무; 책임)
(1) Die zur Geltendmachung eines Unterlassungsanspruchs Berechtigten sollen den Schuldner vor der Einleitung eines gerichtlichen Verfahrens abmahnen und ihm Gelegenheit geben, den Streit durch Abgabe einer mit einer angemessenen Vertragsstrafe bewehrten Unterlassungsverpflichtung beizulegen.	(1) 중지청구권자는 재판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에게 경고하여야 하며, 적절한 위약금으로 담보되는 중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In der Abmahnung muss klar und verständlich angegeben werden: 1. Name oder Firma des Abmahnenden sowie im Fall einer Vertretung zusätzlich Name oder Firma des Vertreters, 2. die Voraussetzungen der Anspruchsberechtigung nach § 8 Absatz 3, 3. ob und in welcher Höhe ein Aufwendungsersatzanspruch geltend gemacht wird und wie sich dieser berechnet, 4. die Rechtsverletzung unter Angabe der tatsächlichen Umstände, 5. in den Fällen des Absatzes 4, dass der Anspruch auf Aufwendungsersatz ausgeschlossen ist.	(2) 경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게 명시하여야 한다. 1. 경고자의 이름 또는 상호. 대리인이 경고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이름 또는 상호 2. 제8조 제3항에 따른 청구권의 조건 3. 비용상환 청구권의 행사여부, 비용상환 청구금액, 산정방식 4. 권리침해와 그 실제상황 5. 제4항의 경우, 비용상환 청구의 예외
(3) Soweit die Abmahnung berechtigt ist und den Anforderungen des Absatzes 2 entspricht, kann der Abmahnende vom Abgemahnten Ersatz der erforderlichen Aufwendungen verlangen.	(3) 경고가 정당하고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고자는 피경고자에게 필요한 비용에 대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Der Anspruch auf Ersatz der erforderlichen Aufwendungen nach Absatz 3 ist für Anspruchsberechtigte nach §8 Absatz 3 Nummer 1 ausgeschlossen bei 1. im elektronischen Geschäftsverkehr oder in Telemedien begangenen Verstößen gegen	(4)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의한 필요비용의 보상청구는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청구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전자상거래 또는 텔레미디어에서 행한 법적 정보 및 표시의무 위반

gesetzliche Informations-und Kennzeichnungspflichten oder	
2. sonstigen Verstößen gegen die Verordnung (EU) 2016/679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7. April 2016 zum Schutz natürlicher Personen bei der Verarbeitung personenbezogener Daten, zum freien Datenverkehr und zur Aufhebung der Richtlinie 95/46/EG (Datenschutz- Grundverordnung) (ABl. L 119 vom 4.5.2016, S. 1; L 314 vom 22.11.2016, S. 72; L 127 vom 23.5.2018, S. 2) und das Bundesdatenschutzgesetz durch Unternehmen sowie gewerblich tätige Vereine, sofern sie in der Regel weniger als 250 Mitarbeiter beschäftigen.	2. 통상 250인 미만을 고용하는 회사 및 상업적으로 활동하는 협회에 의한「개인정보처리시 개인보호, 자유로운 정보유통, 유럽연합지침 95/46/EG (정보보호 기본규정)의 폐지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16/679 (관보 L119, 2016년 5월 4일, 1면; 관보 L314,2016년 11월 22일, 72면; 관보 L 127, 2018년 5월 23일, 2면)」 및「연방정보보호법」 위반
(5) Soweit die Abmahnung unberechtigt ist oder nicht den Anforderungen des Absatzes 2 entspricht oder soweit entgegen Absatz 4 ein Anspruch auf Aufwendungsersatz geltend gemacht wird, hat der Abgemahnte gegen den Abmahnenden einen Anspruch auf Ersatz der für seine Rechtsverteidigung erforderlichen Aufwendungen.	(5) 경고가 부당하거나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4항에 반한 비용상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피경고자는 경고자에게 권리방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Der Anspruch nach Satz 1 ist beschränkt auf die Höhe des Aufwendungsersatzanspruchs, die der Abmahnende geltend macht. Bei einer unberechtigten Abmahnung ist der Anspruch nach Satz 1 ausgeschlossen, wenn die fehlende Berechtigung der Abmahnung für den Abmahnenden zum Zeitpunkt der Abmahnung nicht erkennbar war. Weitergehende Ersatzansprüche bleiben unberührt.	제1문에 따른 청구는 경고자가 주장하는 비용상환청구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부당한 경고를 할 당시 경고자가 그 경고의 부당성을 알지 못하였다면 제1문에 따른청구는 할 수 없다. 추가 보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13a Vertragsstrafe	제13a조 (위약금)
(1) Bei der Festlegung einer angemessenen Vertragsstrafe nach § 13 Absatz 1 sind folgende	(1) 제13조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위약금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한다.

Umstände zu berücksichtigen: 1. Art, Ausmaß und Folgen der Zuwiderhandlung, 2. Schuldhaftigkeit der Zuwiderhandlung und bei schuldhafter Zuwiderhandlung die Schwere des Verschuldens, 3. Größe, Marktstärke und Wettbewerbsfähigkeit des Abgemahnten sowie 4. wirtschaftliches Interesse des Abgemahnten an erfolgten und zukünftigen Verstößen.	1. 위반행위의 유형, 범위 및 결과 2.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 및 과실의 경중(과실이 있는 위반행위의 경우) 3. 피경고자의 규모, 시장 강점 및 경쟁력 4. 과거 및 장래의 위반에 대한 피경고자의 경제적 이익
(2) Die Vereinbarung einer Vertragsstrafe nach Absatz 1 ist für Anspruchsberechtigte nach § 8 Absatz 3 Nummer 1 bei einer erstmaligen Abmahnung bei Verstößen nach § 13 Absatz 4 ausgeschlossen, wenn der Abgemahnte in der Regel weniger als 100 Mitarbeiter beschäftigt.	(2) 통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피경고자의 경우, 제13조 제4항에 따른 위반에 대한 최초 경고 시,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청구권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위약금 합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Vertragsstrafen dürfen eine Höhe von 1 000 Euro nicht überschreiten, wenn die Zuwiderhandlung angesichts ihrer Art, ihres Ausmaßes und ihrer Folgen die Interessen von Verbrauchern, Mitbewerbern und sonstigen Marktteilnehmern in nur unerheblichem Maße beeinträchtigt und wenn der Abgemahnte in der Regel weniger als 100 Mitarbeiter beschäftigt.	(3) 위반행위가 그 유형, 범위 및 결과를 고려할 때 소비자, 경쟁자, 기타 시장참여자의 이익에 경미한 피해만을 주었거나 피경고자가 통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위약금이 1,000 유로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4) Verspricht der Abgemahnte auf Verlangen des Abmahnenden eine unangemessen hohe Vertragsstrafe, schuldet er lediglich eine Vertragsstrafe in angemessener Höhe.	(4) 피경고자가 경고자의 요청에 따라 부적절하게 높은 위약금을 약속한 경우, 피경고자는 적절한 수준의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
(5) Ist lediglich eine Vertragsstrafe vereinbart, deren Höhe noch nicht beziffert wurde, kann der Abgemahnte bei Uneinigkeit über die Höhe auch ohne Zustimmung des Abmahnenden eine Einigungsstelle nach § 15 anrufen. Das Gleiche gilt, wenn der Abgemahnte nach Absatz 4 nur eine Vertragsstrafe in angemessener	(5) 위약금 지불에 대한 합의만 있고 그 금액에 대한 합의가 아직 없는 경우, 금액에 대해 이견이 있는 피경고자는 경고자의 동의 없이 그 금액에 대해 제15조에 따라 중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는 피경고자가 제4항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

Höhe schuldet. Ist ein Verfahren vor der Einigungsstelle anhängig, so ist eine erst nach Anrufung der Einigungsstelle erhobene Klage nicht zulässig.	하게 적용된다. 중재위원회 절차가 계류 중인 경우, 중재위원회 신청 후에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14 Sachliche und örtliche Zuständigkeit; Verordnungsermächtigung	**제14조 사물 및 토지 관할권; 위임명령**
(1) Für alle bürgerlichen Rechtsstreitigkeiten, mit denen ein Anspruch auf Grund dieses Gesetzes geltend gemacht wird, sind die Landgerichte ausschließlich zuständig.	(1) 주(州)법원은 이 법을 근거로 청구권을 주장하는 모든 민사 분쟁에 대한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
(2) Für alle bürgerlichen Rechtsstreitigkeiten, mit denen ein Anspruch auf Grund dieses Gesetzes geltend gemacht wird, ist das Gericht zuständig, in dessen Bezirk der Beklagte seinen allgemeinen Gerichtsstand hat. Für alle bürgerlichen Rechtsstreitigkeiten, mit denen ein Anspruch auf Grund dieses Gesetzes geltend gemacht wird, ist außerdem das Gericht zuständig, in dessen Bezirk die Zuwiderhandlung begangen wurde. Satz 2 gilt nicht für	(2) 피고가 보통재판적을 갖는 지역의 관할 법원은 이 법을 근거로 청구권을 주장하는 모든 민사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그 외에도 위반행위가 일어난 지역의 관할 법원은 이 법을 근거로 청구권을 주장하는 모든 민사분쟁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Rechtsstreitigkeiten wegen Zuwiderhandlungen im elektronischen Geschäftsverkehr oder in Telemedien oder	1. 전자상거래 또는 텔레미디어 분야에서의 법적 분쟁
2. Rechtsstreitigkeiten, die von den nach § 8 Absatz 3 Nummer 2 bis 4 zur Geltendmachung eines Unterlassungsanspruchs Berechtigten geltend gemacht werden, es sei denn, der Beklagte hat im Inland keinen allgemeinen Gerichtsstand.	2. 제8조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부작위청구권자가 제기하는 법적 분쟁 다만, 피고가 국내에 보통재판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Die Landesregierungen werden ermächtigt, durch Rechtsverordnung für die Bezirke mehrerer Landgerichte eines von ihnen als Gericht für Wettbewerbsstreitsachen zu	(3) 경쟁사건 재판에서 사법사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州)정부는 다수의 주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에 대하여 법규명령으로 그 중 한 법원을 경쟁사건의 관할법원으로 정

bestimmen, wenn dies der Rechtspflege in Wettbewerbsstreitsachen dienlich ist. Die Landesregierungen können die Ermächtigung durch Rechtsverordnung auf die Landesjustizverwaltungen übertragen. Die Länder können außerdem durch Vereinbarung die den Gerichten eines Landes obliegenden Klagen nach Absatz 1 insgesamt oder teilweise dem zuständigen Gericht eines anderen Landes übertragen.	할 권한이 있다. 주정부는 법령명령으로 이 권한을 주법무행정청에 위임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각 주(州)는 제1항에 따라 한 주의 법원이 담당하는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의 관할 법원에 위임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4) Abweichend von den Absätzen 1 bis 3 richtet sich die Zuständigkeit für bürgerliche Rechtsstreitigkeiten, mit denen ein Anspruch nach § 9 Absatz 2 Satz 1 geltend gemacht wird, nach den allgemeinen Vorschriften.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과 달리, 제9조제2항제1문에 따라 청구권을 주장하는 민사분쟁의 관할권에 대하여는 일반규정을 준용한다.
§ 15 Einigungsstellen	**제15조 (조정위원회)**
(1) Die Landesregierungen errichten bei Industrie- und Handelskammern Einigungsstellen zur Beilegung von bürgerlichen Rechtsstreitigkeiten, in denen ein Anspruch auf Grund dieses Gesetzes geltend gemacht wird(Einigungsstellen).	(1) 주 정부는 본법을 기본으로 제기되는 민사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상공회의소 내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이하,「조정위원회」라고 한다).
(2) Die Einigungsstellen sind mit einer vorsitzenden Person, die die Befähigung zum Richteramt nach dem Deutschen Richtergesetz hat, und beisitzenden Personen zu besetzen. Als beisitzende Personen werden im Falle einer Anrufung durch eine nach § 8 Absatz 3 Nummer 3 zur Geltendmachung eines Unterlassungsanspruchs berechtigte qualifizierte Einrichtung Unternehmer und Verbraucher in gleicher Anzahl tätig, sonst mindestens zwei sachverständige Unternehmer. Die vorsitzende Person soll auf dem Gebiet des Wettbewerbsrechts erfahren sein. Die beisitzenden Personen werden von der	(2) 조정위원회는 독일 판사법에 따른 판사의 자격이 있는 의장과 복수의 배석자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금지청구권의 행사를 위해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 의뢰 한 경우, 같은 수의 기업가 및 소비자가 배석자가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엔 적어도 두 명의 전문 기업가가 배석자가 된다. 의장은 경쟁법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배석자들은 매년 해당 연도에 분쟁사건마다 의장이 임명한다. 임명은 당사자 간 합의로 이루어져야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 배제 및 거부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31조에서 제43조, 제44조 제2항에서 제4항까지를

vorsitzenden Person für den jeweiligen Streitfall aus einer alljährlich für das Kalenderjahr aufzustellenden Liste berufen. Die Berufung soll im Einvernehmen mit den Parteien erfolgen. Für die Ausschließung und Ablehnung von Mitgliedern der Einigungsstelle sind die §§ 41 bis 43 und § 44 Absatz 2 bis 4 der Zivilprozessordnung entsprechend anzuwenden. Über das Ablehnungsgesuch entscheidet das für den Sitz der Einigungsstelle zuständige Landgericht (Kammer für Handelssachen oder, falls es an einer solchen fehlt, Zivilkammer).	준용한다. 거부 신청은 조정위원회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에 의해 결정된다(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가 없는 경우 민사부).
(3) Die Einigungsstellen können bei bürgerlichen Rechtsstreitigkeiten, in denen ein Anspruch auf Grund dieses Gesetzes geltend gemacht wird, angerufen werden, wenn der Gegner zustimmt. Soweit die geschäftlichen Handlungen Verbraucher betreffen, können die Einigungsstellen von jeder Partei zu einer Aussprache mit dem Gegner über den Streitfall angerufen werden; einer Zustimmung des Gegners bedarf es nicht.	(3) 조정위원회는 상대방이 동의하면 동법에 따라 청구가 이루어지는 민사소송에서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그 비즈니스 거래가 소비자와 관련 되는 것인 경우, 조정위원회는 각 당사자에 의해 분쟁의 상대방과 논의하기 위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4) Für die Zuständigkeit der Einigungsstellen ist § 14 entsprechend anzuwenden.	(4) 조정위원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제14조가 준용된다.
(5) Die der Einigungsstelle vorsitzende Person kann das persönliche Erscheinen der Parteien anordnen. Gegen eine unentschuldigt ausbleibende Partei kann die Einigungsstelle ein Ordnungsgeld festsetzen. Gegen die Anordnung des persönlichen Erscheinens und gegen die Festsetzung des Ordnungsgeldes findet die sofortige Beschwerde nach den Vorschriften der Zivilprozessordnung an das für den Sitz der Einigungsstelle zuständige Landgericht (Kammer für Handelssachen oder, falls es an einer solchen fehlt, Zivilkammer) statt.	(5) 조정위원회의 의장은 당사자들의 출두를 명할 수 있다. 무단결석한 당사자에 대해 조정위원회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출두명령 및 벌금부과에 대해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조정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즉시 항고 할 수 있다(상공회의소 또는 없는 경우에 민사부).

(6) Die Einigungsstelle hat einen gütlichen Ausgleich anzustreben. Sie kann den Parteien einen schriftlichen, mit Gründen versehenen Einigungsvorschlag machen. Der Einigungsvorschlag und seine Begründung dürfen nur mit Zustimmung der Parteien veröffentlicht werden.	(6) 조정위원회는 화해적인 조정을 추구해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와의 서면으로 합리적인 제안을 할 수 있다. 화해의 제안 및 그 근거는 당사자들의 동의에 의해서만 공표할 수 있다.
(7) Kommt ein Vergleich zustande, so muss er in einem besonderen Schriftstück niedergelegt und unter Angabe des Tages seines Zustandekommens von den Mitgliedern der Einigungsstelle, welche in der Verhandlung mitgewirkt haben, sowie von den Parteien unterschrieben werden. Aus einem vor der Einigungsstelle geschlossenen Vergleich findet die Zwangsvollstreckung statt; § 797a der Zivilprozessordnung ist entsprechend anzuwenden.	(7) 합의에 도달하면, 협상에 관여한 조정위원회의 위원과 분쟁당사자에 의해 합의 된 날짜를 표시하고 별도의 문서로 기록되어야 하고, 서명이 되어야 한다. 조정위원회에서 결정 된 화해는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 797a조를 준용한다.
(8) Die Einigungsstelle kann, wenn sie den geltend gemachten Anspruch von vornherein für unbegründet oder sich selbst für unzuständig erachtet, die Einleitung von Einigungsverhandlungen ablehnen.	(8) 조정위원회는 주장되고 있는 청구의 근거가 부족하거나 관할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교섭의 착수를 거부할 수 있다.
(9) Durch die Anrufung der Einigungsstelle wird die Verjährung in gleicher Weise wie durch Klageerhebung gehemmt. Kommt ein Vergleich nicht zustande, so ist der Zeitpunkt, zu dem das Verfahren beendet ist, von der Einigungsstelle festzustellen. Die vorsitzende Person hat dies den Parteien mitzuteilen.	(9) 조정위원회에 대한 의원에 의해 시효기간은 제소의 경우와 같게 중단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절차가 종료 되는 시간은 조정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의장은 이를 당사자들에게 알려야한다.
(10) Ist ein Rechtsstreit der in Absatz 3 Satz 2 bezeichneten Art ohne vorherige Anrufung der Einigungsstelle anhängig gemacht worden, so kann das Gericht auf Antrag den Parteien unter Anberaumung eines neuen Termins aufgeben, vor diesem Termin die Einigungsstelle	(10) 제3항 제2문에 나오는 종류의 분쟁에 대해 조정위원회의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이전에 화해적인 조정에 도달하도록 요청하여, 당사자들 간의 새로운 날짜를 선정할 수 있다. 가처분 신청의 절차 중인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만 이 명령이 인정된다.

zur Herbeiführung eines gütlichen Ausgleichs anzurufen. In dem Verfahren über den Antrag auf Erlass einer einstweiligen Verfügung ist diese Anordnung nur zulässig, wenn der Gegner zustimmt. Absatz 8 ist nicht anzuwenden. Ist ein Verfahren vor der Einigungsstelle anhängig, so ist eine erst nach Anrufung der Einigungsstelle erhobene Klage des Antragsgegners auf Feststellung, dass der geltend gemachte Anspruch nicht bestehe, nicht zulässig.	이 경우 제8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송이 조정위원회에 보류 중인 경우,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기 전에 피고가 주장한 주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1) Die Landesregierungen werden ermächtigt, durch Rechtsverordnung die zur Durchführung der vorstehenden Bestimmungen und zur Regelung des Verfahrens vor den Einigungsstellen erforderlichen Vorschriften zu erlassen, insbesondere über die Aufsicht über die Einigungsstellen, über ihre Besetzung unter angemessener Beteiligung der nicht den Industrie- und Handelskammern angehörenden Unternehmern (§ 2 Absatz 2 bis 6 des Gesetzes zur vorläufigen Regelung des Rechts der Industrie- und Handelskammern in der im Bundesgesetzblatt Teil III, Gliederungsnummer 701-1, veröffentlichten bereinigten Fassung) und über die Vollstreckung von Ordnungsgeldern sowie Bestimmungen über die Erhebung von Auslagen durch die Einigungsstelle zu treffen. Bei der Besetzung der Einigungsstellen sind die Vorschläge der für ein Bundesland errichteten, mit öffentlichen Mitteln geförderten Verbraucherzentralen zur Bestimmung der in Absatz 2 Satz 2 genannten Verbraucher zu berücksichtigen.	(11) 주 정부는 상기 조항의 이행과 조정위원회의 이전의 절차의 해결에 필요한 조항을 채택할 수 있도록 조례에 의해 특히, 비 상공인의 적절한 참여(연방 공보 제 III 부, 701-1 항에 게시 된 조정된 버전의 상공 회의소의 잠정 규정에 관한 법률 2, 2, 6)와 함께 제재 집행 및 경비 징수 등에 필요한 규정 공표 등 조정위원회의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조정위원회의 구성원 설정에 관해 제2항 제2문에서 언급된 소비자를 결정하기 위해 주 전체를 대상으로 설치되어 공적 자금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소비자 센터의 제안을 고려해야 한다.
(12) Abweichend von Absatz 2 Satz 1 kann in den Ländern Brandenburg, Mecklenburg-Vorpommern, Sachsen, Sachsen-Anhalt und	(12) 제2항 제1문과는 달리,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메크렌부르크 포어포메른(Mecklenburg-Vorpommern), 작센(Sachsen),

Thüringen die Einigungsstelle auch mit einem Rechtskundigen als Vorsitzendem besetzt werden, der die Befähigung zum Berufsrichter nach dem Rech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rworben hat.	작센-안할트(Sachsen-Anhalt)과 튀링겐(Thüringen) 주에서는 조정위원회는 구 동독법에 따라서 취득한 직업판사의 자격을 가진 법률전문가를 좌장으로 구성할 수 있다.
§ 15a Überleitungsvorschrift zum Gesetz zur Stärkung des fairen Wettbewerbs	**제15a조 (공정경쟁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
(1) § 8 Absatz 3 Nummer 2 ist nicht anzuwenden auf Verfahren, die am 1. September 2021 bereits rechtshängig sind.	(1) 제8조 제3항 제2호는 2021년 9월 1일에 이미 계류 중인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Die §§ 13 und 13a Absatz 2 und 3 sind nicht anzuwenden auf Abmahnungen, die vor dem 2. Dezember 2020 bereits zugegangen sind.	(2) 제13조 및 제13a조 제2항 및 제3항은 2020년 12월 2일 이전에 접수된 통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Kapitel 4 **Straf- und Bußgeldvorschriften**	**제4장 형사 처벌 규정과 과태료**
§ 16 Strafbare Werbung	**제16조 (형사처벌되는 광고)**
(1) Wer in der Absicht, den Anschein eines besonders günstigen Angebots hervorzurufen, in öffentlichen Bekanntmachungen oder in Mitteilungen, die für einen größeren Kreis von Personen bestimmt sind, durch unwahre Angaben irreführend wirb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1) 특별히 유익한 판매라는 외관을 발생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공지 또는 넓은 범위의 사람을 특정하여 통지하면서 허위표시를 통해 오인혼동을 야기하는 자는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2) Wer es im geschäftlichen Verkehr unternimmt, Verbraucher zur Abnahme von Waren, Dienstleistungen oder Rechten durch das Versprechen zu veranlassen, sie würden	(2) 소비자에 대해 새로운 구입자에게 동일한 광고를 시키는 것으로 이 광고의 방식에 따라서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동일한 종류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타인을 유도하면 기획자

entweder vom Veranstalter selbst oder von einem Dritten besondere Vorteile erlangen, wenn sie andere zum Abschluss gleichartiger Geschäfte veranlassen, die ihrerseits nach der Art dieser Werbung derartige Vorteile für eine entsprechende Werbung weiterer Abnehmer erlangen solle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자신 또는 제삼자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약정으로 영업상 거래에서 상품, 서비스 또는 권리를 구입시키려고 한 사람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17 bis 18 (weggefallen)	제17조 (삭제) ~ 제18조 (삭제)
§ 19 Bußgeldvorschriften bei einem weitverbreiteten Verstoß und einem weitverbreiteten Verstoß mit Unions-Dimension	제19조 광범위한 위반행위 및 연합 차원의 광범위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
(1) Ordnungswidrig handelt, wer vorsätzlich oder fahrlässig entgegen § 5c Absatz 1 Verbraucherinteressen verletzt.	(1) 제5c조제1항에 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자는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Die Ordnungswidrigkeit kann mit einer Geldbuße bis zu fünfzigtausend Euro geahndet werden. Gegenüber einem Unternehmer, der in den von dem Verstoß betroffenen Mitgliedstaaten der Europäischen Union in dem der Behördenentscheidung vorausgegangenen Geschäftsjahr mehr als eine Million zweihundertfünfzigtausend Euro Jahresumsatz erzielt hat, kann eine höhere Geldbuße verhängt werden; diese darf 4 Prozent des Jahresumsatzes nicht übersteigen. Die Höhe des Jahresumsatzes kann geschätzt werden. Liegen keine Anhaltspunkte für eine Schätzung des Jahresumsatzes vor, so beträgt das Höchstmaß der Geldbuße zwei Millionen Euro. Abweichend von den Sätzen 2 bis 4 gilt gegenüber einem Täter oder einem Beteiligten, der im Sinne des § 9 des Gesetzes über Ordnungswidrigkeiten für einen Unternehmer handelt, und gegenüber einem Beteiligten im	(2)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는 5만 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관결정 이전 회계연도에 질서위반행위를 한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125만 유로 이상의 연 매출을 달성한 사업자에게는 더 중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연 매출의 4%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는 없다. 연 매출액은 추정하여 정할 수 있다. 연 매출의 추정을 위한 기준치가 없는 경우에는 200만 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문 내지 제4문의 규정과 달리, 「질서위반법」 제9조에 따른 사업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행위자 또는 그의 공범과 「질서위반법」 제14조제1항제2문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공범에 대하여는 이 항의 제1문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Sinne des § 14 Absatz 1 Satz 2 des Gesetzes über Ordnungswidrigkeiten, der kein Unternehmer ist, der Bußgeldrahmen des Satzes 1. Das für die Ordnungswidrigkeit angedrohte Höchstmaß der Geldbuße im Sinne des § 30 Absatz 2 Satz 2 des Gesetzes über Ordnungswidrigkeiten ist das nach den Sätzen 1 bis 4 anwendbare Höchstmaß.	「질서위반법」 제30조제2항제2문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최고 벌금액은 제1문 내지 제4문에 따라 적용 가능한 최고 금액에 따른다.
(3) Die Ordnungswidrigkeit kann nur im Rahmen einer koordinierten Durchsetzungsmaßnahme nach Artikel 21 der Verordnung (EU) 2017/2394 geahndet werden.	(3) 질서위반행위는 「유럽연합 규정(EU) 2017/2394」 제 21조에 따라 병과된 이행조치의 일부로만 처벌할 수 있다.
(4) Verwaltungsbehörden im Sinne des § 36 Absatz 1 Nummer 1 des Gesetzes über Ordnungswidrigkeiten sind 1. das Umweltbundesamt, 2. die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bei einer Zuwiderhandlung, die sich auf die Tätigkeit eines Unternehmens im Sinne des § 2 Nummer 2 des EU-Verbraucherschutzdurchführungsgesetzes bezieht, und 3. die nach Landesrecht zuständige Behörde bei einer Zuwiderhandlung, die sich auf die Tätigkeit eines Unternehmens im Sinne des § 2 Nummer 4 des EU-Verbraucherschutzdurchführungsgesetzes bezieht.	(4) 「질서위반법」 제36조제1항제1호에서 의미하는 행정당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연방환경청 2. 「EU 소비자보호이행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침해가 발생한 경우, 연방금융감독청 3. 「EU 소비자보호이행법」 제2조제4항에 따른 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침해가 발생한 경우, 주법에 의한 관할 당국
§ 20 Bußgeldvorschriften	**제20조 과태료 규정**
(1) Ordnungswidrig handelt, wer vorsätzlich oder fahrlässig 1. entgegen § 7 Absatz 1 Satz 1 in Verbindung mit Absatz 2 Nummer 1 oder 2 mit einem Telefonanruf oder unter Verwendung einer automatischen Anrufmaschine gegenüber einem Verbraucher ohne dessen vorherige	(1)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1.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와 결합된 제7조제1항제1문에 반하여 소비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 없이 전화 통화 또는 자동응답기를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광고하는 경우

ausdrückliche Einwilligung wirbt, 2. entgegen § 7a Absatz 1 eine dort genannte Einwilligung nicht, nicht richtig, nicht vollständig oder nicht rechtzeitig dokumentiert oder nicht oder nicht mindestens fünf Jahre aufbewahrt, 3. entgegen § 8b Absatz 3 in Verbindung mit § 4b Absatz 1 des Unterlassungsklagengesetzes, auch in Verbindung mit einer Rechtsverordnung nach § 4d Nummer 2 des Unterlassungsklagengesetzes, einen dort genannten Bericht nicht, nicht richtig, nicht vollständig oder nicht rechtzeitig erstattet oder 4. einer Rechtsverordnung nach § 8b Absatz 3 in Verbindung mit § 4d Nummer 1 des Unterlassungsklagengesetzes oder einer vollziehbaren Anordnung auf Grund einer solchen Rechtsverordnung zuwiderhandelt, soweit die Rechtsverordnung für einen bestimmten Tatbestand auf diese Bußgeldvorschrift verweist.	2. 제7a조제1항을 위반하여 그에 명시된 동의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불완전하게 하거나 적시에 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3. 「부작위청구소송법」 제4d조제1호 및 「부작위청구소송법」 제4d조제2호에 따른 법규명령과 결합된 제8b조제3항을 위반하여 그에 명시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불완전하게 하거나 적시에 하지 아니한 경우 4. 「부작위청구소송법」 제4d조제1호와 결합된 제8b조제3항에 따른 법규명령 또는 이 법규명령을 근거로 한 집행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해당 법규명령은 이 과태료 규정의 특정 구성요건을 근거로 한 것이어야 한다.
(2) Die Ordnungswidrigkeit kann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Nummer 1 mit einer Geldbuße bis zu dreihunderttausend Euro,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Nummer 2 mit einer Geldbuße bis zu fünfzigtausend Euro und in den übrigen Fällen mit einer Geldbuße bis zu hunderttausend Euro geahndet werden.	(2)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는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30만 유로 이하,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5만 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10만 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Verwaltungsbehörde im Sinne des § 36 Absatz 1 Nummer 1 des Gesetzes über Ordnungswidrigkeiten ist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Nummer 1 und 2 die Bundesnetzagentur für Elektrizität, Gas, Telekommunikation, Post und Eisenbahnen, in den übrigen Fällen das Bundesamt für Justiz.	(3) 「질서위반법」 제36조제1항제1호에서 의미하는 행정기관이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연방네트워크청을 말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연방법무청을 말한다.

Anhang (zu § 3 Absatz 3)	부록 (제 3 조제 3 항과 관련된 부록)
Folgende geschäftliche Handlungen sind gegenüber Verbrauchern stets unzulässig:	소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거래행위는 항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Irreführende geschäftliche Handlungen	착오를 유발하는 거래행위
1. unwahre Angabe über die Unterzeichnung eines Verhaltenskodexes die unwahre Angabe eines Unternehmers, zu den Unterzeichnern eines Verhaltenskodexes zu gehören;	1. 행동지침에 대한 서명 여부에 관하여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것; 사업자가 행동지침에 서명하였다는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것
2. unerlaubte Verwendung von Gütezeichen und Ähnlichem die Verwendung von Gütezeichen, Qualitätskennzeichen oder Ähnlichem ohne die erforderliche enehmigung;	2. 인증마크 등을 무단 사용하는 것; 필요한 허가 없이 인증마크, 품질표시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것
3. unwahre Angabe über die Billigung eines Verhaltenskodexes die unwahre Angabe, ein Verhaltenskodex sei von einer öffentlichen oder anderen Stelle gebilligt;	3. 행동지침의 승인에 관하여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것; 행동지침에 대한 공공기관 또는 기타 단체의 승인이 있었다는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것
4. unwahre Angabe über Anerkennungen durch Dritte die unwahre Angabe,	4. 제 3 자로부터 인정받았다는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것
a) ein Unternehmer, eine von ihm vorgenommene geschäftliche Handlung oder eine Ware oder Dienstleistung sei von einer öffentlichen oder privaten Stelle bestätigt, gebilligt oder genehmigt worden, oder	a) 사업자, 사업자의 거래행위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의하여 확인, 승인 또는 허가받았다는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것
b) den Bedingungen für die Bestätigung, Billigung oder Genehmigung werde entsprochen;	b) 확인, 승인 또는 허가 조건을 충족하였다는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것
5. Lockangebote ohne Hinweis auf Unangemessenheit der Bevorratungsmenge Waren- oder Dienstleistungsangebote im Sinne des § 5b Absatz 1 zu einem bestimmten Preis, wenn der Unternehmer nicht darüber aufklärt, dass er hinreichende Gründe für die Annahme hat, er werde nicht in der Lage sein, diese oder gleichartige Waren oder Dienstleistungen für einen angemessenen Zeitraum in angemessener Menge zum	5. 재고량이 적당한지 여부에 대한 정보 없이 주문을 유발하는 제안을 하는 것; 사업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적정량을 적정기간 동안에 명시된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을만한 상황인지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제 5b 조제 1 항에 따라 상품 또는 서비스를 특정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 2 일 미만의 저장품인 경우, 그 적당성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genannten Preis bereitzustellen oder bereitstellen zu lassen; ist die Bevorratung kürzer als zwei Tage, obliegt es dem Unternehmer, die Angemessenheit nachzuweisen;	
6. Lockangebote zum Absatz anderer Waren oder Dienstleistungen Waren- oder Dienstleistungsangebote im Sinne des § 5b Absatz 1 zu einem bestimmten Preis, wenn der Unternehmer sodann in der Absicht, stattdessen eine andere Ware oder Dienstleistung abzusetzen,	6.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미끼로 제안하는 것; 사업자가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 5b 조제 1 항에 따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특정 가격으로 구매할 것을 제안하고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것
a) eine fehlerhafte Ausführung der Ware oder Dienstleistung vorführt,	a)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하자있는 이행을 하는 것
b) sich weigert zu zeigen, was er beworben hat, oder	b) 홍보물의 표시를 거부하는 것
c) sich weigert, Bestellungen dafür anzunehmen oder die beworbene Leistung innerhalb einer vertretbaren Zeit zu erbringen;	c) 합리적인 시간 내에 주문을 수락하거나 홍보한 이행행위를 거부하는 것
7. unwahre Angabe über zeitliche Begrenzung des Angebots die unwahre Angabe, bestimmte Waren oder Dienstleistungen seien allgemein oder zu bestimmten Bedingungen nur für einen sehr begrenzten Zeitraum verfügbar, um den Verbraucher zu einer sofortigen geschäftlichen Entscheidung zu veranlassen, ohne dass dieser Zeit und Gelegenheit hat, sich auf Grund von Informationen zu entscheiden;	7. 시간 제한이 있는 제안이라고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것; 소비자가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갖지 못하고 즉시 거래결정 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가 일반 또는 특정 조건 하에서 제한된 기간 동안만 이용가능하다는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것
8. Sprachenwechsel für Kundendienstleistungen bei einer in einer Fremdsprache geführten Vertragsverhandlung Kundendienstleistungen in einer anderen Sprache als derjenigen, in der die Verhandlungen vor dem Abschluss des Geschäfts geführt worden sind, wenn die ursprünglich verwendete Sprache nicht Amtssprache desjenigen Mitgliedstaats der Europäischen Union ist, in dem der Unternehmer niedergelassen ist; dies gilt	8. 외국어로 수행된 계약 협상의 경우, 고객서비스 언어를 변경하는 것; 협상 시 사용하던 언어가 사업자의 소재지인 유럽연합 회원국의 공용어가 아닌 경우, 거래 체결 전의 협상에서 사용한 언어 외의 언어로 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다만 거래 체결 전에 이 서비스가 원래 사용하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제공된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nicht, soweit Verbraucher vor dem Abschluss des Geschäfts darüber aufgeklärt werden, dass diese Leistungen in einer anderen als der ursprünglich verwendeten Sprache erbracht werden;	
9. unwahre Angabe über die Verkehrsfähigkeit die unwahre Angabe oder das Erwecken des unzutreffenden Eindrucks, eine Ware oder Dienstleistung sei verkehrsfähig;	9. 시장성에 관한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것; 상품 또는 서비스가 시장성이 있다는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착오를 유발하는 것
10. Darstellung gesetzlicher Verpflichtungen als Besonderheit eines Angebots die unwahre Angabe oder das Erwecken des unzutreffenden Eindrucks, gesetzlich bestehende Rechte stellten eine Besonderheit des Angebots dar;	10. 법적 의무의 일환으로서 특별 제공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 법적 권리를 근거로 한 특별 제공이라는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착오를 유발하는 것
11. als Information getarnte Werbung der vom Unternehmer finanzierte Einsatz redaktioneller Inhalte zu Zwecken der Verkaufsförderung, ohne dass sich dieser Zusammenhang aus dem Inhalt oder aus der Art der optischen oder akustischen Darstellung eindeutig ergibt;	11. 정보를 가장한 광고를 하는 것;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사업자가 자금을 제공한 편집 콘텐츠이지만, 내용이나 시각적 또는 청각적 표현방식에서 그 연관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광고를 하는 것
11a. verdeckte Werbung in Suchergebnissen die Anzeige von Suchergebnissen aufgrund der Online-Suchanfrage eines Verbrauchers, ohne dass etwaige bezahlte Werbung oder spezielle Zahlungen, die dazu dienen, ein höheres Ranking der jeweiligen Waren oder Dienstleistungen im Rahmen der Suchergebnisse zu erreichen, eindeutig offengelegt werden;	11a. 검색결과에 숨겨진 광고를 하는 것; 소비자의 온라인 검색에 대한 결과를 표시할 때, 그 검색결과에서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순위가 상위에 표시되도록 하는 유료광고 또는 특별결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
12. unwahre Angabe über Gefahren für die persönliche Sicherheit unwahre Angaben über Art und Ausmaß einer Gefahr für die persönliche Sicherheit des Verbrauchers oder seiner Familie für den Fall, dass er die angebotene Ware nicht erwirbt oder	12. 개인의 안전위험에 대하여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것; 소비자가 제공된 상품을 구입하지 않거나 제공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또는 그 가족의 개인안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유형 및 정도에 관하여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것

die angebotene Dienstleistung nicht in Anspruch nimmt;	
13. Täuschung über betriebliche Herkunft Werbung für eine Ware oder Dienstleistung, die der Ware oder Dienstleistung eines bestimmten Herstellers ähnlich ist, wenn in der Absicht geworben wird, über die betriebliche Herkunft der beworbenen Ware oder Dienstleistung zu täuschen;	13. 제조사를 속이는 것; 홍보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조사를 속이기 위하여 특정 제조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는 것
14. Schneeball- oder Pyramidensystem die Einführung, der Betrieb oder die Förderung eines Systems zur Verkaufsförderung, bei dem vom Verbraucher ein finanzieller Beitrag für die Möglichkeit verlangt wird, eine Vergütung allein oder zumindest hauptsächlich durch die Einführung weiterer Teilnehmer in das System zu erlangen;	14. 눈덩이 또는 피라미드식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 소비자가 전적으로 또는 최소한 주도적으로 다른 참여자를 시스템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재정적 기여를 요구하는 판매촉진시스템을 도입, 운영 또는 촉진하는 것
15. unwahre Angabe über Geschäftsaufgabe; die unwahre Angabe, der Unternehmer werde demnächst sein Geschäft aufgeben oder seine Geschäftsräume verlegen;	15. 사업종료에 관하여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것; 사업자가 곧 자신의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할 것이라는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것
16. Angaben über die Erhöhung der Gewinnchancen bei Glücksspielen die Angabe, durch eine bestimmte Ware oder Dienstleistung ließen sich die Gewinnchancen bei einem Glücksspiel erhöhen;	16. 도박게임의 승률향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도박게임에서의 승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것
17. nwahre Angaben über die Heilung von Krankheiten die unwahre Angabe, eine Ware oder Dienstleistung könne Krankheiten, Funktionsstörungen oder Missbildungen heilen;	17. 질병치유에 대한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것; 상품 또는 서비스가 질병, 기능장애 또는 기형을 치료할 수 있다는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것
18. unwahre Angabe über Marktbedingungen oder Bezugsquellen eine unwahre Angabe über die Marktbedingungen oder Bezugsquellen, um den Verbraucher dazu zu bewegen, eine Ware oder Dienstleistung zu weniger günstigen Bedingungen als den allgemeinen Marktbedingungen abzunehmen oder in	18. 시장조건 또는 공급처에 관한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것; 일반적인 시장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수령하거나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시장조건 또는 공급처에 관하여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것

Anspruch zu nehmen;	
19. Nichtgewährung ausgelobter Preise das Angebot eines Wettbewerbs oder Preisausschreibens, wenn weder die in Aussicht gestellten Preise noch ein angemessenes Äquivalent vergeben werden;	19. 상품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것; 예상 가격 또는 적절한 등가물이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쟁 또는 모집 입찰을 제안하는 것
20. unwahre Bewerbung als kostenlos das Angebot einer Ware oder Dienstleistung als “gratis”, “umsonst”, “kostenfrei” oder dergleichen, wenn für die Ware oder Dienstleistung gleichwohl Kosten zu tragen sind; dies gilt nicht für Kosten, die im Zusammenhang mit dem Eingehen auf das Warenoder Dienstleistungsangebot oder für die Abholung oder Lieferung der Ware oder die Inanspruchnahme der Dienstleistung unvermeidbar sind;	20. 무료라고 허위광고하는 것;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를 ‘무상’, ‘증정’, ‘무료’ 등으로 제공한다며 허위광고하는 것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에 수반되거나 상품의 수령이나 배송 또는 서비스의 사용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비용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1. Irreführung über das Vorliegen einer Bestellung die Übermittlung von Werbematerial unter Beifügung einer Zahlungsaufforderung, wenn damit der unzutreffende Eindruck vermittelt wird, die beworbene Ware oder Dienstleistung sei bereits bestellt;	21. 주문에 대한 착오를 유발하는 것; 지불요청과 함께 광고물을 전달하여 홍보하고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미 주문한 것처럼 착오를 유발하는 것
22. Irreführung über Unternehmereigenschaft die unwahre Angabe oder das Erwecken des unzutreffenden Eindrucks, der Unternehmer sei Verbraucher oder nicht für Zwecke seines Geschäfts, Handels, Gewerbes oder Berufs tätig;	22. 사업자의 특징에 대한 착오를 유발하는 것; 사업자 자신도 소비자라거나 자신의 사업, 무역, 영업 또는 직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잘못된 인상을 주는 것
23. Irreführung über Kundendienst in anderen Mitgliedstaaten der Europäischen Union die unwahre Angabe oder das Erwecken des unzutreffenden Eindrucks, es sei im Zusammenhang mit Waren oder Dienstleistungen in einem anderen Mitgliedstaat der Europäischen Union als dem des Warenverkaufs oder der Dienstleistung ein Kundendienst verfügbar;	23. 유럽연합 내 다른 회원국에서의 고객서비스에 대한 착오 유발하는 것; 상품판매 또는 서비스가 이루어진 회원국과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고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릇된 인상을 주는 것
23a. Wiederverkauf von Eintrittskarten für	23a. 이벤트 입장티켓을 재판매하는 것; 한

Veranstaltungen der Wiederverkauf von Eintrittskarten für Veranstaltungen an Verbraucher, wenn der Unternehmer diese Eintrittskarten unter Verwendung solcher automatisierter Verfahren erworben hat, die dazu dienen, Beschränkungen zu umgehen in Bezug auf die Zahl der von einer Person zu erwerbenden Eintrittskarten oder in Bezug auf andere für den Verkauf der Eintrittskarten geltende Regeln;	사람이 구매할 수 있는 입장권 수의 제한 또는 다른 입장권 판매와 관련된 규정에 관한 자동화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사업자가 입장권을 취득하는 경우, 이 이벤트 입장티켓을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것
23b. Irreführung über die Echtheit von Verbraucherbewertungen die Behauptung, dass Bewertungen einer Ware oder Dienstleistung von solchen Verbrauchern stammen, die diese Ware oder Dienstleistung tatsächlich erworben oder genutzt haben, ohne dass angemessene und verhältnismäßige Maßnahmen zur Überprüfung ergriffen wurden, ob die Bewertungen tatsächlich von solchen Verbrauchern stammen;	23b. 소비자 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착오를 유발하는 것;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실제로 구입하거나 사용한 소비자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적정하며 상당한 검증조치 없이 이를 주장하는 것.
23c. gefälschte Verbraucherbewertungen die Übermittlung oder Beauftragung gefälschter Bewertungen oder Empfehlungen von Verbrauchern sowie die falsche Darstellung von Bewertungen oder Empfehlungen von Verbrauchern in sozialen Medien zu Zwecken der Verkaufsförderung; Aggressive geschäftliche Handlungen	23c. 허위로 소비자 평가를 하는 것; 허위의 소비자 평가, 소비자 추천 또는 이에 대한 허위 소개를 소셜 미디어에서 판매홍보를 목적으로 전달 또는 위탁하는 것
24. räumliches Festhalten des Verbrauchers das Erwecken des Eindrucks, der Verbraucher könne bestimmte Räumlichkeiten nicht ohne vorherigen Vertragsabschluss verlassen;	24. 소비자의 공간을 제약하는 것;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특정 공간을 떠날 수 없다는 인상을 주는 것
25. Nichtverlassen der Wohnung des Verbrauchers trotz Aufforderung bei persönlichem Aufsuchen des Verbrauchers in dessen Wohnung die Nichtbeachtung seiner Aufforderung, die Wohnung zu verlassen oder nicht zu ihr zurückzukehren, es sei denn, das Aufsuchen	25. 자신의 집에서 나가달라는 소비자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는 것; 소비자의 집을 개인적으로 방문한 경우, 소비자의 집을 떠나달라거나 재방문하지 말아 달라는 소비자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 다만, 그 방문이 계약상 의무를 합법적으로 이행을

ist zur rechtmäßigen Durchsetzung einer vertraglichen Verpflichtung gerechtfertigt;	위한 것으로 정당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6. unzulässiges hartnäckiges Ansprechen über Fernabsatzmittel hartnäckiges und unerwünschtes Ansprechen des Verbrauchers mittels Telefonanrufen, unter Verwendung eines Faxgerätes, elektronischer Post oder sonstiger für den Fernabsatz geeigneter Mittel der kommerziellen Kommunikation, es sei denn, dieses Verhalten ist zur rechtmäßigen Durchsetzung einer vertraglichen Verpflichtung gerechtfertigt;	26. 원격통신판매 수단에 의하여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집요하게 접촉을 시도하는 것; 전화, 팩스, 이메일, 기타 원격통신판매에 적합한 상업용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집요한 접촉을 시도하는 것
27. Verhinderung der Durchsetzung vertraglicher Rechte im Versicherungsverhältnis Maßnahmen, durch die der Verbraucher von der Durchsetzung seiner vertraglichen Rechte aus einem Versicherungsverhältnis dadurch abgehalten werden soll, dass	27. 보험관계에서 계약상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
a) von ihm bei der Geltendmachung eines Anspruchs die Vorlage von Unterlagen verlangt wird, die zum Nachweis dieses Anspruchs nicht erforderlich sind, oder	a) 소비자의 청구권 주장 시, 해당 청구권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하지 아니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
b) Schreiben zur Geltendmachung eines Anspruchs systematisch nicht beantwortet werden;	b) 소비자의 청구권을 주장하는 문서에 체계적으로 응답하지 아니하는 것
28. Kaufaufforderung an Kinder die in eine Werbung einbezogene unmittelbare Aufforderung an Kinder, selbst die beworbene Ware zu erwerben oder die beworbene Dienstleistung in Anspruch zu nehmen oder ihre Eltern oder andere Erwachsene dazu zu veranlassen;	28. 아동을 이용한 구매촉구; 아동이 홍보 제품을 직접 구입하거나 홍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자신의 부모 또는 다른 성인을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광고에서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촉구하는 것
29. Aufforderung zur Bezahlung nicht bestellter Waren oder Dienstleistungen die Aufforderung zur Bezahlung nicht bestellter, aber gelieferter Waren oder erbrachter Dienstleistungen oder eine Aufforderung zur Rücksendung oder Aufbewahrung nicht bestellter Waren;	29. 주문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지불을 청구하는 것; 주문하지 아니하였으나 배송된 상품 또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지불할 것을 요청하거나 주문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 또는 보관하도록 요청하는 것
30. Angaben über die Gefährdung des	30. 일자리 또는 생계 위험에 관한 언급을 하

Arbeitsplatzes oder des Lebensunterhalts die ausdrückliche Angabe, dass der Arbeitsplatz oder der Lebensunterhalt des Unternehmers gefährdet sei, wenn der Verbraucher die Ware oder Dienstleistung nicht abnehme;	는 것;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일자리 또는 생계가 위태롭게 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
31. Irreführung über Preis oder Gewinn die unwahre Angabe oder das Erwecken des unzutreffenden Eindrucks, der Verbraucher habe bereits einen Preis gewonnen oder werde ihn gewinnen oder werde durch eine bestimmte Handlung einen Preis gewinnen oder einen sonstigen Vorteil erlangen, wenn	31. 가격 또는 이익에 대한 착오를 유발하는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이미 상품을 획득하였거나 획득할 예정이거나 특정 행동을 통해 획득하게 되거나 기타의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잘못된 인상을 주는 것
a) es einen solchen Preis oder Vorteil tatsächlich nicht gibt oder	a) 그러한 상품 또는 이익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b) die Möglichkeit, einen solchen Preis oder Vorteil zu erlangen, von der Zahlung eines Geldbetrags oder der Übernahme von Kosten abhängig gemacht wird.	b) 금액지불 또는 비용부담을 하여야만 그러한 상품 또는 이익을 얻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32. Aufforderung zur Zahlung bei unerbetenen Besuchen in der Wohnung eines Verbrauchers am Tag des Vertragsschlusses bei einem im Rahmen eines unerbetenen Besuchs in der Wohnung eines Verbrauchers geschlossenen Vertrag die an den Verbraucher gerichtete Aufforderung zur Bezahlung der Ware oder Dienstleistung vor Ablauf des Tages des Vertragsschlusses; dies gilt nicht, wenn der Verbraucher einen Betrag unter 50 Euro schuldet.	32. 계약체결 당일에 소비자의 집을 무단 방문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것; 소비자의 집을 무단 방문하여 체결된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이 경과되기도 전에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금을 지불하도록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것 이는 소비자가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 50 유로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독일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 (영업비밀보호법)

국 가	독일
원법률명	Gesetz zum Schutz von Geschäftsgeheimnissen (GeschGehG)
제 정	2019년 04월 18일
개 정	

Gesetz zum Schutz von Geschäftsgeheimnissen (GeschGehG)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 (영업비밀보호법)
GeschGehG Ausfertigungsdatum: 18.04.2019	발행일: 2019. 04. 18.
Vollzitat:	전문인용:
"Gesetz zum Schutz von Geschäftsgeheimnissen vom 18. April 2019 (BGBl. I S. 466)"	"2019년 4월 18일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연방법률관보 제I부 466면)"
* Dieses Gesetz dient der Umsetzung der Richtlinie (EU) 2016/943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8. Juni 2016 über den Schutz vertraulichen Know-hows und vertraulicher Geschäftsinformationen (Geschäftsgeheimnisse) vor rechtswidrigem Erwerb sowie rechtswidriger Nutzung und Offenlegung(ABl. L 157 vom 15.6.2016, S. 1).	* 이 법은 불법 취득과 불법 이용 및 공개로부터 기밀 노하우와 기밀 영업정보(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지침(EU) 2016/943의 이행(2016년 6월 15일 관보 제L157호 1면)을 위한 것이다.
Das G wurde als Artikel 1 des G v.18.4.2019 I 466 vom Bundestag beschlossen. Es ist gem. Art. 6 dieses Gam 26.4.2019 in Kraft getreten.	이 법은 2019년 4월 18일 법률(제I부 466면) 제1조로 연방의회에서 의결되었다. 이 법은 법 제6조에 따라 2019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Abschnitt 1 Allgemeines	제1장 총칙
§ 1 Anwendungsbereich	제1조 (적용범위)
(1) Dieses Gesetz dient dem Schutz von	(1) 이 법은 영업비밀을 무단 취득, 사용 및 공

Geschäftsgeheimnissen vor unerlaubter Erlangung, Nutzung und Offenlegung.	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Öffentlich-rechtliche Vorschriften zur Geheimhaltung, Erlangung, Nutzung oder Offenlegung von Geschäftsgeheimnissen gehen vor.	(2) 영업비밀의 비밀 유지, 취득, 사용 또는 공개에 관한 공법 규정이 우선한다.
(3) Es bleiben unberührt: 1. der berufs- und strafrechtliche Schutz von Geschäftsgeheimnissen, deren unbefugte Offenbarung von § 203 des Strafgesetzbuches erfasst wird, 2. die Ausübung des Rechts der freien Meinungsäußerung und der Informationsfreiheit nach der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ABl. C 202 vom 7.6.2016, S. 389), einschließlich der Achtung der Freiheit und der Pluralität der Medien, 3. die Autonomie der Sozialpartner und ihr Recht, Kollektivverträge nach den bestehenden europäischen und nationalen Vorschriften abzuschließen, 4. die Rechte und Pflichten aus dem Arbeitsverhältnis und die Rechte der Arbeitnehmervertretungen.	(3) 다음 각 호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형법」제203조의 무단 공개를 조사하여 기록한 영업비밀의 직무법 및 형법상 보호 2. 언론의 자유와 다양성 준수를 포함하여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2016년 6월 7일 관보 제C202호 389면)에 따른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행사 3. 기존의 유럽 규정과 국가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와 노동협약 당사자의 자율성 4.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권리와 의무 및 근로자 대표의 권리
§ 2 Begriffsbestimmungen	**제2조 (정의)**
Im Sinne dieses Gesetzes ist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Geschäftsgeheimnis eine Information a) die weder insgesamt noch in der genauen Anordnung und Zusammensetzung ihrer Bestandteile den Personen in den Kreisen, die üblicherweise mit dieser Art	1. “영업비밀”이란 다음 각 목과 같은 정보를 말한다. a) 통상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정보를 다루는 계통의 사람들에게 그 구성요소의 구체적인 배열과 구성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누구에게나 알려져 있거나 쉽게 접근할 수

von Informationen umgehen, allgemein bekannt oder ohne Weiteres zugänglich ist und daher von wirtschaftlichem Wert ist und	있는 정보가 아니어서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정보
b) die Gegenstand von den Umständen nach angemessenen Geheimhaltungsmaßnahmen durch ihren rechtmäßigen Inhaber ist und	b) 정보의 정당한 보유자가 적절한 비밀유지 조치를 취한 이후 상황에서 대상이 되는 정보
c) bei der ein berechtigtes Interesse an der Geheimhaltung besteht;	c) 비밀 유지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정보
2. Inhaber eines Geschäftsgeheimnisses jede natürliche oder juristische Person, die die rechtmäßige Kontrolle über ein Geschäftsgeheimnis hat;	2. “영업비밀 보유자”란 영업비밀을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든 자연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3. Rechtsverletzer jede natürliche oder juristische Person, die entgegen § 4 ein Geschäftsgeheimnis rechtswidrig erlangt, nutzt oder offenlegt; Rechtsverletzer ist nicht, wer sich auf eine Ausnahme nach § 5 berufen kann;	3. “침해자”란 제4조에 반하여 불법으로 영업비밀을 획득, 사용 또는 공개한 모든 자연인이나 법인을 말하고, 제5조에 따른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침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rechtsverletzendes Produkt ein Produkt, dessen Konzeption, Merkmale, Funktionsweise, Herstellungsprozess oder Marketing in erheblichem Umfang auf einem rechtswidrig erlangten, genutzten oder offengelegten Geschäftsgeheimnis beruht.	4. “침해제품”이란 기획, 특징, 기능, 제조과정, 마케팅이 상당 부분 불법으로 획득, 사용 또는 공개된 영업비밀에 기초한 제품을 말한다.
§ 3 Erlaubte Handlungen	**제3조 (허용 행위)**
(1) Ein Geschäftsgeheimnis darf insbesondere erlangt werden durch	(1) 영업비밀은 특히 다음 각 호와 같이 획득할 수 있다.
1. eine eigenständige Entdeckung oder Schöpfung;	1. 독자적인 발견이나 창작
2. ein Beobachten, Untersuchen, Rückbauen oder Testen eines Produkts oder Gegenstands, das oder der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나 물건의 관찰, 검사, 분해 또는 시험

a) öffentlich verfügbar gemacht wurde oder b) sich im rechtmäßigen Besitz des Beobachtenden, Untersuchenden, Rückbauenden oder Testenden befindet und dieser keiner Pflicht zur Beschränkung der Erlangung des Geschäftsgeheimnisses unterliegt; 3. ein Ausüben von Informations- und Anhörungsrechten der Arbeitnehmer oder Mitwirkungs- und Mitbestimmungsrechte der Arbeitnehmervertretung.	a)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제품이나 물건 b) 관찰, 검사, 분해 또는 시험하는 사람이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고 이러한 사람에게 영업비밀의 취득을 제한할 의무가 없는 제품이나 물건 3. 근로자의 정보요청권 및 청문권의 행사나 근로자 대표의 참여권 및 공동결정권의 행사
(2) Ein Geschäftsgeheimnis darf erlangt, genutzt oder offengelegt werden, wenn dies durch Gesetz, aufgrund eines Gesetzes oder durch Rechtsgeschäft gestattet ist.	(2) 법을 통해 또는 법에 근거하여 혹은 법률행위를 통해 허용되는 경우에 영업비밀을 획득, 사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 4 Handlungsverbote	**제4조 (금지 행위)**
(1) Ein Geschäftsgeheimnis darf nicht erlangt werden durch 1. unbefugten Zugang zu, unbefugte Aneignung oder unbefugtes Kopieren von Dokumenten, Gegenständen, Materialien, Stoffen oder elektronischen Dateien, die der rechtmäßigen Kontrolle des Inhabers des Geschäftsgeheimnisses unterliegen und die das Geschäftsgeheimnis enthalten oder aus denen sich das Geschäftsgeheimnis ableiten lässt, oder 2. jedes sonstige Verhalten, das unter den jeweiligen Umständen nicht dem Grundsatz von Treu und Glauben unter Berücksichtigung der anständigen Marktgepflogenheit entspricht.	(1) 영업비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통해 획득해서는 아니 된다. 1. 무단 접근, 무단 획득, 영업비밀 보유자의 합법적인 관리 대상이며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거나 영업비밀을 도출할 수 있는 문서, 물건, 재료, 소재 또는 전자파일 등의 복제 2. 각 상황에서 적절한 시장 관행을 반영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모든 행위
(2) Ein Geschäftsgeheimnis darf nicht	(2) 영업비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하거나

nutzen oder offenlegen, wer 1. das Geschäftsgeheimnis durch eine eigene Handlung nach Absatz 1 a) Nummer 1 oder b) Nummer 2 erlangt hat, 2. gegen eine Verpflichtung zur Beschränkung der Nutzung des Geschäftsgeheimnisses verstößt oder 3. gegen eine Verpflichtung verstößt, das Geschäftsgeheimnis nicht offenzulegen.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신의 행위로 영업비밀을 획득한 사람이 이를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a) 제1호 b) 제2호 2. 영업비밀 사용 제한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3. 영업비밀 비공개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3) Ein Geschäftsgeheimnis darf nicht erlangen, nutzen oder offenlegen, wer das Geschäftsgeheimnis über eine andere Person erlangt hat und zum Zeitpunkt der Erlangung, Nutzung oder Offenlegung weiß oder wissen müsste, dass diese das Geschäftsgeheimnis entgegen Absatz 2 genutzt oder offengelegt hat. Das gilt insbesondere, wenn die Nutzung in der Herstellung, dem Anbieten, dem Inverkehrbringen oder der Einfuhr, der Ausfuhr oder der Lagerung für diese Zwecke von rechtsverletzenden Produkten besteht.	(3) 다른 사람을 통해 영업비밀을 획득했고 획득, 사용, 공개 시점에 제2항에 반하여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획득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았던 사람이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이는 특히 제조, 제공, 유통, 수입, 수출 및 저장에서 침해제품을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용한 경우에 준용된다.
§ 5 Ausnahmen Die Erlangung, die Nutzung oder die Offenlegung eines Geschäftsgeheimnisses fällt nicht unter die Verbote des § 4, wenn dies zum Schutz eines berechtigten Interesses erfolgt, insbesondere 1. zur Ausübung des Rechts der freien Meinungsäußerung und der Informationsfreiheit, einschließlich der Achtung der Freiheit und der Pluralität der Medien;	**제5조 (예외)**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또는 공개는 특히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 제4조의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언론의 자유와 다양성 준수를 포함하여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행사를 위한 경우

2. zur Aufdeckung einer rechtswidrigen Handlung oder eines beruflichen oder sonstigen Fehlverhaltens, wenn die Erlangung, Nutzung oder Offenlegung geeignet ist, das allgemeine öffentliche Interesse zu schützen; 3. im Rahmen der Offenlegung durch Arbeitnehmer gegenüber der Arbeitnehmervertretung, wenn dies erforderlich ist, damit die Arbeitnehmervertretung ihre Aufgaben erfüllen kann.	2. 취득, 사용 또는 공개가 일반 공익을 보호하는 데 적합할 때, 위법행위나 직무상 부정행위 또는 그 밖의 부정행위를 고발하기 위한 경우 3. 근로자 대표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근로자 대표에게 근로자가 공개하는 범위의 경우
Abschnitt 2 Ansprüche bei Rechtsverletzungen	제2장 권리침해 시 청구권
§ 6 Beseitigung und Unterlassung	제6조 (제거와 부작위)
Der Inhaber des Geschäftsgeheimnisses kann den Rechtsverletzer auf Beseitigung der Beeinträchtigung und bei Wiederholungsgefahr auch auf Unterlassung in Anspruch nehmen. Der Anspruch auf Unterlassung besteht auch dann, wenn eine Rechtsverletzung erstmalig droht.	영업비밀 보유자는 침해자에게 침해 제거와 반복 위험이 있을 시 부작위 청구를 할 수 있다. 부작위 청구권은 침해가 처음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 7 Vernichtung; Herausgabe; Rückruf; Entfernung und Rücknahme vom Markt	제7조 (폐기, 반환, 철회, 제거, 시장에서 철수)
Der Inhaber des Geschäftsgeheimnisses kann den Rechtsverletzer auch in Anspruch nehmen auf 1. Vernichtung oder Herausgabe der im Besitz oder Eigentum des Rechtsverletzers stehenden Dokumente, Gegenstände, Materialien, Stoffe oder elektronischen	영업비밀 보유자는 침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를 요구할 수 있다. 1. 침해자가 보유하거나 소유 중인 문서, 물건, 재료, 소재 또는 전자파일의 폐기 또는 반환

Dateien, die das Geschäftsgeheimnis enthalten oder verkörpern,	
2. Rückruf des rechtsverletzenden Produkts,	2. 침해제품의 회수
3. dauerhafte Entfernung der rechtsverletzenden Produkte aus den Vertriebswegen,	3. 유통경로에서 침해제품의 영구적인 제거
4. Vernichtung der rechtsverletzenden Produkte oder	4. 침해제품의 폐기
5. Rücknahme der rechtsverletzenden Produkte vom Markt, wenn der Schutz des Geschäftsgeheimnisses hierdurch nicht beeinträchtigt wird.	5. 영업비밀의 보호에 악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에서 침해제품의 철수
§ 8 Auskunft über rechtsverletzende Produkte; Schadensersatz bei Verletzung der Auskunftspflicht	**제8조(침해제품에 관한 정보, 정보제공의무위반시 손해배상)**
(1) Der Inhaber des Geschäftsgeheimnisses kann vom Rechtsverletzer Auskunft über Folgendes verlangen:	(1) 영업비밀 보유자는 다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침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Name und Anschrift der Hersteller, Lieferanten und anderer Vorbesitzer der rechtsverletzenden Produkte sowie der gewerblichen Abnehmer und Verkaufsstellen, für die sie bestimmt waren,	1. 제조사, 납품업체, 침해제품의 다른 종전 소유자 및 지정된 도소매점의 이름과 주소
2. die Menge der hergestellten, bestellten, ausgelieferten oder erhaltenen rechtsverletzenden Produkte sowie über die Kaufpreise,	2. 제조, 주문, 배송 또는 수령한 침해제품의 양과 구매가격
3. diejenigen im Besitz oder Eigentum des Rechtsverletzers stehenden Dokumente, Gegenstände, Materialien, Stoffe oder elektronischen Dateien, die das Geschäftsgeheimnis enthalten oder verkörpern, und	3.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거나 구체화되어 있으며, 침해자가 보유하거나 소유 중인 문서, 물건, 재료, 소재 또는 전자파일
4. die Person, von der sie das Geschäftsgeheimnis erlangt haben und der gegenüber sie es offenbart haben.	4. 영업비밀을 획득해서 공개한 사람
(2) Erteilt der Rechtsverletzer vorsätzlich	(2) 침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정보를 제공

oder grob fahrlässig die Auskunft nicht, verspätet, falsch oder unvollständig, ist er dem Inhaber des Geschäftsgeheimnisses zum Ersatz des daraus entstehenden Schadens verpflichtet.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거나 잘못 제공하거나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경우 침해자는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 9 Anspruchsausschluss bei Unverhältnismäßigkeit	**제9조 (불균형한 경우 청구제외)**
Die Ansprüche nach den §§ 6 bis 8 Absatz 1 sind ausgeschlossen, wenn die Erfüllung im Einzelfall unverhältnismäßig wäre, unter Berücksichtigung insbesondere 1. des Wertes oder eines anderen spezifischen Merkmals des Geschäftsgeheimnisses, 2. der getroffenen Geheimhaltungsmaßnahmen, 3. des Verhaltens des Rechtsverletzers bei Erlangung, Nutzung oder Offenlegung des Geschäftsgeheimnisses, 4. der Folgen der rechtswidrigen Nutzung oder Offenlegung des Geschäftsgeheimnisses, 5. der berechtigten Interessen des Inhabers des Geschäftsgeheimnisses und des Rechtsverletzers sowie der Auswirkungen, die die Erfüllung der Ansprüche für beide haben könnte, 6. der berechtigten Interessen Dritter oder 7. des öffentlichen Interesses.	제6조부터 제8조제1항까지에 따른 청구권은 예외적으로 특히 이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비추어 불균형한 경우는 제외된다. 1. 영업비밀의 가치나 다른 특정한 특징 2. 취해진 비밀유지조치 3.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또는 공개 시 침해자의 태도 4. 영업비밀의 불법 사용이나 공개의 결과 5.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양측의 정당한 이익 및 양측의 청구권 이행에 미칠 수 있는 결과 6. 제3자의 정당한 이익 7. 공공의 이익
§ 10 Haftung des Rechtsverletzers	**제10조 (침해자의 책임)**
(1) Ein Rechtsverletzer, der vorsätzlich oder fahrlässig handelt, ist dem Inhaber des Geschäftsgeheimnisses zum Ersatz des daraus entstehenden Schadens verpflichtet. § 619a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bleibt unberührt.	(1) 고의 또는 과실로 행위한 침해자는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619a조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Bei der Bemessung des Schadensersatzes kann auch der Gewinn, den der Rechtsverletzer durch die Verletzung des Rechts erzielt hat, berücksichtigt werden. Der Schadensersatzanspruch kann auch auf der Grundlage des Betrages bestimmt werden, den der Rechtsverletzer als angemessene Vergütung hätte entrichten müssen, wenn er die Zustimmung zur Erlangung, Nutzung oder Offenlegung des Geschäftsgeheimnisses eingeholt hätte.	(2) 손해배상 책정 시 침해자가 법을 위반하여 얻은 이익도 반영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는 침해자가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것에 동의를 받을 때 적당한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할 수 있다.
(3) Der Inhaber des Geschäftsgeheimnisses kann auch wegen des Schadens, der nicht Vermögensschaden ist, von dem Rechtsverletzer eine Entschädigung in Geld verlangen, soweit dies der Billigkeit entspricht.	(3) 영업비밀 보유자는 공평에 부합하면 재산상의 손해가 아닌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금을 침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11 Abfindung in Geld	제11조(보상금)
(1) Ein Rechtsverletzer, der weder vorsätzlich noch fahrlässig gehandelt hat, kann zur Abwendung der Ansprüche nach den §§ 6 oder 7 den Inhaber des Geschäftsgeheimnisses in Geld abfinden, wenn dem Rechtsverletzer durch die Erfüllung der Ansprüche ein unverhältnismäßig großer Nachteil entstehen würde und wenn die Abfindung in Geld als angemessen erscheint.	(1) 고의 또는 과실 없이 행위를 했던 침해자는 청구권의 이행으로 과도하게 큰 불이익이 침해자에게 발생할 경우 그리고 보상금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청구권을 피하기 위해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Die Höhe der Abfindung in Geld bemisst sich nach der Vergütung, die im Falle einer vertraglichen Einräumung des Nutzungsrechts angemessen wäre. Sie darf den Betrag nicht übersteigen, der einer Vergütung im Sinne von Satz 1 für	(2) 보상금의 액수는 계약상 사용권이 허가되었을 때의 적절한 보수에 따라 책정된다. 이 보상금 액수는 영업비밀 보유자가 금지명령구제를 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제1문에서 의미하는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die Länge des Zeitraums entspricht, in dem dem Inhaber des Geschäftsgeheimnisses ein Unterlassungsanspruch zusteht.	
§ 12 Haftung des Inhabers eines Unternehmens	제12조 (회사 소유자의 책임)
Ist der Rechtsverletzer Beschäftigter oder Beauftragter eines Unternehmens, so hat der Inhaber des Geschäftsgeheimnisses die Ansprüche nach den §§ 6 bis 8 auch gegen den Inhaber des Unternehmens. Für den Anspruch nach § 8 Absatz 2 gilt dies nur, wenn der Inhaber des Unternehmens vorsätzlich oder grob fahrlässig die Auskunft nicht, verspätet, falsch oder unvollständig erteilt hat.	침해자가 회사의 직원인 경우 영업비밀 보유자는 회사 소유자에 대해서도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청구권을 가진다. 제8조 제2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 회사 소유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거나 잘못 제공하거나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13 Herausgabeanspruch nach Eintritt der Verjährung	제13조 (시효완성 후 반환청구)
Hat der Rechtsverletzer ein Geschäftsgeheimnis vorsätzlich oder fahrlässig erlangt, offengelegt oder genutzt und durch diese Verletzung eines Geschäftsgeheimnisses auf Kosten des Inhabers des Geschäftsgeheimnisses etwas erlangt, so ist er auch nach Eintritt der Verjährung des Schadensersatzanspruchs nach § 10 zur Herausgabe nach den Vorschriften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über die Herausgabe einer ungerechtfertigten Bereicherung verpflichtet. Dieser Anspruch verjährt sechs Jahre nach seiner Entstehung.	침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영업비밀을 획득, 공개 또는 사용했고 이러한 영업비밀 위반을 통해 영업비밀 보유자의 비용으로 이득을 얻은 경우 침해자는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완성 후에도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민법」 조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청구권은 발생 후 6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 14 Missbrauchsverbot	제14조 (권리남용 금지)
Die Geltendmachung der Ansprüche nach diesem Gesetz ist unzulässig, wenn sie unter Berücksichtigung der gesamten	이 법에 따른 청구권 주장은 전체 상황을 판단했을 때 청구권 주장이 권리남용인 경우 허용하지 아니한다. 청구권 주장의 권리남용 시

Umstände missbräuchlich ist. Bei missbräuchlicher Geltendmachung kann der Anspruchsgegner Ersatz der für seine Rechtsverteidigung erforderlichen Aufwendungen verlangen. Weitergehende Ersatzansprüche bleiben unberührt.	피청구인은 법적 방어에 필요한 비용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추가 보상 청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Abschnitt 3 **Verfahren in Geschäftsgeheimnisstreitsachen**	**제3장 영업비밀소송절차**
§ 15 Sachliche und örtliche Zuständigkeit; Verordnungsermächtigung	**제15조 (사물관할과 토지관할, 명령위임)**
(1) Für Klagen vor den ordentlichen Gerichten, durch die Ansprüche nach diesem Gesetz geltend gemacht werden, sind die Landgerichte ohne Rücksicht auf den Streitwert ausschließlich zuständig.	(1) 이 법에 따라 청구권을 주장하는 일반 법원의 소송은 소송물 가액에 상관없이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2) Für Klagen nach Absatz 1 ist das Gericht ausschließlich zuständig, in dessen Bezirk der Beklagte seinen allgemeinen Gerichtsstand hat. Hat der Beklagte im Inland keinen allgemeinen Gerichtsstand, ist nur das Gericht zuständig, in dessen Bezirk die Handlung begangen worden ist.	(2) 제1항에 따른 소송은 피고 소재지가 있는 지역의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피고가 국내에 소재지가 없는 경우 불법행위를 저지른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3) Die Landesregierungen werden ermächtigt, durch Rechtsverordnung einem Landgericht die Klagen nach Absatz 1 der Bezirke mehrerer Landgerichte zuzuweisen. Die Landesregierungen können diese Ermächtigung durch Rechtsverordnung auf die Landesjustizverwaltungen übertragen. Die Länder können außerdem durch Vereinbarung die den Gerichten eines Landes obliegenden Klagen nach Absatz 1 insgesamt oder teilweise dem zuständigen	(3) 연방정부는 법규명령을 통해 여러 지방법원에서 제1항에 따라 제기된 소를 하나의 지방법원에 배정할 권한을 가진다. 지방법원은 이러한 권한을 법규명령을 통해 지방사법행정에 위임할 수 있다. 주정부는 또한 합의를 통해 제1항에 따라 주(州)지방법원의 책임인 소송을 전부 또는 일부 다른 주(州)의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Gericht eines anderen Landes übertragen.	
§ 16 Geheimhaltung	**제16조 (비밀 유지)**
(1) Bei Klagen, durch die Ansprüche nach diesem Gesetz geltend gemacht werden (Geschäftsgeheimnisstreitsachen) kann das Gericht der Hauptsache auf Antrag einer Partei streitgegenständliche Informationen ganz oder teilweise als geheimhaltungsbedürftig einstufen, wenn diese ein Geschäftsgeheimnis sein können.	(1) 이 법에 따라 청구권을 주장하는 소송에서(영업비밀소송) 본안법원은 소송 대상인 정보가 영업비밀일 수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 비밀로 분류할 수 있다.
(2) Die Parteien, ihre Prozessvertreter, Zeugen, Sachverständige, sonstige Vertreter und alle sonstigen Personen, die an Geschäftsgeheimnisstreitsachen beteiligt sind oder die Zugang zu Dokumenten eines solchen Verfahrens haben, müssen als geheimhaltungsbedürftig eingestufte Informationen vertraulich behandeln und dürfen diese außerhalb eines gerichtlichen Verfahrens nicht nutzen oder offenlegen, es sei denn, dass sie von diesen außerhalb des Verfahrens Kenntnis erlangt haben.	(2) 당사자, 소송대리인, 증인, 전문가, 그밖의 대리인 및 영업비밀소송에 관련되거나 이러한 절차의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은 법정 절차 외에서 알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로 분류된 정보를 기밀로 취급하여야 하며 법정 절차 외에서 이를 이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3) Wenn das Gericht eine Entscheidung nach Absatz 1 trifft, darf Dritten, die ein Recht auf Akteneinsicht haben, nur ein Akteninhalt zur Verfügung gestellt werden, in dem die Geschäftsgeheimnisse enthaltenden Ausführungen unkenntlich gemacht wurden.	(3) 법원이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내린 경우 문서를 열람할 권리가 있는 제3자에게 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내용을 인식할 수 없게 만든 문서 내용만 제공하여야 한다.
§ 17 Ordnungsmittel	**제17조 (질서벌)**
Das Gericht der Hauptsache kann auf Antrag einer Partei bei Zuwiderhandlungen gegen die Verpflichtungen nach § 16 Absatz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본안법원은 제16조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대 100,000유로 이하의 과태료나 6개월 이하 의

2 ein Ordnungsgeld bis zu 100 000 Euro oder Ordnungshaft bis zu sechs Monaten festsetzen und sofort vollstrecken. Bei der Festsetzung von Ordnungsgeld ist zugleich für den Fall, dass dieses nicht beigetrieben werden kann, zu bestimmen, in welchem Maße Ordnungshaft an seine Stelle tritt. Die Beschwerde gegen ein nach Satz 1 verhängtes Ordnungsmittel entfaltet aufschiebende Wirkung.	질서구류를 결정하고 즉시 집행할 수 있다. 과태료 결정 시 과태료를 강제 징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질서구류를 대신할지 정할 수 있다. 제1문에 따라 부과된 질서벌에 대한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18 Geheimhaltung nach Abschluss des Verfahrens	**제18조 (절차 종결 후 비밀 유지)**
Die Verpflichtungen nach § 16 Absatz 2 bestehen auch nach Abschluss des gerichtlichen Verfahrens fort. Dies gilt nicht, wenn das Gericht der Hauptsache das Vorliegen des streitgegenständlichen Geschäftsgeheimnisses durch rechtskräftiges Urteil verneint hat oder sobald die streitgegenständlichen Informationen für Personen in den Kreisen, die üblicherweise mit solchen Informationen umgehen, bekannt oder ohne Weiteres zugänglich werden.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무는 법정 절차의 종결 후에도 계속 유지된다. 이는 본안법원이 최종 판결을 통해 소송 대상인 영업비밀의 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소송 대상인 정보를 통상적으로 이를 다루는 계통의 사람들이 알게 되거나 쉽게 접근하게 되는 경우에는 준용되지 아니한다.
§ 19 Weitere gerichtliche Beschränkungen	**제19조 (그 밖의 법정 제한)**
(1) Zusätzlich zu § 16 Absatz 1 beschränkt das Gericht der Hauptsache zur Wahrung von Geschäftsgeheimnissen auf Antrag einer Partei den Zugang ganz oder teilweise auf eine bestimmte Anzahl von zuverlässigen Personen 1. zu von den Parteien oder Dritten eingereichten oder vorgelegten Dokumenten, die Geschäftsgeheimnisse enthalten können, oder	(1) 본안법원은 제16조제1항에 더하여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영업비밀의 유지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중 특정 인원수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1.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문서로서 당사자나 제3자가 제출했거나 제시한 문서

2. zur mündlichen Verhandlung, bei der Geschäftsgeheimnisse offengelegt werden könnten, und zu der Aufzeichnung oder dem Protokoll der mündlichen Verhandlung. Dies gilt nur, soweit nach Abwägung aller Umstände das Geheimhaltungsinteresse das Recht der Beteiligten auf rechtliches Gehör auch unter Beachtung ihres Rechts auf effektiven Rechtsschutz und ein faires Verfahren übersteigt. Es ist jeweils mindestens einer natürlichen Person jeder Partei und ihren Prozessvertretern oder sonstigen Vertretern Zugang zu gewähren. Im Übrigen bestimmt das Gericht nach freiem Ermessen, welche Anordnungen zur Erreichung des Zwecks erforderlich sind.	2. 영업비밀이 공개될 수 있는 구두변론과 구두변론 조서나 기록물 이는 모든 상황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효과적인 권리보호와 공정한 절차에 대한 관계자의 권리를 반영하여 비밀 유지의 이익이 법적 청문권에 대한 관계자의 권리에 우선하는 경우에만 준용된다. 각 당사자의 최소 한 명 이상의 자연인과 그 소송대리인이나 그 밖의 대리인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한 법원은 재량에 따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명령이 필요한지 결정한다.
(2) Wenn das Gericht Beschränkungen nach Absatz 1 Satz 1 trifft, 1. kann die Öffentlichkeit auf Antrag von der mündlichen Verhandlung ausgeschlossen werden und 2. gilt § 16 Absatz 3 für nicht zugelassene Personen.	(2) 법원에서 제1항제1문에 따른 제한을 결정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두변론 신청 시 공개를 배제할 수 있다. 2. 제16조제3항은 허가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준용된다.
(3) Die §§ 16 bis 19 Absatz 1 und 2 gelten entsprechend im Verfahren der Zwangsvollstreckung, wenn das Gericht der Hauptsache Informationen nach § 16 Absatz 1 als geheimhaltungsbedürftig eingestuft oder zusätzliche Beschränkungen nach Absatz 1 Satz 1 getroffen hat.	(3) 제16조부터 제19조제1항 및 제2항까지는 본안법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보를 비밀로 분류하였거나 제1항제1문에 따른 추가 제한을 결정한 경우에 강제집행 절차에서 준용된다.
§ 20 Verfahren bei Maßnahmen nach den 16 bis 19)	**제20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조치 따른 절차)**
(1) Das Gericht der Hauptsache kann eine	(1) 본안법원은 계류 중인 법적 분쟁에 따라

Beschränkung nach § 16 Absatz 1 und § 19 Absatz 1 ab Anhängigkeit des Rechtsstreits anordnen.	제16조제1항과 제19조제1항에 따른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2) Die andere Partei ist spätestens nach Anordnung der Maßnahme vom Gericht zu hören. Das Gericht kann die Maßnahmen nach Anhörung der Parteien aufheben oder abändern.	(2) 상대방은 법원의 조치 이후에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을 후 조치를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3) Die den Antrag nach § 16 Absatz 1 oder § 19 Absatz 1 stellende Partei muss glaubhaft machen, dass es sich bei der streitgegenständlichen Information um ein Geschäftsgeheimnis handelt.	(3) 제16조제1항이나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제기한 당사자는 소송 대상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4) Werden mit dem Antrag oder nach einer Anordnung nach § 16 Absatz 1 oder einer Anordnung nach § 19 Absatz 1 Satz 1 Nummer 1 Schriftstücke und sonstige Unterlagen eingereicht oder vorgelegt, muss die den Antrag stellende Partei diejenigen Ausführungen kennzeichnen, die nach ihrem Vorbringen Geschäftsgeheimnisse enthalten. Im Fall des § 19 Absatz 1 Satz 1 Nummer 1 muss sie zusätzlich eine Fassung ohne Preisgabe von Geschäftsgeheimnissen vorlegen, die eingesehen werden kann. Wird keine solche um die Geschäftsgeheimnisse reduzierte Fassung vorgelegt, kann das Gericht von der Zustimmung zur Einsichtnahme ausgehen, es sei denn, ihm sind besondere Umstände bekannt, die eine solche Vermutung nicht rechtfertigen.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나 명령으로 또는 제19조제1항제1문제1호에 따른 명령으로 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시한 경우 신청을 제기한 당사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러한 설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제1문제1호의 경우 영업비밀 누설 없이 열람할 수 있는 생략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영업비밀을 제한한 이러한 생략본을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열람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추정이 부당한 특별한 상황임을 법원에서 인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Das Gericht entscheidet über den Antrag durch Beschluss. Gibt es dem Antrag statt, hat es die Beteiligten auf	(5) 법원은 결정을 통해 신청에 대해 결정한다. 신청이 허가되면 제16조제2항과 제18조에 따른 명령의 결과와 제17조에 따른 위반행

die Wirkung der Anordnung nach § 16 Absatz 2 und § 18 und Folgen der Zuwiderhandlung nach § 17 hinzuweisen. Beabsichtigt das Gericht die Zurückweisung des Antrags, hat es die den Antrag stellende Partei darauf und auf die Gründe hierfür hinzuweisen und ihr binnen einer zu bestimmenden Frist Gelegenheit zur Stellungnahme zu geben. Die Einstufung als geheimhaltungsbedürftig nach § 16 Absatz 1 und die Anordnung der Beschränkung nach § 19 Absatz 1 können nur gemeinsam mit dem Rechtsmittel in der Hauptsache angefochten werden. Im Übrigen findet die sofortige Beschwerde statt.	위의 결과에 관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은 신청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근거를 알리고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비밀분류와 제19조제1항에 따른 제한명령은 본안에서 항소와 함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 밖에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6) Gericht der Hauptsache im Sinne dieses Abschnitts ist 1. das Gericht des ersten Rechtszuges oder 2. das Berufungsgericht, wenn die Hauptsache in der Berufungsinstanz anhängig ist.	(6) 이 절에서 의미하는 본안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제1심 법원 2. 본안이 항소심에 계속 중인 경우 항소법원
§ 21 Bekanntmachung des Urteils	**제21조 (판결의 고지)**
(1) Der obsiegenden Partei einer Geschäftsgeheimnisstreitsache kann auf Antrag in der Urteilsformel die Befugnis zugesprochen werden, das Urteil oder Informationen über das Urteil auf Kosten der unterliegenden Partei öffentlich bekannt zu machen, wenn die obsiegende Partei hierfür ein berechtigtes Interesse darlegt. Form und Umfang der öffentlichen Bekanntmachung werden unter Berücksichtigung der berechtigten Interessen der im Urteil genannten Personen in der Urteilsformel bestimmt.	(1) 영업비밀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정당한 이익을 소명하는 경우 그 신청이 있으면 판결이나 판결에 관한 정보를 패소한 당사자의 비용으로 공개하도록 할 권한이 승소한 당사자에게 있다고 판결주문에서 결정할 수 있다. 공개고지의 형식과 범위는 판결문에 명시된 사람의 정당한 이익을 반영하여 판결주문에서 정한다.

(2) Bei den Entscheidungen über die öffentliche Bekanntmachung nach Absatz 1 Satz 1 ist insbesondere zu berücksichtigen: 1. der Wert des Geschäftsgeheimnisses, 2. das Verhalten des Rechtsverletzers bei Erlangung, Nutzung oder Offenlegung des Geschäftsgeheimnisses, 3. die Folgen der rechtswidrigen Nutzung oder Offenlegung des Geschäftsgeheimnisses und 4. die Wahrscheinlichkeit einer weiteren rechtswidrigen Nutzung oder Offenlegung des Geschäftsgeheimnisses durch den Rechtsverletzer.	(2) 제1항제1문에 따른 공개고지에 대한 결정 시 특히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업비밀의 가치 2.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또는 공개 시 침해자의 행위 3. 영업비밀의 불법 사용이나 공개의 결과 4. 침해자를 통한 영업비밀의 다른 불법 사용이나 공개 가능성
(3) Das Urteil darf erst nach Rechtskraft bekannt gemacht werden, es sei denn, das Gericht bestimmt etwas anderes.	(3) 판결은 법원이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확정력이 발생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 22 Streitwertbegünstigung	**제22조 (소송물 가액 특혜)**
(1) Macht bei Geschäftsgeheimnisstreitsachen eine Partei glaubhaft, dass die Belastung mit den Prozesskosten nach dem vollen Streitwert ihre wirtschaftliche Lage erheblich gefährden würde, so kann das Gericht auf ihren Antrag anordnen, dass die Verpflichtung dieser Partei zur Zahlung von Gerichtskosten sich nach dem ihrer Wirtschaftslage angepassten Teil des Streitwerts bemisst.	(1) 영업비밀소송에서 한 당사자가 전체 소송물 가액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이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소명하는 경우 법원은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당사자의 법원비용 납부 의무가 경제적인 상황에 맞는 소송물 가액에 따라 책정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다.
(2) Die Anordnung nach Absatz 1 bewirkt auch, dass 1. die begünstigte Partei die Gebühren ihres Rechtsanwalts ebenfalls nur nach diesem Teil des Streitwerts zu entrichten hat,	(2) 제1항에 따른 명령은 다음이 적용된다. 1. 수혜 당사자가 소송물 가액의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도록 한다.

2. die begünstigte Partei, soweit ihr Kosten des Rechtsstreits auferlegt werden oder soweit sie diese übernimmt, die von dem Gegner entrichteten Gerichtsgebühren und die Gebühren seines Rechtsanwalts nur nach diesem Teil des Streitwerts zu erstatten hat und	2. 수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이 부과되거나 청구된 경우 수혜 당사자는 상대방이 납부한 법원 수수료와 변호사비용을 소송물 가액의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상환하도록 한다.
3. der Rechtsanwalt der begünstigten Partei seine Gebühren von dem Gegner nach dem für diesen geltenden Streitwert beitreiben kann, soweit die außergerichtlichen Kosten dem Gegner auferlegt oder von ihm übernommen werden.	3. 재판외 비용이 상대방에게 부과되거나 청구된 경우 수혜 당사자의 변호사가 상대방에게 적용되는 소송물 가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그 변호사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3) Der Antrag nach Absatz 1 ist vor der Verhandlung zur Hauptsache zu stellen. Danach ist er nur zulässig, wenn der angenommene oder festgesetzte Streitwert durch das Gericht heraufgesetzt wird. Der Antrag kann vor der Geschäftsstelle des Gerichts zur Niederschrift erklärt werden. Vor der Entscheidung über den Antrag ist der Gegner zu hören.	(3)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본안심리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신청은 법원에서 수락 또는 책정된 소송물 가액을 올리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신청서는 기록문서를 위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신청에 대한 결정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Abschnitt 4 Strafvorschriften	**제4장 벌칙규정**
§ 23 Verletzung von Geschäftsgeheimnissen	**제23조 (영업비밀 침해)**
(1)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wird bestraft, wer zur Förderung des eigenen oder fremden Wettbewerbs, aus Eigennutz, zugunsten eines Dritten oder in der Absicht, dem Inhaber eines Unternehmens Schaden zuzufügen,	(1) 자신의 경쟁력이나 타인의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또는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또는 회사 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위 법행위를 범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자유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한다.
1. entgegen § 4 Absatz 1 Nummer 1 ein	1. 제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Geschäftsgeheimnis erlangt, 2. entgegen § 4 Absatz 2 Nummer 1 Buchstabe a ein Geschäftsgeheimnis nutzt oder offenlegt oder 3. entgegen § 4 Absatz 2 Nummer 3 als eine bei einem Unternehmen beschäftigte Person ein Geschäftsgeheimnis, das ihr im Rahmen des Beschäftigungsverhältnisses anvertraut worden oder zugänglich geworden ist, während der eltungsdauer des Beschäftigungsverhältnisses offenlegt.	획득한 경우 2. 제4조제2항제1호a목을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한 경우 3. 제4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회사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고용관계의 유지기간 중에 고용관계의 범위에서 알게 되었고 접근했던 영업비밀을 공개한 경우
(2) Ebenso wird bestraft, wer zur Förderung des eigenen oder fremden Wettbewerbs, aus Eigennutz, zugunsten eines Dritten oder in der Absicht, dem Inhaber eines Unternehmens Schaden zuzufügen, ein Geschäftsgeheimnis nutzt oder offenlegt, das er durch eine fremde Handlung nach Absatz 1 Nummer 2 oder Nummer 3 erlangt hat.	(2) 자신의 경쟁력이나 타인의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또는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또는 회사 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타인의 행위를 통해 얻은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
(3)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wird bestraft, wer zur Förderung des eigenen oder fremden Wettbewerbs oder aus Eigennutz entgegen § 4 Absatz 2 Nummer 2 oder Nummer 3 ein Geschäftsgeheimnis, das eine ihm im geschäftlichen Verkehr anvertraute geheime Vorlage oder Vorschrift technischer Art ist, nutzt oder offenlegt.	(3) 자신의 경쟁력이나 타인의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4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반하여 영업 거래에서 알게 된 기밀 제안서나 기술규정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한 경우 최고 2년 이하의 자유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한다.
(4)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wird bestraft, wer 1.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oder des Absatzes 2 gewerbsmäßig handelt, 2.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Nummer 2 oder Nummer 3 oder des Absatzes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최고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한다. 1.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나 제3호 또는 제2항의 경우에

2 bei der Offenlegung weiß, dass das Geschäftsgeheimnis im Ausland genutzt werden soll, oder	공개 시 해외에서 영업비밀을 사용하게 될 것을 아는 경우
3.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Nummer 2 oder des Absatzes 2 das Geschäftsgeheimnis im Ausland nutzt.	3. 제1항제2호나 제2항의 경우에 해외에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경우
(5) Der Versuch ist strafbar.	(5) 미수범은 처벌할 수 있다.
(6) Beihilfehandlungen einer in § 53 Absatz 1 Satz 1 Nummer 5 der Strafprozessordnung genannten Person sind nicht rechtswidrig, wenn sie sich auf die Entgegennahme, Auswertung oder Veröffentlichung des Geschäftsgeheimnisses beschränken.	(6) 「형사소송법」 제53조제1항제1문제5호에 명시된 사람의 방조행위는 그 방조행위가 영업비밀의 수령, 평가 또는 공개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불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7) § 5 Nummer 7 des Strafgesetzbuches gilt entsprechend. Die §§ 30 und 31 des Strafgesetzbuches gelten entsprechend, wenn der Täter zur Förderung des eigenen oder fremden Wettbewerbs oder aus Eigennutz handelt.	(7) 「 형법 」 제5조제7호가 준용된다. 「형법」 제30조와 제31조는 정범이 자신의 경쟁력이나 타인의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위반한 경우 준용된다.
(8) Die Tat wird nur auf Antrag verfolgt, es sei denn, dass die Strafverfolgungsbehörde wegen des besonderen öffentlichen Interesses an der Strafverfolgung ein Einschreiten von Amts wegen für geboten hält.	(8) 수사기관이 특별한 공익을 위해 직권으로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소가 있는 경우에만 범죄를 수사한다.

2. 미국 연방 경제스파이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원 본 출처: 국회도서관, US CODE
번역본 출처: 국회도서관, 자체번역

경제스파이법(EEA)

국 가	미국
원 법 률 명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제 정	1996.10.11. PL 104-294
개 정	2016.05.11. PL 114-153

§1831. Economic espionage	제1831조 경제스파이
(a) In General.-Whoever, intending or knowing that the offense will benefit any foreign government, foreign instrumentality, or foreign agent, knowingly-	(a) 총칙 - 외국의 정부, 기관 또는 대리인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다음을 행하는 자는 50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둘을 병과한다 -
(1) steals, or without authorization appropriates, takes, carries away, or conceals, or by fraud, artifice, or deception obtains a trade secret;	(1) 통상기밀을 절취하거나, 허가 없이 횡령, 취득, 운반 또는 은닉하거나, 부정수단, 속임수 또는 사기의 방법으로 취득함;
(2) without authorization copies, duplicates, sketches, draws, photographs, downloads, uploads, alters, destroys, photocopies, replicates, transmits, delivers, sends, mails, communicates, or conveys a trade secret;	(2) 통상기밀을 허가 없이 복제, 모사, 스케치, 사생, 사진촬영, 다운로드, 업로드, 변경, 파기, 복사, 복제, 전송, 전달, 송신, 우송, 통신 또는 호송함;
(3) receives, buys, or possesses a trade secret, knowing the same to have been stolen or appropriated, obtained, or converted without authorization;	(3) 어떤 통상기밀이 절취되거나 허가 없이 횡령, 취득 또는 부정사용된 것임을 알면서 해당 기밀을 입수, 구매 또는 소유함;
(4) attempts to commit any offense described in any of paragraphs (1) through (3); or	(4) (1)내지 (3)호에 언급된 행위를 시도함; 또는
(5) conspires with one or more other persons to commit any offense described in any of paragraphs (1) through (3), and one or more of such persons do any act to effect the object of the conspiracy, shall,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b), be fined not more than $5,000,000 or imprisoned not more than 15 years, or both.	(5) 1인 이상과 더불어 (1)내지 (3)호에 언급된 행위를 공모하고, 해당 공모자들이 공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를 함.
(b) Organizations.-Any organization that commits any offense described in subsection (a) shall be fined not more than the greater of $10,000,000 or 3 times the value of the stolen trade secret to the organization, including expenses for research and design	(b) 단체 - (a)항에 언급된 범죄를 행하는 단체는 1천만 달러 또는 연구 및 설계비용과 영업비밀을 복제하여 해당 단체가 회피한 기타 비용을 포함하여 영업비밀의 절도로써 그 단체가 얻은 가치의 3배 중 큰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d other costs of reproducing the trade secret that the organization has thereby avoided.	
§1832. Theft of trade secrets	제1832조 통상기밀 절취
(a) Whoever, with intent to convert a trade secret, that is related to a product or service used in or intended for use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to the economic benefit of anyone other than the owner thereof, and intending or knowing that the offense will, injure any owner of that trade secret, knowingly-	(a) 국내외 상업용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되도록 의도된 상품 서비스와 관계되거나 그것에 포함된 통상기밀을 그것의 소유주 이외의 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정사용할 목적에서,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해당 기밀의 소유주에게 손해를 끼칠 것임을 인지하고 또한 그러할 의도에서 다음을 행하는 자는 이 편에서 정하는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둘을 병과한다 -
(1) steals, or without authorization appropriates, takes, carries away, or conceals, or by fraud, artifice, or deception obtains such information;	(1) 해당 정보를 절취하거나, 허가 없이 횡령, 취득, 운반 또는 은닉하거나, 부정수단, 속임수 또는 사기의 방법으로 취득함;
(2) without authorization copies, duplicates, sketches, draws, photographs, downloads, uploads, alters, destroys, photocopies, replicates, transmits, delivers, sends, mails, communicates, or conveys such information;	(2) 해당 정보를 허가 없이 복제, 모사, 스케치, 사생, 사진촬영, 다운로드, 업로드, 변경, 파기, 복사, 복제, 전송, 전달, 송신, 우송, 통신 또는 호송함;
(3) receives, buys, or possesses such information, knowing the same to have been stolen or appropriated, obtained, or converted without authorization;	(3) 해당 정보가 절취되거나 허가 없이 횡령, 취득 또는 부정 사용된 것임을 알면서 해당 기밀을 입수, 구매 또는 소유함;
(4) attempts to commit any offense d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3); or	(4) (1)내지 (3)호에 언급된 행위를 시도함; 또는
(5) conspires with one or more other persons to commit any offense d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3), and one or more of such persons do any act to effect the object of the conspiracy, shall,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b), be fined under this title or imprisoned not more than 10 years, or both.	(5) 1인 이상과 더불어 (1)내지 (3)호에 언급된 행위를 공모하고, 해당 공모자들이 공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를 함.

(b) Any organization that commits any offense described in subsection (a) shall be fined not more than the greater of $5,000,000 or 3 times the value of the stolen trade secret to the organization, including expenses for research and design and other costs of reproducing the trade secret that the organization has thereby avoided.	(b) (a)항에 언급된 범죄를 행하는 단체는 5백만 달러 또는 연구 및 설계 비용과 영업비밀을 복제하여 해당 단체가 회피한 기타 비용을 포함하여 영업비밀의 절도로써 그 단체가 얻은 가치의 3배 중 큰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33. Exceptions to prohibitions	제1833조 금지의 예외
(a) In General.-This chapter does not prohibit or create a private right of action for- (1) any otherwise lawful activity conducted by a governmental entity of the United States, a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f a State; or (2) the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b).	(a) 일반규정 - 이 법은 다음을 금지 또는 개인 소권을 성립하지 아니한다: (1) 미국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주의 하부 행정구역 기관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 또는 (2) 제 (b)항에 따른 영업비밀의 공개
(b) Immunity From Liability for Confidential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to the Government or in a Court Filing.- (1) Immunity.-An individual shall not be held criminally or civilly liable under any Federal or State trade secret law for the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that- (A) is made- (i) in confidence to a Federal, State, or local government official,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or to an attorney; and (ii) solely for the purpose of reporting or investigating a suspected violation of law; or (B) is made in a complaint or other document filed in a lawsuit or other proceeding, if such filing is made under seal.	(b) 정부 또는 법원에 영업비밀을 공개한 것에 대한 면책 - (1) 면책 - 개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의 공개에 대하여 영업비밀 관련 연방법이나 주(州)법의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A) 다음과 같이 공개된 영업비밀 - (i) 직간접적으로 연방·주(州)·지방정부 공무원 또는 검사에게 비밀로 공개하였다. (ii) 오로지 의심되는 법률 위반의 보고나 조사를 위하여 공개하였다. (B) 소송이나 다른 절차에서 제출된 소장이나 기타 문서를 통하여 공개된 영업비밀. 단, 봉인 후에 제출이 이루어졌다.

(2) Use of trade secret information in anti-retaliation lawsuit.-An individual who files a lawsuit for retaliation by an employer for reporting a suspected violation of law may disclose the trade secret to the attorney of the individual and use the trade secret information in the court proceeding, if the individual-	(2) 반보복(反報復) 소송에서 영업비밀 정보의 사용 - 어떠한 개인이 다음 각 목과 같이 행위한다면,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고발에 따른 고용주의 보복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개인은 자신의 변호사에게 영업비밀을 공개하고 법원 절차에서 영업비밀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A) files any document containing the trade secret under seal; and	(A) 영업비밀을 포함한 서류를 봉인하여 제출한다.
(B) does not disclose the trade secret, except pursuant to court order.	(B) 법원 명령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업비밀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3) Notice.-	(3) 고지 -
(A) In general.-An employer shall provide notice of the immunity set forth in this subsection in any contract or agreement with an employee that governs the use of a trade secret or other confidential information.	(A) 일반 규정 - 고용주는 영업비밀이나 기타 기밀 정보의 사용을 규율하는 피용인과의 모든 계약이나 합의에서 이항에 규정된 면책을 고지한다.
(B) Policy document.-An employer shall be considered to be in compliance with the notice requirement in subparagraph (A) if the employer provides a cross-reference to a policy document provided to the employee that sets forth the employer's reporting policy for a suspected violation of law.	(B) 정책 문서 - 고용주가 교차 참조를 위하여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용주 정책 보고서를 피용인에게 제공한다, (A)목의 고지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C) Non-compliance.-If an employer does not comply with the notice requirement in subparagraph (A), the employer may not be awarded exemplary damages or attorney fees under subparagraph (C) or (D) of section 1836(b)(3) in an action against an employee to whom notice was not provided.	(C) 불이행 - 고용주는 (A)목의 고지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다면, 고지를 받지 아니한 피용인에 대한 소송에서 제1836조 제(b)항 제(3)호 (C)목이나 (D)목의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변호사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다.
(D) Applicability.-This paragraph shall apply to contracts and agreements that are entered into or updated after the date of enactment of this subsection.	(D) 적용 가능성 - 이 호는 이 항의 제정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과 합의에 적용된다.

(4) Employee defined.-For purposes of this subsection, the term "employee" includes any individual performing work as a contractor or consultant for an employer.	(4) 피용인의 정의 - 이 항에서, "피용인"에는 고용주의 하청업자나 고문으로 업무하는 개인이 포함된다.
(5) Rule of construction.-Except as expressly provided for under this subsection, nothing in this subsection shall be construed to authorize, or limit liability for, an act that is otherwise prohibited by law, such as the unlawful access of material by unauthorized means.	(5) 해석 규칙 - 이 항에 따라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이 항은 미승인된 수단에 의한 자료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등 법률이 달리 금지하는 행위를 허용하거나 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834. Criminal forfeiture	제1834조 몰수
Forfeiture, destruction, and restitution relating to this chapter shall be subject to section 2323, to the extent provided in that section, in addition to any other similar remedies provided by law.	이 법과 관련된 몰수, 파기 및 배상은 법에서 제공하는 기타 유사한 구제 수단에 추가하여 해당 절에 제공된 범위 내에서 2323조의 적용을 받는다.
§1835. Orders to preserve confidentiality	제1835조 기밀보전 명령
(a) In General.-In any prosecution or other proceeding under this chapter, the court shall enter such orders and take such other action as may be necessary and appropriate to preserve the confidentiality of trade secrets, consistent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Federal Rules of Criminal and Civil Procedure,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 and all other applicable laws. An interlocutory appeal by the United States shall lie from a decision or order of a district court authorizing or directing the disclosure of any trade secret.	(a) 일반규정 - 법원은 이 법에 따른 기소 또는 기타 소송절차에서 '연방형사규칙', '연방민사규칙', '연방증거규칙' 및 기타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의 요건과 일치하는, 통상기밀보전에 필요한 명령 및 기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간 판결에 대한 국가의 항소는 통상기밀 공개를 허가 또는 지시하는 지방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제기된다.
(b) Rights of Trade Secret Owners.-The court may not authorize or direct the disclosure	(b) 영업비밀 소유자의 권리 - 법원은 소유자가 영업비밀로 획득한 이익을 기술하는 진술

of any information the owner asserts to be a trade secret unless the court allows the owner the opportunity to file a submission under seal that describes the interest of the owner in keeping the information confidential. No submission under seal made under this subsection may be used in a prosecution under this chapter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ose set forth in this section, or otherwise required by law.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a trade secret to the United States or the court in connection with a prosecution under this chapter shall not constitute a waiver of trade secret protection, and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relating to a trade secret in connection with a prosecution under this chapter shall not constitute a waiver of trade secret protection unless the trade secret owner expressly consents to such waiver.	을 봉인 후 제출하도록 허용하지 아니하였다면, 소유자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의 공개를 허용하거나 지시할 수 없다. 이 항에 따라 봉인된 진술은 이 조의 목적이나 법률이 요구하는 다른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 장의 기소에서 사용될 수 없다. 영업비밀 소유자가 정보 포기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한다면, 이 장의 기소와 관련하여 영업비밀 정보를 정부나 법원에 제공하는 것은 영업비밀 보호의 포기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이 장의 기소와 관련하여 영업비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영업비밀 보호의 포기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1836. Civil proceedings	제1836조 민사소송
(a) The Attorney General may, in a civil action, obtain appropriate injunctive relief against any violation of this chapter.	(a) 법무장관은 민사소송에서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적절한 유지명령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b) Private Civil Actions.- (1) In general.-An owner of a trade secret that is misappropriated may bring a civil action under this subsection if the trade secret is related to a product or service used in, or intended for use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2) Civil seizure.- (A) In general.- (i) Application.-Based on an affidavit or verified complaint satisfying the	(b) 개인 민사 소송 - (1) 일반 규정 - 남용된 영업비밀의 소유자는 그 영업비밀이 주간(州間) 무역이 나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거나 사용하고자 하였던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련된다면 이 항에 따라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민사상 압수 - (A) 일반 규정 - (i) 적용 - 이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선서 진술서나 입증된 소장에 따라, 법원은

requirements of this paragraph, the court may, upon ex parte application but only in extraordinary circumstances, issue an order providing for the seizure of property necessary to prevent the propagation or dissemination of the trade secret that is the subject of the action.	일방 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상황에서만 소송의 주제인 영업비밀의 전달이나 보급 방지에 필요 한 재산의 압수를 규정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ii) Requirements for issuing order.-The court may not grant an application under clause (i) unless the court finds that it clearly appears from specific facts that-	(ii) 명령 발부 요건 - 법원은 다음 과 같은 사항이 구체적 사실로서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판단하지 아니한다면 (i)단의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 할 수 있다.
(I) an order issued pursuant to Rule 65 of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or another form of equitable relief would be inadequate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because the party to which the order would be issued would evade, avoid, or otherwise not comply with such an order;	(I) 명령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가 그 명령을 회피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준수하지 아니하여 「미연방민사소송규칙」 제65조에 따라 발부된 명령이나 다른 형태의 형평법상 구제 방법이 이 호의 목적 달성에 부적절하다.
(II) an immediate and irreparable injury will occur if such seizure is not ordered;	(II) 그 압수를 명령하지 아니하면 즉각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
(III) the harm to the applicant of denying the application outweighs the harm to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person against whom seizure would be ordered of granting the application and substantially outweighs the harm to any third parties who may be harmed by such seizure;	(III) 신청 거절에 따른 신청인의 손해가 신청 승인으로 압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정당한 이익의 손해보다 크고, 그 압수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제3자의 손해보다 실질적으로 크다.
(IV) the applicant is likely to succeed in showing that-	(IV) 신청인이 다음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
(aa) the information is a trade secret; and	(aa)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이다.
(bb) the person against whom seizure	(bb) 압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would be ordered-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
(AA) misappropriated the trade secret of the applicant by improper means; or	(AA)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남용하였다.
(BB) conspired to use improper means to misappropriate the trade secret of the applicant;	(BB)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남용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의 사용을 공모하였다.
(V) the person against whom seizure would be ordered has actual possession of-	(V) 압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다음의 사항을 실질적으로 점유한다 -
(aa) the trade secret; and	(aa) 영업비밀
(bb) any property to be seized;	(bb) 압수될 재산
(VI) the application describes with reasonable particularity the matter to be seized and, to the extent 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 identifies the location where the matter is to be seized;	(VI) 신청인이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압수될 물건을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압수 될 물건의 위치를 명시한다.
(VII) the person against whom seizure would be ordered, or persons acting in concert with such person, would destroy, move, hide, or otherwise make such matter inaccessible to the court, if the applicant were to proceed on notice to such person; and	(VII) 신청인이 압수를 고지하고 진행하면, 압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그와 협력하여 행위를 하는 사람이 그 물건을 파괴·이동·은닉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법원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VIII) the applicant has not publicized the requested seizure.	(VIII) 신청인이 청구된 압수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B) Elements of order.-If an order is issued under subparagraph (A), it shall-	(B) 명령의 구성 요소 - 명령이 (A)목에 따라 내려진다면, 다음 각 단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i) set forth findings of fact and conclusions of law required for the order;	(i) 명령에 필요한 사실 발견과 법률의 결론을 규정한다.
(ii) provide for the narrowest seizure of property necessary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and direct that the seizure be conducted in a	(ii) 이 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 압수를 허용하고, 그 압수가 제3자의 사업 운영 중단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영업비밀의 남용으로 피소된

manner that minimizes any interruption of the business operations of third parties and, to the extent possible, does not interrupt the legitimate business operations of the person accused of misappropriating the trade secret;	사람의 합법적 사업 운영을 중단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고 규정한다.
(iii)(I) be accompanied by an order protecting the seized property from disclosure by prohibiting access by the applicant or the person against whom the order is directed, and prohibiting any copies, in whole or in part, of the seized property, to prevent undue damage to the party against whom the order has issued or others, until such parties have an opportunity to be heard in court; and	(iii)(I) 명령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진술할 기회를 가질 때까지 그 당사자나 다른 사람의 과도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자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고 압수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복사를 금지하여 압수된 재산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명령이 수반된다.
(II) provide that if access is granted by the court to the applicant or the person against whom the order is directed, the access shall be consistent with subparagraph (D);	(II) 법원이 신청인이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접근을 승인한다면, 그 접근은 (D)목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iv) provide guidance to the law enforcement officials executing the seizure that clearly delineates the scope of the authority of the officials, including-	(iv) 압수를 집행하는 사법기관 공무원에 대한 지침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명확하게 기술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
(I) the hours during which the seizure may be executed; and	(I) 압수를 집행할 수 있는 시간
(II) whether force may be used to access locked areas;	(II) 잠금장치를 풀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v) set a date for a hearing described in subparagraph (F) at the earliest possible time, and not later than 7 days after the order has issued, unless the party against whom the order is directed and others harmed by the order consent to another date for the	(v) 명령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나 그 명령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다른 심리기일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면, 명령발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한 빠른 시기로 (F)목의 심리기일을 정한다. 단, 명령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나 그 명령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시기에 관계

hearing, except that a party against whom the order has issued or any person harmed by the order may move the court at any time to dissolve or modify the order after giving notice to the applicant who obtained the order; and	없이 명령이 승인된 신청인에게 고지를 하고 그 명령을 무효로 하거나 수정하는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vi) require the person obtaining the order to provide the security determined adequate by the court for the payment of the damages that any person may be entitled to recover as a result of a wrongful or excessive seizure or wrongful or excessive attempted seizure under this paragraph.	(vi) 이 호에 따른 부당하거나 과도한 압수 또는 그러한 압수의 시도로 인하여 부여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변제를 위하여 명령이 승인된 사람에게 법원이 적절하게 정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C) Protection from publicity.-The court shall take appropriate action to protect the person against whom an order under this paragraph is directed from publicity, by or at the behest of the person obtaining the order, about such order and any seizure under such order.	(C) 공개 방지 - 법원은 명령이 승인된 사람에 따라 또는 그의 명령으로써 그 명령과 그 명령에 따른 압수에 관하여 이 호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D) Materials in custody of court.-	(D) 법원이 보관하는 자료 -
(i) In general.-Any materials seized under this paragraph shall be taken into the custody of the court. The court shall secure the seized material from physical and electronic access during the seizure and while in the custody of the court.	(i) 일반 규정 - 법원은 이 호에 따라 압수된 모든 자료를 보관한다. 법원은 압수 중 그리고 보관 중에 물리적 전자적 접근에서 압수된 자료를 보호한다.
(ii) Storage medium.-If the seized material includes a storage medium, or if the seized material is stored on a storage medium, the court shall prohibit the medium from being connected to a network or the Internet without the	(ii) 기억 매체 - 압수된 자료가 기억 매체를 포함하거나 압수된 자료가 기억 매체에 저장되어 있다면, 법원은 (B)목 (v)단에 따라 요구되고 (F)목에 기술된 심리기일까지 양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 매체를 네트워크나 인터넷에 연결

consent of both parties, until the hearing required under subparagraph (B)(v) and described in subparagraph (F).	하는 것을 금지한다.
(iii)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The court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otect the confidentiality of seized materials that are unrelated to the trade secret information ordered seized pursuant to this paragraph unless the person against whom the order is entered consents to disclosure of the material.	(iii) 비밀의 보호 - 법원은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그 자료의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면, 이 호에 따라 압수 명령이 내려진 영업비밀 정보와 무관한 압수된 자료의 비밀 보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iv) Appointment of special master.-The court may appoint a special master to locate and isolate all misappropriated trade secret information and to facilitate the return of unrelated property and data to the person from whom the property was seized. The special master appointed by the court shall agree to be bound by a non-disclosure agreement approved by the court.	(iv) 특별 보좌관의 임명 - 법원은 남용된 영업비밀 정보를 모두 확인하여 격리하고 무관한 재산과 데이터를 재산이 압수된 사람에게 반환하도록 특별 보좌관을 임명할 수 있다. 법원이 임명한 특별 보좌관은 법원이 승인한 비밀유지 계약에 구속되는 것에 합의한다.
(E) Service of order.-The court shall order that service of a copy of the order under this paragraph, and the submissions of the applicant to obtain the order, shall be made by a Federal law enforcement officer who, upon making service, shall carry out the seizure under the order. The court may allow State or local law enforcement officials to participate, but may not permit the applicant or any agent of the applicant to participate in the seizure. At the request of law enforcement officials, the court may	(E) 명령의 송달 - 법원은 연방 사법 기관 공무원에게 이 호에 따른 명령의 사본과 명령을 구하는 신청인의 진술 사본의 송달을 명하고, 그 공무원은 송달을 하면서 그 명령에 따른 압수를 이행한다. 법원은 주(州) 또는 지방 사법기관 공무원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지만, 신청인이나 신청인의 대리인이 압수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사법기관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전문가의 참여가 효율적인 집행에 도움이 되고 압수의 부담을 최소화한다고 판단하면 신청인에게 소속되지 아니하며 법원

allow a technical expert who is unaffiliated with the applicant and who is bound by a court-approved non-disclosure agreement to participate in the seizure if the court determines that the participation of the expert will aid the efficient execution of and minimize the burden of the seizure.	이 승인한 비밀유지 계약에 구속되는 전문 기술자가 압수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F) Seizure hearing.-	(F) 압수 심리 -
(i) Date.-A court that issues a seizure order shall hold a hearing on the date set by the court under subparagraph (B)(v).	(i) 기일 - 압수 명령을 발부한 법원은 (B)목 (v)단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일에 심리를 한다.
(ii) Burden of proof.-At a hearing held under this subparagraph, the party who obtained the order under subparagraph (A) shall have the burden to prove the facts supporting the findings of fact and conclusions of law necessary to support the order. If the party fails to meet that burden, the seizure order shall be dissolved or modified appropriately.	(ii) 입증 책임 - 이 목에 따른 심리에서 (A)목에 따라 명령이 승인된 당사자는 그 명령을 뒷받침 하는 데 필요한 사실 발견과 법률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가 입증을 하지 못하면, 압수 명령은 무효로 되거나 적절하게 수정된다.
(iii) Dissolution or modification of order. -A party against whom the order has been issued or any person harmed by the order may move the court at any time to dissolve or modify the order after giving notice to the party who obtained the order.	(iii) 명령의 무효나 수정 - 명령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나 그 명령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시기에 관계없이 명령이 승인된 당사자에게 고지를 하고 그 명령을 무효로 하거나 수정하는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다.
(iv) Discovery time limits.-The court may make such orders modifying the time limits for discovery under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as may be necessary to prevent the frustration of the purposes of a hearing under this subparagraph.	(iv) 개시(開示) 시한 - 법원은 이목의 심리에 대한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방민사소송규칙」의 개시 시한을 수정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G) Action for damage caused by wrongful seizure.-A person who suffers damage by reason of a wrongful or excessive seizure under this paragraph has a cause of action against the applicant for the order under which such seizure was made, and shall be entitled to the same relief as is provided under section 34(d)(11) of the Trademark Act of 1946 (15 U.S.C. 1116(d)(11)). The security posted with the court under subparagraph (B)(vi) shall not limit the recovery of third parties for damages.	(G) 부당한 압수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 이 호에 따른 부당하거나 과도한 압수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압수의 근거가 되는 명령의 신청인에 대한 소송 사유를 보유하고, 「상표법(1946)」 제34조 제(d)항제(11)호(「미국연방법전」 제15편제1116조제(d)항 제(11)호)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구제 방법이 부여된다. (B)목(vi)단에 따라 법원이 정한 담보는 제3자의 손해 회복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H) Motion for encryption.-A party or a person who claims to have an interest in the subject matter seized may make a motion at any time, which may be heard ex parte, to encrypt any material seized or to be seized under this paragraph that is stored on a storage medium. The motion shall include, when possible, the desired encryption method.	(H) 암호화 신청 - 압수된 목적물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나 사람은 기억 매체에 저장되었고 이 호에 따라 압수되거나 압수될 자료의 암호화를 시기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그 신청은 일방적으로 심리될 수 있다. 가능할 경우에는 그 신청에 원하는 암호화 방법이 포함된다.
(3) Remedies.-In a civil action brought under this subsection with respect to the misappropriation of a trade secret, a court may-	(3) 구제 방법 - 이 항에 따라 영업비밀의 남용에 대하여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
(A) grant an injunction-	(A) 다음 각 단과 같은 가처분을 승인한다 -
(i) to prevent any actual or threatened misappropriation described in paragraph (1) on such terms as the court deems reasonable, provided the order does not-	(i)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조건으로 제 (1)호의 실제 남용이나 남용의 우려를 방지한다. 단, 그 명령은 다음 사항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I) prevent a person from entering into an employment relationship, and that conditions placed on such employment	(I) 어떤 사람이 고용 관계를 맺는 것을 방지한다. 단, 그 고용에 대한 조건이 단순히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가

shall be based on evidence of threatened misappropriation and not merely on the information the person knows; or	아니라 남용의 우려에 대한 증거에 근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II) otherwise conflict with an applicable State law prohibiting restraints on the practice of a lawful profession, trade, or business;	(II) 합법적 직업·거래·사업의 실행에 대한 제한을 금지하는 현행 주법(州法)과 다른 방식으로 충돌 한다.
(ii) if determined appropriate by the court, requiring affirmative actions to be taken to protect the trade secret; and	(ii)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iii)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that render an injunction inequitable, that conditions future use of the trade secret upon payment of a reasonable royalty for no longer than the period of time for which such use could have been prohibited;	(iii) 가처분을 하는 것이 불공평한 예외적 상황에서, 그 사용이 금지될 수 있는 기간까지 합리적인 사용료의 지급을 조건으로 영업비밀의 장래 사용을 허용한다.
(B) award-	(B)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를 인정한다 -
(i)(I) damages for actual loss caused by the misappropriation of the trade secret; and	(i)(I) 영업비밀의 남용으로 인한 실제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
(II) damages for any unjust enrichment caused by the misappropriation of the trade secret that is not addressed in computing damages for actual loss; or	(II) 실제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 계산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한 영업 비밀의 남용으로 인한 부당한 부의 축적에 대한 손해 배상
(ii) in lieu of damages measured by any other methods, the damages caused by the misappropriation measured by imposition of liability for a reasonable royalty for the misappropriator's unauthorized disclosure or use of the trade secret;	(ii) 다른 방법으로 측정된 손해 배상을 대신하여, 남용자가 권한 없이 영업 밀을 공개하거나 사용한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사용료 책임을 부과하여 측정된 남용으로 인한 손해 배상
(C) if the trade secret is willfully and maliciously misappropriated, award exemplary damages in an amount not	(C) 영업비밀을 고의적 악의적으로 남용한다면, (B)목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 배상액의 2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

more than 2 times the amount of the damages awarded under subparagraph (B); and	한다.
(D) if a claim of the misappropriation is made in bad faith, which may be established by circumstantial evidence, a motion to terminate an injunction is made or opposed in bad faith, or the trade secret was willfully and maliciously misappropriated, award reasonable attorney's fees to the prevailing party.	(D) 남용에 대한 주장이 악의로 이루어졌고 이를 상황 증거로 입증할 수 있거나, 가처분 종료 신청이 악의로 이루어지거나 악의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영업비밀을 고의적 악의적으로 남용하였다면, 승소한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인정한다.
(c) Jurisdiction.-The district courts of the United States shall have original jurisdiction of civil actions brought under this section.	(c) 관할권 - 미국 지방 법원은 이 조에 따라 제기된 민사 소송에 대한 제1심 관할권을 보유한다.
(d) Period of Limitations.-A civil action under subsection (b) may not be commenced later than 3 year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misappropriation with respect to which the action would relate is discovered or by the exercise of reasonable diligence should have been discovered. For purposes of this subsection, a continuing misappropriation constitutes a single claim of misappropriation.	(d) 시효 기간 - 제(b)항의 민사 소송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남용을 발견하거나 합리적 주의를 하였다면 발견하였을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개시될 수 없다. 이 항에서 남용의 계속은 남용에 대한 단일 배상청구권을 구성한다.
§1837. Applicability to conduct outside the United States	**제1837조 미국 외부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This chapter also applies to conduct occurring outside the United States if-	이 법은 다음 조건 하에서 미국 외부에서 발생하는 행위에도 적용된다:
(1) the offender is a natural person who is a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alien of the United States, or an organization organized under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r a State or political subdivision thereof; or	(1) 범죄자가 미국의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인 자연인, 또는 연방, 주, 그 하위 행정조직의 법률에 의하여 조직된 단체; 또는

(2) an act in furtherance of the offense was committed in the United States.	(2) 해외에서의 범행에 속행되는 행위가 미국 내부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1838. Construction with other laws	제1838조 다른 법률의 해석
Except as provided in section 1833(b), this chapter shall not be construed to preempt or displace any other remedies, whether civil or criminal, provided by United States Federal, State, commonwealth, possession, or territory law for the misappropriation of a trade secret, or to affect the otherwise lawful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any Government employee under section 552 of title 5 (commonly known as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제1833조 제(b)항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이 법은 통상기밀의 악용에 대하여 미국의 다른 법들이 제공하는 민사 또는 형사 구제조치에 우선하거나 그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또는 '정보자유법'으로 알려진 5 USC 552에 따른 정부직원에 의한 합법적 정보공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1839. Definitions	제1839조 정의
As used in this chapter-	이 법에서 -
(1) the term "foreign instrumentality" means any agency, bureau, ministry, component, institution, association, or any legal, commercial, or business organization, corporation, firm, or entity that is substantially owned, controlled, sponsored, commanded, managed, or dominated by a foreign government;	(1) "외국 기관(foreign instrumentality)"이라 함은 외국 정부가 소유, 통제, 후원, 관리하는 관청, 법률기관, 상업기관, 기업, 협회 등을 의미한다;
(2) the term "foreign agent" means any officer, employee, proxy, servant, delegate, or representative of a foreign government;	(2)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이라 함은 외국 정부의 관리, 대리권자, 대표를 의미한다;
(3) the term "trade secret" means all forms and types of financial, business, scientific, technical, economic, or engineering information, including patterns, plans, compilations, program devices, formulas,	(3) "통상기밀(trade secret)"이라 함은 다음 조건 하에서 유형(有形) 또는 무형(無形)을 막론하고 모든 형태 및 유형(類型)의 재정, 상업, 과학, 기술, 경제, 엔지니어링 정보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패턴, 플

designs, prototypes, methods, techniques, processes, procedures, programs, or codes, whether tangible or intangible, and whether or how stored, compiled, or memorialized physically, electronically, graphically, photographically, or in writing if-	랜, 편찬물, 프로그램 장비, 공식, 디자인, 원형, 체계, 테크닉, 공정, 절차, 프로그램, 코드 등이 포함되며, 보관, 편집 또는 기록 여부나 그 방식에 상관하지 아니한다:
(A) the owner thereof has taken reasonable measures to keep such information secret; and	(A) 그 소유주가 해당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온 경우; 그리고
(B) the information derives independent economic value, actual or potential, from not being generally known to, and not being readily ascertainable through proper means by, another person who can obtain economic value from the disclosure or use of the information;	(B) 그 정보가 정보의 공개나 사용에서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타인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부터, 그리고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정보의 공개나 사용에서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타인이 쉽게 확인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실질적인 또는 잠재적인 독립적 경제가치를 이끌어내는 경우;
(4) the term "owner", with respect to a trade secret, means the person or entity in whom or in which rightful legal or equitable title to, or license in, the trade secret is reposed;	(4) 통상기밀과 관련하여 "소유주(owner)"라 함은 보통법 또는 형평법상의 적법한 권리나 허가가 주어진 통상기밀이 위임된 개인이나 법인을 의미한다;
(5) the term "misappropriation" means-	(5) "남용"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A) acquisition of a trade secret of another by a person who knows or has reason to know that the trade secret was acquired by improper means; or	(A) 그 영업비밀이 부당한 수단으로 취득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것
(B) disclosure or use of a trade secret of another without express or implied consent by a person who-	(B)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와 같은 사람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타인의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것
(i) used improper means to acquire knowledge of the trade secret;	(i) 영업비밀을 알아내기 위하여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였다.
(ii) at the time of disclosure or use, knew or had reason to know that the knowledge of the trade secret was-	(ii) 공개하거나 사용할 때에 그 영업비밀의 내용이 다음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I) derived from or through a person who had used improper means to acquire the trade secret; (II) acquired under circumstances giving rise to a duty to maintain the secrecy of the trade secret or limit the use of the trade secret; or (III) derived from or through a person who owed a duty to the person seeking relief to maintain the secrecy of the trade secret or limit the use of the trade secret; or (iii) before a material change of the position of the person, knew or had reason to know that- (I) the trade secret was a trade secret; and (II) knowledge of the trade secret had been acquired by accident or mistake;	(I) 영업비밀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였던 사람에게서 그 내용을 취득하였다. (II) 영업비밀을 유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그 내용을 취득하였다. (III) 영업비밀을 유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구제 방법을 구하는 사람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내용을 취득하였다. (iii) 그 사람의 지위에 중요한 변경이 있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I) 그 영업비밀이 실제로 영업비밀이었다. (II) 우연히 또는 과실로써 영업비밀을 알게 되었다.
(6) the term "improper means"- (A) includes theft, bribery, misrepresentation, breach or inducement of a breach of a duty to maintain secrecy, or espionage through electronic or other means; and (B) does not include reverse engineering, independent derivation, or any other lawful means of acquisition; and	(6) "부당한 수단"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A) 절도·뇌물수수·허위진술·비밀유지의무 위반이나 그 위반의 유인·전자적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한 스파이 행위를 포함한다. (B) 역공학(逆工學)·독립적도출·기타 합법적 수단의 취득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7) the term "Trademark Act of 1946" means the Act entitled "An Act to provide for the registration and protection of trademarks used in commerce, to carry out the provisions of certain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for other purposes 1, approved July 5, 1946 (15 U.S.C. 1051 et seq.) (commonly referred to as the 'Trademark Act of 1946' or the 'Lanham Act')" 1.	(7) "「상표법(1946)」"은 "1946년 7월 5일 승인되었으며 특정 국제 협약 규정의 이행과 기타 목적을 위하여 상용으로 사용되는 삼표의 등록 및 보호를 규정하는 법률(「미국연방법전」 제15편 제1051조 이하 참조, 통상적으로 「상표법(1946)」 또는 「랜햄법」으로 인용)"이란 명칭의 법률을 의미한다."

영업비밀보호법(DTSA) (2016)

국 가	미국
원 법 률 명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제 정	2016.05.11 PL 114-153
수 록 자 료	영업비밀보호법(2016), pp.1-27
발 행 사 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17

PUBLIC LAW 114-153—MAY 11, 2016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Public Law 114-153
114th Congress

An Act To amend chapter 90 of title 18, United States Code, to provide Federal jurisdiction for the theft of trade secrets, and for other purposes.

Be it enacted by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Congress assembled,

SECTION 1. SHORT TITLE.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SEC. 2. FEDERAL JURISDICTION FOR THEFT OF TRADE SECRETS.

(a) IN GENERAL.—Section 1836 of title 18, United States Code, is amended by striking subsection (b) and inserting the following:

"(b) PRIVATE CIVIL ACTIONS.—

"(1) IN GENERAL.—An owner of a trade secret that is misappropriated may bring a civil action under this subsection if the trade secret is related to a product or service used in, or intended

공법 제114-153호 - 2016년 5월 11일

영업비밀보호법(2016)

공법 제114-153호 제114회기

영업비밀 절도에 대하여 연방 관할권을 적용하고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하여 「미국연방법 전」 제18편제90장을 개정하는 법률

이 법률은 미합중국 상하원 공동 의회에서 제정되었다.

제1조(약칭)

이 법은 「영업비밀보호법(2016)」으로 인용될 수 있다.

제2조(영업비밀 절도에 대한 연방 관할권)

(a) 일반 규정. 제(b)항을 삭제하고 다음을 삽입하여 「미국연방법전」 제18편제1836 조를 개정한다.

"(b) 개인 민사 소송

"(1) 일반 규정. 남용된 영업비밀의 소유자는 그 영업비밀이 주간(州間) 무역이나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거나 사용하고자 하였던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련된다면 이 항에 따라 민사 소송을 제기

for use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할 수 있다.
"(2) CIVIL SEIZURE.—	"(2) 민사상 압수
"(A) IN GENERAL.—	"(A) 일반 규정
"(i) APPLICATION.—Based on an affidavit or verified complaint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this paragraph, the court may, upon ex parte application but only in extraordinary circumstances, issue an order providing for the seizure of property necessary to prevent the propagation or dissemination of the trade secret that is the subject of the action.	"(i) 적용. 이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선서 진술서나 입증된 소장에 따라, 법원은 일방 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상황에서만 소송의 주제인 영업비밀의 전달이나 보급 방지에 필요한 재산의 압수를 규정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ii) REQUIREMENTS FOR ISSUING ORDER.—The court may not grant an application under clause (i) unless the court finds that it clearly appears from specific facts that—	"(ii) 명령 발부 요건. 법원은 다음 과 같은 사항이 구체적 사실로서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판단하지 아니한다면 (i)단의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 할 수 있다.
"(I) an order issued pursuant to Rule 65 of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or another form of equitable relief would be inadequate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because the party to which the order would be issued would evade, avoid, or otherwise not comply with such an order;	"(I) 명령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가 그 명령을 회피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준수하지 아니하여 「미연방민사소송규칙」 제65조에 따라 발부된 명령이나 다른 형태의 형평법상 구제방법이 이 호의 목적 달성에 부적절하다.
"(II) an immediate and irreparable injury will occur if such seizure is not ordered;	"(II) 그 압수를 명령하지 아니하면 즉각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
"(III) the harm to the applicant of denying the application outweighs the harm to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person against whom seizure would be ordered of granting the application and substantially outweighs the harm to any third parties who may be harmed by	"(III) 신청 거절에 따른 신청인의 손해가 신청 승인으로 압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정당한 이익의 손해보다 크고, 그 압수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제3자의 손해보다 실질적으로 크다.

such seizure;	
"(IV) the applicant is likely to succeed in showing that—	"(IV) 신청인이 다음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aa) the information is a trade secret; and	"(aa)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이다.
"(bb) the person against whom seizure would be ordered—	"(bb) 압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AA) misappropriated the trade secret of the applicant by improper means; or	"(AA)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남용하였다.
"(BB) conspired to use improper means to misappropriate the trade secret of the applicant;	"(BB)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남용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의 사용을 공모하였다.
"(V) the person against whom seizure would be ordered has actual possession of—	"(V) 압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다음의 사항을 실질적으로 점유한다.
"(aa) the trade secret; and	"(aa) 영업비밀
"(bb) any property to be seized;	"(bb) 압수될 재산
"(VI) the application describes with reasonable particularity the matter to be seized and, to the extent 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 identifies the location where the matter is to be seized;	"(VI) 신청인이 상황에 따라 합리 적인 범위에서 압수될 물건을 합리 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압수될 물건의 위치를 명시한다.
"(VII) the person against whom seizure would be ordered, or persons acting in concert with such person, would destroy, move, hide, or otherwise make such matter inaccessible to the court, if the applicant were to proceed on notice to such person; and	"(VII) 신청인이 압수를 고지하고 진행하면, 압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그와 협력하여 행위를 하는 사람이 그 물건을 파괴·이동·은닉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법원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VIII) the applicant has not publicized the requested seizure.	"(VIII) 신청인이 청구된 압수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B) ELEMENTS OF ORDER.—If an order is issued under subparagraph	"(B) 명령의 구성 요소. 명령이 (A) 목에 따라 내려진다면, 다음 각 단에서

(A), it shall—	정하는 바를 따른다.
"(i) set forth findings of fact and conclusions of law required for the order;	"(i) 명령에 필요한 사실 발견과 법률의 결론을 규정한다.
"(ii) provide for the narrowest seizure of property necessary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and direct that the seizure be conducted in a manner that minimizes any interruption of the business operations of third parties and, to the extent possible, does not interrupt the legitimate business operations of the person accused of misappropriating the trade secret;	"(ii) 이 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 압수를 허용하고, 그 압수가 제3자의 사업 운영 중단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영업비밀의 남용으로 피소된 사람의 합법적 사업 운영을 중단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고 규정한다.
"(iii)	"(iii)
(I) be accompanied by an order protecting the seized property from disclosure by prohibiting access by the applicant or the person against whom the order is directed, and prohibiting any copies, in whole or in part, of the seized property, to prevent undue damage to the party against whom the order has issued or others, until such parties have an opportunity to be heard in court; and	(I) 명령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진술할 기회를 가질 때까지 그 당사자나 다른 사람의 과도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자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고 압수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복사를 금지하여 압수된 재산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명령이 수반된다.
"(II) provide that if access is granted by the court to the applicant or the person against whom the order is directed, the access shall be consistent with subparagraph (D);	"(II) 법원이 신청인이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접근을 승인한다면, 그 접근은 (D)목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iv) provide guidance to the law enforcement officials executing the seizure that clearly delineates the scope of the authority of the officials,	"(iv) 압수를 집행하는 사법기관 공무원에 대한 지침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명확하게 기술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including— "(I) the hours during which the seizure may be executed; and "(II) whether force may be used to access locked areas; "(v) set a date for a hearing described in subparagraph(F) at the earliest possible time, and not later than 7 days after the order has issued, unless the party against whom the order is directed and others harmed by the order consent to another date for the hearing, except that a party against whom the order has issued or any person harmed by the order may move the court at any time to dissolve or modify the order after giving notice to the applicant who obtained the order; and "(vi) require the person obtaining the order to provide the security determined adequate by the court for the payment of the damages that any person may be entitled to recover as a result of a wrongful or excessive seizure or wrongful or excessive attempted seizure under this paragraph. "(C) PROTECTION FROM PUBLICITY.—The court shall take appropriate action to protect the person against whom an order under this paragraph is directed from publicity, by or at the behest of the person obtaining the order, about such order and any seizure under such order.	"(I) 압수를 집행할 수 있는 시간 "(II) 잠금장치를 풀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v) 명령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나 그 명령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다른 심리기일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면, 명령발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한 빠른 시기로 (F)목의 심리기일을 정한다. 단, 명령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나 그 명령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이 시기에 관계없이 명령이 승인된 신청인에게 고지를 하고 그 명령을 무효로 하거나 수정하는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vi) 이 호에 따른 부당하거나 과도한 압수 또는 그러한 압수의 시도로 인하여 부여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변제를 위하여 명령이 승인된 사람에게 법원이 적절하게 정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C) 공개 방지. 법원은 명령이 승인된 사람에 따라 또는 그의 명령으로써 그 명령과 그 명령에 따른 압수에 관하여 이 호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D) MATERIALS IN CUSTODY OF COURT.—	"(D) 법원이 보관하는 자료
"(i) IN GENERAL.—Any materials seized under this paragraph shall be taken into the custody of the court. The court shall secure the seized material from physical and electronic access during the seizure and while in the custody of the court.	"(i) 일반 규정. 법원은 이 호에 따라 압수된 모든 자료를 보관한다. 법원은 압수 중 그리고 보관 중에 물리적 전자적 접근에서 압수된 자료를 보호한다.
"(ii) STORAGE MEDIUM.—If the seized material includes a storage medium, or if the seized material is stored on a storage medium, the court shall prohibit the medium from being connected to a network or the Internet without the consent of both parties, until the hearing required under subparagraph (B)(v) and described in subparagraph (F).	"(ii) 기억 매체. 압수된 자료가 기억 매체를 포함하거나 압수된 자료가 기억 매체에 저장되어 있다면, 법원은 (B)목(v)단에 따라 요구되고 (F)목에 기술된 심리기일까지 양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 매체를 네트워크나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을 금지한다.
"(iii)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The court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otect the confidentiality of seized materials that are unrelated to the trade secret information ordered seized pursuant to this paragraph unless the person against whom the order is entered consents to disclosure of the material.	"(iii) 비밀의 보호. 법원은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그 자료의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면, 이 호에 따라 압수 명령이 내려진 영업비밀 정보와 무관한 압수된 자료의 비밀 보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iv) APPOINTMENT OF SPECIAL MASTER.—The court may appoint a special master to locate and isolate all misappropriated trade secret information and to facilitate the return of unrelated property and data to the person from whom the property was seized. The special master appointed by the court shall agree to be bound by a non-disclosure agreement approved by the court.	"(iv) 특별 보좌관의 임명. 법원은 남용된 영업비밀 정보를 모두 확인하여 격리하고 무관한 재산과 데이터를 재산이 압수된 사람에게 반환하도록 특별 보좌관을 임명할 수 있다. 법원이 임명한 특별 보좌관은 법원이 승인한 비밀유지 계약에 구속되는 것에 합의한다.

"(E) SERVICE OF ORDER.—The court shall order that service of a copy of the order under this paragraph, and the submissions of the applicant to obtain the order, shall be made by a Federal law enforcement officer who, upon making service, shall carry out the seizure under the order. The court may allow State or local law enforcement officials to participate, but may not permit the applicant or any agent of the applicant to participate in the seizure. At the request of law enforcement officials, the court may allow a technical expert who is unaffiliated with the applicant and who is bound by a court-approved non-disclosure agreement to participate in the seizure if the court determines that the participation of the expert will aid the efficient execution of and minimize the burden of the seizure.	"(E) 명령의 송달. 법원은 연방 사법 기관 공무원에게 이 호에 따른 명령의 사본과 명령을 구하는 신청인의 진술 사본의 송달을 명하고, 그 공무원은 송달을 하면서 그 명령에 따른 압수를 이행한다. 법원은 주(州) 또는 지방 사법기관 공무원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지만, 신청인이나 신청인의 대리인이 압수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사법기관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전문가의 참여가 효율적인 집행에 도움이 되고 압수의 부담을 최소화한다고 판단하면 신청인에게 소속되지 아니하며 법원이 승인한 비밀유지 계약에 구속되는 전문 기술자가 압수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F) SEIZURE HEARING.—	"(F) 압수 심리
"(i) DATE.—A court that issues a seizure order shall hold a hearing on the date set by the court under subparagraph (B)(v).	"(i) 기일. 압수 명령을 발부한 법원은 (B)목(v)단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일에 심리를 한다.
"(ii) BURDEN OF PROOF.—At a hearing held under this subparagraph, the party who obtained the order under subparagraph (A) shall have the burden to prove the facts supporting the findings of fact and conclusions of law necessary to support the order. If the party fails to meet that burden, the seizure order shall be	"(ii) 입증 책임. 이 목에 따른 심리에서 (A)목에 따라 명령이 승인된 당사자는 그 명령을 뒷받침 하는 데 필요한 사실 발견과 법률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가 입증을 하지 못하면, 압수 명령은 무효로 되거나 적절하게 수정된다.

dissolved or modified appropriately.	
"(iii) DISSOLUTION OR MODIFICATION OF ORDER.— A party against whom the order has been issued or any person harmed by the order may move the court at any time to dissolve or modify the order after giving notice to the party who obtained the order.	"(iii) 명령의 무효나 수정. 명령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나 그 명령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시기에 관계없이 명령이 승인된 당사자에게 고지를 하고 그 명령을 무효로 하거나 수정하는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다.
"(iv) DISCOVERY TIME LIMITS.—The court may make such orders modifying the time limits for discovery under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as may be necessary to prevent the frustration of the purposes of a hearing under this subparagraph.	"(iv) 개시(開示) 시한. 법원은 이목의 심리에 대한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방민사소송규칙」의 개시 시한을 수정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G) ACTION FOR DAMAGE CAUSED BY WRONGFUL SEIZURE.— A person who suffers damage by reason of a wrongful or excessive seizure under this paragraph has a cause of action against the applicant for the order under which such seizure was made, and shall be entitled to the same relief as is provided under section 34(d)(11) of the Trademark Act of 1946 (15 U.S.C. 1116(d)(11)). The security posted with the court under subparagraph (B)(vi) shall not limit the recovery of third parties for damages.	"(G) 부당한 압수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이 호에 따른 부당하거나 과도한 압수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압수의 근거가 되는 명령의 신청인에 대한 소송 사유를 보유하고, 「상표법(1946)」 제34조제(d)항제(11)호(「미국연방법전」 제15편제1116조제(d)항 제(11)호)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구제 방법이 부여된다. (B)목(vi)단에 따라 법원이 정한 담보는 제3자의 손해 회복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H) MOTION FOR ENCRYPTION.—A party or a person who claims to have an interest in the subject matter seized may make a motion at any time, which may be heard ex parte, to encrypt any material seized or to	"(H) 암호화 신청. 압수된 목적물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나 사람은 기억 매체에 저장되었고 이 호에 따라 압수되거나 압수될 자료의 암호화를 시기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그 신청은 일방적으로

be seized under this paragraph that is stored on a storage medium. The motion shall include, when possible, the desired encryption method.	심리될 수 있다. 가능할 경우에는 그 신청에 원하는 암호화 방법이 포함된다.
"(3) REMEDIES.—In a civil action brought under this subsection with respect to the misappropriation of a trade secret, a court may—	"(3) 구제 방법. 이 항에 따라 영업비밀의 남용에 대하여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
"(A) grant an injunction—	"(A) 다음 각 단과 같은 가처분을 승인한다.
"(i) to prevent any actual or threatened misappropriation described in paragraph (1) on such terms as the court deems reasonable, provided the order does not—	"(i)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조건으로 제(1)호의 실제 남용이나 남용의 우려를 방지한다. 단, 그 명령은 다음 사항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I) prevent a person from entering into an employment relationship, and that conditions placed on such employment shall be based on evidence of threatened misappropriation and not merely on the information the person knows; or	"(I) 어떤 사람이 고용 관계를 맺는 것을 방지한다. 단, 그 고용에 대한 조건이 단순히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 남용의 우려에 대한 증거에 근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II) otherwise conflict with an applicable State law prohibiting restraints on the practice of a lawful profession, trade, or business;	"(II) 합법적 직업·거래·사업의 실행에 대한 제한을 금지하는 현행 주법(州法)과 다른 방식으로 충돌한다.
"(ii) if determined appropriate by the court, requiring affirmative actions to be taken to protect the trade secret; and	"(ii)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iii)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that render an injunction inequitable, that conditions future use of the trade secret upon payment of a reasonable royalty for no longer than the period of time for which such use could have been prohibited;	"(iii) 가처분을 하는 것이 불공평한 예외적 상황에서, 그 사용이 금지될 수 있는 기간까지 합리적인 사용료의 지급을 조건으로 영업비밀의 장래 사용을 허용한다.
"(B) award—	"(B)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를 인정한다.
"(i)	"(i)

(I) damages for actual loss caused by the misappropriation of the trade secret; and	(I) 영업비밀의 남용으로 인한 실제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
"(II) damages for any unjust enrichment caused by the misappropriation of the trade secret that is not addressed in computing damages for actual loss; or	"(II) 실제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 계산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한 영업 비밀의 남용으로 인한 부당한 부의 축적에 대한 손해 배상
"(ii) in lieu of damages measured by any other methods, the damages caused by the misappropriation measured by imposition of liability for a reasonable royalty for the misappropriator's unauthorized disclosure or use of the trade secret;	"(ii) 다른 방법으로 측정된 손해 배상을 대신하여, 남용자가 권한 없이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사용한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사용료 책임을 부과하여 측정된 남용으로 인한 손해 배상
"(C) if the trade secret is willfully and maliciously misappropriated, award exemplary damages in an amount not more than 2 times the amount of the damages awarded under subparagraph (B); and	"(C) 영업비밀을 고의적 악의적으로 남용한다면, (B)목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 배상액의 2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다.
"(D) if a claim of the misappropriation is made in bad faith, which may be established by circumstantial evidence, a motion to terminate an injunction is made or opposed in bad faith, or the trade secret was willfully and maliciously misappropriated, award reasonable attorney's fees to the prevailing party.	"(D) 남용에 대한 주장이 악의로 이루어졌고 이를 상황 증거로 입증할 수 있거나, 가처분 종료 신청이 악의로 이루어지거나 악의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영업비밀을 고의적 악의적으로 남용하였다면, 승소한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인정한다.
"(c) JURISDICTION.—The district courts of the United States shall have original jurisdiction of civil actions brought under this section.	"(c) 관할권. 미국 지방 법원은 이 조에 따라 제기된 민사 소송에 대한 제1심 관할권을 보유한다.
"(d) PERIOD OF LIMITATIONS.—A civil action under subsection (b) may not be commenced later than 3 year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d) 시효 기간. 제(b)항의 민사 소송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남용을 발견하거나 합리적 주의를 하였다면 발견하였을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개시될 수 없다.

misappropriation with respect to which the action would relate is discovered or by the exercise of reasonable diligence should have been discovered. For purposes of this subsection, a continuing misappropriation constitutes a single claim of misappropriation."	이 항에서 남용의 계속은 남용에 대한 단일 배상청구권을 구성한다."
(b) DEFINITIONS.—Section 1839 of title 18, United States Code, is amended—	(b) 정의. 「미국연방법전」 제18편제1839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정된다.
(1) in paragraph (3)—	(1) 제(3)호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개정된다.
(A) in subparagraph (B), by striking "the public" and inserting "another person who can obtain economic value from the disclosure or use of the information"; and	(A) 제(B)목에서 "대중"을 삭제하고 "정보의 공개나 사용에서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타인"을 삽입한다.
(B) by striking "and" at the end;	(B) 말미(末尾)에 "그리고"를 삭제한다.
(2) in paragraph (4), by striking the period at the end and inserting a semicolon; and	(2) 제(4)호에서 말미에 기간을 삭제하고 쌍반점(;)을 삽입한다.
(3) by adding at the end the following:	(3) 말미에 다음을 추가한다.
"(5) the term 'misappropriation' means—	"(5) "남용"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 나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A) acquisition of a trade secret of another by a person who knows or has reason to know that the trade secret was acquired by improper means; or	"(A) 그 영업비밀이 부당한 수단으로 취득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것
"(B) disclosure or use of a trade secret of another without express or implied consent by a person who—	"(B)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와 같은 사람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타인의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것
"(i) used improper means to acquire knowledge of the trade secret;	"(i) 영업비밀을 알아내기 위하여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였다.
"(ii) at the time of disclosure or use, knew or had reason to know that the knowledge of the trade secret was—	"(ii) 공개하거나 사용할 때에 그 영업비밀의 내용이 다음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I) derived from or through a person who had used improper	"(I) 영업비밀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였던 사람에게서 그

means to acquire the trade secret;	내용을 취득하였다.
"(II) acquired under circumstances giving rise to a duty to maintain the secrecy of the trade secret or limit the use of the trade secret; or	"(II) 영업비밀을 유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그 내용을 취득하였다.
"(III) derived from or through a person who owed a duty to the person seeking relief to maintain the secrecy of the trade secret or limit the use of the trade secret; or	"(III) 영업비밀을 유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구제 방법을 구하는 사람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내용을 취득하였다.
"(iii) before a material change of the position of the person, knew or had reason to know that—	"(iii) 그 사람의 지위에 중요한 변경이 있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I) the trade secret was a trade secret; and	"(I) 그 영업비밀이 실제로 영업비밀이었다.
"(II) knowledge of the trade secret had been acquired by accident or mistake;	"(II) 우연히 또는 과실로써 영업비밀을 알게 되었다.
"(6) the term 'improper means'—	"(6) 부당한 수단"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A) includes theft, bribery, misrepresentation, breach or inducement of a breach of a duty to maintain secrecy, or espionage through electronic or other means; and	"(A) 절도·뇌물 수수·허위 진술·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나 그 위반의 유인·전자적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한 스파이 행위를 포함한다.
"(B) does not include reverse engineering, independent derivation, or any other lawful means of acquisition; and	"(B) 역공학(逆工學)·독립적 도출·기타 합법적 수단의 취득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7) the term 'Trademark Act of 1946' means the Act entitled 'An Act to provide for the registration and protection of trademarks used in commerce, to carry out the provisions of certain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for other	"(7) '「상표법(1946)」은' '1946년 7월 5일 승인되었으며 특정 국제 협약 규정의 이행과 기타 목적을 위하여 상용으로 사용되는 상표의 등록 및 보호를 규정하는 법률(「미국연방법전」 제15편 제1051조 이하 참조. 통상적으로 "「상표법(1946)」" 또는 "「랜햄법」으로 인용)"'

purposes, approved July 5, 1946 (15 U.S.C. 1051 et seq.) (commonly referred to as the "Trademark Act of 1946"or the "Lanham Act")'.".	이란 명칭의 법률을 의미한다."
(c) EXCEPTIONS TO PROHIBITION.—Section 1833 of title 18, United States Code, is amended, in the matter preceding paragraph (1), by inserting "or create a private right of action for" after "prohibit".	(c) 금지의 예외. 제(1)호의 앞 문장에서 "금지" 뒤에 "또는 개인 소권을 성립"을 삽입하여 「미국연방법전」 제18편제1833조를 개정한다.
(d) CONFORMING AMENDMENTS.— (1) The section heading for section 1836 of title 18, United States Code, is amended to read as follows:	(d) 관련 개정 (1) 「미국연방법전」 제18편제1836조의 조항명이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1836. Civil proceedings".	"제1836조(민사 소송 절차)"
(2) The table of sections for chapter 90 of title 18, United States Code, is amended by striking the item relating to section 1836 and inserting the following:	(2) 제1836조에 관련된 항목을 삭제하고 다음을 삽입하여 「미국연방법전」 제18편제90장의 목차를 개정한다.
"1836. Civil proceedings".	"제1836조(민사 소송 절차)"
(e) EFFECTIVE DATE.—The amendments made by this section shall apply with respect to any misappropriation of a trade secret (as defined in section 1839 of title 18, United States Code, as amended by this section) for which any act occurs on or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e) 발효일. 이 조에 따른 개정은 이 법률의 제정일 이후에 발생한 모든 행위 중 영업비밀의 남용(「미국연방법전」 제18편제1839조에서 정의되고, 이 조로 개정된 바를 따름)에 적용된다.
(f) RULE OF CONSTRUCTION.—Nothing in the amendments made by this section shall be construed to modify the rule of construction under section	(f) 해석 규칙. 이 조에 따른 개정은 「미국 연방법전」 제18편제1838조의 해석 규칙을 수정하거나 법률의 다른 규정을 무효로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838 of title 18, United States Code, or to preempt any other provision of law. (g) APPLICABILITY TO OTHER LAWS.—This section and the amendments made by this section shall not be construed to be a law pertaining to intellectual property for purposes of any other Act of Congress.	(g) 다른 법률에 대한 적용 가능성. 이 조와 이 조에 따른 개정은 다른 의회 입법을 위하여 지적 재산권에 관한 법률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SEC. 3. TRADE SECRET THEFT ENFORCEMENT.	제3조(영업비밀 절도에 대한 실행)
(a) IN GENERAL.—Chapter 90 of title 18, United States Code, is amended— (1) in section 1832(b), by striking "$5,000,000"and inserting "the greater of $5,000,000 or 3 times the value of the stolen trade secret to the organization, including expenses for research and design and other costs of reproducing the trade secret that the organization has thereby avoided"; and	(a) 일반 규정. 「미국연방법전」 제18편 제90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정된다. (1) 제1832조제(b)항에서, "5,000,000 달러"를 삭제하고 "5,000,000 달러 또는 연구 및 설계 비용과 영업비밀을 복제하여 해당 단체가 회피한 기타 비용을 포함하여 영업비밀의 절도로써 그 단체가 얻은 가치의 3배 중 큰 금액"을 삽입한다.
(2) in section 1835— (A) by striking "In any prosecution" and inserting the following: "(a) IN GENERAL.—In any prosecution"; and (B) by adding at the end the following: "(b) RIGHTS OF TRADE SECRET OWNERS.—The court may not authorize or direct the disclosure of any information the owner asserts to be a trade secret unless the court allows the owner the opportunity to file a submission under seal that describes the interest of the owner in keeping the information confidential. No submission under	(2) 제1835조를 다음 각 목과 같이 개정한다. (A) "기소에서"를 삭제하고 다음을 삽입한다. "(a) 일반 규정. 기소에서" (B) 말미에 다음을 추가한다. "(b) 영업비밀 소유자의 권리. 법원은 소유자가 영업비밀로 획득한 이익을 기술하는 진술을 봉인 후 제출하도록 허용하지 아니하였다면, 소유자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의 공개를 허용하거나 지시할 수 없다. 이 항에 따라 봉인된 진술은 이 조의 목적이나 법률이 요구하는 다른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 장의 기소에서 사용될 수 없다.

seal made under this subsection may be used in a prosecution under this chapter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ose set forth in this section, or otherwise required by law.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a trade secret to the United States or the court in connection with a prosecution under this chapter shall not constitute a waiver of trade secret protection, and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relating to a trade secret in connection with a prosecution under this chapter shall not constitute a waiver of trade secret protection unless the trade secret owner expressly consents to such waiver..	영업비밀 소유자가 정보 포기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한다면, 이 장의 기소와 관련하여 영업비밀 정보를 정부나 법원에 제공하는 것은 영업비밀 보호의 포기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이 장의 기소와 관련하여 영업비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영업비밀 보호의 포기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b) RICO PREDICATE OFFENSES.—Section 1961(1) of title 18, United States Code, is amended by inserting "sections 1831 and 1832 (relating to economic espionage and theft of trade secrets)", before "section 1951".	(b)「조직 범죄 피해자 보상법」관련 범죄. "제1951조" 앞에 "제1831조와 제1832조(산업 스파이와 영업비밀 절도 관련)"를 삽입하여「미국연방법전」제18편제1961조 제(1)호를 개정한다.
SEC. 4. REPORT ON THEFT OF TRADE SECRETS OCCURRING ABROAD.	**제4조(해외에서 발생한 영업비밀 절도에 대한 보고)**
(a) DEFINITIONS.—In this section:	(a) 정의. 이 조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1) DIRECTOR.—The term "Director" means the Under Secretary of Commerce for Intellectual Property and Director of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1) 관리자. "관리자"란 지적 재산권 담당 상무부 차관 겸 미 특허청 청장을 의미한다.
(2) FOREIGN INSTRUMENTALITY, ETC.—The terms "foreign instrumentality", "foreign agent", and "trade secret" have	(2) 외국 기관 등. "외국 기관", "외국 관리" 및 "영업비밀"은「미국연방법전」제18편 제1839조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the meanings given those terms in section 1839 of title 18, United States Code.	
(3) STATE.—The term "State" includes the District of Columbia and any commonwealth, territory, or possession of the United States.	(3) 주(州). "주(州)"에는 컬럼비아 특별구 그리고 미국의 자치주·준주(準州)·속령이 포함된다.
(4) UNITED STATES COMPANY.—The term "United States company" means an organization organized under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r a State or political subdivision thereof.	(4) 미국 회사. "미국 회사"란 미연방법이나 주(州)법 또는 그 정치적 하부기관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의미한다.
(b) REPORTS.—Not later than 1 year after the date of enactment of this Act, and biannually thereafter, the Attorney General, in consultation with the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the Director, and the heads of other appropriate agencies, shall submit to the Committees on the Judiciary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Senate, and make publicly available on the Web site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and disseminate to the public through such other means as the Attorney General may identify, a report on the following:	(b) 보고. 이 법률의 제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연 2회, 법무부 장관은 지적재산권 집행조정관·관리자·기타 관련 기관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보고서를 상원과 하원의 사법위원회에 제출한다. 아울러, 법무부 웹사이트에 해당보고서를 공개하고, 법무부 장관이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수단으로 대중에게 보급한다.
(1) The scope and breadth of the theft of the trade secrets of United States companies occurring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1) 해외에서 발생하는 미국 회사의 영업비밀 절도의 범위와 빈도
(2) The extent to which theft of trade secrets occurring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is sponsored by foreign governments, foreign instrumentalities, or foreign agents.	(2) 해외에서 발생하는 영업비밀 절도 중에서 외국 정부·외국 기관·외국 관리가 지원하는 정도
(3) The threat posed by theft of trade secrets occurring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3) 해외에서 발생하는 영업비밀 절도에 따른 위협
(4) The ability and limitations of trade secret	(4) 해외에서 영업비밀의 남용을 방지하고,

owners to prevent the misappropriation of trade secrets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to enforce any judgment against foreign entities for theft of trade secrets, and to prevent imports based on theft of trade secrets overseas.	영업비밀을 절취한 외국 단체에 대한 판결을 집행하고, 해외 영업비밀 절도에 기초한 수입(輸入)을 방지하기 위한 영업비밀 소유자의 능력과 한계
(5) A breakdown of the trade secret protections afforded United States companies by each country that is a trading partner of the United States and enforcement efforts available and undertaken in each such country, including a list identifying specific countries where trade secret theft, laws, or enforcement is a significant problem for United States companies.	(5) 미국의 무역 상대국인 국가가 미국 회사에 제공하는 영업비밀 보호의 세부 사항과 해당 국가가 협조하고 약속한 집행 활동. 미국 회사가 영업비밀 절도·법률·집행 관련 사항을 주요하게 간주할 경우, 여기에는 관련 국가의 목록도 포함된다.
(6) Instances of the Federal Government working with foreign countries to investigate, arrest, and prosecute entities and individuals involved in the theft of trade secrets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6) 연방 정부가 해외 영업비밀 절도와 관련된 단체와 개인을 조사·체포·기소하기 위하여 외국과 공조한 사례
(7) Specific progress made under trade agreements and treaties, including any new remedies enacted by foreign countries, to protect against theft of trade secrets of United States companies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7) 무역 협정과 조약에 따른 구체적 성과. 여기에는 해외에서 미국 회사의 영업 비밀을 절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이 입법한 새로운 구제 방법이 포함된다.
(8) Recommendations of legislative and executive branch actions that may be undertaken to—	(8) 다음 각 목을 위하여 입법부와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권고
(A) reduce the threat of and economic impact caused by the theft of the trade secrets of United States companies occurring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A) 해외에서 발생하는 미국 회사의 영업비밀 절도의 위협과 그 경제적 영향을 저감시킨다.
(B) educate United States companies regarding the threats to their trade secrets when taken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B) 해외로 반출한 경우, 영업비밀에 대한 위협을 미국 회사에 교육한다.

(C) provide assistance to United States companies to reduce the risk of loss of their trade secrets when taken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and

(D) provide a mechanism for United States companies to confidentially or anonymously report the theft of trade secrets occurring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C) 해외로 반출한 경우, 영업비밀의 상실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미국 회사를 지원한다.

(D) 해외에서 발생하는 영업비밀 절도를 미국 회사가 비밀로 또는 익명으로 보고하는 절차를 만든다.

SEC. 5. SENSE OF CONGRESS.

It is the sense of Congress that—

(1) trade secret theft occurs in the United States and around the world;

(2) trade secret theft, wherever it occurs, harms the companies that own the trade secrets and the employees of the companies;

(3) chapter 90 of title 18, United States Code (commonly known as the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applies broadly to protect trade secrets from theft; and

(4) it is important when seizing information to balance the need to prevent or remedy misappropriation with the need to avoid interrupting the—

(A) business of third parties; and

(B) legitimate interests of the party accused of wrongdoing.

제5조(의회의 인지)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1) 영업비밀 절도가 미국 내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발생한다.

(2) 영업비밀 절도가 발생할 때마다 그 영업비밀을 소유한 회사와 그 회사의 피용인은 피해를 겪는다.

(3) 영업비밀을 절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연방법전」 제18편제90장 (「산업스파이법(1996)」)이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4) 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 남용을 방지하거나 치유하라는 요구와 다음 각 목에 대한 제한을 예방하라는 요구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A) 제3자의 영업

(B) 불법 행위로 피소된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

SEC. 6. BEST PRACTICES.

(a) IN GENERAL.—Not later than 2 years after the date of enactment of this Act, the Federal Judicial Center, using existing resources, shall develop recommended best practices for—

제6조(모범 실무)

(a) 일반 규정. 이 법률의 제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연방사법센터는 기존 자료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를 위한 권장 모범 실무를 개발한다.

(1) the seizure of information and media storing the information; and (2) the securing of the information and media once seized.	(1) 정보와 정보를 저장하는 매체의 압수 (2) 일단 압수된 정보와 매체의 보안
(b) UPDATES.—The Federal Judicial Center shall update the recommended best practices developed under subsection (a) from time to time.	(b) 갱신. 연방사법센터는 제(a)항에 따라 개발된 권장 모범 실무를 수시로 갱신한다.
(c) CONGRESSIONAL SUBMISSIONS.—The Federal Judicial Center shall provide a copy of the recommendations developed under subsection (a), and any updates made under subsection (b), to the— (1) Committee on the Judiciary of the Senate; and (2) Committee on the Judiciary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c) 의회 제출. 연방사법센터는 제(a)항에 따라 결정된 권고와 제(b)항에 따른 갱신이 기재된 사본을 다음 각 호에 제출한다. (1) 상원의 사법위원회 (2) 하원의 사법위원회
SEC. 7. IMMUNITY FROM LIABILITY FOR CONFIDENTIAL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TO THE GOVERNMENT OR IN A COURT FILING.	**제7조(정부 또는 법원에 영업비밀을 공개한 것에 대한 면책)**
(a) AMENDMENT.—Section 1833 of title 18, United States Code, is amended— (1) by striking "This chapter" and inserting "(a) IN GENERAL.— This chapter"; (2) in subsection (a)(2), as designated by paragraph (1), by striking "the reporting of a suspected violation of law to any governmental entity of the United States, a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f a State, if such entity has lawful authority with respect to that violation" and inserting "the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a) 개정. 「미국연방법전」 제18편 제1833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정된다. (1) "이 장"을 삭제하고 "(a) 일반 규정. 이 장"을 삽입한다. (2) 제(a)항제(2)호에서, 제(1)호로 지정된 바와 같이 "그 기관이 해당 위반에 대하여 합법적 권한이 있다면, 연방·주(州)·주(州)의 정치적 하부기관의 정부기관에 의심되는 법률 위반을 보고"를 삭제하고 "제(b)항에 따른 영업비밀의 공개"를 삽입한다.

(b);" and	
(3) by adding at the end the following:	(3) 말미에 다음을 추가한다.
"(b) IMMUNITY FROM LIABILITY FOR CONFIDENTIAL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TO THE GOVERNMENT OR IN A COURT FILING.—	"(b) 정부 또는 법원에 영업비밀을 공개한 것에 대한 면책
"(1) IMMUNITY.—An individual shall not be held criminally or civilly liable under any Federal or State trade secret law for the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that—	"(1) 면책. 개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의 공개에 대하여 영업비밀 관련 연방법이나 주(州)법의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A) is made—	"(A) 다음과 같이 공개된 영업비밀
"(i) in confidence to a Federal, State, or local government official,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or to an attorney; and	"(i) 직간접적으로 연방·주(州)·지방 정부 공무원 또는 검사에게 비밀로 공개하였다.
"(ii) solely for the purpose of reporting or investigating a suspected violation of law; or	"(ii) 오로지 의심되는 법률 위반의 보고나 조사를 위하여 공개하였다.
"(B) is made in a complaint or other document filed in a lawsuit or other proceeding, if such filing is made under seal.	"(B) 소송이나 다른 절차에서 제출된 소장이나 기타 문서를 통하여 공개된 영업비밀. 단, 봉인 후에 제출이 이루어졌다.
"(2) USE OF TRADE SECRET INFORMATION IN ANTI-RETALIATION LAWSUIT.—An individual who files a lawsuit for retaliation by an employer for reporting a suspected violation of law may disclose the trade secret to the attorney of the individual and use the trade secret information in the court proceeding, if the individual—	"(2) 반보복(反報復) 소송에서 영업비밀 정보의 사용. 어떠한 개인이 다음 각 목과 같이 행위한다면,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고발에 따른 고용주의 보복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개인은 자신의 변호사에게 영업비밀을 공개하고 법원 절차에서 영업비밀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A) files any document containing the trade secret under seal; and	"(A) 영업비밀을 포함한 서류를 봉인하여 제출한다.
"(B) does not disclose the trade secret, except pursuant to court order.	"(B) 법원 명령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업비밀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3) NOTICE.—	"(3) 고지

"(A) IN GENERAL.—An employer shall provide notice of the immunity set forth in this subsection in any contract or agreement with an employee that governs the use of a trade secret or other confidential information.	"(A) 일반 규정. 고용주는 영업비밀이나 기타 기밀 정보의 사용을 규율하는 피용인과의 모든 계약이나 합의에서 이항에 규정된 면책을 고지한다.
"(B) POLICY DOCUMENT.—An employer shall be considered to be in compliance with the notice requirement in subparagraph (A) if the employer provides a cross-reference to a policy document provided to the employee that sets forth the employer's reporting policy for a suspected violation of law.	"(B) 정책 문서. 고용주가 교차 참조를 위하여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용주 정책 보고서를 피용인에게 제공한다면, (A)목의 고지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C) NON-COMPLIANCE.—If an employer does not comply with the notice requirement in subparagraph (A), the employer may not be awarded exemplary damages or attorney fees under subparagraph (C) or (D) of section 1836(b)(3) in an action against an employee to whom notice was not provided.	"(C) 불이행. 고용주는 (A)목의 고지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다면, 고지를 받지 아니한 피용인에 대한 소송에서 제1836조제(b)항 제(3)호(C)목이나 (D)목의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변호사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다.
"(D) APPLICABILITY.—This paragraph shall apply to contracts and agreements that are entered into or updated after the date of enactment of this subsection.	"(D) 적용 가능성. 이 호는 이 항의 제정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과 합의에 적용된다.
"(4) EMPLOYEE DEFINED.—For purposes of this subsection, the term 'employee' includes any individual performing work as a contractor or consultant for an employer.	"(4) 피용인의 정의. 이 항에서, "피용인"에는 고용주의 하청업자나 고문으로 업무하는 개인이 포함된다.
"(5) RULE OF CONSTRUCTION.—Except as expressly provided for under this subsection, nothing in this subsection shall be construed to authorize, or limit	"(5) 해석 규칙. 이 항에 따라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이 항은 미승인된 수단에 의한 자료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등 법률이 달리 금지하는 행위

liability for, an act that is otherwise prohibited by law, such as the unlawful access of material by unauthorized means"..	를 허용하거나 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b) TECHNICAL AND CONFORMING AMENDMENT.—Section 1838 of title 18, United States Code, is amended by striking "This chapter"and inserting "Except as provided in section 1833(b), this chapter".	(b) 기술적 개정과 관련 개정. "이 장"을 삭제하고 "제1833조제(b)항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이 장"을 삽입하여 「미국연방법전」 제18편제1838조를 개정한다.
Approved May 11, 2016.	2016년 5월 11일 승인
LEGISLATIVE HISTORY—S. 1890: HOUSE REPORTS: No. 114-529 (Comm. on the Judiciary). SENATE REPORTS: No. 114-220 (Comm. on the Judiciary). CONGRESSIONAL RECORD, Vol. 162 (2016): Apr. 4, considered and passed Senate. Apr. 27, considered and passed House. DAILY COMPILATION OF PRESIDENTIAL DOCUMENTS (2016): May 11, Presidential remarks.	입법 연혁—S. 1890: 하원 보고서: 제114-529호(사법위원회) 상원 보고서: 제114-220호(사법위원회) 연방 의회 의사록 제162호(2016): 4월 4일, 상원에서 심의되고 통과됨 4월 27일, 하원에서 심의되고 통과됨 대통령문서일일편람(2016): 5월 11일, 대통령 주석

3.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원 본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일본 경제산업성
번역본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자체번역

「부정경쟁방지법」

- 국가지역: 일본
- 법률번호: 평성5〈1993〉년 법률 제47호
- 공 포 일: 1993년 5월 19일
- 개 정 일: 2023년 6월 14일

第一章 総則	**제1장 총칙**
第一条（目的）	**제1조 (목적)**
この法律は、事業者間の公正な競争及びこれに関する国際約束の的確な実施を確保するため、不正競争の防止及び不正競争に係る損害賠償に関する措置等を講じ、もって国民経済の健全な発展に寄与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이 법은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및 이에 관한 국제약속의 정확한 실시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경쟁의 방지 및 부정경쟁과 관련된 손해배상에 관한 조치 등을 하여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第二条（定義）	**제2조 (정의)**
この法律において「不正競争」とは、次に掲げるものをいう。	① 이 법률에서 “부정경쟁”이란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一　他人の商品等表示（人の業務に係る氏名、商号、商標、標章、商品の容器若しくは包装その他の商品又は営業を表示するものをいう。以下同じ。）として需要者の間に広く認識されているものと同一若しくは類似の商品等表示を使用し、又はその商品等表示を使用した商品を譲渡し、引き渡　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若しく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して、他人の商品又は営業と混同を生じさせる行為	1.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타인의 상품 등 표시(사람의 업무와 관련된 성명, 상호, 상표, 표장(標章), 상품의 용기나 포장, 그 밖의 상품 또는 영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한 상품 또는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양도, 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 수출, 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여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二　自己の商品等表示として他人の著名な商品等表示と同一若しくは類似のものを使用し、又はその商品等表示を使用した商品を	2. 타인의 알려진 상품 등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자기의 상품 등 표시를 사용한 상품 또는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양

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若しく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する行為	도, 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 수출, 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三　他人の商品の形態（当該商品の機能を確保するために不可欠な形態を除く。）を模倣した商品を譲渡し、貸し渡し、譲渡若しくは貸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又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する行為	3. 타인의 상품 형태(해당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결한 형태는 제외한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고, 대여, 양도 혹은 대여하기 위해 전시하고, 수출하고, 또는 수입하고,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
四　窃取、詐欺、強迫その他の不正の手段により営業秘密を取得する行為（以下「営業秘密不正取得行為」 という。）又は営業秘密不正取得行為により取得した営業秘密を使用し、若しくは開示する行為（秘密を保持しつつ特定の者に示すことを含む。 次号から第九号まで、第十九条第一項第七号、第二十一条及び附則第四条第一号において同じ。）	4. 절취, 사기, 강박, 기타 부정한 수단을 통해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혹은 공개하는 행위(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제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음 호부터 제9호까지, 제19조 제1항 제7호, 제21조 및 부칙 제4조 제1호에서 동일하다.)
五　その営業秘密について営業秘密不正取得行為が介在したことを知って、若しくは重大な過失により知らないで営業秘密を取得し、又はその取得した営業秘密を使用し、若しくは開示する行為	5.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영업비밀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六　その取得した後にその営業秘密について営業秘密不正取得行為が介在したことを知って、又は重大な過失により知らないでその取得した営業秘密を使用し、又は開示する行為	6.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영업비밀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七 営業秘密を保有する事業者（以下「営業秘密保有者」という。）からその営業秘密を示された場合において、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で、又はその営業秘密保有者に損害を加える目的で、その営業秘密を使用し、又は開示する行為	7. 영업비밀을 보유한 사업 자(이하 "영업비밀 보유자"라 한다)가 그 영업비밀을 알린 경우에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그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八　その営業秘密について営業秘密不正開示行為（前号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同号に	8.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영업비밀부정공개행위(제7호에 따른 경우에 같은 호에 따

規定する目的でその営業秘密を開示する行為又は秘密を守る法律上の義務に違反してその営業秘密を開示する行為をいう。以下同じ。）であること若しくはその営業秘密について営業秘密不正開示行為が介在したことを知って、若しくは重大な過失により知らないで営業秘密を取得し、又はその取得した営業秘密を使用し、若しくは開示する行為	른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행위 또는 법률상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그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영업비밀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九　その取得した後にその営業秘密について営業秘密不正開示行為があったこと若しくはその営業秘密について営業秘密不正開示行為が介在したことを知って、又は重大な過失により知らないでその取得した営業秘密を使用し、又は開示する行為	9.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영업비밀부정공개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영업비밀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十　第四号から前号までに掲げる行為（技術上の秘密（営業秘密のうち、技術上の情報であるものをいう。　以下同じ。）を使用する行為に限る。以下この号において「不正使用行為」という。）により生じた物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又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する行為（当該物を譲り受けた者（その譲り受けた時に当該物が不正使用行為により生じた物であることを知らず、かつ、知らないことにつき重大な過失がない者に限る。）が当該物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又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する行為を除く。）	10.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행위[기술상의 비밀(영업비밀 중 기술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는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부정사용행위”라 한다]로 발생한 물건을 양도, 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 수출, 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해당 물건을 양수한 자(그 양수한 때에 해당 물건이 부정사용행위로 발생한 물건임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자로 한정한다)가 해당 물건을 양도, 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 수출, 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十一　窃取、詐欺、強迫その他の不正の手段により限定提供データを取得する行為（以下「限定提供データ不正取得行為」という。）又は限定提供データ不正取得行為により取得した限定提供データを使用し、若しくは開示する行為	11. 절취, 사기, 강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한정제공데이터를 취득하는 행위(이하 “한정제공데이터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한정제공데이터 부정취득행위로 취득한 한정제공데이터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十二　その限定提供データについて限定提供データ不正取得行為が介在したことを知って限定提供データを取得し、又はその取得した限定提供データを使用し、若しくは開示する行為

十三　その取得した後にその限定提供データについて限定提供データ不正取得行為が介在したことを知ってその取得した限定提供データを開示する行為

十四　限定提供データを保有する事業者（以下「限定提供データ保有者」という。）からその限定提供データを示された場合において、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で、又はその限定提供データ保有者に損害を加える目的で、その限定提供データを使用する行為（その限定提供データの管理に係る任務に違反して行うものに限る。）又は開示する行為

十五　その限定提供データについて限定提供データ不正開示行為（前号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同号に規定する目的でその限定提供データを開示する行為をいう。以下同じ。）であること若しくはその限定提供データについて限定提供データ不正開示行為が介在したことを知って限定提供データを取得し、又はその取得した限定提供データを使用し、若しくは開示する行為

十六　その取得した後にその限定提供データについて限定提供データ不正開示行為があったこと又はその限定提供データについて限定提供データ不正開示行為が介在したことを知ってその取得した限定提供データを開示する行為

十七　営業上用いられている技術的制限手段（他人が特定の者以外の者に影像若しくは音の視聴、プログラムの実行若しくは情報（電磁的記録（電子的方式、磁気的方式そ

12. 그 한정제공데이터에 대하여 한정제공데이터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 한정제공데이터를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한정제공데이터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13. 취득한 후에 그 한정제공데이터에 대하여 한정제공데이터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 그 취득한 한정제공데이터를 공개하는 행위

14. 한정제공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이하 “한정제공 데이터 보유자”라 한다)가 그 한정제공데이터를 알린 경우에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그 한정제공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한정제공데이터를 사용하는 행위(그 한정제공데이터의 관리와 관련된 임무에 위배된 행위로 한정한다) 또는 공개하는 행위

15. 그 한정제공데이터에 대하여 한정제공데이터 부정공개행위(제14호에 따른 경우에 같은 호에 따른 목적으로 그 한정제공데이터를 공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라는 사실이나 그 한정제공데이터에 대하여 한정제공데이터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 한정제공데이터를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한정제공데이터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16. 취득한 후에 그 한정제공데이터에 대하여 한정제공데이터 부정공개행위가 있었던 사실 또는 그 한정제공데이터에 대하여 한정제공데이터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 그 취득한 한정제공데이터를 공개하는 행위

17. 영업상 이용된 기술적 제한수단(타인이 특정인 이외의 자에게 영상이나 음의 시청, 프로그램의 실행이나 정보) (전자적(電磁的)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の他人の知覚によっては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方式で作られ記録であって、電子計算機による情報処理の用に供されるものをいう。以下同じ。 以下同じ。）に記録されたものに限る。以下この号、次号及び第八項において同じ。）の処理又は影像、音、プログラムその他の情報の記録をさせないために用いているものを除く。）により制限されている影像若しくは音の視聴、プログラムの実行若しくは情報の処理又は影像、音、プログラムその他の情報の記録（以下この号において「影像の視聴等」という。）を当該技術的制限手段の効果を妨げることにより可能とする機能を有する装置（当該装置を組み込んだ機器及び当該装置の部品一式であって容易に組み立てることができるものを含む。）、当該機能を有するプログラム（当該プログラムが他のプログラムと組み合わされたものを含む。）若しくは指令符号（電子計算機に対する指令であって、当該指令のみによって一の結果を得ることができるものをいう。次号において同じ。）を記録した記録媒体若しくは記憶した機器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若しくは輸入し、若しくは当該機能を有するプログラム若しくは指令符号を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する行為（当該装置又は当該プログラムが当該機能以外の機能を併せて有する場合にあっては、影像の視聴等を当該技術的制限手段の効果を妨げることにより可能とする用途に供するために行うものに限る。）又は影像の視聴等を当該技術的制限手段の効果を妨げることにより可能とする役務を提供する行為	그 밖에 사람의 지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되는 기록으로서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동일하다.)에 기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제18호 및 제8항에서 같다}의 처리 또는 영상, 음, 프로그램, 그 밖의 정보를 기록하지 못하도록이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제한된 영상이나 음의 시청, 프로그램의 실행이나 정보의 처리 또는 영상, 음, 프로그램, 그밖의 정보의 기록(이하 이 호에서 “영상의 시청 등”이라 한다)을 해당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방해함으로써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 있는 장치(해당 장치가 포함된 기기 및 해당 장치의 부품 세트로서 쉽게 조립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해당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해당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과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이나 명령부호(해당 명령으로 하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컴퓨터에 대한 명령을 말한다. 제18호에서 같다)를 기록한 기록매체나 저장한 기기를 양도, 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 수출이나 수입하거나 해당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이나 명령부호를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해당 장치 또는 해당 프로그램에 해당 기능 이 외의 기능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적 제한 수단의 효과를 방해함으로써 가능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영상의 시청 등을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해당 기술적제한수단의 효과를 방해함으로써 영상의 시청 등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十八　他人が特定の者以外の者に影像若しくは音の視聴、プログラムの実行若しくは情報の処理又は影像、音、プログラムその他の	18. 타인이 특정인 이외의 자에게 영상이나 음의 시청, 프로그램의 실행이나 정보의 처리 또는 영상, 음, 프로그램, 그 밖의 정

情報の記録をさせないために営業上用いている技術的制限手段により制限されている影像若しくは音の視聴、プログラムの実行若しくは情報の処理又は影像、音、プログラムその他の情報の記録（以下この号において「影像の視聴等」という。）を当該技術的制限手段の効果を妨げることにより可能とする機能を有する装置（当該装置を組み込んだ機器及び当該装置の部品一式であって容易に組み立てることができるものを含む。）、当該機能を有するプログラム（当該プログラムが他のプログラムと組み合わされたものを含む。）若しくは指令符号を記録した記録媒体若しくは記憶した機器を当該特定の者以外の者に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若しくは輸入し、若しくは当該機能を有するプログラム若しくは指令符号を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する行為（当該装置又は当該プログラムが当該機能以外の機能を併せて有する場合にあっては、影像の視聴等を当該技術的制限手段の効果を妨げることにより可能とする用途に供するために行うものに限る。）又は影像の視聴等を当該技術的制限手段の効果を妨げることにより可能とする役務を提供する行為	보를 기록하지 못하도록 영업상 이용된 기술적 제한 수단에 의하여 제한된 영상이나 음의 시청, 프로그램의 실행이나 정보의 처리 또는 영상, 음, 프로그램, 그 밖의 정보의 기록(이하 이 호에서 “영상의 시청 등”이라 한다)을 해당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방해함으로써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 있는 장치(해당 장치가 포함된 기기 및 해당 장치의 부품 세트로서 쉽게 조립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해당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해당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과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이나 명령부호를 기록한 기록매체나 저장한 기기를 해당 특정인 이외의 자에게 양도, 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 수출이나 수입하거나 해당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이나 명령부호를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해당 장치 또는 해당 프로그램에 해당 기능 이외의 기능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방해함으로써 가능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영상의 시청 등을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해당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방해함으로써 영상의 시청 등을 가능하게 하는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十九　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で、又は他人に損害を加える目的で、他人の特定商品等表示（人の業務に係る氏名、商号、商標、標章その他の商品又は役務を表示するものをいう。）と同一若しくは類似のドメイン名を使用する権利を取得し、若しくは保有し、又はそのドメイン名を使用する行為	19.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타인의 특정상품 등 표시(사람의 업무와 관련된 성명, 상호, 상표, 표장, 그 밖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행위 또는 그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행위
二十　商品若しくは役務若しくはその広告若しくは取引に用いる書類若しくは通信にその商品の原産地、品質、内容、製造方法、用途	20.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그 광고나 거래에 이용하는 서류나 통신에 그 상품의 원산지,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나 수량

若しくは数量若しくはその役務の質、内容、用途若しくは数量について誤認させるような表示をし、又はその表示をした商品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若しく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し、若しくはその表示をして役務を提供する行為

또는 그 서비스의 질, 내용, 용도나 수량에 대하여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또는 그 표시를 한 상품을 양도, 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 수출, 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그 표시를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二十一　競争関係にある他人の営業上の信用を害する虚偽の事実を告知し、又は流布する行為

21. 경쟁관계에 있는 타인의 영업상 신용을 실추시키는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二十二　パリ条約（商標法（昭和三十四年法律第百二十七号）第四条第一項第二号に規定するパリ条約をいう。）の同盟国、世界貿易機関の加盟国又は商標法条約の締約国において商標に関する権利（商標権に相当する権利に限る。以下この号において単に「権利」という。）を有する者の代理人若しくは代表者又はその行為の日前一年以内に代理人若しくは代表者であった者が、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その権利を有する者の承諾を得ないでその権利に係る商標と同一若しくは類似の商標をその権利に係る商品若しくは役務と同一若しくは類似の商品若しくは役務に使用し、又は当該商標を使用したその権利に係る商品と同一若しくは類似の商品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若しく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し、若しくは当該商標を使用してその権利に係る役務と同一若しくは類似の役務を提供する行為

22. 파리협약[「상표법」 (소화34〈1959〉년 법률 제127호)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파리협약을 말한다]의 당사국,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의 체약국에서 상표에 관한 권리(상표권에 상당하는 권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권리"라 한다)가 있는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였던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리가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그 권리와 관련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권리와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는 행위 또는 해당 상표를 사용한 그 권리와 관련된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양도, 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 수출, 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 그 권리와 관련된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2　この法律において「商標」とは、商標法第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商標をいう。

② 이 법률에서 "상표"란 「상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표를 말한다.

3　この法律において「標章」とは、商標法第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標章をいう。

③ 이 법률에서 "표장"이란 「상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표장을 말한다.

4　この法律において「商品の形態」とは、需要

④ 이 법률에서 "상품의 형태"란 수요자가

者が通常の用法に従った使用に際して知覚によって認識することができる商品の外部及び内部の形状並びにその形状に結合した模様、色彩、光沢及び質感をいう。	통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했을 때 지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품의 외부 및 내부의 형상, 그 형상에 결합한 모양, 색채, 광택 및 질감을 말한다.
5　この法律において「模倣する」とは、他人の商品の形態に依拠して、これと実質的に同一の形態の商品を作り出すことをいう。	⑤ 이 법률에서 "모방"이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6　この法律において「営業秘密」とは、秘密として管理されている生産方法、販売方法その他の事業活動に有用な技術上又は営業上の情報であって、公然と知られていないものをいう。	⑥ 이 법률에서 "영업비밀"이란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의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 상의 정보로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7　この法律において「限定提供データ」とは、業として特定の者に提供する情報として電磁的方法（電子的方法、磁気的方法その他人の知覚によっては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方法をいう。次項において同じ。）により相当量蓄積され、及び管理されている技術上又は営業上の情報（営業秘密を除く。）をいう。	⑦ 이 법률에서 "한정제공데이터"란 업(業)으로서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정보로, 전자적(電磁的) 방법(전자적 방법, 자기적 방법, 그 밖에 사람의 지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방법을 말한다. 제8항에서 같다)으로 상당량 축적 및 관리되고 있는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영업비밀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8　この法律において「技術的制限手段」とは、電磁的方法により影像若しくは音の視聴、プログラムの実行若しくは情報の処理又は影像、音、プログラムその他の情報の記録を制限する手段であって、視聴等機器（影像若しくは音の視聴、プログラムの実行若しくは情報の処理又は影像、音、プログラムその他の情報の記録のために用いられる機器をいう。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が特定の反応をする信号を記録媒体に記録し、若しくは送信する方式又は視聴等機器が特定の変換を必要とするよう影像、音、プログラムその他の情報を変換して記録媒体に記録し、若しくは送信する方式によるものをいう。	⑧ 이 법률에서 "기술적 제한 수단"이란 전자적 방법으로 영상이나 음의 시청, 프로그램의 실행이나 정보의 처리 또는 영상, 음, 프로그램, 그 밖의 정보의 기록을 제한하는 수단으로서 시청 등 기기(영상이나 음의 시청, 프로그램의 실행이나 정보의 처리 또는 영상, 음, 프로그램, 그 밖의 정보의 기록을 위하여 이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특정 반응을 하는 신호를 기록매체에 기록하거나 송신하는 방식 또는 시청 등 기기가 특정 변환을 필요로 하도록 영상, 음, 프로그램, 그 밖의 정보를 변환하여 기록매체에 기록하거나 송신하는 방식에 의한 것을 말한다.
9　この法律において「プログラム」とは、電子計算機に対する指令であって、一の結果を得	⑨ 이 법률에서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대한 명령으로서 하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

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組み合わされたものをいう。	록 구성된 것을 말한다.
10　この法律において「ドメイン名」とは、インターネットにおいて、個々の電子計算機を識別するために割り当てられる番号、記号又は文字の組合せに対応する文字、番号、記号その他の符号又はこれらの結合をいう。	⑩ 이 법률에서 “도메인이름”이란 인터넷에서 개개의 컴퓨터를 식별하기 위하여 할당된 번호, 기호 또는 문자의 조합에 대응하는 문자, 번호, 기호, 그 밖의 부호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
11　この法律にいう「物」には、プログラムを含むものとする。	⑪ 이 법률에서 “물건”이란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第二章　差止請求、損害賠償等	**제2장 금지청구, 손해배상 등**
第三条（差止請求権）	**제3조 (금지청구권)**
不正競争によって営業上の利益を侵害され、又は侵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者は、その営業上の利益を侵害する者又は侵害するおそれがある者に対し、その侵害の停止又は予防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① 부정경쟁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2　不正競争によって営業上の利益を侵害され、又は侵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者は、前項の規定による請求をするに際し、侵害の行為を組成した物（侵害の行為により生じた物を含む。）の廃棄、侵害の行為に供した設備の除却その他の侵害の停止又は予防に必要な行為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② 부정경쟁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 침해의 행위를 조성한 물건(침해의 행위로 발생한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의 행위에 제공한 설비의 제거, 그 밖의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第四条（損害賠償）	**제4조 (손해배상)**
故意又は過失により不正競争を行って他人の営業上の利益を侵害した者は、これによって生じた損害を賠償する責めに任ずる。ただし、第十五条の規定により同条に規定する権利が消滅した後にその営業秘密又は限定提供データを使用する行為によって生じた損害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경쟁을 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는 이로써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동조에 따른 권리가 줄어든 후에 그 영업비밀 또는 한정제공데이터를 사용하는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五条（損害の額の推定等）	제5조 (손해액의 추정 등)
第二条第一項第一号から第十六号まで又は第二十二号に掲げる不正競争によって営業上の利益を侵害された者（以下この項において「被侵害者」という。）が故意又は過失により自己の営業上の利益を侵害した者（以下この項において「侵害者」という。）に対しその侵害により自己が受けた損害の賠償を請求する場合において、侵害者がその侵害の行為を組成した物（電磁的記録を含む。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を譲渡したとき（侵害の行為により生じた物を譲渡したときを含む。）、又はその侵害の行為により生じた役務を提供したときは、次に掲げる額の合計額を、被侵害者が受けた損害の額とすることができる。	제5조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6호까지 또는 제22호에 열거한 부정경쟁으로 인해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피침해자'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로 인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이하 이 항에서 침해자라 한다.)가 그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동일하다.)을 양도했을 때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물건을 양도했을 때를 포함한다.), 또는 그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역무를 제공했을 때는 다음에 열거한 금액의 합계액을 피침해자가 받은 손해금액으로 할 수 있다.
一　被侵害者がその侵害の行為がなければ販売することができた物又は提供することができた役務の単位数量当たりの利益の額に、侵害者が譲渡した当該物又は提供した当該役務の数量（次号において「譲渡等数量」という。）のうち被侵害者の販売又は提供の能力に応じた数量（同号において「販売等能力相応数量」という。）を超えない部分（その全部又は一部に相当する数量を被侵害者が販売又は提供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する事情があるときは、当該事情に相当する数量（同号において「特定数量」という。）を控除した数量）を乗じて得た額	1. 피침해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으면 판매할 수 있는 물건 또는 제공할 수 있는 역무의 단위수량당 이익금액에 침해자가 양도한 해당 물건 또는 제공한 해당 역무의 수량(다음 호에서 '양도 등 수량'이라 한다.) 중 피침해자의 판매 또는 제공 능력에 따른 수량(동호에서 '판매 등 능력 상응 수량'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한 부분(그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수량을 피침해자가 판매 또는 제공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해당 사정에 상당하는 수량(동호에서 '특정 수량'이라 한다.)을 공제한 수량)을 곱한 금액
二　譲渡等数量のうち販売等能力相応数量を超える数量又は特定数量がある場合におけるこれらの数量に応じた次のイからホまでに掲げる不正競争の区分に応じて当該イからホまでに定める行為に対し受けるべき金銭の額に相当する額（被侵害者が、次のイからホまでに掲げる不正競争の区分に応じて当該イからホまでに定める行為の許諾をし得たと認められない場合を除く。）	2. 양도 등 수량 중 판매 등 능력 상응 수량을 초과하는 수량 또는 특정 수량이 있는 경우, 이 수량들에 따르는 다음의 가부터 마까지 열거한 부정경쟁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가부터 마까지 규정한 행위에 대해 받아야 할 금전액에 상당하는 금액(피침해자가 다음의 가부터 마까지 열거한 부정경쟁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가부터 마까지 규정한 행위를 허락할 수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イ 第二条第一項第一号又は第二号に掲げる不正競争当該侵害に係る商品等表示の使用	가. 제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열거한 부정경쟁 해당 침해와 관련된 상품 등의 표시 사용
ロ 第二条第一項第三号に掲げる不正競争当該侵害に係る商品の形態の使用	나. 제2조 제1항 제3호에 열거한 부정경쟁 해당 침해와 관련된 상품의 형태 사용
ハ 第二条第一項第四号から第九号までに掲げる不正競争当該侵害に係る営業秘密の使用	다. 제2조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열거한 부정경쟁 해당 침해와 관련된 영업비밀 사용
ニ 第二条第一項第十一号から第十六号までに掲げる不正競争当該侵害に係る限定提供データの使用	라. 제2조 제1항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 열거한 부정경쟁 해당 침해와 관련된 한정제공데이터 사용
ホ 第二条第一項第二十二号に掲げる不正競争当該侵害に係る商標の使用	마. 제2조 제1항 제22호에 열거한 부정경쟁 해당 침해와 관련된 상표 사용
2 不正競争によって営業上の利益を侵害された者が故意又は過失により自己の営業上の利益を侵害した者に対しその侵害により自己が受けた損害の賠償を請求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者がその侵害の行為により利益を受けているときは、その利益の額は、その営業上の利益を侵害された者が受けた損害の額と推定する。	② 부정경쟁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로 인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자가 그 침해 행위로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이익 금액은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3 第二条第一項第一号から第九号まで、第十一号から第十六号まで、第十九号又は第二十二号に掲げる不正競争によって営業上の利益を侵害された者は、故意又は過失により自己の営業上の利益を侵害した者に対し、次の各号に掲げる不正競争の区分に応じて当該各号に定める行為に対し受けるべき金銭の額に相当する額の金銭を、自己が受けた損害の額としてその賠償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③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 제19호 또는 제22호의 부정경쟁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부정경쟁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받아야 할 금전의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가 입은 손해액으로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一 第二条第一項第一号又は第二号に掲げる不正競争　当該侵害に係る商品等表示の使用	1.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부정경쟁: 해당 침해와 관련된 상품 등 표시의 사용
二 第二条第一項第三号に掲げる不正競争 当	2. 제2조제1항제3호의 부정경쟁: 해당

該侵害に係る商品の形態の使用 三　第二条第一項第四号から第九号までに掲げる不正競争　当該侵害に係る営業秘密の使用 四　第二条第一項第十一号から第十六号までに掲げる不正競争　当該侵害に係る限定提供データの使用 五　第二条第一項第十九号に掲げる不正競争　当該侵害に係るドメイン名の使用 六　第二条第一項第二十二号に掲げる不正競争　当該侵害に係る商標の使用 4　裁判所は、第一項第二号イからホまで及び前項各号に定める行為に対し受けるべき金銭の額を認定するに当たっては、営業上の利益を侵害された者が、当該行為の対価について、不正競争があったことを前提として当該不正競争をした者との間で合意をするとしたならば、当該営業上の利益を侵害された者が得ることとなるその対価を考慮することができる。 5　第三項の規定は、同項に規定する金額を超える損害の賠償の請求を妨げ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営業上の利益を侵害した者に故意又は重大な過失がなかったときは、裁判所は、損害の賠償の額を定めるについて、これを参酌することができる。	침해와 관련된 상품의 형태의 사용 3. 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부정경쟁: 해당 침해와 관련된 영업비밀의 사용 4. 제2조제1항제11호부터 제16호까지의 부정경쟁: 해당 침해와 관련된 한정제공 데이터의 사용 5. 제2조제1항제19호의 부정경쟁: 해당 침해와 관련된 도메인명의 사용 6. 제2조제1항제22호의 부정경쟁: 해당 침해와 관련된 상표의 사용 ④ 법원은 제1항 제2호 가부터 마까지 및 전항 각 호에 규정한 행위에 대해 받아야 할 금전액을 인정한 때는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해당 행위의 대가에 대해 부정경쟁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해당 부정경쟁을 한 자 간에 합의를 했다면 해당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얻을 수 있는 그 대가를 고려할 수 있다. ⑤ 제3항은 동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침해배상청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던 때에는 재판소는 침해배상액을 정할 때에 이를 참작할 수 있다.
第五条の二（技術上の秘密を取得した者の当該技術上の秘密を使用する行為等の推定） 技術上の秘密（生産方法その他政令で定める情報に係るものに限る。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について第二条第一項第四号、第五号又は第八号に掲げる不正競争（営業秘密を取得する行為に限る。）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その行為をした者が当該技術上の秘密	**제5조의2 (기술상의 비밀을 취득한 자의 해당 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등의 추정)** 기술상의 비밀(생산방식, 그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정보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제2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제8호에 열거한 부정경쟁(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로 한정한다)가 있는 경우에 그 행위를 한 자가 해당 기술

を使用する行為により生ずる物の生産その他技術上の秘密を使用したことが明らかな行為として政令で定める行為（以下この条において「生産等」という。）をしたときは、その者は、それぞれ当該各号に掲げる不正競争（営業秘密を使用する行為に限る。）として生産等をしたものと推定する。	상의 비밀을 사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물건의 생산, 그 밖에 기술상의 비밀을 사용하였음이 명백한 행위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생산 등”이라 한다)를 한 때에는 그 자는 각각 해당 각 호에 열거한 부정경쟁(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로서 생산 등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
2　技術上の秘密を取得した後にその技術上の秘密について営業秘密不正取得行為が介在したことを知って、又は重大な過失により知らないで、その技術上の秘密に係る技術秘密記録媒体等（技術上の秘密が記載され、又は記録された文書、図画又は記録媒体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その技術上の秘密が化体された物件又は当該技術秘密記録媒体等に係る送信元識別符号（自動公衆送信（公衆によって直接受信されることを目的として公衆からの求めに応じ自動的に送信を行うことをいい、放送又は有線放送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の送信元を識別するための文字、番号、記号その他の符号をいう。第四項において同じ。）を保有する行為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その行為をした者が生産等をしたときは、その者は、第二条第一項第六号に掲げる不正競争（営業秘密を使用する行為に限る。）として生産等をしたものと推定する。	② 기술상의 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기술상의 비밀에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가 개재된 사실을 알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모르고 그 기술상의 비밀과 관련된 기술비밀기록매체 등(기술상의 비밀이 기재되거나 또는 기록된 문서, 그림 또는 기록매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일하다.), 그 기술상의 비밀이 형상화된 물건 또는 해당 기술비밀기록매체 등과 관련된 송신원 식별부호(자동공중송신(공중에 의해 직접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공중의 요구에 따라 자동으로 송신하는 것을 말하며, 방송 또는 유선방송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송신원을 식별하기 위한 문자, 번호, 기호, 기타 부호를 말한다. 제4항에서 동일하다.)를 보유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그 행위를 한 자가 생산 등을 했을 때, 그 자는 제2조 제1항 제6호에 열거한 부정경쟁(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에 한한다.)으로 생산 등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
3　技術上の秘密をその保有者から示された後に、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で、又は当該技術上の秘密の保有者に損害を加える目的で、当該技術上の秘密の管理に係る任務に違反して、次に掲げる方法でその技術上の秘密を領得する行為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その行為をした者が生産等をしたときは、その者は、第二条第一項第七号に掲げ	③ 기술상의 비밀을 그 보유자로부터 제시받은 후에 부정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해당 기술상의 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해당 기술상의 비밀 관리와 관련된 임무를 위반하여 다음에 열거한 방법으로 그 기술상의 비밀을 영득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그 행위를 한 자가 생산 등을 했을 때, 그 자는 제2조 제1

る不正競争（営業秘密を使用する行為に限る。）として生産等をしたものと推定する。

一　技術秘密記録媒体等又は技術上の秘密が化体された物件を横領すること。

二　技術秘密記録媒体等の記載若しくは記録について、又は技術上の秘密が化体された物件について、その複製を作成すること。

三　技術秘密記録媒体等の記載又は記録であって、消去すべきものを消去せず、かつ、当該記載又は記録を消去したように仮装すること。

4　技術上の秘密を取得した後にその技術上の秘密について営業秘密不正開示行為があったこと若しくは営業秘密不正開示行為が介在したことを知って、又は重大な過失により知らないで、その技術上の秘密に係る技術秘密記録媒体等、その技術上の秘密が化体された物件又は当該技術秘密記録媒体等に係る送信元識別符号を保有する行為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その行為をした者が生産等をしたときは、その者は、第二条第一項第九号に掲げる不正競争（営業秘密を使用する行為に限る。）として生産等をしたものと推定する。

第六条（具体的態様の明示義務）

不正競争による営業上の利益の侵害に係る訴訟において、不正競争によって営業上の利益を侵害され、又は侵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主張する者が侵害の行為を組成したものとして主張する物又は方法の具体的態様を否認するときは、相手方は、自己の行為の具体的態様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相手方において明らかにすることができない相当の理由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항 제7호에 열거한 부정경쟁(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에 한한다.)으로 생산 등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

1. 기술비밀기록매체 등 또는 기술상의 비밀이 형상화된 물건을 횡령하는 행위.

2. 기술비밀기록매체 등의 기재 혹은 기록에 대해, 또는 기술상의 비밀이 형상화된 물건에 대해 복제하는 행위.

3. 기술비밀기록매체 등의 기재 또는 기록으로, 삭제해야 할 것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재 또는 기록을 삭제한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④ 기술상의 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기술상의 비밀에 대해 영업비밀 부정공개행위가 있던 사실 혹은 영업비밀 부정공개행위가 개재된 사실을 알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모르고 그 기술상의 비밀과 관련된 기술비밀기록매체 등, 그 기술상의 비밀이 형상화된 물건 또는 해당 기술비밀기록매체 등과 관련된 송신원 식별부호를 보유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그 행위를 한 자가 생산 등을 했을 때 그 자는 제2조 제1항 제9호에 열거한 부정경쟁(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에 한한다.)으로 생산 등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조 (구체적 양태의 명시의무)

부정경쟁으로 인한 영업상의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부정경쟁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침해 행위를 조성한 것으로 주장하는 물건 또는 방법의 구체적 상태를 부인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자기 행위의 구체적 상태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다만, 상대방이 분명히 밝힐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七条（書類の提出等）	제7조 (서류의 제출 등)
裁判所は、不正競争による営業上の利益の侵害に係る訴訟においては、当事者の申立てにより、当事者に対し、当該侵害行為について立証するため、又は当該侵害の行為による損害の計算をするため必要な書類又は電磁的記録の提出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その書類の所持者又はその電磁的記録を利用する権限を有する者においてその提出を拒むことについて正当な理由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① 재판소는 부정경쟁으로 인한 영업상 이익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행위에 대하여 입증하기 위하여 또는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 또는 그 전자적 기록을 이용할 권한이 있는 자가 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裁判所は、前項本文の申立てに係る書類若しくは電磁的記録が同項本文の書類若しくは電磁的記録に該当するかどうか又は同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正当な理由があるかどうかの判断を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書類の所持者又は電磁的記録を利用する権限を有する者にその提示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何人も、その提示された書類又は電磁的記録の開示を求めることができない。	② 재판소는 제1항 본문의 신청과 관련된 서류나 전자적 기록이 같은항 본문의 서류나 전자적 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서류의 소지자 또는 전자적 기록을 이용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누구도 그 제시된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의 공개를 요구할 수 없다.
3　判所は、前項の場合において、第一項本文の申立てに係る書類若しくは電磁的記録　が同項本文の書類若しくは電磁的記録に該当するかどうか又は同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正当な理由があるかどうかについて前項後段の書類又は電磁的記録を開示してその意見を聴くことが必要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事者等（当事者（法人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その代表者）又は当事者の代理人（訴訟代理人及び補佐人を除く。）、使用人その他の従業者をいう。以下同じ。）、訴訟代理人又は補佐人に対し、当該書類又は当該電磁的記録を開示することができる。	③ 재판소는 제2항의 경우에 제1항 본문의 신청과 관련된 서류나 전자적 기록이 같은 항 본문의 서류나 전자적 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제2항 후단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을 공개하여 그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당사자 등[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소송대리인 및 보좌인을 제외한다),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송대리인 또는 보좌인에게 해당 서류 또는 해당 전자적 기록을 공개할 수 있다.
4　裁判所は、第二項の場合において、同項後段の書類又は電磁的記録を開示して専門的な	④ 재판소는 제2항의 경우에 같은 항 후단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을 공개하여 전문

知見に基づく説明を聴くことが必要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事者の同意を得て、民事訴訟法（平成八年法律第百九号第一編第五章第二節第一款に規定する専門委員に対し、当該書類又は当該電磁的記録を開示することができる。	적 식견에 기초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민사소송법」(평성8〈1996〉년 법률 제109호) 제1편제5장제2절제1관에 따른 전문위원에게 해당 서류 또는 해당 전자적 기록을 공개할 수 있다.
5　前各項の規定は、不正競争による営業上の利益の侵害に係る訴訟における当該侵害行為について立証するため必要な検証の目的の提示について準用する。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부정경쟁으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침해행위에 대하여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증의 목적의 제시에 대하여 준용한다.
第八条（損害計算のための鑑定）	**제8조 (손해계산을 위한 감정)**
不正競争による営業上の利益の侵害に係る訴訟において、当事者の申立てにより、裁判所が当該侵害の行為による損害の計算をするため必要な事項について鑑定を命じたときは、当事者は、鑑定人に対し、当該鑑定をするため必要な事項について説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	부정경쟁으로 인한 영업상의 손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소가 해당 침해의 행위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정을 명령한 때에는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해당 감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第九条（相当な損害額の認定）	**제9조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不正競争による営業上の利益の侵害に係る訴訟において、損害が生じたことが認められる場合において、損害額を立証するために必要な事実を立証することが当該事実の性質上極めて困難であるときは、裁判所は、口頭弁論の全趣旨及び証拠調べの結果に基づき、相当な損害額を認定することができる。	부정경쟁으로 인한 영업상의 손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한 필요한 사실의 입증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때에는 재판소는 구두변론의 전취지(全趣旨) 및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第十条（秘密保持命令）	**제10조 (비밀유지명령)**
裁判所は、不正競争による営業上の利益の侵害に係る訴訟において、その当事者が保有する営業秘密について、次に掲げる事由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ことにつき疎明があった場合には、当事者の申立てにより、決定で、当事者等、訴訟代理人又は補佐人に対し、当該営業秘	① 재판소는 부정경쟁으로 인한 영업상 이익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에 해당함에 대한 소명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당사자 등, 소송대리인 또는 보좌인에게 해당 영업비밀을 해당

密を当該訴訟の追行の目的以外の目的で使用し、又は当該営業秘密に係るこの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受けた者以外の者に開示してはならない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その申立ての時までに当事者等、訴訟代理人又は補佐人が第一号に規定する準備書面の閲読又は同号に規定する証拠の取調べ若しくは開示以外の方法により当該営業秘密を取得し、又は保有してい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영업비밀과 관련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까지 당사자 등, 소송 대리인 또는 보좌인이 제1호에 따른 준비서면의 열람 또는 같은 호에 따른 증거 조사나 공개 이외의 방법으로 해당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보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一　既に提出され若しくは提出されるべき準備書面に当事者の保有する営業秘密が記載され、又は既に取り調べられ若しくは取り調べられるべき証拠（第七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開示された書類若しくは電磁的記録又は第十三条第四項の規定により開示された書面若しくは電磁的記録を含む。）の内容に当事者の保有する営業秘密が含まれること。	1. 이미 제출되거나 제출되어야 하는 준비서면에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이 기재되거나 이미 조사되거나 조사되어야 하는 증거(제7조제3항에 따라 공개된 서류나 전자적 기록 또는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된 서면이나 전자적 기록을 포함한다)의 내용에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이 포함될 것
二　前号の営業秘密が当該訴訟の追行の目的以外の目的で使用され、又は当該営業秘密が開示されることにより、当該営業秘密に基づく当事者の事業活動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り、これを防止するため当該営業秘密の使用又は開示を制限する必要があること。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해당 영업비밀이 공개됨으로써 해당 영업비밀에기초한 당사자의 사업활동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
2　前項の規定による命令（以下「秘密保持命令」という。）の申立て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書面で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一 秘密保持命令を受けるべき者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二　秘密保持命令の対象となるべき営業秘密を特定するに足りる事実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三 前項各号に掲げる事由に該当する事実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3　秘密保持命令が発せられた場合には、その電子決定書（民事訴訟法第百二十二条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二百五十二条第一項の規定	③ 비밀유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결정서[「민사소송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25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により作成された電磁的記録（同法第百二十二条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二百五十三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裁判所の使用に係る電子計算機（入出力装置を含む。）に備えられたファイルに記録されたものに限る。）をいう。次項及び次条第二項において同じ。）を祕密保持命令を受けた者に送達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전자적 기록{같은 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253조제2항에 따라 재판소의 사용과 관련된 컴퓨터(입출력장치를 포함한다)에 설치된 파일에 기록된 것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같다]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祕密保持命令は、祕密保持命令を受けた者に対する電子決定書の送達がされた時から、効力を生ずる。	④ 비밀유지명령은 비밀유지 명령을 받은 자에게 전자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 祕密保持命令の申立てを却下した裁判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⑤ 비밀유지명령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第十一条（祕密保持命令の取消し）	**제11조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祕密保持命令の申立てをした者又は祕密保持命令を受けた者は、訴訟記録の存する裁判所（訴訟記録の存する裁判所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祕密保持命令を発した裁判所）に対し、前条第一項に規定する要件を欠くこと又はこれを欠くに至ったことを理由として、祕密保持命令の取消しの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재판소(소송기록을 보관하는 재판소가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 명령을 내린 재판소)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것을 이유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2 祕密保持命令の取消しの申立てについての裁判があった場合には、その電子決定書をその申立てをした者及び相手方に送達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祕密保持命令の取消しの申立てについての裁判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4 祕密保持命令を取り消す裁判は、確定しな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5 裁判所は、祕密保持命令を取り消す裁判をした場合において、祕密保持命令の取消しの申立てをした者又は相手方以外に当該祕密保	⑤ 재판소는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이외에 해당 비밀유지명

持命令が発せられた訴訟において当該営業秘密に係る秘密保持命令を受けている者があるときは、その者に対し、直ちに、秘密保持命令を取り消す裁判をした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령을 내린 소송에서 해당 영업비밀과 관련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하였다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第十二条（訴訟記録の閲覧等の請求の通知等）	**제12조 (소송기록의 열람 등의 청구의 통지 등)**
秘密保持命令が発せられた訴訟（全ての秘密保持命令が取り消された訴訟を除く。）に係る訴訟記録につき、民事訴訟法第九十二条第一項の決定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当事者から同項に規定する秘密記載部分の閲覧等の請求があり、かつ、その請求の手続を行った者が当該訴訟において秘密保持命令を受けていない者であるときは、裁判所書記官は、同項の申立てをした当事者（その請求をした者を除く。第三項において同じ。）に対し、その請求後直ちに、その請求があった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을 제외한다)과 관련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92조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동항에 따른 비밀기재부분의열람 등을 청구하고, 그 청구절차를 이행한 자가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인 때에는 재판소 서기관은 동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청구를 한 자를 제외한다.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후 즉시 그 청구가 있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裁判所書記官は、同項の請求があった日から二週間を経過する日までの間（その請求の手続を行った者に対する秘密保持命令の申立てがその日までにされ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申立てについての裁判が確定するまでの間）、その請求の手続を行った者に同項の秘密記載部分の閲覧等をさせてはならない。	② 제1항의 경우에 재판소 서기관은 동항의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가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그 청구 절차를 이행한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날까지 있은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그 청구 절차를 이행한 자에게 동항의 비밀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3　前二項の規定は、第一項の請求をした者に同項の秘密記載部分の閲覧等をさせることについて民事訴訟法第九十二条第一項の申立てをした当事者の全ての同意があるときは、適用しない。	③ 제1항의 청구를 한 자에게 동항의 비밀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92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十三条（当事者尋問等の公開停止）	**제13조 (당사자신문 등의 공개 정지)**
不正競争による営業上の利益の侵害に係る訴訟における当事者等が、その侵害の有無についての判断の基礎となる事項であって当事者	① 부정경쟁으로 인한 영업상 이익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당사자 등이 그 침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の保有する営業秘密に該当するものについて、当事者本人若しくは法定代理人又は証人として尋問を受ける場合においては、裁判所は、裁判官の全員一致により、その当事者等が公開の法廷で当該事項について陳述をすることにより当該営業秘密に基づく当事者の事業活動に著しい支障を生ずることが明らかであることから当該事項について十分な陳述をすることができず、かつ、当該陳述を欠くことにより他の証拠のみによっては当該事項を判断の基礎とすべき不正競争による営業上の利益の侵害の有無についての適正な裁判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認めるときは、決定で、当該事項の尋問を公開しないで行うことができる。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증인으로서 신문을 받는 경우에는 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그 당사자 등이 공개 법정에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 진술함으로써 해당 영업비밀에 기초한 당사자의 사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것이 명백하여 해당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고, 해당 진술을 제외하면 다른 증거만으로는 해당 사항을 판단의 기초로 해야 하는 부정경쟁으로 인한 영업상 이익 침해의 유무에 대한 적절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사항의 신문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실시할 수 있다.
2　裁判所は、前項の決定をするに当たっては、あらかじめ、当事者等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② 재판소는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裁判所は、前項の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事者等にその陳述すべき事項の要領を記載した書面又はこれに記載すべき事項を記録した電磁的記録の提示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何人も、その提示された書面又は電磁的記録の開示を求めることができない。	③ 재판소는 제2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당사자 등에게 그 진술할 사항의 요령을 기재한 서면 또는 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기록한 전자적 기록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누구도 그 제시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의 공개를 요구할 수 없다.
4　裁判所は、前項後段の書面又は電磁的記録を開示してその意見を聴くことが必要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事者等、訴訟代理人又は補佐人に対し、当該書面又は当該電磁的記録を開示することができる。	④ 재판소는 제3항 후단의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공개하여 그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당사자 등, 소송대리인 또는 보좌인에게 해당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기록을 공개할 수 있다.
5　裁判所は、第一項の規定により当該事項の尋問を公開しないで行うときは、公衆を退廷させる前に、その旨を理由とともに言い渡さなければならない。当該事項の尋問が終了したときは、再び公衆を入廷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⑤ 재판소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사항의 신문을 비공개로 실시하는 때에는 방청객을 퇴정시키기 전에 그 취지를 이유와 함께 설명하여야 한다. 해당 사항의 신문이 종료된 때에는 다시 방청객을 입장시켜야 한다

第十四条（信用回復の措置）

故意又は過失により不正競争を行って他人の営業上の信用を害した者に対しては、裁判所は、その営業上の信用を害された者の請求により、損害の賠償に代え、又は損害の賠償とともに、その者の営業上の信用を回復するのに必要な措置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第十五条（消滅時効）

第二条第一項第四号から第九号までに掲げる不正競争のうち、営業秘密を使用する行為に対する第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侵害の止又は予防を請求する権利は、次に掲げる場合には、時効によって消滅する。

一　その行為を行う者がその行為を継続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行為により営業上の利益を侵害され、又は侵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営業秘密保有者がその事実及びその行為を行う者を知った時から三年間行わないとき。

二　その行為の開始の時から二十年を経過したとき。

２　前項の規定は、第二条第一項第十一号から第十六号までに掲げる不正競争のうち、限定提供データを使用する行為に対する第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侵害の停止又は予防を請求する権利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前項第一号中「営業秘密保有者」とあるのは、「限定提供データ保有者」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三章　国際約束に基づく禁止行為

第十六条（外国の国旗等の商業上の使用禁止）

何人も、外国の国旗若しくは国の紋章その他

제14조 (신용회복조치)

재판소는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경쟁을 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침해한 자에게는 그 영업상의 신용에 피해를 입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 배상을 대신하거나 손해 배상과 아울러 그 자의 영업상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15조 (소멸시효)

① 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부정경쟁 중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제3조제1항에 따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권리는 다음의 경우에는 시효로 소멸한다.

1. 그 행위를 하는 자가 그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 그 행위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영업비밀보유자가 그 사실 및 그 행위를 하는 자를 안 때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아니한 때

2. 그 행위가 개시된 때부터 20년이 경과한 때

② 제1항은 제2조제1항제11호부터 제16호까지의 부정경쟁 중 한정제공데이터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제3조제1항에 따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권리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항제1호 중 “영업비밀보유자”는 “한정제공데이터보유자”로 한다.

제3장 국제약속에 따른 금지행위

제16조 (외국 국기 등의 상업상 사용 금지)

① 누구든지 외국 국기나 국가의 문장(紋

の記章であって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もの（以下「外国国旗等」という。）と同一若しくは類似のもの（以下「外国国旗等類似記章」という。）を商標として使用し、又は外国国旗等類似記章を商標として使用した商品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若しく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し、若しくは外国国旗等類似記章を商標として使用して役務を提供してはならない。ただし、その外国国旗等の使用の許可（許可に類する行政処分を含む。以下同じ。）を行う権限を有する外国の官庁の許可を受け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2　前項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何人も、商品の原産地を誤認させるような方法で、同項の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外国の国の紋章（以下「外国紋章」という。）を使用し、又は外国紋章を使用した商品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若しく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し、若しくは外国紋章を使用して役務を提供してはならない。ただし、その外国紋章の使用の許可を行う権限を有する外国の官庁の許可を受け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3 何人も、外国の政府若しくは地方公共団体の監督用若しくは証明用の印章若しくは記号であって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もの（以下「外国政府等記号」という。）と同一若しくは類似のもの（以下「外国政府等類似記号」という。）をその外国政府等記号が用いられている商品若しくは役務と同一若しくは類似の商品若しくは役務の商標として使用し、又は外国政府等類似記号を当該商標として使用した商品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若しく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し、若しくは外国政府等類似記号を当該商標として使用して役務

章), 그 밖의 기장(記章)으로서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외국국기 등”이라 한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하 “외국국기 등 유사기장”이라 한다)을 상표로서 사용하거나 외국국기 등 유사기장을 상표로서 사용한 상품을 양도·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출·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외국 국기 등 유사기장을 상표로서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외국 국기 등의 사용허가(허가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할 권한을 가진 외국 관청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것 외에 누구든지 상품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항의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외국 국가의 문장(이하 “외국 문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외국 문장을 사용한 상품을 양도·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출·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외국 문장으로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외국 문장의 사용허가를 할 권한을 가진 외국 관청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외국의 정부나 지방공공단체의 감독용, 증명용 인장이나 기호로서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외국정부 등 기호”라 한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하 “외국정부 등 유사기호”라 한다)을 그 외국정부 등 기호가 이용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상표로서 사용하거나 외국정부 등 유사기호를 해당 상표로서 사용한 상품을 양도·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출·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 하거나 외국정부 등 유사기호를 해당 상표로서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

を提供してはならない。ただし、その外国政府等記号の使用の許可を行う権限を有する外国の官庁の許可を受け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만, 그 외국정부 등 기호의 사용을 허가할 권한을 가진 외국 관청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十七条（国際機関の標章の商業上の使用禁止） 何人も、その国際機関（政府間の国際機関及びこれに準ずるものとして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国際機関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と関係があると誤認させるような方法で、国際機関を表示する標章であって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ものと同一若しくは類似のもの（以下「国際機関類似標章」という。）を商標として使用し、又は国際機関類似標章を商標として使用した商品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若しく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し、若しくは国際機関類似標章を商標として使用して役務を提供してはならない。ただし、この国際機関の許可を受け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제17조 (국제기관의 표장의 상업상 사용 금지)** 누구나 그 국제기구(정부간국제기구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제기구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경제산업 성령으로 정하는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하 “국제기구 유사표장”이라 한다)을 상표로서 사용하거나 국제기구유사표장을 상표로서 사용한 상품을 양도·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출·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국제기구 유사표장을 상표로서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국제기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十八条（外国公務員等に対する不正の利益の供与等の禁止） 何人も、外国公務員等に対し、国際的な商取引に関して営業上の不正の利益を得るために、その外国公務員等に、その職務に関する行為をさせ若しくはさせないこと、又はその地位を利用して他の外国公務員等にその職務に関する行為をさせ若しくはさせないようにあっせんをさせることを目的として、金銭その他の利益を供与し、又はその申込み若しくは約束をしてはならない。 2　前項において「外国公務員等」とは、次に掲げる者をいう。 一　外国の政府又は地方公共団体の公務に従事する者	**제18조 (외국공무원 등에 대한 부정 이익의 공여 등 금지)** ① 누구나 외국공무원 등에게 국제적인 상거래에 관하여 영업상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그 외국공무원 등에게 그 직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는 것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외국공무원 등에게 그 직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알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금전,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그 제안이나 약속을 해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서 “외국공무원 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에 종사하는 자

二　公共の利益に関する特定の事務を行うために外国の特別の法令により設立されたものの事務に従事する者

三　一又は二以上の外国の政府又は地方公共団体により、発行済株式のうち議決権のある株式の総数若しくは出資の金額の総額の百分の五十を超える当該株式の数若しくは出資の金額を直接に所有され、又は役員（取締役、監査役、理事、監事及び清算人並びにこれら以外の者で事業の経営に従事しているものをいう。）の過半数を任命され若しくは指名されている事業者であって、その事業の遂行に当たり、外国の政府又は地方公共団体から特に権益を付与されているものの事務に従事する者その他これに準ずる者として政令で定める者

四　国際機関（政府又は政府間の国際機関によって構成される国際機関をいう。次号において同じ。）の公務に従事する者

五　外国の政府若しくは地方公共団体又は国際機関の権限に属する事務であって、これらの機関から委任されたものに従事する者

2. 공공의 이익에 관한 특정 사무를 하기 위하여 외국의 특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것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

3.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외국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한 주식 중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총수나 출자 금액의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의 수나 출자 금액을 직접 소유하거나 임원(주식회사 및 법인의 이사, 주식회사 및 법인의 감사, 청산인 및 이들 외에 사업의 경영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의 과반수가 임명되거나 지명되는 사업자로서 그 사업 수행 시에 외국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특별히 권익을 부여한 사업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

4. 국제기구(정부 또는 정부간 국제기구로 구성되는 국제기구을 말한다. 제5호에서 같다)의 공무에 종사 하는 자

5. 외국정부나 지방공공단체 또는 국제기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이들 기관이 위임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

第四章　雑則

第十九条（適用除外等）

第三条から第十五条まで、第二十一条及び第二十二条の規定は、次の各号に掲げる不正競争の区分に応じて当該各号に定める行為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一　第二条第一項第一号、第二号、第二十号及び第二十二号に掲げる不正競争　商品若しくは営業の普通名称（ぶどうを原料又は材料とする物の原産地の名称であって、普通

제4장 잡칙

제19조 (적용제외 등)

①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1조 및 제22조는 다음 각 호의 부정경쟁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0호 및 제22호의 부정경쟁: 상품이나 영업의 보통명칭(포도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는 물건의 원산지 명칭으로서 보통명칭이 된 것

名称となったものを除く。）若しくは同一若しくは類似の商品若しくは営業について慣用されている商品等表示（以下「普通名称等」と総称する。）を普通に用いられる方法で使用し、若しくは表示をし、又は普通名称等を普通に用いられる方法で使用し、若しくは表示をした商品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若しく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する行為（同項第二十号及び第二十二号に掲げる不正競争の場合にあっては、普通名称等を普通に用いられる方法で表示をし、又は使用して役務を提供する行為を含む。）

을 제외한다)이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나 영업에 대하여 관용되는 상품 등 표시(이하 “보통명칭 등”이라 한다)를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표시, 또는 보통명칭 등을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표시한 상품을 양도·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출·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제2조제1항제20호 및 제22호의 부정경쟁의 경우에는 보통명칭 등을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二 第二条第一項第一号、第二号及び第二十二号に掲げる不正競争　自己の氏名を不正の目的（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他人に損害を加える目的その他の不正の目的をいう。以下同じ。）でなく使用し、又は自己の氏名を不正の目的でなく使用した商品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若しく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する行為（同号に掲げる不正競争の場合にあっては、自己の氏名を不正の目的でなく使用して役務を提供する行為を含む。）

2.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22호의 부정경쟁: 자기의 성명을 부정한 목적(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그 밖의 부정한 목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없이 사용하거나 자기의 성명을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한 상품을 양도·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출·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동호의 부정경쟁의 경우에는 자기의 성명을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三 第二条第一項第一号及び第二号に掲げる不正競争商標法第四条第四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商標登録がされた結果又は同法第八条第一項ただし書、第二項ただし書若しくは第五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り商標登録がされた結果、同一の商品若しくは役務について使用（同法第二条第三項に規定する使用をいう。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をする類似の登録商標（同法第二条第五項に規定する登録商標をいう。以下この号及び次項第二号において同じ。）又は類似の商品若しくは役務について使用を

3.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한 부정경쟁상표법 제4조 제4항에 규정하는 경우, 상표등록된 결과 또는 동법 제8조 제1항 단서, 제2항 단서 혹은 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된 결과, 동일한 상품 혹은 역무에 대해서 사용(동법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동일하다.)을 하는 유사한 등록상표(동법 제2조 제5항에서 규정한 등록 상표를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다음 항 제2호에서 동일하다.) 또는 유사한 상품 혹은 역무에 대해 사

する同一若しくは類似の登録商標に係る商標権が異なった商標権者に属することとなった場合において、その一の登録商標に係る商標権者、専用使用権者又は通常使用権者が不正の目的でなく当該登録商標の使用をする行為	용하는 동일한 혹은 유사한 등록상표와 관련된 상표권이 다른 상표권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그 하나의 등록상표와 관련된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부정 목적이 아닌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四 第二条第一項第一号に掲げる不正競争 他人の商品等表示が需要者の間に広く認識される前からその商品等表示と同一若しくは類似の商品等表示を使用する者又はその商品等表示に係る業務を承継した者がその商品等表示を不正の目的でなく使用し、又はその商品等表示を不正の目的でなく使用した商品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若しく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する行為	4. 제2조제1항제1호의 부정경쟁: 타인의 상품 등 표시가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상품 등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등 표시를 사용하는 자 또는 그 상품 등 표시와 관련된 업무를 승계한 자가 그 상품 등 표시를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하거나 또는 그 상품 등 표시를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한 상품을 양도·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출·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五 第二条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不正競争 他人の商品等表示が著名になる前からその商品等表示と同一若しくは類似の商品等表示を使用する者又はその商品等表示に係る業務を承継した者がその商品等表示を不正の目的でなく使用し、又はその商品等表示を不正の目的でなく使用した商品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若しく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する行為	5. 제2조제1항제2호의 부정경쟁: 타인의 상품 등 표시가 유명해지기 전부터 그 상품 등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등 표시를 사용하는 자 또는 그 상품 등 표시와 관련된 업무를 승계한 자가 그 상품 등 표시를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하거나 그 상품 등 표시를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한 상품을 양도·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출·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六 第二条第一項第三号に掲げる不正競争 次のいずれかに掲げる行為	6. 제2조제1항제3호의 부정경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イ 日本国内において最初に販売された日から起算して三年を経過した商品について、その商品の形態を模倣した商品を譲渡し、貸し渡し、譲渡若しくは貸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又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する行為	가. 일본 국내에서 최초로 판매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양도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수출·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
ロ 他人の商品の形態を模倣した商品を譲り受けた者（その譲り受けた時にその商品が	나. 타인의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받은 자(상품을 양도받은 때에 그 상품

他人の商品の形態を模倣した商品であることを知らず、かつ、知らないことにつき重大な過失がない者に限る。）がその商品を譲渡し、貸し渡し、譲渡若しくは貸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入し、又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する行為

7　第二条第一項第四号から第九号までに掲げる不正競争　取引によって営業秘密を取得した者（その取得した時にその営業秘密について営業秘密不正開示行為であること又はその営業秘密について営業秘密不正取得行為若しくは営業秘密不正開示行為が介在したことを知らず、かつ、知らないことにつき重大な過失がない者に限る。）その取引によって取得した権原の範囲内においてその営業秘密を使用し、又は開示する行為

8 第二条第一項第十号に掲げる不正競争 第十五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同項に規定する権利が消滅した後にその営業秘密を使用する行為により生じた物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又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する行為八　第二条第一項第十一号から第十六号までに掲げる不正競争　次のいずれかに掲げる行為

イ　取引によって限定提供データを取得した者（その取得した時にその限定提供データについて限定提供データ不正開示行為であること又はその限定提供データについて限定提供データ不正取得行為若しくは限定提供データ不正開示行為が介在したことを知らない者に限る。）がその取引によって取得した権原の範囲内においてその限定提供データを開示する行為

ロ　その相当量蓄積されている情報が無償で公衆に利用可能となっている情報と同一の

이 타인의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임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자로 한정한다)가 그 상품을 양도·대여, 양도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수출·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

7. 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부정경쟁: 거래에 따라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영업비밀을 취득한 때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영업 비밀 부정공개행위인 사실 또는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나 영업비밀 부정공개행위가 개입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자로 한정한다)가 그 거래에 따라 취득한 권원의 범위 내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8. 제2조제1항제10호의 부정경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항에 따른 권리가 소멸한 후에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물건을 양도·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출·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제2조제1항제11호부터제16호까지의 부정경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거래에 따라 한정제공데 이터를 취득한 자(한정제공데이터를 취득한 때에 그 데이터에 대하여 한정 제공데이터 부정개시행위인 사실 또는 그 한정제공데이터에 대하여 한정제공데이터 부정취득행위나 한정제공데이터 부정개시행위가 개입한 사실을 알지 못한 자로 한정한다)가 그 거래에 따라 취득한 권원의 범위 내에서 그 한정제공데이터를 공개하는 행위

나. 상당량 축적된 정보가 무상으로 공중이 이용 가능한 정보와 동일한 한정제공데이

限定提供データを取得し、又はその取得した限定提供データを使用し、若しくは開示する行為	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한정제공데이터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10　第二条第一項第十七号及び第十八号に掲げる不正競争　技術的制限手段の試験又は研究のために用いられる同項第十七号及び第十八号に規定する装置、これらの号に規定するプログラム若しくは指令符号を記録した記録媒体若しくは記憶した機器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若しくは輸入し、若しくは当該プログラム若しくは指令符号を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する行為又は技術的制限手段の試験又は研究のために行われるこれらの号に規定する役務を提供する行為	10. 제2조제1항제17호 및 제18호의 부정경쟁: 기술적 제한수단의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이용되는 동항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장치, 프로그램이나 명령 부호를 기록한 기록매체나 저장한 기기를 양도·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출·수입하거나 해당 프로그램이나 명령 부호를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기술적 제한수단의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2　前項第二号から第四号までに定める行為によって営業上の利益を侵害され、又は侵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者は、次の各号に掲げる行為の区分に応じて当該各号に定める者に対し、自己の商品又は営業との混同を防ぐのに適当な表示を付すべき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영업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다.
一　前項第二号に定める行為自己の氏名を使用する者（自己の氏名を使用した商品を自ら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又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する者を含む。）	1. 제1항제2호에 규정한 행위: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는 자(자기의 성명을 사용한 상품을 스스로 양도·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출·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二 前項第三号に定める行為同号の一の登録商標に係る商標権者、専用使用権者及び通常使用権者	2. 전항 제3호에 규정한 행위: 동호 중 하나의 등록 상표와 관련된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및 통상사용권자
三　前項第四号に定める行為他人の商品等表示と同一又は類似の商品等表示を使用する者及びその商品等表示に係る業務を承継した者（その商品等表示を使用した商品を自ら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又は電	3. 전항 제4호에 규정한 행위: 타인의 상품 등 표시와 동일 하거나 유사한 상품 등 표시를 사용하는 자 및 그 상품 등 표시와 관련된 업무를 승계한 자(그 상품 등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스스로 양도·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출·수입하거

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する者を含む。)	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第十九条の二 (営業秘密に関する訴えの管轄権)	**제19조의 2 (영업비밀에 관한 소송 관할권)**
日本国内において事業を行う営業秘密保有者の営業秘密であって、日本国内において管理されているものに関する第二条第一項第四号、第五号、第七号又は第八号に掲げる不正競争を行った者に対する訴えは、日本の裁判所に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当該営業秘密が専ら日本国外において事業の用に供されるもので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일본 국내에서 사업하는 영업비밀보유자의 영업비밀로, 일본 국내에서 관리되어 있는 것에 관한 제2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열거한 부정경쟁을 한 자에 대한 소송은 일본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단, 해당 영업비밀이 오로지 일본 국외의 사업용에 제공된 경우라면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2 民事訴訟法第十条の二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り日本の裁判所が管轄権を有する訴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中「前節」とあるのは、「不正競争防止法第十九条の二第一項」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② 민사소송법 제10조의 2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일본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 소송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중 '전절'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의 2 제1항'으로 대체한다.
第十九条の三 (適用範囲)	**제19조의 3 (적용범위)**
第一章、第二章及びこの章の規定は、日本国内において事業を行う営業秘密保有者の営業秘密であって、日本国内において管理されているものに関し、日本国外において第二条第一項第四号、第五号、第七号又は第八号に掲げる不正競争を行う場合についても、適用する。ただし、当該営業秘密が専ら日本国外において事業の用に供されるもので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제1장, 제2장 및 이 장의 규정은 일본 국내에서 사업하는 영업비밀보유자의 영업비밀로, 일본 국내에서 관리되는 것에 관하여 일본 국외에서 제2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열거한 부정경쟁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단, 해당 영업비밀이 오로지 일본 국외의 사업용에 제공된 경우라면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第十九条の四 (政令等への委任)	**제19조의 4 (정령 등에의 위임)**
この法律に定めるもののほか、没収保全と滞納処分との手続の調整について必要な事項で、滞納処分に関するものは、政令で定める。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것 외에 몰수 보전과 체납 처분 절차의 조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체납 처분에 관한 것은 정령으로 정한다.
2 この法律に定めるもののほか、第三十二条の規定による第三者の参加及び裁判に関する	② 이 법에서 정하는 것 외에 제32조에 따른 제3자의 참가 및 재판에 관한 절차, 제8

手続、第八章に規定する没収保全及び追徴保全に関する手続並びに第九章に規定する国際共助手続について必要な事項（前項に規定する事項を除く。）は、最高裁判所規則で定める。

장에 따른 몰수 보전 및 추징 보전에 관한 절차, 제9장에 따른 국제공조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다)은 「최고재판소 규칙」으로 정한다.

第二十条（経過措置）

この法律の規定に基づき政令又は経済産業省令を制定し、又は改廃する場合においては、その政令又は経済産業省令で、その制定又は改廃に伴い合理的に必要と判断される範囲内において、所要の経過措置（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を含む。）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제20조 (경과조치)

이 법에 따라 정령 또는 경제산업성령을 제정 또는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정령 또는 경제산업성령으로서 제정 또는 개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를 정할 수 있다.

第五章　罰則

제5장 벌칙

第二十一条（罰則）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当該違反行為をした者は、十年以下の拘禁刑若しくは二千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一　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で、又はその営業秘密保有者に損害を加える目的で、詐欺等行為（人を欺き、人に暴行を加え、又は人を脅迫する行為をいう。次号において同じ。）又は管理侵害行為（財物の窃取、施設への侵入、不正アクセス行為（不正アクセス行為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平成十一年法律第百二十八号）第二条第四項に規定する不正アクセス行為をいう。）その他の営業秘密保有者の管理を害する行為をいう。次号において同じ。）により、営業秘密を取得したとき。

二　詐欺等行為又は管理侵害行為により取得した営業秘密を、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で、

제21조 (벌칙)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구금형이나 2천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그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기 등 행위(사람을 기망,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호에서 같다) 또는 관리침해행위[재물의 절취, 시설 침입, 부정 액세스 행위{「부정 액세스 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평성11〈1999〉년 법률 제128호) 제2조제4항에 따른 부정 액세스 행위를 말한다. 그 밖의 영업비밀 보유자의 관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호에서 같다로 영업비밀을 취득했을 때.

2. 사기 등 행위 또는 관리침해행위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又はその営業秘密保有者に損害を加える目的で、使用し、又は開示したとき。	또는 그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했을 때.
三　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で、又はその営業秘密保有者に損害を加える目的で、前号若しくは次項第二号から第四号までの罪、第四項第二号の罪（前号の罪に当たる開示に係る部分に限る。）又は第五項第二号の罪に当たる開示によって営業秘密を取得して、その営業秘密を使用し、又は開示したとき。	3.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그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호 혹은 다음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죄, 제4항 제2호의 죄(전호의 죄에 해당하는 공개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공개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했을 때.
四　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で、又はその営業秘密保有者に損害を加える目的で、前二号若しくは次項第二号から第四号までの罪、第四項第二号の罪（前二号の罪に当たる開示に係る部分に限る。）又は第五項第二号の罪に当たる開示が介在したことを知って営業秘密を取得して、その営業秘密を使用し、又は開示したとき。	4.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그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 2호 혹은 다음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죄, 제4항 제2호의 죄(전 2호의 죄에 해당하는 공개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또는 제5항 제2호의 죄에 해당하는 공개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사용하거나 공개했을 때.
五　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で、又はその営業秘密保有者に損害を加える目的で、自己又は他　人の第二号から前号まで又は第四項第三号の罪に当たる行為（技術上の秘密を使用する行為に限る。以下この号において「違法使用行為」という。）により生じた物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又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したとき（当該物が違法使用行為により生じた物であることの情を知らないで譲り受け、当該物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又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した場合を除く。）	5.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그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제2호 부터 전호까지 또는 제4항 제3호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기술상의 비밀을 사용하는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위법사용행위”라 한다)로 발생한 물건을 양도, 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 수출, 수입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했을 때(해당 물건이 위법사용 행위로 발생한 물건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고 양수하여 해당 물건을 양도, 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 수출, 수입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
2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十年以下の拘禁刑若しくは二千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②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구금형 혹은 2천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또는 이를 병과한다.
一　営業秘密を営業秘密保有者から示された	1. 영업비밀을 영업비밀보유자로부터 제시

者であって、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で、又はその営業秘密保有者に損害を加える目的で、その営業秘密の管理に係る任務に背き、次のいずれかに掲げる方法でその営業秘密を領得したもの	받은 자로, 부정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또는 그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관리와 관련된 임무를 배반하여 다음 중 하나의 열거한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영득한 자
イ　営業秘密記録媒体等（営業秘密が記載され、又は記録された文書、図画又は記録媒体をいう。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又は営業秘密が化体された物件を横領すること。	가. 영업비밀기록매체 등(영업비밀이 기재되거나, 또는 기록된 문서, 그림 또는 기록매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동일하다.) 또는 영업비밀이 형상화된 물건을 횡령하는 행위.
ロ　営業秘密記録媒体等の記載若しくは記録について、又は営業秘密が化体された物件について、その複製を作成すること。	나. 영업비밀기록매체 등의 기재 혹은 기록에 대해, 또는 영업비밀이 형상화된 물건을 복제하는 행위.
ハ　　営業秘密記録媒体等の記載又は記録であって、消去すべきものを消去せず、かつ、当該記載又は記録を消去したように仮装すること。	다. 영업비밀기록매체 등의 기재 또는 기록으로, 삭제해야 할 것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또한, 해당 기재 또는 기록을 삭제한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二　営業秘密を営業秘密保有者から示された者であって、その営業秘密の管理に係る任務に背いて前号イからハまでに掲げる方法により領得した営業秘密を、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で、又はその営業秘密保有者に損害を加える目的で、その営業秘密の管理に係る任務に背き、使用し、又は開示したもの	2. 영업비밀을 영업비밀보유자로부터 제시받은 자로, 그 영업비밀관리와 관련된 임무를 배반하여 전호 가부터 다까지 열거한 방법으로 영득한 영업비밀을 부정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또는 그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관리와 관련된 임무를 배반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공개한 자
三　営業秘密を営業秘密保有者から示されたその役員（理事、取締役、執行役、業務を執行する社員、監事若しくは監査役又はこれらに準ずる者をいう。次号において同じ。）又は従業者であって、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で、又はその営業秘密保有者に損害を加える目的で、その営業秘密の管理に係る任務に背き、その営業秘密を使用し、又は開示したもの（前号に掲げる者を除く。）	3. 영업비밀을 영업비밀보유자로부터 공개받은 그 임원(이사, 중역, 집행직,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감사 혹은 감사역 또는 이들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다음 호에서 동일하다.) 또는 종업원이 부정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또는 그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관리와 관련된 임무를 배반하여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또는 공개한 자(전호에 열거한 자는 제외한다.)
四　営業秘密を営業秘密保有者から示された	4. 영업비밀을 영업비밀보유자로부터 제

その役員又は従業者であった者であって、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で、又はその営業秘密保有者に損害を加える目的で、その在職中に、その営業秘密の管理に係る任務に背いてその営業秘密の開示の申込みをし、又はその営業秘密の使用若しくは開示について請託を受けて、その営業秘密をその職を退いた後に使用し、又は開示したもの（第二号に掲げる者を除く。）	시받은 임원 또는 종업원이었던 자가 부정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또는 그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재직 중에 영업비밀관리와 관련된 임무를 배반하여 영업비밀의 공개를 신청하여 또는 영업비밀의 사용 혹은 공개에 대해 청탁을 받아서 그 영업비밀을 사퇴한 후 사용하거나, 또는 공개한 자(제2호에 열거한 자는 제외한다.)
五　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で、又はその営業秘密保有者に損害を加える目的で、自己又は他人の第二号から前号まで又は第五項第三号の罪に当たる行為（技術上の秘密を使用する行為に限る。以下この号において「従業者等違法使用行為」という。）により生じた物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又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した者（当該物が従業者等違法使用行為により生じた物であることの情を知らないで譲り受け、当該物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又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した者を除く。）	5. 부정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또는 그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제2호부터 전호까지 또는 제5항 제3호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기술상의 비밀을 사용하는 행위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종업원 등 위법사용행위'라 한다.)로 인해 발생한 물건을 양도하고, 인도하고, 양도 혹은 인도하기 위해 전시하고, 수출하고, 수입하고,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한 자(해당 물건이 종업원 등 위법사용행위로 인해 발생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양수하여 해당 물건을 양도하고, 인도하고, 양도 혹은 인도하기 위해 전시하고, 수출하고, 수입하고,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한 자는 제외한다.)
3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当該違反行為をした者は、五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五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③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구금형이나 5백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一　不正の目的をもって第二条第一項第一号又は第二十号に掲げる不正競争を行った者	1. 부정한 목적으로 제2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0호의 부정경쟁을 했을 때.
二　他人の著名な商品等表示に係る信用若しくは名声を利用して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で、又は当該信用若しくは名声を害する目的で第二条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不正競争を行った者	2. 타인의 알려진 상품 등 표시와 관련된 신용이나 명성을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해당 신용이나 명성을 실추시킬 목적으로 제2조제1항제2호의 부정경쟁을 했을 때.

三　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で第二条第一項第三号に掲げる不正競争を行った者	3.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제2조제1항제3호의 부정경쟁을 했을 때.
四　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で、又は営業上技術的制限手段を用いている者に損害を加える目的で、第二条第一項第十七号又は第十八号に掲げる不正競争を行った者	4.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영업상 기술적 제한수단을 이용한 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2조제1항제17호 또는 제18호의 부정경쟁을 했을 때.
五　商品若しくは役務若しくはその広告若しくは取引に用いる書類若しくは通信にその商品の原産地、品質、内容、製造方法、用途若しくは数量又はその役務の質、内容、用途若しくは数量について誤認させるような虚偽の表示をした者（第一号に掲げる者を除く。）	5.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그 광고나 거래에 이용하는 서류나 통신에 그 상품의 원산지,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나 수량 또는 그 서비스의 질, 내용, 용도나 수량에 대하여 오인할 만한 허위 표시를 했을 때 (제1호에 열거한 경우는 제외한다.)
六 秘密保持命令に違反した者	6. 비밀유지명령에 위반했을 때.
七 第十六条、第十七条又は第十八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た者	7. 제16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4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　合には、当該違反行為をした者は、十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三千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④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구금형이나 3천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一　日本国外において使用する目的で、第一項第一号の罪を犯したとき。	1. 일본 국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했을 때.
二　相手方に日本国外において第一項第二号から第四号までの罪に当たる使用をする目的があることの情を知って、これらの罪に当たる開示をしたとき。	2. 상대방에게 일본 국외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용을 할 목적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 죄에 해당하는 공개를 했을 때.
三　日本国内において事業を行う営業秘密保有者の営業秘密について、日本国外において第一項第二号から第四号までの罪に当たる使用をしたとき。	3. 일본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일본 국외에서 제1항제2호부터 4호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용을 했을 때.
四 第十八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たとき。	4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5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十年以下の拘禁刑若しくは三千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⑤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구금형 혹은 3천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이를 병과한다.

一　日本国外において使用する目的で、第二項第一号の罪を犯した者

二　相手方に日本国外において第二項第二号から第四号までの罪に当たる使用をする目的があることの情を知って、これらの罪に当たる開示をした者

三　日本国内において事業を行う営業秘密保有者の営業秘密について、日本国外において第二項第二号から第四号までの罪に当たる使用をした者

6　第一項、第二項（第一号を除く。）、第四項（第四号を除く。）及び前項（第一号を除く。）の罪の未遂は、罰する。

7　第三項第六号の罪は、告訴がなければ公訴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ない。

8　第一項各号（第五号を除く。）、第二項各号（第五号を除く。）、第四項第一号若しくは第二号、第五項第一号若しくは第二号又は第六項（第一項第五号又は第二項第五号に係る部分を除く。）の罪は、日本国内において事業を行う営業秘密保有者の営業秘密について、日本国外においてこれらの罪を犯した者にも適用する。

9　第三項第六号の罪は、日本国外において同号の罪を犯した者にも適用する。

10　第四項第四号の罪は、刑法（明治四十年法律第四十五号）第三条の例に従う。

11　第四項第四号の罪は、日本国内に主たる事務所を有する法人の代表者、代理人、使用人その他の従業者であって、その法人の業務に関し、日本国外において同号の罪を犯した日本国民以外の者にも適用する。

12　第一項から第六項までの規定は、刑法その他の罰則の適用を妨げない。

1. 일본 국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2항 제1호의 죄를 범한 자

2. 상대방에게 일본 국외에서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용을 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죄들에 해당하는 공개를 한 자

3. 일본 국내에서 사업하는 영업비밀보유자의 영업비밀에 대해 일본 국외에서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용을 한 자

⑥ 제1항, 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4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전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죄의 미수는 벌한다.

⑦ 제3항 제6호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⑧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4항 제1호 혹은 제2호, 제5항 제1호 혹은 제2호 또는 제6항(제1항 제5호 또는 제2항 제5호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의 죄는 일본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일본 국외에서 이러한 죄를 저지른 자에게도 적용한다.

⑨ 제3항제6호의 죄는 일본 국외에서 저지른 자에게도 적용한다.

⑩ 제4항 제4호의 죄는 「형법」(명치40〈1907〉년 법률 제45호) 제3조의 예에 따른다.

⑪ 제4항 제4호의 죄는 일본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본 국외에서 동호의 죄를 범한 일본 국민 이외의 자에게도 적용한다.

⑫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형법」, 그 밖의 벌칙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13　次に掲げる財産は、これを没収することができる。	⑬ 다음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一 第一項、第二項、第四項（第四号を除く。）、第五項及び第六項の罪の犯罪行為により生じ、若しくは当該犯罪行為により得た財産又は当該犯罪行為の報酬として得た財産	1. 제1항, 제2항, 제4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5항 및 제6항의 죄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해당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해당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二 前号に掲げる財産の果実として得た財産、同号に掲げる財産の対価として得た財産、これらの財産の対価として得た財産その他同号に掲げる財産の保有又は処分に基づき得た財産	2. 제1호의 재산의 결과물로서 얻은 재산, 같은 호의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같은 호의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따라 얻은 재산
14　組織的な犯罪の処罰及び犯罪収益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平成十一年法律第百三十六号。以下「組織的犯罪処罰法」という。）第十四条及び第十五条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没収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組織的犯罪処罰法第十四条中「前条第一項各号又は第四項各号」とあるのは、「不正競争防止法第二十一条第十三項各号」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⑭ 「조직적 범죄의 처벌 및 범죄 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평성11〈1999〉년 법률 제136호. 이하 “「조직적 범죄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는 제10항에 따른 몰수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조직적범죄처벌법」 제14조 중 “제13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4항 각호”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1호 제13항 각 호”로 대체한다.
15 第十三項各号に掲げる財産を没収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又は当該財産の性質、その使用の状況、当該財産に関する犯人以外の者の権利の有無その他の事情からこれを没収することが相当でないと認められるときは、その価額を犯人から追徴することができる。	⑮ 제13항 각 호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는 때 또는 해당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해당 재산에 관한 범인 이외의 자의 권리의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부터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第二十二条　法人の代表者又は法人若しくは人の代理人、使用人その他の従業者が、その法人又は人の業務に関し、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の違反行為をしたときは、行為者を罰するほか、その法人に対して当該各号に定める罰金刑を、その人に対して各本条の罰金刑を科する。	**제22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혹은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열거한 규정의 위반행위를 했을 때는 행위자를 벌하고, 그 밖에 그 법인에게는 해당 각 호에 규정한 벌금형을, 그 사람에게는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一　前条第四項又は第六項（同条第四項に係る部分に限る。）十億円以下の罰金刑

二　前条第一項又は第六項（同条第一項に係る部分に限る。）五億円以下の罰金刑

三 前条第三項 三億円以下の罰金刑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当該行為者に対してした前条第三項第六号の罪に係る同条第七項の告訴は、その法人又は人に対しても効力を生じ、その法人又は人に対してした告訴は、当該行爲者に対しても効力を生ずるものとする。

3　第一項の規定により前条第一項、第三項、第四項又は第六項（同条第一項又は第四項に係る部分に限る。）の違反行為につき法人又は人に罰金刑を科する場合における時効の期間は、これらの規定の罪についての時効の期間による。

1. 전조 제4항 또는 제6항(동조 제4항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10억 엔 이하의 벌금형

2. 전조 제1항 또는 제6항(동조 제1항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5억 엔 이하의 벌금형

3 전조 제3항 삼억 엔 이하의 벌금형

② 전항의 경우, 해당 행위자에게 한 전조 제3항 제6호의 죄와 관련된 동조 제5항의 고소는 그 법인 또는 사람에게도 효력이 발생하며, 그 법인 또는 사람에게 한 고소는 해당 행위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조 제1항, 제3항, 제4항 또는 제6항(동조 제1항 또는 제4항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 또는 사람에게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의 시효기간은 이 규정들의 죄에 대한 시효기간에 따른다.

第六章 刑事訴訟手続の特例

第二十三条（営業秘密の秘匿決定等）

裁判所は、第二十一条第一項、第二項、第四項（第四号を除く。）、第五項若しくは第六項の罪又は前条第一項（ 第三号を除く。）の罪に係る事件を取り扱う場合において、当該事件の被害者若しくは当該被害者の法定代理人又はこれらの者から委託を受けた弁護士から、当該事件に係る営業秘密を構成する情報の全部又は一部を特定させることとなる事項を公開の法廷で明らかにされたくない旨の申出があるときは、被告人又は弁護人の意見を聴き、相当と認めるときは、その範囲を定めて、当該事項を公開の法廷で明らかにしない旨の決定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申出は、あらかじめ、検察官にしな

제6장 형사소송절차의 특례

제23조 (영업비밀의 비닉 결정 등)

법원은 제21조 제1항, 제2항, 제4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5항 혹은 제6항의 죄 또는 전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의 죄와 관련된 사건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피해자 혹은 해당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 자들로부터 위탁받은 변호사로부터 해당 사건과 관련된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하게 하는 사항을 공개법정에서 밝히고 싶지 아니하다는 신청이 있을 때는 피고인 또는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 그 범위를 정하여 해당 사항을 공개법정에서 밝히지 아니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사전에 검찰관에게 하여

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検察官は、意見を付して、これを裁判所に通知するものとする。	야 한다. 이 경우에 검찰관은 의견을 붙여 이를 재판소에 통지한다.
3　裁判所は、第一項に規定する事件を取り扱う場合において、検察官又は被告人若しくは弁護人から、被告人その他の者の保有する営業秘密を構成する情報の全部又は一部を特定させることとなる事項を公開の法廷で明らかにされたくない旨の申出があるときは、相手方の意見を聴き、当該事項が犯罪の証明又は被告人の防御のために不可欠であり、かつ、当該事項が公開の法廷で明らかにされることにより当該営業秘密に基づく被告人その他の者の事業活動に著しい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場合であって、相当と認めるときは、その範囲を定めて、当該事項を公開の法廷で明らかにしない旨の決定をすることができる。	③ 재판소는 제1항에 따른 사건을 다루는 경우에 검찰관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피고인, 그 밖의 사람이 보유하는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하게 되는 사항을 공개 법정에서 밝히고 싶지 아니하다는 뜻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해당 사항이 범죄의 증명 또는 피고인의 방어를 위하여 필수적이며, 해당 사항이 공개 법정에서 밝혀짐으로써 해당 영업비밀에 기초한 피고인, 그 밖의 사람의 사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해당 사항을 공개 법정에서 밝히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4　裁判所は、第一項又は前項の決定（以下「秘匿決定」という。）をした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検察官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の意見を聴き、決定で、営業秘密構成情報特定事項（秘匿決定により公開の法廷で明らかにしないこととされた営業秘密を構成する情報の全部又は一部を特定させることとなる事項をいう。以下同じ。）に係る名称その他の表現に代わる呼称その他の表現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④ 재판소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결정(이하 “비공개 결정”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철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결정으로 영업비밀 구성정보 특정사항(비공개 결정에 따라 공개 법정에서 밝히지 아니하게 된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하게 되는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명칭, 그 밖의 표현을 대신하는 호칭, 그 밖의 표현을 정할 수 있다.
5　裁判所は、秘匿決定をした事件について、営業秘密構成情報特定事項を公開の法廷で明らかにしないことが相当でないと認めるに至ったとき、又は刑事訴訟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百三十一号）第三百十二条の規定により罰条が撤回若しくは変更されたため第一項に規定する事件に該当しなくなったときは、決定で、秘匿決定の全部又は一部及び当該秘匿決定に係る前項の決定（以下「呼称等の決	⑤ 재판소는 비공개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영업비밀 구성정보 특정사항을 공개 법정에서 밝히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게 된 때 또는 「형사소송법」(소화23〈1948〉년 법률 제131호) 제312조에 따라 벌칙 조항이 철회되거나 변경되어 제1항에 따른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결정으로 비공개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및 해당 비공개 결정과 관련

定」という。）の全部又は一部を取り消さ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十四条（起訴状の朗読方法の特例）

秘匿決定があったときは、刑事訴訟法第二百九十一条第一項の起訴状の朗読は、営業秘密構成情報特定事項を明らかにしない方法でこれを行う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検察官は、被告人に起訴状を示さ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十五条（尋問等の制限）

裁判長は、秘匿決定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訴訟関係人のする尋問又は陳述が営業秘密構成情報特定事項にわたるときは、これを制限することにより、犯罪の証明に重大な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場合又は被告人の防御に実質的な不利益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場合を除き、当該尋問又は陳述を制限することができる。訴訟関係人の被告人に対する供述を求める行為についても、同様とする。

2　刑事訴訟法第二百九十五条第五項及び第六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受けた検察官又は弁護士である弁護人がこれに従わなかっ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第二十六条（公判期日外の証人尋問等）

裁判所は、秘匿決定をした場合において、証人、鑑定人、通訳人若しくは翻訳人を尋問するとき、又は被告人が任意に供述をするときは、検察官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の意見を聴き、証人、鑑定人、通訳人若しくは翻訳人の尋問若しくは供述又は被告人に対する供述を求める行為若しくは被告人の供述が営業秘密構成情報特定事項にわたり、かつ、これが公開の法廷で明らかにされることにより当該営業秘密に基づく被害者、被告人その他の者の事業活

된 제4항의 결정(이하 “호칭 등의 결정”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4조 (기소장의 낭독방법의 특례)

비공개결정이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91조제1항의 기소장의 낭독은 영업비밀 구성정보 특정사항을 밝히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검찰관은 피고인에게 기소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5조 (심문 등의 제한)

① 재판장은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경우에 소송관계인의 심문 또는 진술이 영업비밀 구성정보 특정사항에 걸치는 때에는 이를 제한하면 범죄의 증명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심문 또는 진술을 제한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진술을 요구하는 소송관계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같다.

②「형사소송법」 제295조 제5항 및 제6항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검찰관 또는 변호사인 변호인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6조 (공판기일 외의 증인심문 등)

① 재판소는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 증인, 감정인, 통역인이나 번역인을 심문하는 때, 또는 피고인이 임의로 진술하는 때에는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증인, 감정인, 통역인이나 번역인의 심문이나 진술 또는 피고인에 대한 진술을 요구하는 행위나 피고인의 진술이 영업비밀 구성정보 특정사항에 걸치며, 공개 법정에 서 밝혀지면 해당 영업비밀에 기초한 피해자, 피고인, 그 밖의 사람의 사업활동에 현저한 지

動に著しい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り、これを防止するためやむを得ないと認めるときは、公判期日外において当該尋問又は刑事訴訟法第三百十一条第二項及び第三項に規定する被告人の供述を求める手続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刑事訴訟法第百五十七条第一項及び第二項、第百五十八条第二項及び第三項、第百五十九条第一項、第二百七十三条第二項、第二百七十四条並びに第三百三条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被告人の供述を求める手続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法第百五十七条第一項、第百五十八条第三項及び第百五十九条第一項中「被告人又は弁護人」とあるのは「弁護人、共同被告人又はその弁護人」と、同法第百五十八条第二項中「被告人及び弁護人」とあるのは「弁護人、共同被告人及びその弁護人」と、同法第二百七十三条第二項中「公判期日」とあるのは「不正競争防止法第二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被告人の供述を求める手続の期日」と、同法第二百七十四条中「公判期日」とあるのは「不正競争防止法第二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被告人の供述を求める手続の日時及び場所」と、同法第三百三条中「証人その他の者の尋問、検証、押収及び捜索の結果を記載した書面並びに押収した物」とあるのは「不正競争防止法第二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被告人の供述を求める手続の結果を記載した書面」と、「証拠書類又は証拠物」とあるのは「証拠書類」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二十七条（尋問等に係る事項の要領を記載した書面の提示命令）

裁判所は、呼称等の決定をし、又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尋問若しくは被告人の供述を求める手続を公判期日外においてする旨を定めるに当たり、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検察

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판기일 외에 해당 심문 또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피고인의 진술을 요구하는 절차를 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 제157조 제1항 및 제2항, 제158조제2항 및 제3항, 제159조제1항, 제273조제2항, 제274조, 제303조는 제1항에 따른 피고인의 진술을 요구하는 절차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법 제157조 제1항, 제158조 제3항 및 제159조제1항 중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변호인, 공동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 동법 제158조제2항 중"피고인 및 변호인"은 "변호인, 공동피고인 및 그 변호인", 동법 제273조제2항 중 "공판기일"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피고인의 진술을 요구하는 절차의 기일", 동법 제274조 중 "공판기일"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피고인의 진술을 요구하는 절차의 일시 및 장소", 동법 제303조 중 "증인, 그 밖의 사람의 심문, 검증, 압수 및 수색의 결과를 기재한 서면 및 압수한 물건"은 "「부정경쟁 방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피고인의 진술을 요구하는 절차의 결과를 기재한 서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은 "증거서류"로 한다.

제27조 (심문 등과 관련된 사항의 요령을 기재한 서면의 제시명령)

재판소는 호칭 등의 결정을 하거나 제26조제1항에 따라 심문이나 피고인의 진술을 요구하는 절차를 공판기일 외에 한다고 정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

官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に対し、訴訟関係人のすべき尋問若しくは陳述又は被告人に対する供述を求める行為に係る事項の要領を記載した書面の提示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소송관계인의 모든 심문이나 진술 또는 피고인에 대한 진술을 요구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항의 요령을 기재한 서면의 제시를 명령할 수 있다.

第二十八条（証拠書類の朗読方法の特例）

秘匿決定があったときは、刑事訴訟法第三百五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証拠書類の朗読は、営業秘密構成情報特定事項を明らかにしない方法でこれを行うものとする。

제28조 (증거서류의 낭독방법의 특례)

비공개 결정이 있는 때에는「형사소송법」제30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증거서류의 낭독은 영업비밀 구성정보 특정사항을 밝히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한다.

第二十九条（公判前整理手続等における決定）

次に掲げる事項は、公判前整理手続及び期日間整理手続において行うことができる。

一　秘匿決定若しくは呼称等の決定又はこれらの決定を取り消す決定をすること。

二　第二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尋問又は被告人の供述を求める手続を公判期日外においてする旨を定めること。

제29조 (공판 전 정리절차 등의 결정)

다음의 사항은 공판 전 정리절차 및 기일간 정리절차에서 할 수 있다.

1. 비공개 결정이나 호칭 등의 결정 또는 이들 결정의 취소 결정
2. 제26조제1항에 따라 심문 또는 피고인의 진술을 요구하는 절차를 공판기일 외에 한다는 결정

第三十条（証拠開示の際の営業秘密の秘匿要請）

検察官又は弁護人は、第二十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事件について、刑事訴訟法第二百九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証拠書類又は証拠物を閲覧する機会を与えるに当たり、第二十三条第一項又は第三項に規定する営業秘密を構成する情報の全部又は一部を特定させることとなる事項が明らかにされることにより当該営業秘密に基づく被害者、被告人その他の者の事業活動に著しい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相手方に対し、その旨を告げ、当該事項が、犯罪の証明若しくは犯罪の捜査又は被告人の防御に関し必要がある場合を除き、関係者（被告人を含む。）に知られないようにすること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被告人に知られないようにすることを

제30조 (증거공개 시 영업비밀의 비공개 요청)

① 검찰관 또는 변호인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건에 대하여「형사소송법」제299조제1항에 따라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할 기회를 부여할 때에 제2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하게 되는 사항이 밝혀지면 해당 영업비밀에 기초한 피해자, 피고인, 그 밖의 사람의 사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해당 사항이 범죄의 증명이나 범죄의 수사 또는 피고인의 방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자(피고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求めることについては、当該事項のうち起訴状に記載された事項以外のものに限る。

2　前項の規定は、検察官又は弁護人が刑事訴訟法第二編第三章第二節第一款第二目（同法第三百十六条の二十八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証拠の開示をする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第三十一条（最高裁判所規則への委任）

この法律に定めるもののほか、第二十三条から前条までの規定の実施に関し必要な事項は、最高裁判所規則で定める。

第七章　没収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

第三十二条（第三者の財産の没収手続等）

第二十一条第十三項各号に掲げる財産である債権等（不動産及び動産以外の財産をいう。第三十四条において同じ。）が被告人以外の者（以下この条において「第三者」という。）に帰属する場合において、当該第三者が被告事件の手続への参加を許されていないときは、没収の裁判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2　第二十一条第十三項の規定により、地上権、抵当権その他の第三者の権利がその上に存在する財産を没収しようとする場合において、当該第三者が被告事件の手続への参加を許されていないときも、前項と同様とする。

3　組織的犯罪処罰法第十八条第三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は、地上権、抵当権その他の第三者の権利がその上に存在する財産を没収する場合において、第二十一条第十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組織的犯罪処罰法第十五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当該権利を存続させるべきとき

해당 사항 중 기소장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것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은 검찰관 또는 변호인이 「형사소송법」제2편제3장제2절제1관제2목(동법 제316조의28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증거의 공개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31조 (「최고재판소 규칙」에의 위임)

이 법에서 정하는 것 외에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최고재판소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

제32조 (제3자의 재산의 몰수절차 등)

① 제21조 제13항 각 호의 재산인 채권 등(부동산 및 동산외의 재산을 말한다. 제34조에서 같다)이 피고인 외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제3자"라 한다)에게 귀속하는 경우에 해당 제3자의 피고사건 절차참여가 허락되지 아니한 때에는 몰수의 재판을 하지 못한다.

② 제21조 제13항에 따라 지상권, 저당권, 그 밖의 제3자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하려는 경우에 해당 제3자의 피고사건 절차 참여가 허락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조직적범죄처벌법」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지상권, 저당권, 그 밖의 제3자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에 제21조 제14항에서 준용하는 「조직적범죄처벌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권리를 존속시켜야 하는 때에 대하여

について準用する。	준용한다.
4　第一項及び第二項に規定する財産の没収に関する手続については、この法律に特別の定めがあるもののほか、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昭和三十八年法律第百三十八号）の規定を準用する。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의 몰수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 「형사 사건의 제3자 소유물의 몰수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소화38〈1963〉년 법률 제138호)을 준용한다.
第三十三条（没収された債権等の処分等）	**제33조 (몰수된 채권 등의 처분 등)**
組織的犯罪処罰法第十九条の規定は第二十一条第十三項の規定による没収について、組織的犯罪処罰法第二十条の規定は権利の移転について登記又は登録を要する財産を没収する裁判に基づき権利の移転の登記又は登録を関係機関に嘱託する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中「次章第一節」とあるのは、「不正競争防止法第八章」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조직적 범죄 처벌법 제19조의 규정은 제21조 제13항의 규정에 따른 몰수에 대해 조직적 범죄 처벌법 제20조의 규정은 권리 이전에 대해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재판에 따라 권리 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기관에 촉탁하는 경우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중 '다음 장 제1절'은 '부정경쟁방지법 제8장'으로 대체한다.
第三十四条（刑事補償の特例）	**제34조 (형사보상의 특례)**
債権等の没収の執行に対する刑事補償法(昭和二十五年法律第一号)による補償の内容については、同法第四条第六項の規定を準用する。	「채권 등의 몰수의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법」(소화25〈1950〉년 법률 제1호)에 따른 보상의 내용에 대하여는 동법 제4조제6항을 준용한다.
第八章　保全手続	**제8장 보전절차**
第三十五条（没収保全命令）	**제35조 (몰수보전명령)**
裁判所は、第二十一条第一項、第二項、第四項（第四号を除く。）、第五項及び第六項の罪に係る被告事件に関し、同条第十三項の規定により没収することができる財産に当たると思料するに足りる相当な理由があり、かつ、当該財産を没収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検察官の請求により、又は職権で、没収保	법원은 제21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제4호를 제외한다.), 제5항 및 제6항의 죄와 관련된 피고사건에 관하여 동조 제13항의 규정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또한, 해당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

全命令を発して、当該財産につき、その処分を禁止することができる。

2　裁判所は、地上権、抵当権その他の権利がその上に存在する財産について没収保全命令を発した場合又は発しようとする場合において、当該権利が没収により消滅すると思料するに足りる相当な理由がある場合であって当該財産を没収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又は当該権利が仮装のものであると思料するに足りる相当の理由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検察官の請求により、又は職権で、附帯保全命令を別に発して、当該権利の処分を禁止することができる。

3　裁判官は、前二項に規定する理由及び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公訴が提起される前であっても、検察官又は司法警察員（警察官たる司法警察員については、国家公安委員会又は都道府県公安委員会が指定する警部以上の者に限る。）の請求により、前二項に規定する処分をすることができる。

4　前三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これらの規定による処分については、組織的犯罪処罰法第四章第一節及び第三節の規定による没収保全命令及び附帯保全命令による処分の禁止の例による。

第三十六条（追徴保全命令）

裁判所は、第二十一条第一項、第二項、第四項（第四号を除く。）、第五項及び第六項の罪に係る被告事件に関し、同条第十五項の規定により追徴すべき場合に当たると思料するに足りる相当な理由がある場合において、追徴の裁判の執行を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るおそれがあり、又はその執行をするのに著しい困難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検察官の請求により、又は職権で、追徴保全命令を発

로 몰수보전명령을 내려서 해당 재산에 대해 그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재판소는 지상권, 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내린 경우 또는 그 명령을 내리려 하는 경우에 해당 권리가 몰수에 따라 소멸한다고 사료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해당 권리가 가장(仮装)된 것으로 사료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부대보전명령을 따로내려 해당 권리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③ 재판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유 및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검찰관 또는 사법경찰원(경찰관인 사법경찰원에 대하여는 국가공안위안회 또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가 지정하는 경부 이상인 자로 한정한다)의 청구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들 규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는「조직적범죄처벌법」제4장제1절 및 제3절에 따른 몰수 보전명령 및 부대보전명령에 따른 처분의 금지의 예에 따른다.

제36조 (추징보전명령)

법원은 제21조 제1항, 제2항, 제4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5항 및 제6항의 죄와 관련된 피고사건에 관하여 동조 제15항의 규정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추징 재판의 집행을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거나, 또는 그 집행을 하기에 매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추징보전명

して、被告人に対し、その財産の処分を禁止することができる。	령을 내려서 피고인에게 그 재산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2　裁判官は、前項に規定する理由及び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公訴が提起される前であっても、検察官の請求により、同項に規定する処分をすることができる。	② 재판관은 제1항에 따른 이유 및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3　前二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これらの規定による処分については、組織的犯罪処罰法第四章第二節及び第三節の規定による追徴保全命令による処分の禁止の例による。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들 규정에 따른처분에 대하여는 「조직적범죄처벌법」 제4장제2절 및 제3절에 따른 추징보전명령에따른 처분 금지의 예에 따른다.
第九章　没収及び追徴の裁判の執行及び保全についての国際共助手続等	**제9장 몰수 및 추징 재판의 집행 및 보전에 대한 국제공조절차 등**
第三十七条（共助の実施）	**제37조 (공조 실시)**
外国の刑事事件（当該事件において犯されたとされている犯罪に係る行為が日本国内において行われたとした場合において、当該行為が第二十一条第一項、第二項、第四項（第四号を除く。）、第五項又は第六項の罪に当たる場合に限る。）に関して、当該外国から、没収若しくは追徴の確定裁判の執行又は没収若しくは追徴のための財産の保全の共助の要請があったとき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を除き、当該要請に係る共助をすることができる。	외국의 형사사건(해당 사건의 범죄와 관련된 행위가 일본 국내에서 일어났다고 한 경우, 해당 행위가 제21조 제1항, 제2항, 제4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5항 또는 제6항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해서 해당 외국으로부터 몰수 혹은 추징 확정의 재판 집행 또는 몰수 혹은 추징을 위한 재산 보전의 공조 요청이 있었을 때는 다음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요청과 관련된 공조가 가능하다.
一　共助犯罪（共助の要請において犯されたとされている犯罪をいう。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に係る行為が日本国内において行われたとした場合において、日本国の法令によればこれについて刑罰を科すことができないと認められるとき。	1. 공조 범죄(공조 요청에서 일어났다고 판단되는 범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관련된 행위가 일본 국내에서 일어났다고 한 경우에 일본국 법령에 따르면 이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二　共助犯罪に係る事件が日本国の裁判所に係属するとき、又はその事件について日本	2. 공조 범죄와 관련된 사건이 일본국 재판소에 계속하는 때 또는 그 사건에 대하여

国の裁判所において確定判決を経たとき。	일본국 재판소에서 확정 재판을 거친 때
三　没収の確定裁判の執行の共助又は没収のための保全の共助については、共助犯罪に係る行為が日本国内において行われたとした場合において、要請に係る財産が日本国の法令によれば共助犯罪について没収の裁判をし、又は没収保全をすることができる財産に当たるものでないとき。	3. 몰수의 확정 재판의 집행 공조 또는 몰수를 위한 보전 공조에 대하여는 공조 범죄와 관련된 행위가 일본 국내에서 일어났다고 한 경우에 요청과 관련된 재판이 일본국 법령에 따르면 공조범죄에 대하여 몰수 재판을 하거나 몰수 보전을 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때
四　追徴の確定裁判の執行の共助又は追徴のための保全の共助については、共助犯罪に係る行為が日本国内において行われたとした場合において、日本国の法令によれば共助犯罪について追徴の裁判をし、又は追徴保全を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に当たるものでないとき。	4. 추징의 확정 재판의 집행 공조 또는 추징을 위한 보전 공조에 대하여는 공조범죄와 관련된 행위가 일본 국내에서 일어났다고 한 경우에 일본국 법령에 따르면 공조 범죄에 대하여 추징재판을 하거나 추징 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때
五　没収の確定裁判の執行の共助については要請に係る財産を有し又はその財産の上に地上権、抵当権その他の権利を有すると思料するに足りる相当な理由のある者が、追徴の確定裁判の執行の共助については当該裁判を受けた者が、自己の責めに帰することのできない理由により、当該裁判に係る手続において自己の権利を主張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認められるとき。	5. 몰수의 확정 재판의 집행 공조에 대하여는 요청과 관련된 재산을 가지거나 그 재산상 지상권, 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다고 사료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추징 확정 재판의 집행 공조에 대하여는 해당 재판을 받는 자가 자기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이유로 해당 재판과 관련된 절차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다고 인정되는 때
六　没収又は追徴のための保全の共助については、要請国の裁判所若しくは裁判官のした没収若しくは追徴のための保全の裁判に基づく要請である場合又は没収若しくは追徴の裁判の確定後の要請である場合を除き、共助犯罪に係る行為が行われたと疑うに足りる相当な理由がないとき、又は当該行為が日本国内で行われたとした場合において第三十五条第一項又は前条第一項に規定する理由がないと認められるとき。	6. 몰수 또는 추징의 보전 공조에 대하여는 요청국 재판소나 재판관이 한 몰수나 추징을 위한 보전 재판에 따른 요청인 경우 또는 요청이나 추징 재판의 확정 후 요청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조 범죄와 관련된 행위가 일어났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때 또는 해당 행위가 일본국내에서 일어났다고 한 경우에 제35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地上権、抵当権その他の権利がその上に存在する財産に係る没収の確定裁判の執行の共	② 지상권, 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과 관련된 몰수 확정 재판의

助をするに際し、日本国の法令により当該財産を没収するとすれば当該権利を存続させるべき場合に当たるときは、これを存続させるものとする。	집행 공조를 하는 때에는 일본국 법령에 따라 해당 재산을 몰수하면 해당 권리를 존속시켜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존속시킨다.
第三十八条（追徴とみなす没収） 第二十一条第十三項各号に掲げる財産に代えて、その価額が当該財産の価額に相当する財産であって当該裁判を受けた者が有するものを没収する確定裁判の執行に係る共助の要請にあっては、当該確定裁判は、この法律による共助の実施については、その者から当該財産の価額を追徴する確定裁判とみなす。	**제38조 (추징으로 간주하는 몰수)** 제21조 제13항 각 호에 열거한 재산을 대신하여 그 가금액이 해당 재산의 가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이고 해당 재판을 받은 자가 가진 것을 몰수하는 확정 재판의 집행과 관련된 공조의 요청에 있어, 해당 확정 재판은 이 법률에 따른 공조 실시에 대해서는 그 자로부터 해당 재산의 가금액을 추징하는 확정 재판으로 간주한다.
2　前項の規定は、第二十一条第十三項各号に掲げる財産に代えて、その価額が当該財産の価額に相当する財産を没収するための保全に係る共助の要請について準用する。	② 전항의 규정은 제21조 제13항 각 호에 열거한 재산을 대신하여 그 가금액이 해당 재산의 가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보전과 관련된 공조 요청에 대해 준용한다.
附則 第十条第二十一条及び第二十二条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開始した附則第三条第二号に掲げる行為に該当するものを継続する行為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부칙** 제10조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개시한 부칙 제3조 제2호에 열거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계속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중국 부정경쟁방지법

원 본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번역본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

- 국 가 · 지 역: 중국
- 법 률 번 호: 주석령 [2019] 제 29 호
- 제 정 일: 1993년 9월 2일
- 개 정 일: 2019년 4월 23일
- 공 포 일: 2019년 4월 23일
- 시 행 일: 2019년 4월 23일

第一章 总则	**제1장 총칙**
第一条 为了促进社会主义市场经济健康发展，鼓励和保护公平竞争，制止不正当竞争行为，保护经营者和消费者的合法权益，制定本法。	**제1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며, 공평한 경쟁을 장려하고 보호하고, 부정경쟁행위를 제지하고,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第二条 经营者在生产经营活动中，应当遵循自愿、平等、公平、诚信的原则，遵守法律和商业道德。	**제2조** 경영자는 생산경영활동 중에 자발성 · 평등성 · 공평성 ·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법률과 상업도덕을 준수하여야 한다.
本法所称的"不正当竞争行为"，是指经营者在生产经营活动中，违反本法规定，扰乱市场竞争秩序，损害其他经营者或者消费者的合法权益的行为。	이 법에서 “부정경쟁행위”란 경영자가 생산경영활동 중에 이법을 위반하여 시장경쟁질서를 교란시키고, 다른 경영자 또는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本法所称的经营者，是指从事商品生产、经营或者提供服务（以下所称商品包括服务）的自然人、法人和非法人组织。	이 법에서 “경영자”란 상품 생산 · 경영에 종사하거나 서비스(이하 ‘상품’이란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는 자연인 · 법인 · 비법인 조직을 말한다.

第三条 各级人民政府应当采取措施，制止不正当竞争行为，为公平竞争创造良好的环境和条件。 国务院建立反不正当竞争工作协调机制，研究决定反不正当竞争重大政策，协调处理维护市场竞争秩序的重大问题。	**제3조** 각급 인민정부는 조치를 취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제지하고, 공평한 경쟁을 위하여 건전한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국무원은 부정경쟁행위 업무에 대한 협조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중대한 정책 결정을 연구하고, 시장경쟁질서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 처리에 협조한다.
第四条 县级以上人民政府履行工商行政管理职责的部门对不正当竞争行为进行查处；法律、行政法规规定由其他部门查处的，依照其规定。	**제4조** 현(縣)급 이상의 인민정부 상공행정관리 직무책임이 있는 부서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조사하여 처리한다. 법률·행정법규에 다른 부서가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第五条 国家鼓励、支持和保护一切组织和个人对不正当竞争行为进行社会监督。 国家机关及其工作人员不得支持、包庇不正当竞争行为。 行业组织应当加强行业自律，引导、规范会员依法竞争，维护市场竞争秩序。	**제5조** 국가는 모든 조직과 개인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감독하도록 독려하고 지지하며 보호한다. 국가기관 및 그 소속 직원은 부정경쟁행위를 지원하거나 감싸주어서는 아니 된다. 업종 조직은 그 회원이 법에 따라 경쟁하도록 업종 자율성·가이드·규범을 강화하여 시장경쟁 질서를 보호하여야 한다.
第二章 不正当竞争行为	**제2장 부정경쟁행위**
第六条 经营者不得实施下列混淆行为，引人误认为是他人商品或者与他人存在特定联系: （一）擅自使用与他人有一定影响的商品名称、包装、装潢等 相同或者近似的标识；	**제6조** 경영자는 다른 사람의 상품으로 오인하거나 다른 사람과 특정한 관계가 있다고 오해하도록 혼동을 초래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의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품 명칭·포장·장식 등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二）擅自使用他人有一定影响的企业名称（包括简称、字号等）、社会组织名称（包括简称等）、姓名（包括笔名、艺名、译名等）；	(2) 다른 사람의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기업명칭(약칭 · 글자 모양 등을 포함한다), 사회조직 명칭(약칭 등을 포함한다), 성명(필명 · 예명 · 번역명등을 포함한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三）擅自使用他人有一定影响的域名主体部分、网站名称、网页等；	(3) 다른 사람의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도메인 주요 부분 · 웹사이트 명칭 · 웹페이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四）其他足以引人误认为是他人商品或者与他人存在特定联系的混淆行为。	(4) 다른 사람의 상품으로 오인하거나 다른 사람과 특정한 관계가 있다고 오해하는 혼동을 초래하기에 충분한 그 밖의 행위
第七条	**제7조**
经营者不得采用财物或者其他手段贿赂下列单位或者个人，以谋取交易机会或者竞争优势:	경영자는 재물이나 그 밖의 수단으로 다음의 사업장 또는 개인에게 뇌물을 주어 거래 기회를 획득하거나 경쟁 우위를 차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交易相对方的工作人员；	(1) 거래 상대방의 업무 담당자
（二）受交易相对方委托办理相关事务的单位或者个人；	(2) 거래 상대방의 위탁을 받아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사업장 또는 개인
（三）利用职权或者影响力影响交易的单位或者个人。经营者在交易活动中，可以以明示方式向交易相对方支付折扣，或者向中间人支付佣金。经营者向交易相对方支付折扣、向中间人支付佣金的，应当如实入账。接受折扣、佣金的经营者也应当如实入账。经营者的工作人员进行贿赂的，应当认定为经营者的行为；但是，经营者有证据证明该工作人员的行为与为经营者谋取交易机会或者竞争优势无关的除外。	(3) 거래에 영향을 주는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이 있는 사업장 또는 개인 경영자는 거래활동 중에 거래 상대방에게 할인을 해주는 방식이나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명시할 수 있다. 경영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할인을 해주는 방식 ·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은 사실과 동일하게 장부에 기입되어야 한다. 경영자 측의 업무 당당자가 뇌물을 사용하는 행위는 경영자의 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업무 담당자의 행위가 경영자가 거래 기회를 획득하거나 경쟁 우위를 차지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는 명확한 증거 · 증명이 경영자에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第八条	**제8조**
经营者不得对其商品的性能、功能、质量、销售状况、用户评价、曾获荣誉等作虚假或者引人误解的商业宣传，欺骗、误导消费者。	경영자는 그 상품의 성능 · 기능 · 품질 · 매출 상황 · 사용자 평가 · 수상 내역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상업광고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经营者不得通过组织虚假交易等方式，帮助其他经营者进行虚假或者引人误解的商业宣传。	경영자는 조직적으로 허위 거래 등을 하는 방식으로 다른 경영자가 허위 활동을 하는 것 또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상업 광고를 하는 것을 도와주어서는 아니 된다.
第九条	**제9조**
经营者不得实施下列侵犯商业秘密的行为：	경영자는 다음과 같이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 以盗窃、贿赂、欺诈、胁迫、电子侵入或者其他不正当手段获取权利人的商业秘密；	(1) 절도 · 회유 · 협박 · 전산 침입 · 부정한 그 밖의 수단으로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二) 披露、使用或者允许他人使用以前项手段获取的权利人的商业秘密；	(2) 앞 항의 수단으로 획득한 영업비밀을 폭로 ·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허가 하는 행위
(三) 违反保密义务或者违反权利人有关保守商业秘密的要求，披露、使用或者允许他人使用其所掌握的商业秘密；	(3) 영업비밀 보호 의무를 위반하거나, 채권자 관련 영업비밀 보호 요구를 위반하거나, 그렇게 하여 손에 넣은 영업비밀을 폭로 ·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행위
(四) 教唆、引诱、帮助他人违反保密义务或者违反权利人有关保守商业秘密的要求，获取、披露、使用或者允许他人使用权利人的商业秘密。	(4) 다른 사람이 영업비밀 보호 의무를 위반하도록 선동 · 유도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도움을 주거나, 채권자에 관련된 영업비밀 보호 · 유지 요구를 위반하거나, 그 영업비밀을 획득 · 폭로 ·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행위
经营者以外的其他自然人、法人和非法人组织实施前款所列违法行为的，视为侵犯商业秘密。	경영자를 제외한 그 밖의 자연인 · 법인 · 비법인 조직이 앞 관에 열거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第三人明知或者应知商业秘密权利人的员工、前员工或者其他单位、个人实施本条第一款所列违法行为，仍获取、披露、使用或者允许他人使用该商业秘密的，视为侵犯商业秘密。	영업비밀 채권자의 직원을 알았거나 알아야 하는 제3자, 그 직원이나 다른 사업장·개인이 제9조제1관에 열거된 위법행위를 하여, 해당 영업비밀을 획득·폭로·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본다.
本法所称的"商业秘密"，是指不为公众所知悉、具有商业价值并经权利人采取相应保密措施的技术信息、经营信息等商业信息。	이 법에서 “영업비밀”이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상업적 가치가 있고, 채권자가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취하여 보호하는 기술정보·경영정보 등의 상업정보를 말한다.
第十条	**제10조**
经营者进行有奖销售不得存在下列情形:	경영자가 경품 판매 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 所设奖的种类、兑奖条件、奖金金额或者奖品等有奖销售信息不明确，影响兑奖；	(1) 경품 종류·경품 교환 조건·당첨 금액 및 상품 등 경품 판매 정보가 불명확하여 경품 교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二) 采用谎称有奖或者故意让内定人员中奖的欺骗方式进行有奖销售；	(2) 허위로 경품 판매를 꾸며 내거나 경품 당첨자를 고의로 내정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경품 판매를 하는 경우
(三) 抽奖式的有奖销售，最高奖的金额超过五万元。	(3) 추첨식 경품 판매의 최고 당첨 금액이 5만 위안을 초과 하는 경우
第十一条	**제11조**
经营者不得编造、传播虚假信息或者误导性信息，损害竞争对手的商业信誉、商品声誉。	경영자는 허위 정보 또는 잘못된 정보를 날조·유포하여 경쟁 상대방의 상업 신용·상품 평판에 손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第十二条	**제12조**
经营者利用网络从事生产经营活动，应当遵守本法的各项规定。经营者不得利用技术手段，通过影响用户选择或者其他方式，实施下列妨碍、破坏其他经营者合法提供的网络产品或者服务正常运行的行为:	경영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경영자는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사용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

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 未经其他经营者同意，在其合法提供的网络产品或者服务中，插入链接、强制进行目标跳转；

(1) 다른 경영자의 동의없이 그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에 링크 · 강제 리디렉션을 삽입하는 행위

(二) 误导、欺骗、强迫用户修改、关闭、卸载其他经营者合法提供的网络产品或者服务；

(2) 사용자에게 왜곡하여 알리거나, 사용자를 기만 · 강박하여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를 수정 · 폐쇄 · 삭제하도록 하는 행위

(三) 恶意对其他经营者合法提供的网络产品或者服务实施不兼容；

(3)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를 악의로 수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四) 其他妨碍、破坏其他经营者合法提供的网络产品或者服务正常运行的行为。

(4)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 운영을 방해 · 훼방하는 그 밖의 행위

第三章 对涉嫌不正当竞争行为的调查

제3장 부정경쟁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

第十三条

监督检查部门调查涉嫌不正当竞争行为，可以采取下列措施:

제13조

감독검사부서는 부정경쟁행위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一)进入涉嫌不正当竞争行为的经营场所进行检查；

(1) 부정경쟁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사업장에 들어가서 관련 조사 진행

(二)询问被调查的经营者、利害关系人及其他有关单位、个人，要求其说明有关情况或者提供与被调查行为有关的其他资料；

(2) 조사를 받는 경영자 · 이해 관계자 및 그 밖의 사업장 · 개인에게 물어보아서 관련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조사받는 행위에 관련된 그 밖의 자료 제공을 요청

(三)查询、复制与涉嫌不正当竞争行为有关的协议、账簿、单据、文件、记录、业务函电和其他资料；

(3) 부정경쟁행위 혐의와 관련된 합의서 · 장부 · 청구서 · 문서 · 기록 · 업무서신과 그 밖의 자료를 조회 · 복사

(四)查封、扣押与涉嫌不正当竞争行为有关的财物；

(4) 부정경쟁행위 혐의와 관련된 재물을 봉인 · 압수

(五)查询涉嫌不正当竞争行为的经营者的银

(5) 부정경쟁행위 혐의를 받는 경영자의 은

行账户。 采取前款规定的措施，应当向监督检查部门主要负责人书面报告，并经批准。采取前款第四项、第五项规定的措施，应当向设区的市级以上人民政府监督检查部门主要负责人书面报告，并经批准。 监督检查部门调查涉嫌不正当竞争行为，应当遵守《中华人民共和国行政强制法》和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并应当将查处结果及时向社会公开。	행계좌를 조회앞 관에서 말하는 조치를 취하려면 감독검사부서 주요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비준도 받아야 한다. 앞 관의 제 4 항 · 제5항의 조치를 취하려면 구가 설치된 시(市)급 이상의 인민정부 감독검사부서 주요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비준도 받아야 한다. 부정경쟁행위 혐의를 조사하는 감독검사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과 그 밖의 관련법률 · 행정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곧바로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第十四条 监督检查部门调查涉嫌不正当竞争行为，被调查的经营者、利害关系人及其他有关单位、个人应当如实提供有关资料或者情况。	**제14조** 감독검사부서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는 경우 조사를 받는 경영자 · 이해관계자 및 그 밖의 관련 사업장 · 개인은 사실대로 관련 자료 또는 상황 설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第十五条 监督检查部门及其工作人员对调查过程中知悉的商业秘密负有保密义务。	**제15조** 감독검사부서 및 그 업무 담당자는 조사 과정 중에 알게 된 영업비밀에 관하여 비밀보호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第十六条 对涉嫌不正当竞争行为，任何单位和个人有权向监督检查部门举报，监督检查部门接到举报后应当依法及时处理。 监督检查部门应当向社会公开受理举报的电话、信箱或者电子邮件地址，并为举报人保密。对实名举报并提供相关事实和证据的，监督检查部门应当将处理结果告知举报人。	**제16조** 부정경쟁행위 혐의에 대하여 모든 사업장과 개인은 감독검사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감독검사부서는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법에 따라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감독검사부서는 신고를 접수받는 전화번호 · 우편번호 · 전자메일주소를 사회에 공개하여야 하며, 신고 제보자를 위하여 신고에 대한 비밀보호 의무를 진다. 실명으로 제보하면서 관련 사실과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처리결과를 신고 제보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第四章 法律责任	제4장 법적 책임
第十七条	**제17조**
经营者违反本法规定，给他人造成损害的，应当依法承担民事责任。	경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경영자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해당 경영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经营者的合法权益受到不正当竞争行为损害的，可以向人民法院提起诉讼。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부정경쟁행위로 손해를 입는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因不正当竞争行为受到损害的经营者的赔偿数额，按照其因被侵权所受到的实际损失确定;实际损失难以计算的，按照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确定。经营者恶意实施侵犯商业秘密行为，情节严重的，可以在按照上述方法确定数额的一倍以上五倍以下确定赔偿数额。赔偿数额还应当包括经营者为制止侵权行为所支付的合理开支。	부정경쟁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영자에 대한 배상액수는 권리침해를 입은 실제 손실에 따라 확정하며, 실제 손실을 계산하기가 어려운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얻게 된 이익으로 계산하여 확정한다. 경영자가 악의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그 상황이 심각한 경우 위에 서술된 방법으로 확정된 액수의 1 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배상액수로 정한다. 배상액수에는 경영자가 권리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经营者违反本法第六条、第九条规定，权利人因被侵权所受到的实际损失、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难以确定的，由人民法院根据侵权行为的情节判决给予权利人五百万元以下的赔偿。	경영자가 이 법 제6조 · 제9조를 위반하여, 채권자가 권리 침해로 입은 실제 손실 · 권리를 침해한 자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얻게 된 이익을 계산하여 확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침해행위 관련 상황을 심리하여 채권자에게 500 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해주도록 판결한다.
第十八条	**제18조**
经营者违反本法第六条规定实施混淆行为的，由监督检查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商品。 违法经营额五万元以上的，可以并处违法经营额五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经营额或者违法经营额不足五万元的，可以并处二十五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吊销营业执照。	경영자가 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감독검사부서가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위법에 관련된 상품을 몰수한다. 위법경영액이 5 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경영액의 5 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위법경영액이 5

	만 위안 미만인 경우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영업면허를 회수하여 취소한다.
经营者登记的企业名称违反本法第六条规定的，应当及时办理名称变更登记；名称变更前，由原企业登记机关以统一社会信用代码代替其名称。	경영자가 등기한 기업 명칭이 이 법 제6조를 위반하는 경우 즉시 명칭 변경 등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명칭 변경 이전에는 해당 기업이 원래 등기하였던 기관은 통합사회신용코드로 그 명칭을 대체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第十九条	**제19조**
经营者违反本法第七条规定贿赂他人的，由监督检查部门没收违法所得，处十万元以上三百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吊销营业执照。	경영자가 이 법 제7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주는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그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10 만 위안 이상 3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영업면허를 회수하여 취소한다.
第二十条	**제20조**
经营者违反本法第八条规定对其商品作虚假或者引人误解的商业宣传，或者通过组织虚假交易等方式帮助其他经营者进行虚假或者引人误解的商业宣传的，由监督检查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处二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一百万元以上二百万元以下的罚款，可以吊销营业执照。	경영자가 이 법 제8조를 위반하여 그 상품에 관하여 허위로 작성하거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상업 광고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조직적으로 허위 거래 등을 하는 방식으로 다른 경영자가 허위 활동을 하는 것 또는 오해를 초래 할 수 있는 상업 광고를 하는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20 만 위안 이상 1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100만 위안 이상 200 만 위안 이하 의 벌금에 처하고, 영업면허를 회수하여 취소할 수도 있다.
经营者违反本法第八条规定，属于发布虚假广告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的规定处罚。	경영자가 이 법 제 8 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허위 광고 유포에 해당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광고법》에 따라 처벌한다.
第二十一条	**제21조**
经营者以及其他自然人、法人和非法人组织违反本法第九条规定侵犯商业秘密的，由监督	경영자 및 그 밖의 자연인 · 법인과 비법인이 조직적으로 이 법제 9 조를 위반하여 영

检查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所得，处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五十万元以上五百万元以下的罚款。	업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감독검사부서가 위법행위 중지를 명령한 뒤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10 만 위안 이상 1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50만 위안 이상 5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二十二条 经营者违反本法第十条规定进行有奖销售的，由监督检查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	**제22조** 경영자가 이 법 제 10 조를 위반하여 경품 판매를 하는 경우 감독검사부서가 위법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5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二十三条 经营者违反本法第十一条规定损害竞争对手商业信誉、商品声誉的，由监督检查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消除影响，处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五十万元以上三百万元以下的罚款。	**제23조** 경영자가 이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경쟁 상대방의 상업 신용·상품 평판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감독검사부서가 위법행위 중지와 그에 따른 영향의 제거를 명령하고, 10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50 만 위안 이상 3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二十四条 经营者违反本法第十二条规定妨碍、破坏其他经营者合法提供的网络产品或者服务正常运行的，由监督检查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处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五十万元以上三百万元以下的罚款。	**제24조** 경영자가 이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감독검사부서가 위법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10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50 만 위안 이상 3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二十五条 经营者违反本法规定从事不正当竞争，有主动消除或者减轻违法行为危害后果等法定情形的，依法从轻或者减轻行政处罚；违法行为轻微并及时纠正，没有造成危害后果的，不予行政处罚。	**제25조** 경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으나, 위법행위에 따른 유해한 결과를 적극적으로 제거 또는 완화하는 법적 상황이 있는 경우 법에 따라 그에 대한 행정처벌을 경감하거나 선처한다. 위법행위가 경

	미하고 적시에 시정되어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처벌하지 아니한다.
第二十六条 经营者违反本法规定从事不正当竞争，受到行政处罚的，由监督检查部门记入信用记录，并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予以公示。	**제26조** 경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여 행정처벌을 받는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이를 신용기록에 기입하고, 관련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공시한다.
第二十七条 经营者违反本法规定，应当承担民事责任、行政责任和刑事责任，其财产不足以支付的，优先用于承担民事责任。	**제27조** 경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민사책임·행정책임·형사책임을 지게 되었으나 그 재산으로는 법적 책임을 이행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우선 민사책임을 지는 것부터 처리한다.
第二十八条 妨害监督检查部门依照本法履行职责，拒绝、阻碍调查的，由监督检查部门责令改正，对个人可以处五千元以下的罚款，对单位可以处五万元以下的罚款，并可以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	**제28조** 감독검사부서가 이 법에 따른 직무 및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하거나, 훼방하는 경우 감독검사부서가 시정을 명령하며, 해당 개인을 5 천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사업장을 5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관리 처벌을 할 수도 있다.
第二十九条 当事人对监督检查部门作出的决定不服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	**제29조** 감독조사부서가 내리는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당사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第三十条 监督检查部门的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或者泄露调查过程中知悉的商业秘密的，依法给予处分。	**제30조** 감독검사부서의 업무 담당자가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거나, 사리사욕을 추구하거나, 조사과정 중에 알게 된 영업비밀을 유출·폭로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처분한다.

第三十一条 违反本法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제31조**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第三十二条 在侵犯商业秘密的民事审判程序中，商业秘密权利人提供初步证据，证明其已经对所主张的商业秘密采取保密措施，且合理表明商业秘密被侵犯，涉嫌侵权人应当证明权利人所主张的商业秘密不属于本法规定的商业秘密。	**제32조**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민사재판절차 진행 중 영업비밀 권리를 보유한 채권자는 재판 초기에 영업비밀에 대하여 비밀보호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증명을 제출하고, 영업비밀이 침해당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표명한다. 그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이 법에 규정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피의자는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商业秘密权利人提供初步证据合理表明商业秘密被侵犯，且提供以下证据之一的，涉嫌侵权人应当证明其不存在侵犯商业秘密的	영업비밀 권리를 보유한 채권자가 재판 초기에 제출한 증거가 영업비밀 침해 상황을 합리적으로 표명하고, 다음 각 항의 증거중 하나를 제출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一) 有证据表明涉嫌侵权人有渠道或者机会获取商业秘密，且其使用的信息与该商业秘密实质上相同;	(1) 피의자가 영업비밀을 입수 할 수 있는 경로 또는 기회가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고, 그에 따라 사용된 정보가 해당 영업비밀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二) 有证据表明商业秘密已经被涉嫌侵权人披露、使用或者有被披露、使用的风险;	(2) 영업비밀이 이미 피의자에 의하여 폭로·사용되었거나, 폭로·사용될 위험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
(三) 有其他证据表明商业秘密被涉嫌侵权人侵犯。	(3) 피의자가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그 밖의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
第五章 附则	**제5장 부칙**
第三十三条 本法自 2018 年 1 月 1 日起施行。	**제33조** 이 법은 201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5. EU 영업비밀보호법

원 본 출처: EUR-LEX
번역본 출처: 자체번역

15.6.2016 EN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 157/1

I
(Legislative acts)

DIRECTIVES

DIRECTIVE (EU) 2016/94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6 on the protection of undisclosed know-how and business information (trade secrets) against their unlawful acquisition, use and disclosure(Text with EEA relevance)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Having regard to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and in particular Article 114 thereof,

Having regard to the proposal from the European Commission,

After transmission of the draft legislative act to the national parliaments,

Having regard to the opinion of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cting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

2016. 6.15 [EN] 유럽 연합 공식 관보 L157/1

I
(입법)

지침

불법 취득, 이용, 공개로부터 미공개 노하우 및 사업정보(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2016/943 2016년 6월 8일 (전문 및 EEA 관련 사항)

유럽 의회와 유럽 연합 이사회는,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특히 제 114조를 고려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고려하여,

입법안 초안을 국회에 전달한 후,

유럽경제사회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고,

일반적인 입법 절차에 따라 행동하였다.

Whereas:	해설:
(1) Businesses and non-commercial esearch institutions invest in acquiring, developing and applying know-how and information which is the currency of the knowledge economy and provides a competitive advantage. This investment in generating and applying intellectual capital is a determining factor as regards their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related performance in the market and therefore their returns on investment, which is the underlying motivation for business research and development. Businesses have recourse to different means to appropriate the results of their innovation-related activities when openness does not allow for the full exploitation of their investment in research and innovation.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patents, design rights or copyright, is one such means. Another means of appropriating the results of innovation is to protect access to, and exploit, knowledge that is valuable to the entity and not widely known. Such valuable know-how and business information, that is undisclosed and intended to remain confidential, is referred to as a trade secret.	(1) 기업과 비상업적 연구기관은 지식경제의 화폐이자 경쟁상의 우위를 제공하는 노하우와 정보를 획득, 개발, 적용하는데 투자한다. 이와 같이 지적 자본의 생성 및 적용을 위한 투자는 시장의 경쟁력과 혁신 관련 기능을 결정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연구 및 개발의 근본적인 동기인 투자 수익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기업은 개방성으로 인하여 연구 및 혁신에 대한 자신의 투자가 완전히 활용될 수 없을 때, 혁신 관련 활동의 결과를 전유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에 의존한다. 특허, 디자인권 혹은 저작권과 같은 지적 재산권의 이용이 그러한 수단 중 하나이다. 혁신의 결과를 전유하는 또 다른 수단은 기업에 가치가 있으면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지식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고 그러한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개되지 않고 기밀로 유지할 것이 의도된 가치 있는 노하우와 사업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한다.
(2) Businesses, irrespective of their size, value trade secrets as much as patents and other form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ey use confidentiality as a business competitiveness and research innovation management tool, and in relation to a diverse range of information that extends beyond technological knowledge to commercial data such as information on customers and suppliers, business plans, and market research and strategie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value and	(2) 기업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영업비밀을 특허 및 기타 형태의 지적 재산권만큼이나 중요하게 그 가치를 인식하고, 기밀을 사업상의 경쟁력 및 연구 혁신 관리 도구로서, 또한 기술 지식을 넘어 고객 및 공급업체, 사업 계획, 시장 조사 및 전략에 대한 정보와 같은 상업적 데이터로 확장되는 다양한 범위의 정보와 관련하여 사용한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영업비밀을 더욱 중시하고 그에 의존한다. 지식 재산권의 보완이든, 혹은 대안이든, 이러한 넓은 범위의 노하우 및 사업 정보를 보호함으로써 영업 비밀은 창안자와 혁신가가 자신의 창안 혹은 혁

rely on trade secrets even more. By protecting such a wide range of know-how and business information, whether as a complement or as an alternative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ade secrets allow creators and innovators to derive profit from their creation or innovation and, therefore, are particularly important for business competitiveness as well a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innovation-related performance.	신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며, 따라서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사업 경쟁력 및 혁신 관련 기능에 특히 중요성을 갖는다.
(3) Open innovation is a catalyst for new ideas which meet the needs of consumers and tackle societal challenges, and allows those ideas to find their way to the market. Such innovation is an important lever for the creation of new knowledge, and underpins the emergence of new and innovative business models based on the use of co-created knowledge. Collaborative research, including cross-border cooperation,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increasing the levels of business research and development within the internal market. The dissemination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should be considered as being essential for the purpose of ensuring dynamic, positive and equal business development opportunities, in particular for SMEs. In an internal market in which barriers to cross-border collaboration are minimised and cooperation is not distorted, intellectual creation and innovation should encourage investment in innovative processes, services and products. Such an environment conducive to intellectual creation and innovation, and in which employment mobility is not hindered, is also important for employment growth and for improv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Union economy. Trade secrets have an important role in protecting the exchange	(3) 개방된 혁신은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고 사회적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촉매제이며, 이러한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실현될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혁신은 새로운 지식의 창출을 위한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하며 집단으로 형성된 지식의 사용을 기반으로 하는 새롭고 혁신적인 사업 모델의 발현을 뒷받침한다. 국제적 협력을 포함하는 공동 연구는 자국 시장에서 비즈니스 연구 및 개발의 수준을 높이는 데 특히 중요하다. 지식과 정보의 보급은 역동적, 적극적이며, 평등한 사업 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어야 하며 특히 중소기업에 경우에 그러하다. 국제적 협력에 대한 장벽이 최소화되고 협력이 왜곡되지 않는 내부 시장에서 지적 창조와 혁신은 혁신적인 프로세스,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투자를 고취시켜야 한다. 이러한 지적 창조와 혁신을 유인하면서 고용의 이동성이 제한받지 않는 환경은 유럽 연합의 고용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영업 비밀은 연구 개발 및 혁신의 맥락에서 국내 시장 내부 및 국제간의 시장에서 중소기업들을 포함하는 기업들과 연구 기관들 간에 지식의 교환을 보호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업비밀은 기업이 지적 생산물과 혁신적인 노하우를 보호하는 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형식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유럽연합의 기존 법 체제 하에서는 다른 당사자에 의한 불법적인 취득, 사용 혹은 공개로부터 가장 덜 보호되고 있는 실정이다.

of knowledge between businesses, including in particular SMEs, and research institutions both within and across the borders of the internal market, in the contex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innovation. Trade secrets are one of the most commonly used forms of protection of intellectual creation and innovative know- how by businesses, yet at the same time they are the least protected by the existing Union legal framework against their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by other parties.	
(4) Innovative businesses are increasingly exposed to dishonest practices aimed at misappropriating trade secrets, such as theft, unauthorised copying, economic espionage or the breach of confidentiality requirements, whether from within or from outside of the Union. Recent developments, such as globalisation, increased outsourcing, longer supply chains, and the increased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risk of those practices. The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compromises legitimate trade secret holders' ability to obtain first-mover returns from their innovation-related efforts. Without effective and comparable legal means for protecting trade secrets across the Union, incentives to engage in innovation-related cross-border activity within the internal market are undermined, and trade secrets are unable to fulfil their potential as drivers of economic growth and jobs. Thus, innovation and creativity are discouraged and investment diminishes, thereby affecting the smooth functioning of the internal market and undermining its growth-enhancing potential.	(4) 혁신적인 기업들은 유럽 연합 내부 혹은 외부에서 절도, 무단 복사, 경제 스파이 혹은 기밀 의무 위반과 같은 영업 비밀의 도용을 목적으로 하는 부정직한 행태에 대한 증가하는 노출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화, 아웃소싱의 증가, 연장되는 공급망, 정보 및 통신 기술사용의 증가와 같은 최근의 발전은 이러한 행태의 위험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한다.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취득, 사용 혹은 공개는 영업비밀의 합법적인 보유자가 혁신을 위한 노력으로 선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한다. 유럽 연합 전역에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동등한 법적 수단이 없이는 내부 시장 내에서 혁신 관련 국제 활동에 참여하려는 동기가 약화되고 영업비밀은 경제 성장과 고용을 견인하는 잠재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따라서 혁신과 창의성이 위축되고 투자는 감소하여 내부 시장의 원활한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성장 잠재력을 억제하게 된다.

(5) International efforts made in the framework of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to address this problem led to the conclusion of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TRIPS Agreement). The TRIPS Agreement contains, inter alia, provisions on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against their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by third parties, which are common international standards. All Member States, as well as the Union itself, are bound by this Agreement which was approved by Council Decision 94/800/EC.	(5) 세계무역기구(WTO)의 틀 안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시도된 국제적 노력은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협정)의 체결로 이어졌다. TRIPS 협정은 제3자의 불법적인 취득, 사용 혹은 공개로부터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일반적인 국제 표준 조항들을 포함한다. 이사회 결정 94/800/EC에 의해 승인된 이 협정은 유럽 연합뿐 아니라 모든 회원국을 구속한다.
(6) Notwithstanding the TRIPS Agreement, there are important differences in the Member States' legislation as regards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against their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by other persons. For example, not all Member States have adopted national definitions of a trade secret or the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therefore knowledge on the scope of protection is not readily accessible and that scope differs across the Member States. Furthermore, there is no consistency as regards the civil law remedies available in the event of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trade secrets, as cease and desist orders are not always available in all Member States against third parties who are not competitors of the legitimate trade secret holder. Divergences also exist across the Member States with respect to the treatment of a third party who has acquired the trade secret in good faith but subsequently learns, at the time of use, that the acquisition derived from a previous unlawful acquisition by another party.	(6) TRIPS 협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에 의한 불법적인 취득, 사용 혹은 공개로부터 영업비밀을 보호함에 있어 회원국들의 법률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모든 회원국이 영업비밀의 정의 혹은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취득, 사용 혹은 공개에 대한 국내적 정의를 채택한 것은 아니므로 보호 범위를 쉽게 알 수 없고, 그 범위는 회원국마다 다르다. 더 나아가, 적법한 영업 비밀 보유자의 경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중지 명령이 모든 회원국들 내에서 이용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취득, 사용 혹은 공개의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민법적 구제 수단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다. 또한, 선의로 영업비밀을 취득했지만 다른 당사자가 이전에 불법적으로 취득했던 사실을 이후 사용 시점에 알게 된 제3자의 대우와 관련하여 회원국 전체에 차이가 존재한다.

(7) National rules also differ as to whether legitimate trade secret holders are allowed to seek the destruction of goods produced by third parties who use trade secrets unlawfully, or the return or destruction of any documents, files or materials containing or embodying the unlawfully acquired or used trade secret. Furthermore, applicable national rules on the calculation of damages do not always take account of the intangible nature of trade secrets, which makes it difficult to demonstrate the actual profits lost or the unjust enrichment of the infringer where no market value can be established for the information in question. Only a few Member States allow for the application of abstract rules on the calculation of damages based on the reasonable royalty or fee which could have been due had a licence for the use of the trade secret existed. Additionally, many national rules do not provide for appropriate protection of the confidentiality of a trade secret where the trade secret holder introduces a claim for alleged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the trade secret by a third party, thereby reducing the attractiveness of the existing measures and remedies and weakening the protection offered.	(7) 영업비밀의 합법적인 보유자가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제3자가 생산한 물품의 파기 혹은 불법적으로 취득되거나 사용된 영업비밀을 포함하거나 구현한 문서, 파일 혹은 기타 자료의 반환 혹은 파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서도 각국의 규칙이 다르다. 뿐만 아니라, 손해액 산정에 관한 적용 가능한 국내 규칙은 영업비밀의 무형적 성격을 항상 고려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정보에 대한 시장 가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수익의 상실 혹은 침해자의 부당 이득의 증명을 어렵게 한다. 소수의 회원국만이 영업비밀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가 존재했더라면 지불했어야 할 합리적인 로열티 혹은 수수료를 기반으로 손해의 산정에 대한 일률적인 규칙의 적용을 허용한다. 또한, 많은 국가의 규정들이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제3자에 의한 영업비밀의 불법 취득, 사용 혹은 공개에 대한 주장을 제기한 경우 해당 영업비밀의 기밀성을 위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현실이 기존의 조치들과 구제 수단의 매력을 감쇄하고 주어진 보호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8) The differences in the legal protection of trade secrets provided for by the Member States imply that trade secrets do not enjoy an equivalent level of protection throughout the Union, thus leading to fragmentation of the internal market in this area and a weakening of the overall deterrent effect of the relevant rules. The internal market is affected in so far as such differences lower the incentives for businesses to	(8) 회원국들이 영업비밀에 대해 제공하는 법적 보호의 차이는 영업비밀이 유럽 연합 전체에서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내부 시장의 파편화 및 관련 규칙이 갖는 전반적인 억제 효과의 약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차이가 제휴를 통한 연구 협력이나 생산 협력, 아웃소싱 혹은 다른 회원국 내 투자를 포함하여 영업 비밀로서 보호를 향유하는 정보의 사용에 의존하는 혁신 관련 국제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

undertake innovation-related cross-border economic activity, including research cooperation or production cooperation with partners, outsourcing or investment in other Member States, which depends on the use of information that enjoys protection as trade secrets. Cross-border network research and development, as well as innovation-related activities, including related production and subsequent cross-border trade, are rendered less attractive and more difficult within the Union, thus also resulting in Union-wide innovation-related inefficiencies.	의 동기 유인을 위축시키는 한, 내부 시장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관련 생산과 그에 이은 국가 간 거래를 포함하여 국제적 네트워크 연구 개발 및 혁신 관련 활동이 유럽 연합 내에서 덜 매력적이고 더 어려워지며, 따라서 유럽 연합 전체에 걸쳐 혁신 관련 비효율성이 초래된다.
(9) In addition, there is a higher risk for businesses in Member States with comparatively lower levels of protection, due to the fact that trade secrets may be stolen or otherwise unlawfully acquired more easily. This leads to inefficient allocation of capital to growth-enhancing innovation within the internal market because of the higher expenditure on protective measures to compensate for the insufficient legal protection in some Member States. It also favours the activity of unfair competitors who, subsequent to the unlawful acquisition of trade secrets, could spread goods resulting from such acquisition across the internal market. Differences in legislative regimes also facilitate the importation of goods from third countries into the Union through entry points with weaker protection, when the design, production or marketing of those goods rely on stolen or otherwise unlawfully acquired trade secrets. On the whole, such differences hinder the proper functioning of the internal market.	(9)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보호 수준을 제공하는 회원국의 기업에 대한 위험이 더 높으며, 이는 영업 비밀의 도난이나 불법적 취득이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일부 회원국에서는 불충분한 법적 보호를 보상하기 위한 보호 조치에 더 많은 지출을 하기 때문에 내부 시장 내에서 성장을 촉진하는 혁신에 대한 자본 할당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불공정한 경쟁자의 활동이 이득을 얻기 때문에 이들은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후 이러한 취득의 결과물을 내부 시장에 퍼뜨린다. 입법 체제의 차이는 또한 보호가 약한 진입점을 통해 그 설계, 생산 혹은 마케팅이 도난 혹은 불법 취득된 영업 비밀에 의존하는 물품들이 EU내로 쉽게 수입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차이는 내부 시장의 적절한 기능을 방해한다.
(10) It is appropriate to provide for rules at Union level to approximate the laws	(10) 영업 비밀의 불법적인 취득, 사용 혹은 공개가 발생한 경우 내부 시장에서 충분하고 일

of the Member States so as to ensure that there is a sufficient and consistent level of civil redress in the internal market in the event of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Those rules should be without prejudice to the possibility for Member States of providing for more far-reaching protection against the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trade secrets, as long as the safeguards explicitly provided for in this Directive for protecting the interests of other parties are respected.	관성 있는 수준의 민사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법률이 근접하도록 유럽 연합 차원에서 규칙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규칙은 다른 당사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 지침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보호 장치들이 존중되는 한, 각 회원국이 영업 비밀의 불법적인 취득, 사용 혹은 공개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보호를 제공할 가능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11) This Directive should not affect the application of Union or national rules that require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including trade secrets, to the public or to public authorities. Nor should it affect the application of rules that allow public authorities to collect information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or rules that allow or require any subsequent disclosure by those public authorities of relevant information to the public. Such rules include, in particular, rules on the disclosure by the Union's institutions and bodies or national public authorities of business-related information they hold pursuant to Regulation (EC) No 1049/200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Regulation (EC) No 136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Directive 2003/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r pursuant to other rules on public access to documents or on the transparency obligations of national public authorities.	(11) 본 지침은 일반 대중이나 공공 기관에 대하여 영업 비밀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유럽 연합 혹은 각 국가의 규칙의 적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공공 기관이 직무 수행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는 규칙 혹은 관련 정보를 추후에 대중에게 공개할 것을 공공 기관에게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규칙의 적용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 이러한 규칙에는 특히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 1049/2001,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 1367/2006 및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3/4/EC에 따라, 혹은 문서에 대한 공개 접근 또는 국가 공공 기관의 투명성 의무에 관한 기타 규칙에 따라 유럽 연합의 기관이나 국가 공공 기관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칙들이 포함된다.
(12) This Directive should not affect the right of social partners to enter into collective agreements, where provided for under labour law, as regards any obligation	(12) 본 지침은 영업 비밀을 공개하지 않거나 사용을 제한할 의무, 그리고 당사자가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결과와 관련하여 사회적 파트너가 노동법에 규정된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리

not to disclose a trade secret or to limit its use, and the consequences of a breach of such an obligation by the party subject to it. This should be on the condition that any such collective agreement does not restrict the exceptions laid down in this Directive when an application for measures, procedures or remedies provided for in this Directive for alleged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is to be dismissed.	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이는 그러한 단체 협약이 영업 비밀의 취득, 사용 혹은 공개가 의심되는 경우에 제기한 본 지침에서 정한 조치, 절차 혹은 구제 수단의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본 지침에 명시된 예외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3) This Directive should not be understood as restricting the freedom of establishment, the free movement of workers or the mobility of workers as provided for in Union law. Nor is it intended to affect the possibility of concluding non-competition agreements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es,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13) 본 지침은 유럽 연합법에 규정된바 설립의 자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동 혹은 근로자의 이동성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고용주와 근로자 간 경쟁 금지 계약 체결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본 지침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다.
(14)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homogenous definition of a trade secret without restricting the subject matter to be protected against misappropriation. Such definition should therefore be constructed so as to cover know-how, business information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 where there is both a legitimate interest in keeping them confidential and a legitimate expectation that such confidentiality will be preserved. Furthermore, such know-how or information should have a commercial value, whether actual or potential. Such know-how or information should be considered to have a commercial value, for example, where its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is likely to harm the interests of the person lawfully controlling it, in that it undermines that person's scientific and technical potential, business or financial interests, strategic positions or ability to compete. The	(14) 영업비밀의 정의를 도용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물을 제한함 없이 동일하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그러한 정의는 기밀로 유지하는 데 정당한 이익이 있고 그러한 기밀이 유지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있는 경우, 노하우, 비즈니스 정보 및 기술 정보들을 포함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그러한 노하우나 정보는 실제적 혹은 잠재적인 상업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노하우 혹은 정보는 예를 들어 그에 대한 불법적인 취득, 사용 혹은 공개의 결과 그에 대한 적법한 지배를 가진 자의 과학적 및 기술적 잠재성, 사업 혹은 금전적 이익, 전략적 위치 혹은 경쟁 능력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업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영업비밀의 정의에서 일반적인 고용 관계에서 근로자가 얻은 사소한 정보와 경험 및 기술은 제외되며, 또한 일반적으로 해당 유형의 정보를 다루는 업계에 속한 인사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도 제외된다.

definition of trade secret excludes trivial information and the experience and skills gained by employees in the normal course of their employment, and also excludes information which is generally known among, or is readily accessible to, persons within the circles that normally deal with the kind of information in question.	
(15) It is also important to identify the circumstances in which legal protection of trade secrets is justified.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conduct and practices which are to be regarded as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15) 영업비밀의 법적 보호가 정당화되는 상황을 판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취득, 사용 혹은 공개로 간주되는 행위 및 관행 등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16) In the interest of innovation and to foster competition, the provisions of this Directive should not create any exclusive right to know-how or information protected as trade secrets. Thus, the independent discovery of the same know-how or information should remain possible. Reverse engineering of a lawfully acquired product should be considered as a lawful means of acquiring information, except when otherwise contractually agreed. The freedom to enter into such contractual arrangements can, however, be limited by law.	(16) 혁신과 경쟁 촉진의 이익을 위하여, 본 지침의 조항들은 노하우나 영업 비밀로 보호되는 정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창설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동일한 노하우나 정보의 독자적 발견은 계속 인정되어야 한다. 합법적으로 획득한 제품의 역 엔지니어링은 계약상 달리 합의된 경우가 아니라면 정보 획득의 합법적 수단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이 달리 합의하는 계약을 체결할 자유는 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17) In some industry sectors, where creators and innovators cannot benefit from exclusive rights and where innovation has traditionally relied upon trade secrets, products can nowadays be easily reverse-engineered once in the market. In such cases, those creators and innovators can be victims of practices such as parasitic copying or slavish imitations that free-ride on their reputation and innovation	(17) 창조자와 혁신가가 독점적 권리의 이익을 누릴 수 없고 혁신이 전통적으로 영업 비밀에 의존하는 오늘날 일부 산업 부문에서는 제품이 시장에 일단 출시되고 나면 쉽게 역 엔지니어링이 가능하다. 그러한 경우, 그러한 창조자와 혁신가는 그들의 명성과 혁신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기생적 복제 혹은 비열한 모방과 같은 행태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 불공정 경쟁 관련 법은 이러한 행태를 규제하고 있다. 본 지침은 불공정 경쟁에 관한 법률을 전

efforts. Some national laws dealing with unfair competition address those practices. While this Directive does not aim to reform or harmonise the law on unfair competition in general, it would be appropriate that the Commission carefully examine the need for Union action in that area.	반적으로 개혁하거나 조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 반면, 위원회는 이 부분에서 유럽연합의 조치가 필요한지 주의 깊게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18) Furthermore, the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trade secrets, whenever imposed or permitted by law, should be treated as lawful for the purposes of this Directive. This concerns, in particular, the acquisition and disclosure of trade secrets in the context of the exercise of the rights of workers' representatives to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participation in accordance with Union law and national laws and practices, and the collective defence of the interests of workers and employers, including co-determination, as well as the acquisition or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in the context of statutory audits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Union or national law. However, such treatment of the acquisition of a trade secret as lawful should be without prejudice to any obligation of confiden - tiality as regards the trade secret or any limitation as to its use that Union or national law imposes on the recipient or acquirer of the information. In particular, this Directive should not release public authorities from the confidentiality obligations to which they are subject in respect of information passed on by trade secret holders, irrespective of whether those obligations are laid down in Union or national law. Such confidentiality obligations include, inter alia, the obligations in respect of information forwarded to contracting authorities in the context of procurement procedures, as laid down, for example, in	(18) 또한 영업 비밀의 취득, 사용 혹은 공개는 법에 의해 부과되거나 허용되는 경우 언제나 본 지침의 목적상 합법적인 행위로 취급되어야 한다. 이는 특히 유럽 연합법, 각 국내법 및 관행에 따른 근로자 대표의 정보, 협의 및 참여에 대한 권리 행사와 공동 결정을 포함하여 근로자와 고용주의 이익의 집단적 방어의 맥락에서, 또한 유럽 연합법, 혹은 각 국내법에서 허용되는 법정 감사의 맥락에서 영업비밀의 취득 및 공개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영업비밀의 취득을 적법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유럽연합 혹은 각국의 법이 정보의 수취인이나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나 사용상의 제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본 지침은 그러한 의무가 유럽 연합 혹은 국내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비밀 보유자에 의해 이전된 정보와 관련하여 공공 기관에게 적용되는 기밀 유지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기밀 유지 의무에는 예를 들면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4/23/EU,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4/24/EU 및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4/25/EU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히 조달 절차와 관련하여 계약 당국에 전달되는 정보에 관한 의무들이 포함된다.

Directive 2014/23/EU of the European	
(19) While this Directive provides for measures and remedies which can consist of preventing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in order to protect the confidentiality of trade secrets, it is essential that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information which encompasses media freedom and pluralism, as reflected in Article 11 of 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the Charter'), not be restricted,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investigative journalism and the protection of journalistic sources.	(19) 본 지침은 영업비밀의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공개 방지 조치 및 구제 수단들을 마련하고 있으나, 특히 조사 저널리즘 및 기사 출처 보호와 관련하여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헌장') 제11조에 반영된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포괄하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에 대한 권리 행사가 제한되지 않아야 함은 필수적이다.
(20) The measures, procedures and remedies provided for in this Directive should not restrict whistleblowing activity. Therefore,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should not extend to cases in which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serves the public interest, insofar as directly relevant misconduct, wrongdoing or illegal activity is revealed. This should not be seen as preventing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from allowing an exception to the application of measures, procedures and remedies in a case where the respondent had every reason to believe in good faith that his or her conduct satisfied the appropriate criteria set out in this Directive.	(20) 본 지침에서 정한 조치, 절차 및 구제수단들은 내부 고발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위법 행위, 불법 행위 혹은 불법적 활동이 드러나는 한, 영업비밀의 보호는 그 영업비밀의 공개가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까지 확대될 수 없다. 이것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행위가 본 지침에 명시된 해당 기준을 충족한다고 선의로 믿을 모든 이유가 있는 경우에 권한 있는 사법 당국이 조치, 절차 및 구제 수단의 적용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21) In line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measures, procedures and remedies intended to protect trade secrets should be tailored to meet the objective of a smooth-functioning internal market for research and innovation, in particular by deterring the unlawful acquisition, use and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Such tailoring	(21)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절차 및 구제 수단들은 무엇보다도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취득, 사용 및 공개를 억지함으로써 연구 및 혁신을 위하여 원활히 작동하는 내부 시장의 확보라는 목표를 충족할 수 있도록 비례성의 원칙 하에 맞춤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 절차 및 구제 수단의 맞춤화는 공공 안전, 소비자 보호, 공중 보건 및 환경 보호와 같은 기본 권

of measures, procedures and remedies should not jeopardise or undermine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or the public interest, such as public safety, consumer protection,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hould be without prejudice to the mobility of workers. In this respect, the measures, procedures and remedies provided for in this Directive are aimed at ensuring that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take into account factors such as the value of a trade secret, the seriousness of the conduct resulting in the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the trade secret and the impact of such conduct. It should also be ensured that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have the discretion to weigh up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to the legal proceedings, as well as the interests of third parties including, where appropriate, consumers.	리와 자유 혹은 공익을 위태롭게 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의 이동성에 대한 침해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본 지침에 제공된 조치, 절차 및 구제 수단은 관할 사법 당국으로 하여금 영업 비밀의 가치, 불법적인 취득, 사용 혹은 공개에 해당되는 행위의 심각성과 그러한 행위의 영향 등과 같은 제반 요소를 확실하게 고려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확보되어야 할 것은 관할 사법 당국이 소송 당사자의 이익 및 경우에 따라 소비자를 포함하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22) The smooth-functioning of the internal market would be undermined if the measures, procedures and remedies provided for were used to pursue illegitimate intents incompatible with the objectives of this Directiv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mpower judicial authorities to adopt appropriate measures with regard to applicants who act abusively or in bad faith and submit manifestly unfounded applications with, for example, the aim of unfairly delaying or restricting the respondent's access to the market or otherwise intimidating or harassing the respondent.	(22) 만약 정해진 조치, 절차 및 구제 수단이 본 지침의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불법적인 의도를 추구하는 데 사용된다면, 내부 시장의 원활한 기능은 훼손될 것이다. 따라서 남용의 목적이나 악의를 가지거나, 예를 들어 피신청인의 시장 접근을 부당하게 지연 혹은 제한하거나 피신청인을 위협 혹은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명백히 근거 없는 신청을 제출한 신청인에 관하여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사법 당국에게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23) In the interest of legal certainty, and considering that legitimate trade secret holders are expected to exercise a duty of care as regards the preservation of the	(23) 법적 확실성을 위하여, 나아가 합법적인 영업비밀 보유자는 자신의 중요한 영업비밀의 기밀 유지 및 그 사용에 대한 주시 관찰을 위해 일정한 주의 의무를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confidentiality of their valuable trade secrets and the monitoring of their use, it is appropriate to restrict substantive claims or the possibility of initiating actions for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to a limited period. National law should also specify, in a clear and unambiguous manner, from when that period is to begin to run and under what circumstances that period is to be interrupted or suspended.	사실을 고려하여,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실질적 청구 혹은 소송 개시의 가능성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 각 국내법은 또한 그 기간이 언제부터 개시되고 어떤 상황에서 그 기간이 중단되거나 정지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고 모호함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지정해야 한다.
(24) The prospect of losing the confidentiality of a trade secret in the course of legal proceedings often deters legitimate trade secret holders from instituting legal proceedings to defend their trade secrets, thus jeopardising the effectiveness of the measures, procedures and remedies provided for.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ubject to appropriate safeguards ensuring the right to an effective remedy and to a fair trial, specific requirements aimed at protecting the confidentiality of the litigated trade secret in the course of legal proceedings instituted for its defence. Such protection should remain in force after the legal proceedings have ended and for as long as the information constituting the trade secret is not in the public domain.	(24) 소송 등 법적 절차 과정에서 영업 비밀의 기밀성이 상실될 것이라는 전망은 많은 경우 영업 비밀의 적법한 보유자가 영업 비밀을 방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망설이게 함으로써 법에 의해 제공된 조치, 절차 및 구제 수단의 효과를 위태롭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효과적인 구제 수단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적절한 보호 장치 하에, 영업비밀을 방어하기 위해 제기된 법적 절차 과정에서 소송 목적물인 영업비밀의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특정 의무 사항들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호는 법적 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영업 비밀을 구성하는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은 한 유효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25) Such requirements should include, as a minimum, the possibility of restricting the circle of persons entitled to have access to evidence or hearings, bearing in mind that all such persons should be subject to the confidentiality requirements set out in this Directive, and of publishing only the non-confidential elements of judicial decisions. In this context, considering that assessing the nature of the information which is the subject of a dispute is one of the main	(25) 그러한 의무 사항은 최소한의 요건으로 증거나 심리 절차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그러한 범위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은 본 지침에 명시된 기밀 의무 사항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사법적 결정 중에서 기밀이 아닌 요소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분쟁의 목적물인 정보의 성격을 평가하는 것이 법적 절차의 주요 목적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영업비밀의 기밀성이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그 법적 절차의 당사자들

purposes of legal proceedings,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o ensure both the effective protection of the confidentiality of trade secrets and respect for the right of the parties to those proceedings to an effective remedy and to a fair trial. The restricted circle of persons should therefore consist of at least one natural person from each of the parties as well as the respective lawyers of the parties and, where applicable, other represen - tatives appropriately qualifie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in order to defend, represent or serve the interests of a party in legal proceedings covered by this Directive, who should all have full access to such evidence or hearings. In the event that one of the parties is a legal person, that party should be able to propose a natural person or natural persons who ought to form part of that circle of persons so as to ensure proper representation of that legal person, subject to appropriate judicial control to prevent the objective of the restriction of access to evidence and hearings from being undermined. Such safeguards should not be understood as requiring the parties to be represented by a lawyer or another representative in the course of legal proceedings where such represen - tation is not required by national law. Nor should they be understood as restricting the competence of the courts to decide, in conformity with the applicable rules and practices of the Member State concerned, whether and to what extent relevant court officials should also have full access to evidence and hearings for the exercise of their duties.	이 효과적인 구제 수단과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제한된 범위의 사람들은 각 당사자 측으로부터 적어도 1인의 자연인과 각 당사자의 변호사들 및 해당되는 경우 법적 절차에서 당사자의 이익을 방어 혹은 대변하기 위해 국내법에 따라 적절한 자격을 갖춘 그 외의 대리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들에게는 해당 증거나 심리 절차에 대한 완전한 접근이 주어져야 한다. 당사자 중 하나가 법인인 경우 그러한 당사자는 증거 및 심리 절차에 대한 접근 제한의 목적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사법적 통제 하에 해당 법인의 적절한 대표성을 보장하면서 당사자 측 대표의 범위에 속할 자연인 1인 혹은 다수를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보호 장치는 해당 국내법에 따라 법적 절차 과정에서 그러한 대표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변호사 혹은 다른 대리인에 의해 대리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해당 회원국의 적용 가능한 규칙 및 관행에 따라 관련 법원 관계자들 역시 자신들의 직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증거 및 심리에 완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도 안 된다.
(26) The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by a third party could have devastating effects on the	(26) 제3자에 의한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취득, 사용 혹은 공개가 적법한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유는 일단 공

legitimate trade secret holder, as once publicly disclosed, it would be impossible for that holder to revert to the situation prior to the loss of the trade secret. As a result, it is essential to provide for fast, effective and accessible provisional measures for the immediate termination of the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including where it is used for the provision of services. It is essential that such relief be available without having to await a decision on the merits of the case, while having due respect for the right of defence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having regar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se. In certain instances, it should be possible to permit the alleged infringer, subject to the lodging of one or more guarantees, to continue to use the trade secret, in particular where there is little risk that it will enter the public domain. It should also be possible to require guarantees of a level sufficient to cover the costs and the injury caused to the respondent by an unjustified application, particularly where any delay would cause irreparable harm to the legitimate trade secret holder.	개되고 나면 해당 보유자가 영업 비밀의 상실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취득, 사용 혹은 공개를 즉시 종료하기 위해 빠르고 효과적이며 접근 가능한 잠정적 조치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 경우 영업비밀이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경우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제는 방어권 및 비례의 원칙을 충분히 존중하고 사건의 특성의 고려 하에 사건의 본안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기 이전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어떤 경우에는, 특히 영업비밀이 공공의 영역에 속하게 될 위험이 거의 없을 때, 침해 혐의자가 하나 혹은 다수의 보증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영업비밀을 계속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부당한 신청으로 인해 피신청인이 입은 비용과 피해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보증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특히 지연으로 인해 영업비밀의 적법한 보유자에게 회복 불능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27) For the same reasons, it is also important to provide for definitive measures to prevent unlawful use or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including where it is used for the provision of services. For such measures to be effective and proportionate, their duration, when circumstances require a limitation in time, should be sufficient to eliminate any commercial advantage which the third party could have derived from the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the trade secret. In any event, no measure of this type should be enforceable if the	(27) 같은 이유로 영업비밀이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불법적인 영업비밀의 사용 혹은 공개를 방지하기 위한 확실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조치가 효과적이고 비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시간적 제한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취득, 사용 혹은 공개로 인해 제3자가 얻을 수 있는 상업적 이익을 허용하지 않을 만큼 충분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영업 비밀에 본래 속하던 정보가 피신청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공의 영역에 속하게 된 경우 이러한 유형의 조치는 집행할 수 없다.

information originally covered by the trade secret is in the public domain for reasons that cannot be attributed to the respondent.	
(28) It is possible that a trade secret could be used unlawfully to design, produce or market goods, or components thereof, which could be spread across the internal market, thus affecting the commercial interests of the trade secret holder and the functioning of the internal market. In such cases, and when the trade secret in question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quality, value or price of the goods resulting from that unlawful use or on reducing the cost of, facilitating or speeding up their production or marketing processes, it is important to empower judicial authorities to order effective and appropriate measures with a view to ensuring that those goods are not put on the market or are withdrawn from it. Considering the global nature of trade, it is also necessary that such measures include the prohibition of the importation of those goods into the Union or their storage for the purposes of offering or placing them on the market. Having regard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corrective measures should not necessarily entail the destruction of the goods if other viable options are present, such as depriving the good of its infringing quality or the disposal of the goods outside the market, for example, by means of donations to charitable organisations.	(28) 영업 비밀이 상품 혹은 그 구성 요소를 설계, 생산 혹은 판매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되면 이들은 내부 시장 전체에 퍼짐으로써 영업 비밀 보유자의 상업적 이익과 기업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및 문제의 영업 비밀이 그러한 불법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상품의 품질, 가치 혹은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생산 혹은 마케팅 프로세스의 촉진, 가속화 혹은 비용 절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문제의 상품의 시장 출시 금지나 시장에서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사법 당국에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역의 범 세계적 성격을 고려할 때, 그러한 조치에는 문제의 상품을 유럽연합 내로 수입하거나 이를 시장에 내놓거나 출시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여, 시정 조치는 예를 들면 해당 상품에서 침해적 특질을 제거하거나 자선 단체에 대한 기부를 통해 시장 외부로 제품을 처분하는 것과 같이 실행 가능한 다른 옵션이 있는 경우, 상품의 파기를 반드시 수반할 것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29) A person could have originally acquired a trade secret in good faith, but only become aware at a later stage, including upon notice served by the original trade secret holder, that that person's knowledge of the trade secret in question derived from	(29) 어떤 사람의 경우 본래 선의로 영업비밀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영업비밀의 본래의 보유자로부터의 통지를 받은 경우 등을 포함하여 이후 단계에서 문제의 영업비밀에 대한 자신의 지식이 해당 영업비밀의 불법적 사용 혹은 공개로부터 도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수 있다.

sources using or disclosing the relevant trade secret in an unlawful manner. In order to avoid, under those circumstances, the corrective measures or injunctions provided for causing disproportionate harm to that person, Member States should provide for the possibility, in appropriate cases, of pecuniary compensation being awarded to the injured party as an alternative measure. Such compensation should not, however, exceed the amount of royalties or fees which would have been due had that person obtained authoris - ation to use the trade secret in question, for the period of time for which use of the trade secret could have been prevented by the original trade secret holder. Nevertheless, where the unlawful use of the trade secret would constitute an infringement of law other than that provided for in this Directive or would be likely to harm consumers, such unlawful use should not be allowed.	그러한 상황에서 해당 개인에게 비례 초과적인 피해를 입히는 시정 조치 혹은 금지 명령의 허용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은 적절한 경우 대안 조치로서 피해 당사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수여하는 가능성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보상은 본래 영업비밀 보유자가 문제의 영업비밀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해당 기인이 문제의 영업비밀의 사용 허가를 받았다면 지불했어야 하는 로열티 혹은 수수료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의 불법적 사용이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법의 위반에 해당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 그러한 위법한 사용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30) In order to avoid a person who knowingly, or with reasonable grounds for knowing, unlawfully acquires, uses or discloses a trade secret being able to benefit from such conduct, and to ensure that the injured trade secret holder, to the extent possible, is placed in the position in which he, she or it would have been had that conduct not taken place, it is necessary to provide for adequate compensation for the prejudice suffered as a result of that unlawful conduct. The amount of damages awarded to the injured trade secret holder should take account of all appropriate factors, such as loss of earnings incurred by the trade secret holder or unfair profits made by the infringer and, where appropriate, any moral prejudice caused to the trade secret holder. As an alternative,	(30) 알고 있었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던 자가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혹은 공개하여 그러한 행위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피해를 입은 영업비밀 보유자를 만약 그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있었을 상황에 가능한 한 최대한 가까이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불법 행위의 결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피해를 입은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수익의 상실 혹은 침해자가 얻은 부당 이익과 같은 모든 관련 요소와 해당되는 경우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어야 하는 모든 명성의 훼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대안으로서, 예를 들어 영업비밀의 무형적 성격을 고려할 때 실제로 입은 피해의 양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손해액은 침해자가 문제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기 위한 허가를 요청했더라면 지불했어야 할 로열티 혹은

for example where, considering the intangible nature of trade secrets, it would be difficult to determine the amount of the actual prejudice suffered, the amount of the damages might be derived from elements such as the royalties or fees which would have been due had the infringer requested authorisation to use the trade secret in question. The aim of that alternative method is not to introduce an obligation to provide for punitive damages, but to ensure compensation based on an objective criterion while taking account of the expenses incurred by the trade secret holder, such as the costs of identification and research. This Directive should not prevent Member States from providing in their national law that the liability for damages of employees is restricted in cases where they have acted without intent.	수수료와 같은 요소들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그러한 대안적 방식의 목적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의무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신원 확인 및 조사비용 등과 같이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른 보상을 보장하는 것이다. 본 지침은 직원의 고의 없는 행동에 관해서는 손해 배상 책임이 제한된다는 원칙을 각 회원국이 자국 법에 규정하는 것을 금지하지 못한다.
(31) As a supplementary deterrent to future infringers and to contribute to the awareness of the public at large, it is useful to publicise decisions, including, where appropriate, through prominent advertising, in cases concerning the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trade secrets, on the condition that such publication does not result in the disclosure of the trade secret or disproportionally affect the privacy and reputation of a natural person.	(31) 장래의 침해자에 대한 보충적 억제책으로서, 또한 일반 대중의 인식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영업 비밀의 불법적인 취득, 사용 혹은 공개와 관련된 사건에서 내려진 결정을 적절한 경우 눈에 띄는 광고나 기타 수단을 통해 공표하는 것이 유용하다. 단, 그러한 공표가 영업비밀의 공개를 초래하지 않거나 특정 자연인의 사생활 및 평판에 비례 초과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32) The effectiveness of the measures, procedures and remedies available to trade secret holders could be undermined in the event of non-compliance with the relevant decisions adopted by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ose authorities enjoy the appropriate powers of sanction.	(32) 영업 비밀의 보유자에게 제공되는 조치, 절차 및 구제 수단의 효과는 권한 있는 사법 당국이 채택한 관련 결정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에 저해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당국이 적절한 제재 권한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33) In order to facilitate the uniform application of the measures, procedures and remedies provided for in this Directive, it is appropriate to provide for systems of cooperation and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s between Member States on the one hand, and between the Member States and the Commission on the other, in particular by creating a network of correspondents designated by Member States. In addition, in order to review whether those measures fulfil their intended objective, the Commission, assisted, as appropriate, by the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ould examine the application of this Directive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measures taken.	(33) 본 지침에 규정된 조치, 절차 및 구제 수단의 균일한 적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특히 회원국이 지정하는 소통의 네트워크를 설립함으로써 한편으로는 회원국 간 다른 한 편으로는 회원국과 유럽위원회 사이에 협력 및 정보 교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유럽위원회는 유럽 연합 지재청의 적절한 지원을 받아 본 지침의 적용 및 취해진 국가별 조치의 실제 효과를 조사해야 한다.
(34) This Directive respects the fundamental rights and observes the principles recognised in particular by the Charter, notably the right to respect for private and family life, the right to protection of personal data,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information, the freedom to choose an occupation and right to engage in work, the freedom to conduct a business, the right to property, the right to good administration, and in particular the access to files, while respecting business secrecy, the right to an effective remedy and to a fair trial and the right of defence.	(34) 본 지침은 기본권 및 '헌장'에서 인정하는 원칙, 그 중에서도 특히 사생활과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개인 데이터를 보호할 권리, 표현과 정보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근로의 자유, 사업 활동의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 양호한 행정에 대한 권리, 특히 사업 비밀을 존중하면서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효과적인 구제 수단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방어권 등을 존중 및 준수한다.
(35) It is important that the rights to respect for private and family life and to protection of personal data of any person whose personal data may be processed by the trade secret holder when taking steps to protect a trade secret, or of any person involved in legal proceedings concerning the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35)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 개인 데이터를 영업비밀 보유자에 의해 처리당하는 자, 혹은 본 지침에 따라 영업 비밀의 불법 취득, 사용 혹은 공개에 관한 법적 절차에 연루된 자의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및 개인 데이터를 보호할 권리가 존중받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5/46/EC는 본 지침의 맥락에서, 또한 회원국

trade secrets under this Directive, and whose personal data are processed, be respected.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1]) governs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carried out in the Member States in the context of this Directive an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ember States' competent authorities, in particular the public independent authorities designated by the Member States. Thus, this Directive should not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laid down in Directive 95/46/EC, in particular the rights of the data subject to access his or her personal data being processed and to obtain the rectification, erasure or blocking of the data where it is incomplete or inaccurate and, where appropriate, the obligation to process sensitive data in accordance with Article 8(5) of Directive 95/46/EC.	의 권한 있는 당국, 특히 회원국이 지정한 공공 독립 기관의 감독 하에 회원국 내에서 수행되는 개인 데이터의 처리를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지침은 지침 95/46/EC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 특히 처리 중인 자신의 개인 데이터에 접근하고 데이터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이를 수정,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는 데이터 주체의 권리 및 지침 95/46/EC의 제8(5)조에 따라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할 의무 (해당 있는 경우)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36) Since the objective of this Directive, namely to achieve a smooth-functioning internal market by means of the establishment of a sufficient and comparable level of redress across the internal market in the event of the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cannot be sufficiently achieved by Member States but can rather, by reason of its scale and effects, be better achieved at Union level, the Union may adopt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as set out in Article 5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s set out in that Article, this Directive does not go beyond what is necessary in order to achieve that objective.	(36)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취득, 사용 혹은 공개가 발생한 경우 내부 시장 전반에 걸쳐 충분하고 동등한 수준의 구제 수단을 확립함으로써 원활히 기능하는 내부 시장을 달성하기 위한 본 지침의 목적은 회원국이 충분히 성취할 수는 없지만 그 규모와 효과로 인해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더 잘 달성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조약 제5조에 명시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일정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동 조에 명시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본 지침은 해당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7) This Directive does not aim to	(37) 본 지침은 사법적 협력, 관할권, 민사 및

establish harmonised rules for judicial cooperation, jurisdicti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or deal with applicable law. Other Union instruments which govern such matters in general terms should, in principle, remain equally applicable to the field covered by this Directive.	상사 문제에 관한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조화된 원칙을 설정하거나 관련 법률에 대해 판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보편적으로 규율하는 다른 유럽연합 문서들도 원칙적으로 본 지침이 적용되는 분야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38) This Directive should not affect the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rules, in particular Articles 101 and 102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The measures, procedures and remedies provided for in this Directive should not be used to restrict unduly competition in a manner contrary to the TFEU.	(38) 본 지침은 경쟁법 규칙, 특히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FEU') 제101조 및 제102조의 적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본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조치, 절차 및 구제 수단은 TFEU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39) This Directive should not affect the application of any other relevant law in other areas, 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law of contract. However, where the scope of application of Directive 2004/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1]) and the scope of this Directive overlap, this Directive takes precedence as *lex specialis*.	(39) 본 지침은 지적 재산권 및 계약법을 포함하여 다른 분야에서 다른 관련 법률의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4/48/EC의 적용범위와 본 지침의 범위가 중복되는 경우 본 지침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된다.
(40) The 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was consul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8(2) of Regulation (EC) No 45/200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2]) and delivered an opinion on 12 March 2014,	(40) 유럽 데이터 보호 감독관이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 45/2001의 제28(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받아 2014년 3월 12일에 의견을 전달하였다.

HAVE ADOPTED THIS DIRECTIVE:	본 지침을 채택하였다.
CHAPTER I *Subject matter and scope*	제1장 대상 및 범위
Article 1 Subject matter and scope	제1조 대상 및 범위
1. This Directive lays down rules on the protection against the unlawful acquisition, use and disclosure of trade secrets.	1. 본 지침은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취득, 사용 및 공개에 대한 보호에 관한 규칙을 명시한다.
Member States may, in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TFEU, provide for more far-reaching protection against the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trade secrets than that required by this Directive, provided that compliance with Articles 3, 5, 6, Article 7(1), Article 8, the second subparagraph of Article 9(1), Article 9(3) and (4), Article 10(2), Articles 11, 13 and Article 15(3) is ensured.	회원국은 TFEU의 규정에 따라 불법적인 영업비밀의 획득, 사용 혹은 공개에 대해 본 지침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제3조, 제5조, 제6조, 제7(1)조, 제8조, 제9(1)조 제2문, 제9(3) 및 (4)조, 제10(2)조, 제11조, 제13조 및 제15(3)조는 준수된다.
2. This Directive shall not affect:	2. 본 지침은 다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information as set out in the Charter, including respect for the freedom and pluralism of the media;	(a)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에 대한 존중을 포함하여 '헌장'에 명시된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행사.
(b) the application of Union or national rules requiring trade secret holders to disclose, for reasons of public interest, information, including trade secrets, to the public or to administrative or judicial authorities for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of those authorities;	(b)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공익을 위해 영업비밀을 포함한 정보를 대중에게 혹은 행정이나 사법 기관에게 그들의 직무 수행을 위해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유럽연합 혹은 각 국의 국내 규칙의 적용.
(c) the application of Union or national rules	(c) 유럽연합의 기관 혹은 각 국가의 공공 기관

requiring or allowing Union institutions and bodies or national public authorities to disclose information submitted by businesses which those institutions, bodies or authorities hold pursuant to, and in compliance with, the obligations and prerogatives set out in Union or national law;	이 유럽연합 혹은 각 국의 법에 명시된 의무 및 특권에 따라 보유 중인 기업이 제출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유럽 연합 혹은 각 국가의 규칙.
(d) the autonomy of social partners and their right to enter into collective agreements, in accordance with Union law and national laws and practices.	(d) 사회 파트너들의 자치 및 그들이 유럽연합 법과 국내법 및 관행에 따라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
3. Nothing in this Directive shall be understood to offer any ground for restricting the mobility of employees.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the exercise of such mobility, this Directive shall not offer any ground for:	3. 본 지침의 어떤 내용도 근로자의 이동을 제한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그러한 이동성의 행사와 관련하여 본 지침은 다음 중 어떤 근거도 제공하지 아니한다.
(a) limiting employees' use of information that does not constitute a trade secret as defined in point (1) of Article 2;	(a) 제2조 제(1)포인트에 정의된 영업비밀을 구성하지 않는 정보의 근로자에 의한 사용 제한.
(b) limiting employees' use of experience and skills honestly acquired in the normal course of their employment;	(b) 근로자의 정상적인 고용 과정에서 선의로 취득한 경험과 기술의 사용을 제한.
(c) imposing any additional restrictions on employees in their employment contracts other than restrictions imposed in accordance with Union or national law.	(c) 고용 계약에서 유럽연합 혹은 각 국가의 법에 따라 부과된 제한 이외의 근로자에 대한 추가 제한 부과.
Article 2 Definitions	**제2조** **정의**
For the purposes of this Directive, the following definitions apply:	본 지침의 목적상 이하에 명시된 정의가 적용된다.
(1) 'trade secret' means information which meets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영업비밀'이란 이하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a) it is secret in the sense that it is not, as a body or in the precise configuration and assembly of its components, generally known among or readily accessible to persons within the circles that normally deal with the kind of information in question;	(a) 문제가 되는 정보의 종류를 통상적으로 다루는 범위 내 인사들 사이에 전체로서, 혹은 그 구성요소들의 정확한 구성 및 조합으로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아니하다는 의미에서 비밀일 것.
(b) it has commercial value because it is secret;	(b) 비밀이기 때문에 상업적 가치가 있을 것.
(c) it has been subject to reasonable steps under the circumstances, by the person lawfully in control of the information, to keep it secret;	(c) 해당 정보를 적법하게 관리하는 자가 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을 것.
(2) 'trade secret holder' means any natural or legal person lawfully controlling a trade secret;	(2)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을 적법하게 관리하는 자연인 혹은 법인을 의미한다.
(3) 'infringer' means any natural or legal person who has unlawfully acquired, used or disclosed a trade secret;	(3) '침해자'는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 사용 혹은 공개한 자연인 혹은 법인을 의미한다.
(4) 'infringing goods' means goods, the design, characteristics, functioning, production process or marketing of which significantly benefits from trade secrets unlawfully acquired, used or disclosed.	(4) '침해 물품'은 그 설계, 특성, 기능, 생산 공정 혹은 마케팅이 불법적으로 취득, 사용 혹은 공개된 영업 비밀로부터 상당한 이익을 얻는 물품을 의미한다.
CHAPTER II *Acquisition, use and disclosure of trade secrets*	제2장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및 공개
Article 3 Lawful acquisition, use and disclosure of trade secrets	제3조 영업비밀의 적법한 취득, 사용 및 공개
1. The acquisition of a trade secret	1. 영업비밀의 취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shall be considered lawful when the trade secret is obtained by any of the following means: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 적법한 것으로 본다.
(a) independent discovery or creation;	(a) 독자적인 발견 혹은 생성.
(b) observation, study, disassembly or testing of a product or object that has been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or that is lawfully in the possession of the acquirer of the information who is free from any legally valid duty to limit the acquisition of the trade secret;	(b) 대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거나 정보의 취득을 제한해야 할 유효한 법적 의무가 없는 정보 취득자가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제품 혹은 목적물의 관찰, 연구, 분해.
(c) exercise of the right of workers or workers' representatives to information and consultation in accordance with Union law and national laws and practices;	(c) 유럽연합법과 국내법 및 관행에 따른 노동자 혹은 노동자 대표의 정보 및 협의에 관한 권리 행사.
(d) any other practice which, under the circumstances, is in conformity with honest commercial practices.	(d) 상황에 따라 선의의 상업적 관행에 부합하는 기타 관행.
2. The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shall be considered lawful to the extent that such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is required or allowed by Union or national law.	2.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혹은 공개는 그러한 취득, 사용 혹은 공개가 유럽연합 혹은 국내법에 의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한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Article 4 **Unlawful acquisition, use and disclosure of trade secrets**	**제4조**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취득, 사용 및 공개**
1.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trade secret holders are entitled to apply for the measures, procedures and remedies provided for in this Directive in order to prevent, or obtain redress for, the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their trade secret.	1. 회원국은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취득, 사용 혹은 공개를 방지하거나 이에 대한 구제를 획득하기 위해 본 지침에 규정된 조치, 절차 및 구제 수단을 신청할 수 있는 영업비밀 보유자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 The acquisition of a trade secret without the consent of the trade secret holder shall be considered unlawful, whenever carried out by:	2.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동의 없이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a) unauthorised access to, appropriation of, or copying of any documents, objects, materials, substances or electronic files, lawfully under the control of the trade secret holder, containing the trade secret or from which the trade secret can be deduced;	(a) 합법적으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통제 하에 있으며, 영업비밀을 포함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모든 문서, 목적물, 자료, 물질 혹은 전자 파일에 대한 무단 접근, 전용 혹은 복사.
(b) any other conduct which, under the circumstances, is considered contrary to honest commercial practices.	(b) 주어진 상황에서 선의의 상업적 관행에 위배되는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타 모든 행위.
3. The use or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shall be considered unlawful whenever carried out, without the consent of the trade secret holder, by a person who is found to meet any of the following conditions: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영업비밀 보유자의 동의 없이 영업비밀을 사용 혹은 공개하는 행위는 항상 불법으로 간주된다.
(a) having acquired the trade secret unlawfully;	(a)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
(b) being in breach of a confidentiality agreement or any other duty not to disclose the trade secret;	(b) 기밀 유지 계약 혹은 그 외 영업 비밀을 공개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자.
(c) being in breach of a contractual or any other duty to limit the use of the trade secret.	(c) 영업비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계약상 혹은 그 외 의무를 위반한 자.
4. The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shall also be considered unlawful whenever a person, at the time of the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knew or ought, under the circumstances, to have known that the trade secret had been obtain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another person who was using or disclosing the trade secret unlawfully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3.	4. 또한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혹은 공개는 개인이 취득, 사용 혹은 공개 당시 영업비밀이 제3항의 의미 내에서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취득되었던 사실을 알았거나 상황에 따라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5. The production, offering or placing on the market of infringing goods, or the importation, export or storage of infringing goods for those purposes, shall also be considered an unlawful use of a trade secret where the person carrying out such activities knew, or ought, under the circumstances, to have known that the trade secret was used unlawfully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3.	5. 침해 물품의 생산, 제공 혹은 시판, 혹은 그러한 목적을 위한 침해 물품의 수입, 수출 혹은 보관은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자가 영업비밀이 3항의 의미 내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주어진 상황에서 알 수 있었던 경우 영업 비밀의 불법적인 사용으로 간주된다.
Article 5 Exceptions	제5조 예외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an application for the measures, procedures and remedies provided for in this Directive is dismissed where the alleged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the trade secret was carried ou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회원국은 주장된 영업비밀의 획득, 사용 혹은 공개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지침에서 제공된 조치, 절차 및 구제 수단에 대한 신청이 기각되도록 해야 한다.
(a) for exercising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information as set out in the Charter, including respect for the freedom and pluralism of the media;	(a)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에 대한 존중을 포함하여 '헌장'에 명시된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를 위한 경우.
(b) for revealing misconduct, wrongdoing or illegal activity, provided that the respondent acted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general public interest;	(b) 피신청인이 일반적인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행동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행위, 불법 행위 혹은 불법적 활동을 폭로하기 위한 경우.
(c) disclosure by workers to their representatives as part of the legitimate exercise by those representatives of their functions in accordance with Union or national law, provided that such disclosure was necessary for that exercise;	(c) 유럽연합 혹은 국내법에 따라 근로자 대표의 합법적인 직무 수행의 한 부분으로 근로자들이 근로자 대표에게 필요한 한도에서 공개하는 경우.
(d)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a legitimate interest recognised by Union or national law.	(d) 유럽연합 혹은 국내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CHAPTER III *Measures, procedures and remedies*	제3장 조치, 절차 및 구제 수단
Section 1 General provisions	제1절 일반 조항
Article 6 General obligation	제6조 일반 의무
1. Member States shall provide for the measures, procedures and remedies necessary to ensure the availability of civil redress against the unlawful acquisition, use and disclosure of trade secrets.	1. 각 회원국은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취득, 사용 및 공개에 대한 민사적 구제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절차 및 구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2. The measures, procedures and remedi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2. 제1항에 언급된 조치, 절차 및 구제 수단은 다음을 갖추어야 한다.
(a) be fair and equitable;	(a) 공정하고 공평할 것.
(b) not be unnecessarily complicated or costly, or entail unreasonable time-limits or unwarranted delays; and	(b) 불필요하게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거나 불합리한 시간제한 혹은 근거 없는 지연을 수반하지 아니할 것.
(c) be effective and dissuasive.	(c) 효과적이고 설득력이 있을 것.
Article 7 Proportionality and abuse of process	제7조 절차의 비례성 및 남용
1. The measures, procedures and remedies provided for in this Directive shall be applied in a manner that:	1. 본 지침에 규정된 조치, 절차 및 구제 수단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해야 한다.
(a) is proportionate;	(a) 비례적일 것.
(b) avoids the creation of barriers to legitimate trade in the internal market; and	(b) 내부 시장에서 적법한 거래에 대한 장벽의 생성을 방지할 것.
(c) provides for safeguards against their abuse.	(c) 남용에 대한 보호 장치를 제공할 것.

2.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may, upon the request of the respondent, apply appropriate measures as provided for in national law, where an application concerning the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is manifestly unfounded and the applicant is found to have initiated the legal proceedings abusively or in bad faith. Such measures may, as appropriate, include awarding damages to the respondent, imposing sanctions on the applicant or ordering th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concerning a decision as referred to in Article 15.	2. 회원국은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취득, 사용 혹은 공개에 관한 신청이 명백히 근거가 없고 신청인이 남용으로서 혹은 악의로써 법적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피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관할 사법당국이 국내법에 규정된 적절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조치에는 적절한 경우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 판결 부여, 신청인에 대한 제재 혹은 제15조에 언급된 바대로 결정에 관한 정보의 발표 명령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Member States may provide that measures as referred to in the first subparagraph are dealt with in separate legal proceedings.	회원국은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조치가 별도의 법적 절차에서 다루어지도록 규정할 수 있다.
Article 8 Limitation period	제8조 제척 기간
1. Member States shall,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lay down rules on the limitation periods applicable to substantive claims and ac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e measures, procedures and remedies provided for in this Directive. The rules referred to in the first subparagraph shall determine when the limitation period begins to run, the duration of the limitation period and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limitation period is interrupted or suspended.	1. 본 조에 따라 회원국은 본 지침에 제공된 조치, 절차 및 구제 수단의 적용을 위한 실체적 청구 및 조치에 적용되는 제척 기간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규칙은 제척 기간이 개시되는 시점, 적용되는 기간 및 제척 기간이 중단되거나 정지되는 상황을 정해야 한다.
2. The duration of the limitation period shall not exceed 6 years.	2. 제척 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Article 9 Preservation of confidentiality of trade secrets in the course of legal proceedings	제9조 소송 과정에서의 영업비밀의 기밀 유지
1.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the parties, their lawyers or other representatives, court officials, witnesses, experts and any other person participating in legal proceedings relating to the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or who has access to documents which form part of those legal proceedings, are not permitted to use or disclose any trade secret or alleged trade secret which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have, in response to a duly reasoned application by an interested party, identified as confidential and of which they have become aware as a result of such participation or access. In that regard, Member States may also allow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to act on their own initiative.	1. 회원국은 당사자, 그들의 변호사 혹은 기타 대리인, 법원 관리, 증인, 전문가 및 영업비밀의 불법적 취득, 사용 혹은 공개와 관련된 법적 절차에 참여하거나 그러한 법적 절차의 일부를 구성하는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외의 자들이 관할 사법 당국이 이해 관계 당사자의 정당한 이유에 따른 신청에 따라 기밀로 확인하고 그들이 그러한 참여 혹은 접근의 결과로 알게 된 영업 비밀 혹은 영업비밀로 주장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The obligation referred to in the first subparagraph shall remain in force after the legal proceedings have ended. However, such obligation shall cease to exist in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의무는 해당 법적 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 존속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무는 소멸된다.
(a) where the alleged trade secret is found, by a final decision, not to meet the requirements set out in point (1) of Article 2; or	(a) 영업비밀로 주장된 정보가 종국적 결정에 의해 제2조 제(1)포인트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b) where over time, the information in question becomes generally known among or readily accessible to persons within the circles that normally deal with that kind of information.	(b)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제의 정보가 일반적으로 그러한 종류의 정보를 다루는 집단 내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지거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게 된 경우.
2. Member States shall also ensure that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may, on a duly reasoned application by a party,	2. 회원국은 또한 관할 사법 당국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영업비밀 혹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된 또는 불법취득과 관

take specific measures necessary to preserve the confidentiality of any trade secret or alleged trade secret used or referred to in the course of legal proceedings relating to the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Member States may also allow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to take such measures on their own initiative. The measures referred to in the first subparagraph shall at least include the possibility:	련한 소송 절차에서 언급된 영업비밀의 기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특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회원국은 또한 관할 사법 당국이 자기 주도적으로 그러한 조치를 취할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조치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가능성들을 포함해야 한다.
(a) of restricting access to any document containing trade secrets or alleged trade secrets submitted by the parties or third parties, in whole or in part, to a limited number of persons;	(a) 당사자 혹은 제3자가 제출한 영업비밀 혹은 영업비밀로 주장되는 정보가 포함된 문서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접근을 제한된 수의 사람에게 한정.
(b) of restricting access to hearings, when trade secrets or alleged trade secrets may be disclosed, and the corresponding record or transcript of those hearings to a limited number of persons;	(b) 영업 비밀 혹은 영업비밀로 주장되는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심리절차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해당 심리의 기록 혹은 속기록을 제한된 수의 사람들에게만 공개.
(c) of making available to any person other than those comprised in the limited number of persons referred to in points (a) and (b) a non-confidential version of any judicial decision, in which the passages containing trade secrets have been removed or redacted.	(c) (a) 및 (b) 포인트에 언급된 제한된 수의 사람들에 속하지 않은 자에게 영업 비밀이 포함된 문구가 제거되거나 수정된 사법 결정의 공개 버전을 제공.
The number of persons referred to in points (a) and (b) of the second subparagraph shall be no greater than necessary in order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right of the parties to the legal proceedings to an effective remedy and to a fair trial, and shall include, at least, one natural person from each party and the respective lawyers or	제2단락의 (a) 및 (b)포인트에 언급된 사람의 수는 법적 절차의 당사자들이 갖는 효과적인 구제 및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각 당사자로부터 최소한 1인의 자연인 및 법적 절차의 당사자들의 각 변호사와 기타 대리인들을 포함해야 한다.

other representatives of those parties to the legal proceedings.	
3. When deciding on the measures referred to in paragraph 2 and assessing their proportionality,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shall take into account the need to ensure the right to an effective remedy and to a fair trial,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parties and, where appropriate, of third parties, and any potential harm for either of the parties, and, where appropriate, for third parties, resulting from the granting or rejection of such measures.	3. 제2항에 언급된 조치들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고 그 비례성을 평가할 때 관할 사법 당국은 효과적인 구제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당사자 및 해당되는 경우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할 필요성 및 그러한 조치의 부여 혹은 기각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 및 해당되는 경우 제3자가 겪을 잠재적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
4. Any processing of personal data pursuant to paragraphs 1, 2 or 3 sha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Directive 95/46/EC.	4. 제1, 2 혹은 3항에 따른 개인 데이터의 처리는 지침 95/46/EC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Section 2 Provisional and precautionar y measures	제2절 잠정 조치 및 예방조치
Article 10 Provisional and precautionary measures	제10조 잠정 조치 및 예방조치
1.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may, at the request of the trade secret holder, order any of the following provisional and precautionary measures against the alleged infringer:	1. 회원국은 관할 사법당국이 영업비밀 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침해 혐의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잠정적 및 예방적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a) the cessation of or, as the case may be, the prohibition of the use or disclosure of the trade secret on a provisional basis;	(a) 영업비밀의 사용 혹은 공개의 잠정적 중단 혹은 금지.
(b) the prohibition of the production, offering, placing on the market or use of infringing goods, or the importation, export	(b) 침해 물품의 생산, 제공, 시장 출시 혹은 사용 금지 혹은 그러한 목적을 위한 침해 물품의 수입, 수출 혹은 보관의 금지.

or storage of infringing goods for those purposes;	
(c) the seizure or delivery up of the suspected infringing goods, including imported goods, so as to prevent their entry into, or circulation on, the market.	(c) 수입품을 포함하여 침해 의혹 물품이 시장에 진입하거나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압수 혹은 제출.
2.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the judicial authorities may, as an alternative to the measur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make the continuation of the alleged unlawful use of a trade secret subject to the lodging of guarantees intended to ensure the compensation of the trade secret holder.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in return for the lodging of guarantees shall not be allowed.	2. 회원국은 사법 당국이 제1항에 언급된 조치의 대안으로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사용을 영업비밀 보유자를 보상하기 위한 보증의 제공 하에 계속할 수 있는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 보증을 대가로 한 영업비밀의 공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Article 11 Conditions of application and safeguards	제11조 신청 조건 및 안전장치
1.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have, in respect of the measures referred to in Article 10, the authority to require the applicant to provide evidence that may reasonably be considered available in order to satisfy themselves with a sufficient degree of certainty that:	1. 회원국은 관할 사법 당국이 제10조에 언급된 조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충분한 정도의 확실성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제출 가능한 증거를 신청인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a) a trade secret exists;	(a) 영업비밀이 존재한다.
(b) the applicant is the trade secret holder; and	(b) 신청인이 영업비밀 보유자이다.
(c) the trade secret has been acquired unlawfully, is being unlawfully used or disclosed, or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the trade secret is imminent.	(c) 영업비밀이 불법적으로 취득되었거나, 불법적으로 사용 혹은 공개되고 있는 중이거나, 영업비밀의 불법적 취득, 사용 혹은 공개가 임박하였다.

2.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in deciding on the granting or rejection of the application and assessing its proportionality,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shall be required to take into account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the case, including, where appropriate:	2. 회원국은 관할 사법 당국이 신청의 승인 혹은 기각을 결정하고 그 비례성을 평가할 때 적절한 경우 이하의 항목들을 포함하여 사건의 특정 상황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a) the value and other specific features of the trade secret;	(a) 영업비밀의 가치 및 기타 구체적인 특징.
(b) the measures taken to protect the trade secret;	(b)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c) the conduct of the respondent in acquiring, using or disclosing the trade secret;	(c) 피신청인이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혹은 공개함에 있어 보인 행동.
(d) the impact of the unlawful use or disclosure of the trade secret;	(d) 영업비밀의 불법적 사용 혹은 공개의 영향.
(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parties and the impact which the granting or rejection of the measures could have on the parties;	(e) 당사자들의 정당한 이익 및 해당 조치의 승인 혹은 기각이 당사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f)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ird parties;	(f) 제3자의 정당한 이익.
(g) the public interest; and	(g) 공공의 이익.
(h) the safeguard of fundamental rights.	(h) 기본권의 보호 장치.
3.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the measures referred to in Article 10 are revoked or otherwise cease to have effect, upon the request of the respondent, if:	3. 다음과 같은 경우 회원국은 피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제10조에 언급된 조치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중지되도록 해야 한다.
(a) the applicant does not institute legal proceedings leading to a decision on the merits of the case before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y, within a reasonable period determined by the judicial authority ordering	(a) 신청인이 회원국의 법이 허용하는 경우 조치를 명령한 사법 당국이 결정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혹은 그러한 결정이 없는 경우 20 근무일 혹은 31달력일 중 더 장기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관할 사법 당국에 사건의

the measures where the law of a Member State so permits or, in the absence of such determination, within a period not exceeding 20 working days or 31 calendar days, whichever is the longer; or	본안에 대한 결정으로 이어지는 법적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b) the information in question no longer meets the requirements of point (1) of Article 2, for reasons that cannot be attributed to the respondent.	(b) 문제의 정보가 피신청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제2조 제(1)포인트의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4.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may make the measures referred to in Article 10 subject to the lodging by the applicant of adequate security or an equivalent assurance intended to ensure compensation for any prejudice suffered by the respondent and, where appropriate, by any other person affected by the measures.	4. 회원국은 신청인 혹은 적절한 경우 해당 조치의 영향을 받는 다른 자가 피신청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담보 혹은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하는 조건하에 관할 사법당국이 제10조에 언급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5. Where the measures referred to in Article 10 are revoked on the basis of point (a) of paragraph 3 of this Article, where they lapse due to any act or omission by the applicant, or where it is subsequently found that there has been no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the trade secret or threat of such conduct,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order the applicant, upon the request of the respondent or of an injured third party, to provide the respondent, or the injured third party,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any injury caused by those measures.	5. 제10조에 언급된 조치가 본 조 제3항(a)포인트에 근거하여 취소되거나, 신청인의 행위 혹은 행위 부재로 인해 소멸되거나 이후에 영업비밀의 불법 취득, 사용 혹은 공개 혹은 그러한 행위의 위협이 없었음이 판명된 경우, 관할 사법당국은 피신청인 혹은 피해를 입은 제3자의 요청에 따라 피신청인 혹은 피해를 입은 제3자에게 그러한 조치로 인한 피해의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Member States may provide that the request for compensation referred to in the first subparagraph is dealt with in separate legal proceedings.	회원국은 제1단락에서 언급된 보상 요청이 별도의 소송절차에서 다루어지도록 정할 수 있다.

Section 3 Measures resulting from a decision on the mer its of the case	제3절 사건 본안에 관한 결정에 의한 조치
Article 12 Injunctions and corrective measures	제12조 금지 명령 및 시정 조치
1.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where a judicial decision taken on the merits of the case finds that there has been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may, at the request of the applicant, order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measures against the infringer:	1. 회원국은 사건의 본안에 따라 내려진 사법적 결정이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취득, 사용 혹은 공개가 있다고 본 경우 관할 사법당국이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침해자를 상대로 다음 중 하나 혹은 다수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a) the cessation of or, as the case may be, the prohibition of the use or disclosure of the trade secret;	(a) 영업비밀의 사용이나 공개의 중단 혹은 경우에 따라 금지.
(b) the prohibition of the production, offering, placing on the market or use of infringing goods, or the importation, export or storage of infringing goods for those purposes;	(b) 침해 물품의 생산, 제공, 시장 출시의 금지 혹은 사용 혹은 그러한 목적을 위한 침해 물품의 수입, 수출 혹은 보관의 금지.
(c) the adoption of the appropriate corrective measures with regard to the infringing goods;	(c) 침해 물품에 대한 적절한 시정 조치의 채택.
(d) the destruction of all or part of any document, object, material, substance or electronic file containing or embodying the trade secret or, where appropriate, the delivery up to the applicant of all or part of those documents, objects, materials, substances or electronic files.	(d) 영업 비밀을 포함하거나 구현하는 문서, 목적물, 자료, 물질 혹은 전자 파일의 전체 혹은 일부를 파기하거나 해당되는 경우 해당 문서, 목적물, 자료, 물질 혹은 전자 파일의 전체 혹은 일부를 신청인에게 제출.
2. The corrective measures referred to in point (c) of paragraph 1 shall include:	2. 제1항(c)포인트에 언급된 시정 조치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recall of the infringing goods from the market;	(a) 시장에서 침해 물품의 회수.
(b) depriving the infringing goods of their infringing quality;	(b) 침해 물품으로부터 침해적 특질을 제거.
(c) destruction of the infringing goods or, where appropriate, their withdrawal from the market, provided that the withdrawal does not undermine the protection of the trade secret in question.	(c) 침해 물품의 파기 혹은 적절한 경우 해당 영업비밀의 보호를 훼손하지 않는 조건에서 시장으로부터의 회수.
3. Member States may provide that, when ordering the withdrawal of the infringing goods from the market, their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may order, at the request of the trade secret holder, that the goods be delivered up to the holder or to charitable organisations.	3. 회원국은 관할 사법 당국이 시장에서 침해 물품의 회수를 명령할 때 영업 비밀 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물품을 보유자 혹은 자선 단체에 전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정할 수 있다.
4.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shall order that the measures referred to in points (c) and (d) of paragraph 1 be carried out at the expense of the infringer, unless there are particular reasons for not doing so. Those measures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any damages that may be due to the trade secret holder by reason of the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the trade secret.	4. 관할 사법당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c) 및 (d)포인트에 언급된 조치가 침해자의 비용으로 수행되도록 명령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취득, 사용 혹은 공개로 인해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손해 배상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Article 13 **Conditions of application, safeguards and alternative measures**	**제13조** **신청 조건, 안정 장치 및 대체 조치**
1.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in considering an application for the adoption of the injunctions and corrective measures provided for in Article 12 and	1. 회원국은 제12조에 규정된 금지 명령 및 시정 조치의 채택의 신청을 고려하고 그 비례성을 평가할 때 적절한 경우 이하의 항목들을 포함하여 사건의 특정 상황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assessing their proportionality,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shall be required to take into account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the case, including, where appropriate:	해야 한다.
(a) the value or other specific features of the trade secret;	(a) 영업비밀의 가치 및 기타 구체적인 특징.
(b) the measures taken to protect the trade secret;	(b)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c) the conduct of the infringer in acquiring, using or disclosing the trade secret;	(c) 피신청인이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혹은 공개함에 있어 보인 행동.
(d) the impact of the unlawful use or disclosure of the trade secret;	(d) 영업비밀의 불법적 사용 혹은 공개의 영향.
(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parties and the impact which the granting or rejection of the measures could have on the parties;	(e) 당사자들의 정당한 이익 및 해당 조치의 승인 혹은 기각이 당사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f)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ird parties;	(f) 제3자의 정당한 이익.
(g) the public interest; and	(g) 공공의 이익.
(h) the safeguard of fundamental rights. Where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limit the duration of the measures referred to in points (a) and (b) of Article 12(1), such duration shall be sufficient to eliminate any commercial or economic advantage that the infringer could have derived from the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the trade secret.	(h) 기본권의 보호 장치. 관할 사법 당국이 제12(1)조의 (a) 및 (b)포인트에 언급된 조치의 유효 기간을 제한하는 경우, 그러한 기간은 영업 비밀의 불법 취득, 사용 혹은 공개로부터 침해자가 얻을 수 있었던 상업적 혹은 경제적 이익을 제거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2.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the measures referred to in points (a) and (b) of Article 12(1) are revoked or otherwise cease to have effect, upon the request of the respondent, if the information in	2. 회원국은 문제의 정보가 피신청인에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사유로 제2조 제(1)포인트의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제12(1)조의 (a) 및 (b)포인트에 언급된 조치가 취소되

question no longer meets the requirements of point (1) of Article 2 for reasons that cannot be attributed directly or indirectly to the respondent.	거나 효력이 중지되도록 해야 한다.
3. Member States shall provide that, at the request of the person liable to be subject to the measures provided for in Article 12,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y may order pecuniary compensation to be paid to the injured party instead of applying those measures if all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3. 회원국은 이하의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경우, 제12조에 규정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의 요청에 따라 관할 사법 당국이 해당 조치를 적용하는 대신 피해 당사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명령할 수 있다고 정해야 한다.
(a) the person concerned at the time of use or disclosure neither knew nor ought, under the circumstances, to have known that the trade secret was obtained from another person who was using or disclosing the trade secret unlawfully;	(a) 관련 당사자가 사용 혹은 공개 당시 해당 영업비밀이 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을 것.
(b) execution of the measures in question would cause that person disproportionate harm; and	(b) 해당 조치의 실행이 그 자에게 비례 초과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을 것.
(c) pecuniary compensation to the injured party appears reasonably satisfactory.	(c)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합리적으로 만족스러운 것으로 보일 것.
Where pecuniary compensation is ordered instead of the measures referred to in points (a) and (b) of Article 12(1), it shall not exceed the amount of royalties or fees which would have been due, had that person requested authorisation to use the trade secret in question, for the period of time for which use of the trade secret could have been prohibited.	제12(1)조의 제(a) 및 (b)포인트에 언급된 조치 대신 금전적 보상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금액은 영업비밀의 사용이 금지될 수 있는 기간 동안 해당 영업비밀의 사용 허가를 요청한 사람이 지불했어야 하는 로열티 혹은 수수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Article 14 Damages	제14조 손해 배상
1.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upon the request of the injured party, order an infringer who knew or ought to have known that he, she or it was engaging in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to pay the trade secret holder damages appropriate to the actual prejudice suffered as a result of the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the trade secret.	1. 회원국은 관할 사법 당국이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 사용 혹은 공개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침해자에게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취득, 사용 혹은 공개의 결과로 비밀 보유자가 입은 실제 피해에 해당하는 손해 배상을 지불할 것을 명령하도록 해야 한다.
Member States may limit the liability for damages of employees towards their employers for the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of the employer where they act without intent.	회원국은 고용주의 영업 비밀을 불법적으로 획득, 사용 혹은 공개한 근로자가 고의 없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경우, 고용주에 대한 근로자의 손해 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2. When setting the damag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shall take into account all appropriate factors, such as the negative economic consequences, including lost profits, which the injured party has suffered, any unfair profits made by the infringer and, in appropriate cases, elements other than economic factors, such as the moral prejudice caused to the trade secret holder by the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the trade secret.	2. 제1항에 언급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관할 사법당국은 피해당사자가 겪은 수익의 상실을 포함하는 불이익한 경제적 결과, 침해자가 얻은 부당 이익, 적절한 경우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취득, 사용 혹은 공개로 인해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야기된 명성의 훼손과 같은 경제적 요인 이외의 제반 요소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Alternatively,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may, in appropriate cases, set the damages as a lump sum on the basis of elements such as, at a minimum, the amount of royalties or fees which would have been due had the infringer requested authorisation to use the trade secret in question.	그 대안으로서, 관할 사법 당국은 적절한 경우 최소한 침해자가 문제의 영업비밀의 사용 허가를 요청했더라면 지불했어야 하는 로열티 혹은 수수료 금액과 같은 요소에 기초하여 손해 배상금을 일시불로 설정할 수 있다.

Article 15 Publication of judicial decisions	제15조 사법적 결정의 공표
1.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in legal proceedings instituted for the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may order, at the request of the applicant and at the expense of the infringer, appropriate measures for the dissemination of the information concerning the decision, including publishing it in full or in part.	1. 회원국은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취득, 사용 혹은 공개와 관련하여 제기된 법적 절차에서 관할 사법당국이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침해자의 비용으로 결정에 관한 정보의 전체 혹은 부분적 공개 등 배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Any measure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preserve the confidentiality of trade secrets as provided for in Article 9.	2. 본 조 제1항에 언급된 조치는 제9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영업비밀의 기밀성을 유지해야 한다.
3. In deciding whether to order a measure referred to in paragraph 1 and when assessing its proportionality,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shall take into account, where appropriate, the value of the trade secret, the conduct of the infringer in acquiring, using or disclosing the trade secret, the impact of the unlawful use or disclosure of the trade secret, and the likelihood of further unlawful use or disclosure of the trade secret by the infringer.	3. 관할 사법 당국은 제1항에 언급된 조치를 명령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비례성을 평가할 때, 적절한 경우 영업비밀의 가치, 침해자가 영업 비밀을 취득, 사용 혹은 공개함에 있어 보인 행동,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사용 혹은 공개의 영향, 침해자가 영업비밀을 추가적으로 불법 사용하거나 공개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shall also take into account whether the information on the infringer would be such as to allow a natural person to be identified and, if so, whether publication of that information would be justified, in particular in the light of the possible harm that such measure may cause to the privacy and reputation of the infringer.	관할 사법 당국은 침해자에 관한 정보가 자연인의 식별을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러한 경우 해당 정보의 공표가 특히 침해자의 사생활과 평판에 끼칠 수 있는 피해에 비추어 정당화될 것인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CHAPTER IV *Sanctions, reporting and final provisions*	제4장 제재, 보고 및 최종 조항
Article 16 Sanctions for non-compliance with this Directive	제16조 본 지침의 준수 불이행에 대한 제재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may impose sanctions on any person who fails or refuses to comply with any measure adopted pursuant to Articles 9, 10 and 12.	회원국은 관할 사법 당국이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채택된 조치를 준수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he sanctions provided for shall include the possibility of imposing recurring penalty payments in the event of non-compliance with a measure adopted pursuant to Articles 10 and 12.	규정된 제재에는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채택된 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반복적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시켜야 한다.
The sanctions provided for shall be effective, proportionate and dissuasive.	규정된 제재는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제적이어야 한다.
Article 17 Exchange of information and correspondents	제17조 정보교류 및 소통 담당자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cooperation, including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mong Member States and between Member States and the Commission, each Member State shall designate one or more national correspondents for any question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measures provided for by this Directive. It shall communicate the details of the national correspondent or correspondents to the other Member States and the Commission.	회원국 간 및 회원국과 위원회 간 정보 교환을 포함하는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각 회원국은 본 지침에서 규정한 조치의 이행과 관련된 어떤 질문이든 담당할 1인 혹은 다수의 국내 소통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회원국은 국내 소통 담당자의 세부 정보를 다른 회원국과 유럽 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Article 18 Reports	제18조 보고서
1. By 9 June 2021, the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n the context of the activities of the 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hall prepare an initial report on the litigation trends regarding the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trade secrets pursuant to the application of this Directive.	1. 유럽 유럽연합 지재청은 2021년 6월 9일까지 '지적 재산권 침해에 관한 유럽 감시청'의 활동의 일환으로 본 지침의 적용 하에 영업비밀의 불법적 취득, 사용 혹은 공개에 관한 소송 동향에 대한 최초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2. By 9 June 2022, the Commission shall draw up an intermediate report on the application of this Directive, and shall submit it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o the Council. That report shall take due account of the report referred to in paragraph 1. The intermediate report shall examine, in particular, the possible effects of the application of this Directive on research and innovation, the mobility of employees and on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information.	2. 유럽위원회는 2022년 6월 9일까지 본 지침의 적용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제1항에 언급된 보고서를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중간 보고서는 특히 연구 및 혁신, 근로자의 이동성, 표현 및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에 관한 본 지침의 적용의 가능한 효과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3. By 9 June 2026, the Commission shall carry out an evaluation of the impact of this Directive and submit a report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o the Council.	3. 유럽위원회는 2026년 6월 9일까지 본 지침의 영향 평가를 수행하고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Article 19 Transposition	제19조 시행 입법
1. Member States shall bring into force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necessary to comply with this Directive by 9 June 2018. They shall immediately communicate the text of those measures to the Commission.	1. 각 회원국은 2018년 6월 9일까지 본 지침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법률, 규정 및 행정 조항들을 시행해야 한다. 회원국은 즉시 해당 조치의 내용을 유럽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When Member States adopt those measures, they shall contain a reference to this Directive or be accompanied by such a reference on the occasion of their official publication. Member States shall determine how such reference is to be made.	회원국이 이러한 조치들을 채택할 때 본 지침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거나 공식 발표 시 그러한 언급이 수반되어야 한다. 회원국은 그러한 참조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2. Member States shall communicate to the Commission the text of the main provisions of national law which they adopt in the field covered by this Directive.	2. 회원국은 본 지침이 적용되는 분야에서 채택한 자국 국내법의 주요 조항을 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Article 20 Entry into force	**제20조** **효력의 발생**
This Directiv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wentieth day following that of its publication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본 지침은 유럽연합 공식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20일째 되는 날 효력을 발생한다.
Article 21 Addressees	**제21조** **대상**
This Directive is addressed to the Member States.	본 지침은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다.
Done at Strasbourg, 8 June 2016.	2016년 6월 8일 Strasbourg에서 작성됨.
For the European Parliament *The President* M. SCHULZ	**유럽의회** **회장** M. SCHULZ
For the Council *The President* A.G. KOENDERS	**이사회** **회장** A.G. KOENDERS

2023
주요국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모음집

발행기관 : 특 허 청

발 행 일 : 2023 년 11 월

발 행 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ISBN : 979-11-6884-121-5 13500

이용허락 유형	표시 마크	이용허락범위
[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